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18～19세기 조선 사회의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오 승 관

18～19세기 조선 사회의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 연구

지도교수 오수창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오 승 관

오승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18～19세기 조선 사회의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오 승 관

본 논문은 조선시대 살인의 한 유형이자 그에 대한 율문인 『대명률(大明律)』의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의 법률적 의미와 실태, 그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란 위세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한 경우를 다루는 율문이다. 이때 ‘죽게 한’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자살하는 것이다.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핍박한 것은 아니며, 자살 자체를 강요한 것도 아니다. ‘위핍인치사’는 타인을 핍박하여 자살하게 되었을 경우, 그 핍박한 가해자에게 장 100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핍박의 원인에 따라 가중 처벌했다.

‘위핍인치사’의 법률적 의미는 현대 형법과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 형법에서 자살이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정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살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단,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하고 자살 자체를 강요하여 실행하게 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위핍인치사’가 다루는 상황은 가해자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즉, ‘위핍인치사’는 현대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법적 대상으로 삼지 않을 자살을 피해 사실로 인정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 형법과 비교할 때 ‘위핍인치사’의 매우 독특한 면모가 드러난다.

조선 사회에서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명(償命)과 유

아지율(由我之律)이라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명이란 하나의 억울한 죽음은 다른 하나의 죽음을 통해 갚아야 한다는 관념이다. 상명 관념 하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 역시 갚아야 할 죽음이었다. '위핍인치사'는 이러한 상명 관념을 반영하여 현실에서 자살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율문이었다. 한편, 조선 사회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유아지율이 있었다. 유아지율은 현대 형법의 조건설과 유사하다. 조건설이란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과 같이 논리학의 필요조건이 성립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위핍인치사'에 대해 유아지율을 적용하면,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살의 책임을 핍박을 가한 가해자에게 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핍인치사'를 적용하면서 자살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형성된다. '위핍인치사'는 선행 사건으로 핍박과 그 결과로 자살의 발생을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살이 먼저 발생하며, 사람들은 자살을 먼저 접한 후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따져 묻는다. 그러므로 사건의 현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살에 대한 인식이 선행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자살을 다른 사람에 의한 핍살(逼殺), 즉 살인의 결과로 인식하게 된다.

'위핍인치사'의 실태는 피해 결과인 자살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형사 관련 자료에 기록된 자살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망 원인이 분명히 자살인 경우, 해당 옥사 내 피해 결과가 자살인 경우, 가해자인 피고가 특정된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 검안류 자료, 『완영일록』, 『심리록』과 『일성록』, 『사법품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각 자료가 살옥 절차의 단계별로 생산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검안류 자료, 『완영일록』은 살옥의 초기 단계에서 생산된 자료로서 기층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심리록』과 『일성록』에 기록된 사건은 국왕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사건들이었다.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건의 유형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를 성별, 신분, 가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이 결과 '위핍인치사'의 경우 신분 문제보다 성별 문제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인 자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비율은 사법 처리 단계가 진행될수록 높아졌다. 반대로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다. 결국,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자살이 만연한 범죄 양상이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핍박의 양상도 주목된다. '위핍인치사'가 선행 사건으로서 핍박과 그 결과 자살을 규정하지만, 현실에서 자살이 발견되면 그것을 유발한 핍박을 찾기 때문에, 특정 핍박을 규정할 수는 없었다. 이는 핍박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핍박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피고가 자살자의 직접 위해를 가한 직접적 핍박이다. 둘째는 피고가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 자살한 간접적 핍박이다. 간접적 핍박의 경우도 '위핍인치사'를 적용한 사례로 볼 때, 조선 사회에서 자살을 유발할 가해 행위를 매우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핍인치사'에 대한 당시 사회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가의 공적인 대응으로서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 양상을 확인했다.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는 율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건의 유형이나 도덕적 가치에 따라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가령, 핍박과 자살이 발생한 상황이 인륜과 같이 도덕적 가치를 현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율문의 형량보다 가중 처벌했다. 반대로 사소하거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독특한 점은 성(性) 문제와 관련한 자살은 핍박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심리했다. 이는 성(性) 문제와 관련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형량이 참형이었기 때문이다. 즉, 성 문제와 관련하여 자살이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자살의 가해자를 참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심리함으로서 사형 판결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자살이 발생한 상황을 그대로 방조할 수 없었기에 강간 미수의 형량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性) 문제와 관련한 여성 자살을 처리했다.

'위핍인치사'에 대한 민간 사회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일반 백성들은 '위

핍인치사'에 대한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에 대한 민간 사회의 대응은 피해 결과인 자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확인했는데, 첫째는 자살을 발견한 후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인명(人命)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너무 당연하지만, 자살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당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살이 '위핍인치사'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자살과 그렇지 않은 자살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그에 대해 판단해야 했다. 이러한 판단의 결과로 이어지는 신고의 여부는 '위핍인치사'를 적용해야 할 자살에 대한 인민들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핍인치사'는 가해자가 있는 자살이기에, 자살을 목도한 사람들 역시 그 가해자를 찾아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었다. 당시에는 폭행을 당하거나 피살되면,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책임을 요구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위핍인치사' 역시 그 관습에 따랐다. 즉, 핍박한 가해자의 집에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가져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자살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행위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인민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자살은 자신이 선택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가해자의 집에 가서 자살했다. 이렇게 자살자가 직접 자살의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자살의 의미를 극대화했으며, 자살이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복수 내지는 저항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상으로 18~19세기 조선 사회를 중심으로 '위핍인치사'의 법률적 의미와 실태, 대응 등을 살펴보았다. 조선 형정(刑政)의 맥락에서는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 인식하고 처리하는 법 논리, 법 감정 등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피해 결과인 자살을 중으로 보면, 당시 사회에서 자살을 살인의 결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 대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위핍인치사', 『대명률』, 자살, 상명(償命), 유아지율(由我之律), 핍살(逼殺)
학번: 2019-39975

<목 차>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동향 및 논문 구성 ····· 5

Ⅰ. '위핍인치사'조의 적용과 자살 문제 ····· 12

1. '위핍인치사'조의 법률적 의미와 법리 ····· 12

⑴ 율문 검토 ····· 13

⑵ 현행 형법과의 비교 ····· 25

⑶ 조선에서의 법리 ····· 37

2. '위핍인치사'에서의 자살 ····· 59

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에 대한 판정 ····· 61

⑵ 피살(被殺)로 여겨지는 자살 ····· 71

Ⅱ. '위핍인치사'의 실태와 범죄 양상 ····· 85

1. 실태 분석의 시각과 자료 ····· 85

2. 실태 분석 ····· 97

⑴ 기초적인 사항 ····· 97

⑵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 ····· 110

⑶ 핍박의 여러 양상 ····· 121

Ⅲ. ‘위핍인치사’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응 ····· 133
1.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 ····· 133
⑴ 국왕과 관찰사의 심리와 판결 경향 ····· 134
⑵ 성(性) 관련 여성 자살에 대한 심리와 판결 ····· 153
⑶『사법품보』내 조율(照律) ····· 163
2. 민간 사회의 대응 ····· 177
⑴ 신고의 대상으로서 자살 ····· 177
⑵ 시신이 놓인 장소와 자살의 책임 ····· 184

결론 ····· 193

참고문헌 ····· 213

Abstract ····· 220

<표 목차>

〈표 1〉『대명률』의 오형(五刑)과 '위핍인치사'의 형량 ····· 18
〈표 2〉『대명률』의 간음 관련 범죄의 형량 ····· 27
〈표 3〉『추관지』「상복부」 살처(殺妻), 인간살인(因奸殺人)
수록 자살 사건 ····· 77
〈표 4〉『완영일록』 내 자살의 발생 상황 ····· 90
〈표 5〉 '위핍인치사'의 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자료의 성격과 시기 분포 ····· 96
〈표 6〉 자료별 '위핍인치사'의 총 사건 수 ····· 97
〈표 7〉『심리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시기별 발생 추이 ····· 99
〈표 8〉『일성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시기별 발생 추이 ····· 100
〈표 9〉『심리록』·『일성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연대별 발생 추이 ···· 100
〈표 10〉『완영일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월별 발생 추이 ····· 101
〈표 11〉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내 자살자의 연령과 성별 ····· 102
〈표 12〉 자료별 자살자의 성별 분포 ····· 103
〈표 13〉 자료별 '위핍인치사'의 갈등 유형 ····· 109
〈표 14〉 검안류 자료에 나타난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연령 관계 ····· 111
〈표 15〉 자료별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 ····· 113
〈표 16〉 자료별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 내 친족 여부 ····· 114
〈표 17〉『완영일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 117
〈표 18〉『심리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 117
〈표 19〉『일성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 118
〈표 20〉 '위핍인치사'에서 핍박의 양상과 그에 따른 피고 ····· 122

〈표 21〉 검안류 자료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 126
〈표 22〉『완영일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 128
〈표 23〉『심리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 129
〈표 24〉『일성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 129
〈표 25〉『심리록』·『일성록』 내 성(性) 유형을 제외한
'위핍인치사'에 대한 판결 결과 ····· 146
〈표 26〉『완영일록』 내 자살의 발생 상황과 처리 결과 ····· 148
〈표 27〉『사법품보』 자살 사건 조율(照律)에 활용된 조문 ····· 172

〈부표 1〉『신주무원록』과 『증수무원록대전』의 사망 원인[實因] 분류 ····· 199
〈부표 2〉『심리록』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 199
〈부표 3〉『일성록』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 201
〈부표 4〉『완영일록』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 202
〈부표 5〉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 203
〈부표 6〉『사법품보』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 208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조선시대 사망 사건을 다루는 형률(刑律)인『대명률(大明律)』권19, 인명(人命)에는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가 있다. '위핍인치사'는 위세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한 경우를 다루는 율문이다. '위핍인치사'의 법의(法意)에서 '죽게 한[致死]'이라는 상황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행위, 즉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핍박한 것은 아니며, 핍박의 내용도 자살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묻게 한다. 끝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가해자가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사 모진 괴롭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자살자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고민하게 된다.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이러한 문제가 조선 사회에서는 '위핍인치사'를 통해 법적인 처리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는 폭력과 자살, 인명(人命), 법적 책임과 귀속 등에 관한 당대 관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위핍인치사'의 역사적 의미는 한상권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1] 그는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과 그에 대한 법적인 태도에 주목했다. 첫째, 서양과 비교해 동양 형법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살을 금지했으며, 시체를 모욕하는 등의 자살자에게 비인간적인 형벌을 내리고 있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자살을 유발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하며 동아시아와 유럽 형법의 큰 차이를 짐작하게 한다. 두 번째는 중국 형법 전통에서도 독특하다. 이 조문은 중국의 고법인 당률(唐律)에는 없었고, 명대 와서 새롭게 마련되었기 때문이다.[2] 즉,

1) 이하 '위핍인치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한상권, 2014,「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법사학연구』, 한국법사학회, 9~10쪽.

인명(人命)을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형법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 형법에서 자살은 자기 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본다. 또한, 살인죄에서의 객체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기에, 자기 자신을 죽인 자살은 살인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핍박을 가하여 그로 인해 자살했다고 해도, 현대 사회에서는 핍박한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무죄인 상황이 전통시대 최고 사형(死刑)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핍인치사'는 주목할 만한 율문이다.

'위핍인치사'의 의미는 그 피해 결과인 자살에 대한 서양 형법 혹은 현대 형법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핍인치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선사회의 형정(刑政)의 실상과 지향, 피해 결과인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서도 율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위핍인치사'의 율문에 따른다면, 선행 사건으로서 가해자의 핍박이 있으며 그 핍박의 결과이자 피해 사실로서 자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핍인치사'를 적용해야 하는 당시 실제 사건의 현장은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 아무리 핍박이 강할지언정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으면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살이 발생하면 그 유가족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시작한다. 공적인 영역에서도 자살 자체가 먼저 인지된 후에 자살의 원인과 '위핍인치사'의 적용 여부를 논하게 된다. 즉, 자살이 발생해야 자살을 유발하게 한 핍박을 찾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핍인치사'의 현장을 고려하면, 당대 형정(刑政)의 지향을 확인하고 독특한 자살 인식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위핍인치사'와 조선의 형정에 관한 것이다. '위핍인치사'를 적용하는 심리와 판결에는 다양한 판단이 요구된다. 자살이 인지된 후에는 해당 자살에 이르게 한 핍박의 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핍박이 확인되었다면 자살할 만한 핍박이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자살

2) '위핍인치사'라는 율문 자체가 명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다만, '위핍인치사'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타카하시 요시로오(高橋 芳郎)는 '위핍인치사'조가 당률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高橋 芳郎, 1999 「明律 「威逼人致死」条の淵源」『東洋学報』81(3), 東洋文庫) 이 문제 Ⅰ장 1절 ⑶항에서 자세히 다룬다.

에 대해 핍박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도 따져보게 된다. 즉, 핍박의 강도,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 등을 따지는 것이다. 최종 판결에서도 여러 층위의 판단이 요구된다. 살인과 자살, 과실살 등 다양한 사망 유형 가운데 자살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이 적당하고 정당한 것인지, 결정된 형량은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것이다. 또한, 최종 판결로 인해 자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은 풀어진 것인지, 처벌을 통하여 당시 사회가 지향하는 질서가 유지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서두에 언급한 '타인의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위핍인치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 사회의 법 논리, 법 추론, 법 감정 등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핍인치사'는 자살에 대한 인식 문제와도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살 현장이 먼저 발생해야만 핍박 등의 원인을 찾고 '위핍인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해자와 유가족, 주변인 등은 법률적 판단 이전에 자살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살한 한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자살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항변하게 된다. 즉,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로서의 자살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반대로 유가족은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게 된다. 유가족은 자살한 사람과 사소한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도 핍박한 가해자로 지목하고 신고한다. 가족의 자살을 인지하게 되면, 법적인 판결 이전에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주변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관점에 따라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로서의 자살과 그것이 아닌 자살을 판단할 것이다. 이처럼 '위핍인치사'는 자살을 인식하는 당대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살 인식은 자살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당시 사회에서 위협과 핍박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의 선택에 있어, 그리고 자살 이후 그 처리 방향에 있어, 자신의 바람을 투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와 다른 자살에 대한 인

식의 한 유형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위핍인치사’에 대한 연구는 ‘타인의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에 대한 법적인 적용을 통해 조선시대 형정의 실상과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시에 현재와 다른 독특한 자살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법적 현실 자체는 어떠한가. 자살을 피해 사실로 인정하는 ‘위핍인치사’는 어떤 법률이었는지, 그 법리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 ‘위핍인치사’를 적용해야 하는 범죄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곧 피해 사실로서 자살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자살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핍인치사’와 그 피해 결과로서 자살에 대하여 당시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공적인 측면에서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지향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인민들은 자살에 대해서 어떤 행동 양식과 태도를 보였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동향 및 논문 구성

‘위핍인치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선행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위핍인치사’ 율문 자체에 집중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조선 시대 형사(刑事) 사건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자살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이다.

‘위핍인치사’ 율문에 집중한 연구는 주로 연원, 법리, 적용의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중국 송·원시기 연구자인 타카하시 요시로오(高橋芳郎)는 ‘위핍인치사’의 연원에 주목했다. ‘위핍인치사’는『대명률』에 처음 등장한 율문이기에, 보통 명대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라고 설명되곤 했다. 그러나 타카하시는 ‘위핍인치사’가 다루고 있는 범죄 상황은『당률소의(唐律疏議)』적도편의 ‘공박(恐迫)’과 관련한 내용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논증했다. 당률에서는 자살에 이르게 핍박은 상황에 따라 고살(故殺), 투살(鬪殺), 희살(戱殺)로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직접 살인한 사람과 같은 범주에서 다루는 것으로, 핍박한 가해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핍박한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고, 그에 따라『대명률』에서 ‘위핍인치사’를 추가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3] 그간 ‘위핍인치사’가『대명률』에서 새롭게 추가된 율문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역사적 배경은 설명하지 못했던 점에서 해당 연구는 의미는 크다. 아울러 핍박에 의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법적 전통에 대해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위핍인치사’의 법리와 관련해서는 나까무라 시게오(中村茂夫)와 한상권의 연구가 주목된다. 나까무라는 청대 ‘위핍인치사’ 적용의 다양한 판례를 검토한 후, 그 법리를 정리했다. ‘위핍인치사’에서의 자살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발생한 자살이라는 점, 가해자의 핍박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죄책을 추급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건설적인 인과관계론에 입각한 판단과 인명 사범을 중시하는 법적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4] 나까무라의 연구는 청대 ‘위핍인

3) 高橋 芳郎, 앞의「明律「威逼人致死」条の淵源」

치사’를 적용한 구체적인 판례를 기반으로 한 법리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한상권은 현대 형법의 법리인 결과적 가중범과 행위의 결과 귀속을 통해 ‘위핍인치사’의 법리를 다루었다. 한상권은 ‘위핍인치사’ 중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가 강간이라는 기본 범죄로 인해 자살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논한다면, 강간이라는 기본 범죄와 자살이라는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 청나라에서는 인관관계를 엄격하게 따져 적용하려 했고, 조선에서는 인명(人命) 사건의 가해자를 정범(正犯)과 피고(被告)로 구분함으로써 결과 귀속을 엄정히 하려했다고 평가했다.[5] 본 연구는 ‘위핍인치사’ 적용에 있어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음을 상기하게 했으며, 현대 법리의 시각에서 ‘위핍인치사’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다룬 선구적인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김호는 ‘위핍인치사’를 적용했던 입법 취지와 적용 관행 등 두루 살펴 보았다. 먼저 ‘위핍인치사’의 입법 취지와 적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정약용의 대민관을 검토했다, ‘위핍인치사’는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핍박을 다루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취지에서 나왔으나, 소민들의 무분별한 자살은 오히려 범분(犯分)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정약용은 ‘위핍인치사’로 인해 발생한 범분(犯分)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는 차등의 질서를 토대로 하되 진정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민을 지향하는 정약용의 대민관에서 기반한 것이다.[6] 한편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 강간의 미수와 기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본래 법률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왕 영조(英祖)와 정조(正祖)는 이를 구분하여 법률을 적용했음을 밝혔다. 즉 강간 미수로 인한 자살에 대해서는 사죄(死罪)에 처하지 않고, 강간 미수의 장·유형(杖·

---

4) 나까무라 시게오 저, 임대희 옮김, 2004, 「자살을 야기시킨(誘起) 경우의 죄책」『판례를 통해서 본 청대 형법』, 서경문화사(中村茂夫, 1973『淸代刑法硏究』, 東京大学出版会)

5)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6) 김호, 2013 「조선후기 ‘위핍률(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對民觀)」『역사와 현실』87, 한국역사연구회,

流刑)에서 가중 처벌하여 처리한 것이다. 이는 당대 형정의 맥락에서 부생(傅生)의 덕을 강조한 것이며, 동시에 결신(潔身)의 미덕을 포장하고자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이러한 법 관행을 비판하고 가해자의 범의(犯意)를 고려한 판결과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다.[7] 김호의 연구는 '위핍인치사'의 입법 취지, 적용 관행과 그로 인해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당대 형정(刑政)의 맥락에서 통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원재연은 1905년 편찬된 『형법대전』에서도 『대명률』의 '위핍인치사'가 계승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어서 전북지역의 '위핍인치사' 적용 판례를 검토하여 억강부약(抑强扶弱) 등 유교적 공동체에 대한 지향이 광무정권에서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8]

이상의 연구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위핍인치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위핍인치사'조 범죄의 양상이 어떠했는지, 특히 피해 결과로서 자살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핍인치사'와 관련하여 실제 처벌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그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논해야 한다.

한편, '위핍인치사'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자살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도 확인해야 한다. 조선 시대 자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별적인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정일영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심리록(審理錄)』을 통해 당시 지배층들의 자살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는 특히 성별 차이에 주목했다. 남성의 자살에서는 가시적인 물증이 중요했으며, 자살자에 대한 멸시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반면, 여성의 자살에서는 자살 동기에 관심을 가졌으며, 여성의 자살은 '여성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서도 정절과 관련한 여성의 자살은 포상과 찬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만 반영된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때 성차는 중요한 변수였

7) 金澔, 2013 「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震檀學報』 117, 震檀學會,

8) 원재연, 2016 「1890년대 후반 유교 이념과 위핍률(威逼律): 전북지역의 판례를 중심으로」『인문사회 21』 제7권 제6호, 인문사회21.

고 이는 자살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서도 나타난다고 정리했다.[9)]

김현진은『심리록』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조선시대 여성 자살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는『심리록』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자살이 많으며, 여성 자살은 성 문제와 같은 특정 원인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했다. 여성의 정절·열행은 개인적인 윤리가 아닌 사회 윤리로 전 계층으로 확산되었고, 자살은 여성이 열을 실천하는 극단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이에 대한 국가의 판결에 주목했는데, 남성 가해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비판과 법적 처벌이 내려졌고, 여성 자살자는 열녀로서 은전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여성의 자살은 사회가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타난 집단적 현상이었으며, 국가는 여성 자살을 권장하며 성리학적인 사회질서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10)]

송지영은『사법품보(司法稟報)』를 활용하여 갑오·광무개혁기 자살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여성 자살을 다루면서도 정절로 인한 자살과 형사 처벌 대상으로의 자살을 분리해서 이해한 점이다. 앞선 연구들은 여성 자살을 모두 정절의 맥락에서 다루었으나, 송지영은 재판 기록에 자살 사건이 많은 점에 주목하여 형법의 테두리에서 자살을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당대 맥락을 고려한 자살 분류 기준을 제안했다. 가해자인 피고가 있는 자살과 피고가 없는 자살, 인사(因事, 일상적인 어떤 일)로 인한 자살과 인간(因姦, 간음으로 인한 일)으로 인한 자살 등 당시 법적 처리 과정에서 활용된 기준으로 자살을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여성 자살은 친인척을 피고로 하는 자살과 인간(因姦)으로 인한 자살이 많았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가족·성(性) 질서와 여성 자살의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11)]

오승관은 규장각 소장 검안 자료를 바탕으로 자살의 실태와 당시 사람들의 행위 양식을 다루었다. 당대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와 가해자

---

9) 정일영, 2008「조선 후기 성별에 따른 자살의 해석-正祖代《審理錄》의 자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醫史學』제17권 제2호, 大韓醫史學會.

10) 김현진, 2010,「『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자살 실태와 그 사회적 함의」『조선시대사학보』52, 조선시대사학회.

11) 송지영, 2019「『사법품보(司法稟報)』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1895~1906)」,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인 피고의 관계가 중요하며 다양한 핍박의 양상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아울러 자살과 시신이 놓인 장소를 둘러싼 당대 행위 양식을 살펴보았다.[12)]

김동일은 연기현(燕岐縣)에서 작성된 공문서를 모아놓은 『기양문적(岐陽文籍)』에 수록된 여성의 사망과 관련한 사건 세 건을 상세히 검토했다. 세 사건 중 두 건은 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해당 연구는 여성 죽음의 맥락 속에 '복수'와 '처벌'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 주목했다. 여성들은 죽음을 통해 자신을 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희구했고, 그 복수의 대행자는 여성의 친정 가족들과 국가 기구였다. 그러나 당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형(寬刑)의 추세에서 죽음으로서 시도된 복수가 완전히 성공할 수는 없었다.[13)] 김동일의 연구는 여성의 죽음과 관련한 전후 맥락을 매우 상세하게 그려냈다. 또한, 그간 조선시대 범죄 연구는 중앙 정부에서 산출된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층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방 단위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범죄를 다룬 연구들은 사건의 유형이자 피해 사실로서 여성 자살에 주목했다.[14)] 백옥경은 여성의 자살에는 반드시 구타, 납치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선행되어 있음을 지적했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자살에 주목했다.[15)] 유승희는 성리학적 유교이념은 여성을 '미덕과 악', '열녀와 음부'로 범주화했고, '음부'라는 낙인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자살에 주목했다.[16)] 백민정은 남

12) 오승관, 2021 「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규장각 소장 검안 자료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120, 한국역사연구회.

13) 김동일, 2023 「죽은 여성의 복수 부촉(咐囑)과 설원(雪冤) 대행(代行)-『岐陽文籍』여성 사망 사건 연구-」『학림』 51, 연세사학연구회.

14)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고된다. 김선경, 2000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 백옥경, 2009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文賢雅, 2011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 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秋官志)』사례를 중심으로」『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 柳承喜, 2011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秋曹決獄錄』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백민정, 2020 「조선후기 성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과 재판 양상-『審理錄』·『秋官志』와 『흠흠신서』의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 제8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5) 백옥경, 앞의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118~122쪽.

16) 柳承喜, 앞의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157~

녀 사이에서 발생한 동일한 행위가 간통과 강간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살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17]

이상의 자살 관련 선행 연구는 자살의 구체적인 실상과 그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다. 다만, 앞서 소개한 자살 관련 연구들이 활용한 자료가 모두 형사(刑事) 관련 자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조선시대 자살이 범죄의 피해 결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율문은 '위핍인치사'였다. 그러므로 형사(刑事) 관련 자료에 기록된 자살은 '위핍인치사'와 더욱 충실하게 연결하여 설명할 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위핍인치사'와 그 피해 결과로서 자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18] 연구 대상 시기는 형사(刑事) 관련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는 18·19세기이다.

먼저 Ⅰ장에서는 '위핍인치사'의 법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절에서는 '위핍인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형법과의 비교를 진행한다. 자살을 대하는 '위핍인치사'와 현행 한국 형법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위핍인치사'의 독특한 법률적 의미를 포착할 것이다. 이어서 조선 사회에서 '위핍인치사'를 활용할 수 있었던 법리는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2절에서는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이 당대 맥락에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본다. 즉, 당대 다양한 자살 가운데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자살을 어떤 맥락에서 판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러한 자살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위핍인치사'의 범죄 양상과 자살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160쪽.

17) 백민정, 앞의 「조선후기 성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과 재판 양상」, 200~210쪽.

18)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는 『대명률』의 수록된 율문이다. 동시에 타인을 핍박하여 자살하게 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율문 자체를 지칭할 때는 '위핍인치사'조로 쓰고, 핍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 상황 자체를 지칭할 때는 '위핍인치사'라고 쓴다.

접근한다. 『심리록』, 『일성록』, 『완영일록』,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사법품보』를 바탕으로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의 실태를 파악한다. 우선, 자살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각 자료의 특징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의 실태를 다룬다. 연령, 성별과 같은 자살자의 기초적인 정보에서부터 자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자살에 이르게 한 핍박의 양상 등을 두루 파악한다. 이를 통해 ‘위핍인치사’의 범죄 양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Ⅲ장에서는 ‘위핍인치사’와 그 피해인 자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대응을 다룬다. 1절에서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 결과를 확인한다. 특히, 당대 국왕과 관찰사의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의 지향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성(性)과 관련한 여성의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핍인치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된 율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2절에서는 기층 사회에서 인민들이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을 다루는 태도를 다룬다. 특히,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지기 이전 일반 백성들은 피해 결과인 자살을 목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위핍인치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형정의 실상과 지향의 한 면모를 확인하고, 자살을 인식하는 당대인들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줄 것이다.

Ⅰ.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조의 적용과 자살 문제

1. ‘위핍인치사’조의 법률적 의미와 법리

『대명률(大明律)』의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조는 위세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 사망하게 된다. 현대 형법에서 자살은 자기 책임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살 자체를 피해 사실로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살의 가해자 혹은 그 공범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위핍인치사’조는 자살의 원인이 된 행위를 가해 행위로 상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은 법률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명(人命) 혹은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조선 사회의 남다른 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를 탐구하는 기반으로서 Ⅰ장 1절에서는 ‘위핍인치사’조의 법률적 의미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⑴항에서는 ‘위핍인치사’조의 율문 검토를 진행한다. 조선에서 주로 활용한 『대명률』의 주석서와 조선시대 법령집을 통해 ‘위핍인치사’조의 율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것이다.[1] 율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

---

1) ‘위핍인치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대명률』 주석서와 조선시대 법령집은 아래 표와 같다. 각 저작의 내용은 편찬 시기와 지역, 어떤 저본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위핍인치사’조와 관련한 해석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조선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생각된 저작과 ‘위핍인치사’조와 관련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긴 저작을 선별하여 율문 검토에 활용하였다.
‘위핍인치사’조를 검토하는 기반으로서 조선의 『대명률』 수용과 변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鄭肯植·趙志晩, 2003 「朝鮮 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변용」 『震檀學報』 96, 震檀學會 ; 심재우, 2007 「총론 : 조선시대 형률의 운용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 조지만, 2007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 鄭肯植, 2009 「朝鮮前期 中國法書의 受容과 活用」 『서울대학교 法學』 제50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참고.
『대명률』 주석서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은 장경준, 2016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 ‘향본(鄕本)’에 대하여」 『法史學硏究』 53, 韓國法史學會 ; 장경준, 2017 「『大明律直解』, 『大明律講解』. 『律解辨疑』와 洪武律에 대한 試論」 『民族文化』 49, 한국고전번역원 참고.

토 내용을 바탕으로 ⑵항에서는 현대 형법의 대표로 한국의 현행 형법과의 비교를 진행한다. 먼저, ‘위핍인치사’조의 내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적 가중범을 비교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 자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형법 제253조 위력자살결의와의 비교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위핍인치사’조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 현대 형법으로는 전혀 다룰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⑶항에서는 ‘위핍인치사’조를 의율하게 한 법리가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먼저 ‘위핍인치사’조가 규정된 명대 이전의 상황과 조선 전기 해당 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를 소개한다. 이어서 정조대 판결이 정리된『심리록(審理錄)』에서 ‘위핍인치사’조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위 과정을 통해 1절에서는 ‘위핍인치사’조의 법률적 의미를 짚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⑴ 율문 검토

‘위핍인치사’조는『대명률(大明律)』권19, 형률(刑律), 인명(人命)에 수록되어 있다. 인명 편은 사망과 관련된 조항을 수록한 편목이다. 명나라 이전까지 형률서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별도의 편목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명	편저자	연도	간행지	비고
『大明律直解』	高士褧 金祗	1395	조선	홍무 22년율을 저본으로 하여 이두로 번역.
『大明律講解』	미상	미상	조선 추정	홍무 22년율을 저본으로 함. 현재 한국에만 현존. 조선 후기까지 실질적으로 활용.
『大明律釋義』	應檟	1543	명	홍무 30년율을 저본으로 함.
『律條疏議』	張楷	1461	명	장해가 편찬한『대명률』에 대한 사찬 주석서. 조선에서는 개별 조문 해석에 활용.
『大明律附例』	舒化	1585	명	홍무 30년율을 저본으로 하여 주석·사례를 수록. 숙종 14년(1688) 영·호남 지역에서 간행. 조선 후기에 주로 활용된 주석서.
『新補受敎輯錄』	홍문관 예문관	1743	조선	숙종 20년(1694)부터 영조 13년(1739)까지 국왕의 수교를 정리한 법령집.
『典律通補』	具允明	1786	조선	구윤명이 국전(國典)과『대명률』을 종합한 사찬 법률서.

『대명률』을 편찬하면서, 이전 시대 형률서에서 적도(賊盜)나 투송(鬪訟) 편 등에 수록되어 있던 내용 중 죽음과 관련한 내용을 취합하여 인명 편을 구성하였다.[2] 이때 몇 개 조문이 추가되었는데, '위핍인치사'조는 그 추가된 조문 중 하나이다.[3]

『대명률(大明律)』 인명(人命)은 총 20개의 율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인의 형태는 7가지로 나눌 수 있다.[4] 모살(謀殺), 고살(故殺), 투구살(鬪毆殺), 희살(戱殺), 오살(誤殺), 과실살(過失殺), '위핍인치사'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앞의 6가지의 유형은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살인하는 것이라면, '위핍인치사'는 피해자의 자살로 사망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핍인치사'조의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떤 일로 다른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威逼] 죽게 하면 장(杖) 100이다. 관리나 공사인(公使人) 등이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평민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면 죄가 같다. 모두 매장 비용으로 은 10냥을 추징한다. (②) ○만약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하는 친척 어른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면 교형(絞刑)이다. 대공복(大功服) 이하이면 차례대로 1등급씩 줄인다. (③) ○만약 간음이나 도둑으로 인해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면 참형(斬刑)이다.[5] **①~③은 필자 표기임.**

---

2) 한상권 외, 2018『대명률직해』3, 한국고전번역원, 326쪽.

3) 일반적으로 '위핍인치사'조는『대명률』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율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타카하시 요시로오(高橋 芳郞)는 '위핍인치사'조는『당률소의』권18 적도편의 '공박인치사상(恐迫人致死傷)'을 원천으로 하여 남송·원대 자살을 이용한 도뢰(圖賴)와 무고(誣告)가 빈번했던 사회 풍조를 바탕으로 하여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高橋 芳郞, 앞의「明律「威逼人致死」条の淵源」) 이는 Ⅰ장 1절 ⑶항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룬다.

4) 한상권, 앞의「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9~10쪽 ; 김태계, 2018「조선시대의 인명(人命)에 관한 죄의 종류와 그 형벌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26권 제4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5)『大明律附例』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凡因事威逼人致死者 杖一百 若官吏公使人等 非因公務 而威逼平民致死者 罪同 並追埋葬銀一十兩 ○若威逼期親尊長致死者 絞 大功以下 遞減一等. ○若因姦盜而威逼人致死者 斬." ; '威逼'라는 어구에 대하여 관련 선행 연구와『대명률직해』의 역주본(한상권 외, 앞의『대명률직해』3)에서는 모두 '위세로 핍박하여'로 번역하였다. 최근 고전번역원의 조선왕조실록 신역에서는 '위협하고 핍박하여'로 번역하였다.(『신역 태종실록』, 태종 4년 9월 24일) 결국, '威'를 '위세'로 번역할 것인지, '위협'으로 번역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大明律講解』에서는 '却用威勢陵逼(도리어 위세를 사용하여 능핍하는)'라고 하여 '위

조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①항은 조문의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형량을 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관민(官民) 사이에서 발생한 특수한 경우와 매장 비용을 추징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②항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형량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③항은 간음이나 도둑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면 참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조문의 내용이 구분되는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의 조건이나 원인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핍인치사'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어떤 일로 다른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威逼] 죽게 하면 장 100이다.'이다. 먼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호혼(戶婚), 전택(田宅), 사채(私債) 등의 유형과 같은 일들을 말하는데,[6] 마지막 부분인 ③에 규정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와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를 제외한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건의 원인이 주로 가족, 결혼, 경제 문제, 간음과 도둑 등이라는 것이다. '위세로 핍박하여[威逼] 죽게 하면'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핍박하여, 피해자가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자살하는 것을 의미한다.[7]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죽음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8] 가해자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9] 가해자에 의한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기에 인명(人命) 편에 포함된 조항치고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데,[10] 장 100에 매장 비용으로 은 10냥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어서 관민(官民)에 관한 서술이 나온다. '관리나 공사인 등이 공무(公務)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평민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한다.'라는 것은

세'로 해석되었다. 또한, 본 율문을 계승한『刑法大全』에서는 다음과 같이 '事를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이라고 명시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위세로 핍박하여'로 번역하였다.

6)『大明律釋義』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釋義曰 事如戶婚田宅私債之類"

7)『典律通補』, 刑典 殺傷, 威逼人致死, "以威勢逼, 使人畏之不得已自盡"

8)『大明律釋義』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威逼致死 謂以勢凌之而其人懼而自盡 非謂逼其死也"

9)『大明律附例』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威逼是以勢以威逼 使人畏之 不得已而自盡者 逼之者 原無殺之之心也"

10) 나까무라 시게오, 앞의 「자살을 야기시킨(誘起) 경우의 죄책」, 279쪽 ;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12쪽.

관리가 사적인 일로 관(官)의 권위를 이용하여 평민을 업신여기고 핍박하여, 평민이 자진하게 된 상황을 말한다.[11] 관민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죄가 같다.'는 것은 관리라고 해서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며,[12] 그에 따라 형량도 같다. 관민 사이의 일이 '위핍인치사'조로 다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구성요건은 공무가 아닌 사적인 일 때문에 핍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백성이 핍박받아 죽게 되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13] 한편, 위 규정과 반대로 군민(軍民)이 위세로 핍박하여 관원(官員)이 죽게 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졌는데, 수범(首犯)은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하는 친척 어른을 핍박하여 죽게 한 것에 준하여 교형(絞刑), 종범(從犯)은 충군(充軍)에 처한 사례가 있다.[14]

두 번째는(②)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형량 차이를 구분한 부분이다. 만약,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할 정도로 가까운 친척 어른을 핍박하여 죽게 했다면, 핍박한 어린 사람은 교형(絞刑)을 받게 되었다. 이 형량은 '위핍인치사'조의 기본 형량인 장 100보다 9등급이 높은 것이다. 형량을 가중하더라도 사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대명률』 '가감죄례(加減罪例)'조의 기본 원칙에 비춰보면,[15] 기본 형량과

---

11) 『大明律講解』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講曰...若官吏及公使人等 非因公務而威逼平人致死者 罪同 謂官吏及公使人等 因私己事務 倚恃官府威勢 將平民陵逼 以致自盡身死者 亦杖一百"

12) 『大明律釋義』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言官吏公使人 雖於民有相統屬 若以私事而威逼平民致死 與凡民威逼者何異哉 故其罪同幷追埋葬銀十兩" ;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14쪽.

13) 『大明律講解』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講曰...其官吏公使人等 因公務威逼人致死者 律旣無文 並合勿論" ; 『大明律釋義』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言非公務平民 則因公務而威逼有罪之民致死者 勿論矣" ; 『大明律集解付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蓋言非因公務威逼平人則 凡因公務而威逼有罪之民 致死者勿論矣" 이상과 같이 『대명률』 주석서의 다수는 공무로 인해 발생한 핍박과 그로 인한 자살을 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의 직해문에서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데, "공무로 인하여 위력으로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하면 장 100이다.(凡因公事爲威力以逼人致死爲在乙良杖一百齊)"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조문에서는 공무가 아닌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직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생각된다.

14)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條例 ... 一 凡軍民人等 因事威逼本管官致死 爲首者 比依威逼期親尊長致死律絞 爲從者 枷號半年 發邊衛充軍"

15) 『大明律附例』 卷 1, 名例律, 加減罪例, "又加罪 止於杖一百流三千里 不得加至於死"

기년복(期年服)에 해당하는 친척 어른을 핍박한 경우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이는『대명률』이 차등적 명분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명분을 어기는 범분(犯分)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했기 때문이다.[16] 즉, 아랫사람은 마땅히 윗사람을 공경해야 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 핍박으로 인해 윗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명분을 범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처벌한 것이다. 이어서 오복제죄(五服制罪)의 원칙에 따라,[17] 대공복(大功服) 이하는 교형에서부터 1등급씩 체감했다.[18] 그러므로 대공복에 해당하는 어른을 핍박하여 죽게 하면 장 100, 유 3000리, 소공복(小功服)에 해당하면 장 100, 도 2년, 시마복(緦麻服)에 해당하면 장 90, 도 2년 반이었다.[19] 이러한 형량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6) 沈羲基, 1997「典律體系 下의 刑法」『韓國法制史講義-韓國法史上의 판례와 읽을거리-』, 三英社, 206~211쪽.

17) 范忠信, 鄭定, 詹學農 저, 李仁哲 옮김, 1996,『中國法律文化探究』, 一潮閣, 187~190쪽.

18)『大明律附例』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遞減一等者大功減期小功減大功緦麻減小功各一等也無服以凡論"

19)『大明律講解』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講曰 謂威逼大功尊長致死者 杖一百流三千里 小功 杖一百徒三年 緦麻 杖九十徒二年半" ; 소공 존장을 위핍한 경우, 유 2500리, 장 100이 아니라 도 3년, 장 100의 형량을 받는 이유는『대명률』의 '가감죄례'조에 따라 사형과 유형은 한 등급으로 보아 감죄하기 때문이다. 가령, 참형에서 한 등급 감하면 교형이 아니라 유 3000리, 장 100이 되며, 두 등급 감하면 도 3년, 장 100이 된다.

〈표 1〉『대명률』의 오형(五刑)과 '위핍인치사'의 형량

『대명률』의 五刑과 형량		'위핍인치사'의 형량
태형(笞刑)	10 ~ 50대	
장형(杖刑)	60 ~ 90대	
	100대	기본 형량
도형(徒刑)	1년, 장 60대	
	1년 반, 장 70대	
	2년, 장 80대	
	2년 반, 장 90대	시마복에 해당하는 어른을 핍박한 경우
	3년, 장 100대	소공복에 해당하는 어른을 핍박한 경우
유형(流刑)	2000리, 장 100대	
	2500리, 장 100대	
	3000리, 장 100대	대공복에 해당하는 어른을 핍박한 경우
사형(死刑)	교형(絞刑)	기년복에 해당하는 어른을 핍박한 경우 [威逼期親尊長]
	참형(斬刑)	간음으로 인한 위핍[因姦威逼] 도둑으로 인한 위핍[因盜威逼]

두 번째 부분(②)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다룰 내용이 더 있다. 위와 같은 범분(犯分)에 의한 형량의 가중은 부부관계에서도 유지되었다. 먼저 아랫사람의 아내가 윗사람을 핍박하여 윗사람이 죽게 되면, 남편이 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었다.[20] 처(妻)나 첩(妾)이 남편을 핍박하여 자살하게 되면 기년복(期年服)에 해당하는 친척 어른을 핍박하여 죽게 한 것과 같이 교형에 처했으며, 첩(妾)이 처(妻)를 핍박하여 처가 자살한 것도 마찬가지였다.[21]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처첩이 남편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남편이 처첩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이 더 쉽게 발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후자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었다.[22]

---

20)『大明律附例』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卑幼之婦犯尊長與夫罪同"

21)『大明律附例』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妻妾嫌夫 貧窘時 常打罵 或 誣夫不孝 致夫自盡 引例比絞 妾逼死妻 依威逼期親"

높은 사람은 본래 명분으로 서로 임하므로 비록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아니다. 이는 남편이 구타하거나 욕설을 퍼부어 처·첩이 자진하더라도 논하지 않는 것으로 의율하는 것과 같다.[23]

이는 명분론에 입각하여 윗사람의 존엄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명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법으로 윗사람의 존엄함을 처벌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되었다.[24] 결국, 두 번째 부분은(②) 명분론에 입각한 『대명률』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③항에서는 간음이나 도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하면 참형(斬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형은 『대명률』의 오형(五刑) 가운데 가장 높은 형벌이다. 즉, '위핍인치사'조의 여러 유형 가운데 간음과 도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가장 흉악한 범죄로 취급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자살에 이르게 한 범행 즉 간음과 도둑 행위의 미수와 기수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5] 가령, 강간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시도 과정에서 위협과 핍박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강간 미수자는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조로 처벌되었다. 도둑으로 인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재물을 얻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강도·절도 행위 혹은 그 행위와 관련된 위협과 핍박으로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가해자는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로 처벌받았다.

그렇다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와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대명률강해』에서는 다음과 같

---

22) 『大明律釋義』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言卑幼威逼尊長致死之罪則 尊長威逼卑幼致死者 勿論矣"

23) 『大明律附例箋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尊者本以名分相臨 雖威勿威 若夫毆罵妻妾自盡 則依律勿論"

24)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15쪽.

25) 『大明律講解』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講曰...又如因行强盜 雖未得財 而財主畏懼 自盡身死 或因竊盜 財主欲告 反將財主 用計威逼身死 若此之類 謂之因盜威逼 並斬" ;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因姦威逼不分已未成姦 ... ○因盜威逼不論已未得財"

은 종류를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라고 하였다.

만약 강간으로 인하여 부녀(婦女)를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거나 혹은 화간을 하는데 막으려는 간부(姦婦)의 친족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는 것과 같은 종류를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이라고 한다.[26]

강간으로 인해 핍박을 당한 부녀가 죽게 되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로 처벌했다. 『대명률』에서는 강간 기수는 교형, 강간 미수는 장 100, 유 3000리로 그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27] 그런데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경우는 강간의 미·기수를 구분하지 않고 참형에 처했으므로, 보통의 강간에 비해 강간으로 인한 핍박과 그에 따른 자살은 더 엄하게 다뤄진 것이다.[28] 화간을 막으려는 간부(姦婦)의 친족을 핍박하여 죽게 한 경우도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화간을 막으려 했던 본 남편과 남편의 가족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29] 본래 화간의 경우 남편이 없으면 장 80, 남편이 있으면 장 90에 처했으므로,[30] 화간으로 인한 핍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도 보통의 화간에 비해 중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간한 사실이 드러나자 간부(姦婦)가 집에서 쫓겨나서 자살하거나 혹은 수치스러워 자살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으로 다루지 않았고 간부(姦夫)만 간죄(姦罪)로 처벌하도록 했다.[31]

---

26) 『大明律講解』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講曰 如因强姦而威逼婦女身死 或和姦因有窒碍將姦婦之親屬 威逼身死 若此之類 謂之因姦威逼”

27) 『大明律講解』 卷25, 刑律 犯姦, “强姦者 絞 未成者 杖一百流三千里”

28) 다만, 사족(士族) 부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는데, 『속대전(續大典)』 ‘간범(姦犯)’조에서 사족 처녀를 겁탈한 경우에는 기수와 미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부대시참(不待時斬)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續大典』, 刑典 姦犯, “士族妻女劫奪者 勿論姦未成 首從皆不待時斬”) 즉, 자살로 인한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만으로 참형(斬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강간을 당한 사족 부녀가 자살했을 경우, ‘위핍인치사’조가 아니라 ‘간범’조로 조율하기도 했다.

29) 『大明律釋義』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因姦而威逼人致死 如強姦而其婦自盡或和姦而有所阻礙威逼其夫 或其親屬致其自盡者皆是也”

30) 『大明律附例』 卷25, 刑律 犯姦, “凡和姦 杖八十 有夫 杖九十”

31) 『大明律釋義』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近見和姦之婦爲夫所毆而自盡者 雖有因姦之事而 無威逼之情問 官往往引此律擬以斬罪 誤甚矣”;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又 如姦婦被親屬拘執打死 或 被夫毆罵婦羞自盡姦夫止坐姦

실제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을 논의하는 경우는 강간과 강간 미수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을 때이다. 1898년 9월 9일 개령군의 김조이(金召史)는 김팔용(金八用)에게 강간당한 후, 단식하다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32]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찰사 조한국(趙漢國)은 앞서 인용한 『대명률강해』의 “만약 강간으로 인하여 부녀를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라고 한다”는 주석 내용을 김팔용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33] 강간 미수의 경우에도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을 논의했는데, 정조대 함양의 장수원(張水元)은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한일택(韓日宅)의 누이 한조롱(韓鳥籠)을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한조롱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34] 이에 대해 형조는 ‘위핍인치사’조의 강간으로 인해 부녀를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한 조문을 해당 옥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정조(正祖) 역시 이것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하기도 했다.[35] 이처럼 강간 기수·미수에 상관없이 강간과 관련하여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살이 발생하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에 해당했다.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이해하여, 성적인 희롱과 추문에 의한 자살도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영조(英祖) 13년 문중갑(文仲甲)은 8촌 누이 문옥지(文玉只)에게 희롱하는 말을 했고, 그것을 들은 문옥지는 비상을 마시고 죽었다. 형조는 가해자 문중갑을 강간 미수로 처리할 것인지, 일률(一律)로 처리할 것인지 국왕에게 문의했다.[36] 일률은 사형으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

罪 不可作威”

32) 『司法稟報』(甲), 41冊, 第22號 質稟書.

33) 『司法稟報』(甲), 41冊, 第22號 質稟書, “謹按 大明律人命編 威逼人致死條 講曰如因强姦而威逼婦女身死 謂之因姦威逼이라ᄒᆞ엿ᄉᆞ오니 今此八用之所犯이 恐合此律之條列”

34) 한조롱의 자살과 관련한 내용은 『審理錄』 卷25, 慶尙道 ; 『日省錄』 정조 18년 3월 16일(계묘) ; 『日省錄』 정조 21년 5월 18일(정사) ; 『日省錄』 정조 21년 윤6월 29일(정묘) ; 『日省錄』 정조 22년 5월 22일(계묘).

35) 『日省錄』 정조 21년 윤6월 29일(정묘), “大明律威逼人致死條有曰因强奸而威逼婦女致死者斬註曰以威以勢使人不得已自盡此律爲此獄準備 … 卿等之所引大明律實合廷尉之當”

36) 『承政院日記』 857책, 영조 13년 9월 23일, “大抵仲甲 設有戱言 玉只致死時 旣無威逼之端 則直施一律 未知允當 而彼旣由渠而死 同姓八寸 乃是有服之親 則只以强奸

逼]’를 적용했을 때 받게 되는 참형(斬刑)을 뜻한다. 즉, 성적인 희롱에 의한 자살에도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순조(純祖) 때 구중채(具仲采)는 과부 손(孫)씨의 추문을 지어내 퍼트렸는데, 이에 수절하던 손씨는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 경상감사 김노응(金魯應)은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37]

기본적으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는 상황은 강간 과정에서 위협과 핍박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 자살이 발생했을 때이다. 조문의 적용 범위를 넓게 보아 성적인 희롱과 추문으로 인한 자살에도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의율 양상이 곧 실제 최종적 판결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영·정조대 간음과 관련한 자살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강간 미수로 인한 자살에 대해서는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지 않고 강간미수율에서 가중 처벌하여 부생(傅生)의 덕을 고려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38]

한편,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크게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또 만일 강도를 행하여 비록 재물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재물 주인이 두려워하여 자진하여 죽게 되거나 혹은 절도로 인하여 재물 주인이 고발하려는데 도리어 재물 주인을 꾀를 써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부류를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이라고 부르고 모두 참(斬)한다.**[39]

첫 번째는 강도로 인해 재물 주인이 핍박을 당해 자살한 경우이다. 도둑질

未成 罪止杖流 亦涉太輕 似當有參酌定罪之道矣”

37)『日省錄』순조 13년 5월 15일(신사), “慶尙監司 金魯應狀啓以爲大丘 具仲采誣逼孫氏服艮醬致死 … 則哀此孫氏 靑年喪夫十載守節而 惟彼仲采以親叔家雇奴 做出至醜之語 加此難洗之目而 … 因姦逼殺自有當律得情償命在所不已”

38) 金澔, 앞의 「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

39)『大明律講解』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講曰…又如因行强盜 雖未得財 而財主畏懼 自盡身死 或因竊盜 財主欲告 反將財主 用計威逼身死 若此之類 謂之因盜威逼 並斬”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 주인이나 도둑질을 막는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고 보았다.[40] 예를 들어, 도적이 문밖에서 허장성세를 보였는데, 주인이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 자살하게 되는 경우이다.[41] 두 번째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는 절도 당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관에 고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핍박을 행한 경우이다.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를 행한 가해자 역시 보통의 강도·절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었다.[42]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의 경우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청대 주석에 나타나며, 조선의 『사법품보』에서도 거의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43] 실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 사건 중에서 분명하게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를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사법품보』에 수록된 강시조 자살 사건이 주목된다.[44] 강시조 자살의 초검에서 진

---

40)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務必行盜之人 逼死事主 及 相妨碍之人"

41)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或 賊未入門先在外面 虛張聲勢 致事主驚惶自盡"

42) 『대명률』에서는 강도와 절도는 미수와 기수를 나누어 처벌하였다. 강도 미수는 장100, 유3000리이며, 강도 기수는 참형이었다.(『大明律直解』 卷18, 刑律 賊盜, 强盜) 절도 미수는 태 50이었으며, 절도 기수는 초범, 재범, 3범을 나누어 처벌했으며 3범일 경우 교형에 처해졌다. (『大明律直解』 卷18, 刑律 賊盜, 强盜) 그러므로 미·기수의 구분 없이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의 가해자를 참형으로 처벌한 것은 보통의 강도와 절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43)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16~17쪽.

44) 〈주요 사건 1〉 1903년 6월 조영순(趙永順, 23세), 고쌍동(高雙同, 23세), 오화선(吳化善, 23세) 등이 순검(巡檢)을 사칭하여 강시조(姜時祚, 63세)를 폭행했고, 강시조가 가지고 있던 비상을 먹고 죽은 사건이다. 조영순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였다. 조영순의 6촌 매부가 죽자, 6촌 누이가 조영순에게 진주 창선면 고분동에 사는 강씨(강실준)와 혐단(嫌端)이 있다면서 잡아 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조영순이 재물을 빼앗을 수 있다고 고쌍동과 오화선을 설득하여 함께 강실준의 집으로 갔다. 강실준이 집에 없자, 세 사람은 그의 아들을 묶어 데려가려고 했는데, 강실준의 아버지인 강시조가 자신이 가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강시조를 김조이(金召史)의 주막으로 데려가 폭행하였다. 김조이의 만류로 강시조를 방에 눕혀 두었는데, 강시조가 평소 약으로 가지고 있던 비상을 먹고 죽었다. 초검관인 진주 군수 이용교(李瑢敎)는 사망 원인[實因]은 '복비치사(服砒致死)'로 기록했고, 조영순을 피고(被告)로 기록하였다. 1903년 10월 19일 이용교는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로서 조영순, 고쌍동, 오화선 세 사람에게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를 적용하여 교형을 선고했다고 법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해당 사건은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조에 해당하지만,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는 적용할 수 없으며, 관원을 사칭한 '사가관(詐假官)'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위핍인치사'조와 '사가관'조 중 형량이 높은 '사가관'조를 적용하였다. 조영순은 수범(首犯)으로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였고, 고쌍동과 오화선은 종범으로 1등급 감하여 태 90, 징역 2년 반에 처하였다.(『晋州郡

주 군수 이용교는 조영순을 비롯한 세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위세로 핍박하여 재물을 토색질 하려다가 끝내 자살[自裁]하는 행동을 하게 하였으니 … 본심이 비록 살인에 있지 않으나 한 행동이 어찌 유아지율을 면하겠는가?**[45]

주목되는 것은 가해자들의 본 의도가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해자의 살인 의도가 없다고 보는 '위핍인치사조'조의 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핍박하게 된 이유가 재물을 강탈하려 했던 것임을 짚었다. 즉,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초검관이자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서리를 맡고 있었던 진주 군수 이용교(李瑢敎)는 세 사람에게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를 적용하여 교형을 선고했다고 법부에 보고했다. 이처럼 재물을 강탈하려고 핍박을 가했는데,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대명률부례』의 조례(條例)에서는 한 집안에서 두 명이 자살하거나, 같은 집안이 아니더라도 세 명 이상이 자살하는 사례와[46] 남편이 죽고 수절하려는 아내에게 결혼을 강요하여 자살하게 한 사례[47] 등도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여 처리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으로『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핍인치사'조는 인명(人命) 편에 포함되어 다른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문이었다. 이는 가해자의 핍박에 의해 피해자가 자살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기본 형량은 장 100, 매장은 10냥

昌善面古順里致死男人姜時祚初檢文案』(奎26576) ;『司法稟報』(甲), 87책, 報告書 第11號 ;『法部起案』, 24책, 光武 7年 11월 11일 起案 참고.)

45)『晋州郡昌善面古順里致死男人姜時祚初檢文案』(奎26576), "威逼討財라가 遂使自裁之擧로… 本心이 雖不在於殺人이나 所造가 烏得免於由我리요"

46)『大明律附例』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一 凡因威逼人致死 一家二命 及非一家 但至三命以上者 發邊衛充軍 若一家三命以上 發邊衛永遠充軍 仍依律 各追給埋葬銀兩"

47)『大明律附例』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一 婦人夫亡願守志 別無主婚之人 若有用强求娶 逼受騁財 因而致死者 依律問罪 追給埋葬銀兩 發邊衛充軍"

을 추징하는 것이나, 친족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협하고 핍박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나, 간음, 도둑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 당시의 사회 질서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死刑)까지 가능했다. 그런데 '위핍인치사'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핍박과 그것으로 인해 발상한 자살이다. '위핍인치사'조의 법의는 선행 사건으로 가해자의 핍박이 존재하며, 그것에 의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자살하게 된 상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현장에서는 신고된 자살을 먼저 인식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은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대 형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자살을 다루는 현대 형법을 살펴보면 '위핍인치사'조의 법의와 특징을 더 분명하게 짚어볼 수 있다.

⑵ 현행 형법과의 비교

가해자의 핍박,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자살을 다루는 '위핍인치사'조의 특징을 짚어 내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위핍인치사'조와 현대 형법에서 자살을 다루는 방식을 비교할 것이다. 다만, 현대 형법의 자살에 대한 고찰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항에서는 '위핍인치사'조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결과적 가중범과 현행 형법 제253조의 위력자살결의를 중심으로 비교를 진행한다.

조선시대 형법과 서구의 근대법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형법은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에서 나왔으며, 그 기저를 이루는 법 이념과 이론도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두 형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자칫 해석의 오류를 낳거나, 비교 대상의 우열을 나누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비교를 시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현실 문제를 과거에 직접 투영하여 역사 연구와 현실을 충실하게 관계 맺게 할 수 있다.[48] 후

48) 역사 연구자가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문제를 탐구하는 관점·방법은 '下而上'의 역사 탐구로서 오수창에 의해 제기되었다.(吳洙彰, 2016「正祖 연간과『日省錄』을 향한 '下而上'의 역사 탐구」『民族文化』第47輯, 한국고전번역원) 현재 역

술하겠지만, 현행 형법이 자살을 다루는 태도와 판례를 통해 조선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작업은 현재 자살과 형법상 죽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역사학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두 대상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과거 상황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서 현재 연구자가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을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위핍인치사'조가 그러한데, 핍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인해 그것의 독특한 면모와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현재와의 비교를 통해 '위핍인치사'조가 현행 형법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상황을 다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핍인치사'조와 그것에서 비롯된 죽음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짚어볼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미 '위핍인치사'조의 내용 중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현대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을 통해 살펴본 선행 연구가 있었다.[49] 해당 연구는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형량은 본죄인 강간이나 화간의 형량에서 가중된 것으로, 이는 당시 사람들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앞서, (1)항의 율문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명률』에서는 강간 기수와 미수, 화간에 대한 형량을 따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본죄라고 한다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은 본죄로 인해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해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사 서술은 앞선 시대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과거 상황을 재현하는 데 충실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역사가 오늘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투영하는 데 불리하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 주제의 설정에서 최종 결론까지 현실의 문제의식과 시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下而上'의 탐구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는 현실의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나, 현행 헌법을 출발점으로 제안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교육에 대한 역사 서술은 성균관, 향교, 서원 등 교육 기관과 관리 선발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을 통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것이다. 이 문제로 중심으로 조선시대 교육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정조대 장용영 창설은 기존 벌열 세력을 약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현재 군의 기본 원리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보면 다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는 '下而上'의 탐구를 통해 역사 연구에도 현실의 문제 의식에 정당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49)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로는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룰 수는 없다.[50]

〈표 2〉『대명률』의 간음 관련 범죄의 형량

간음 관련 범죄	형량
화간(和姦) : 남편이 없는 경우	장 80
화간(和姦) : 남편이 있는 경우	장 90
조간(刁姦)	장 100
강간 : 미수	3000리, 장 100대
강간 : 기수	교형(絞刑)
인간위핍(因姦威逼)	참형(斬刑)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것을 말한다.[51] 한국의 현행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제262조 폭행치사, 제301조 강간치사상 등이 대표적인 결과적 가중범이다. 즉, 상해, 폭행, 강간 등 가해자가 의도한 기본 범죄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에서 강간을 예로 든다면, 강간이라는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에 의해 피해자가 자살하여 사망했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52]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예견가능성과 직접성이다. 예견가능성이란 기본 범죄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의 경험 범위

50)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이다.(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24쪽.)

51) 이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은 이재상 외, 2017『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 朴相基, 2004,『刑法總論』(제6판), 博英社 ; 김성돈 2017,『형법총론』(제5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장승일, 2015「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 원칙」『아주법학』 제8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참고.

52)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19쪽.

내에 있는 것이며, 직접성이란 기본 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제3자의 개입'이나 '피해자 다른 행위'가 있다면, 즉 제3자의 개입이나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할 수 없다. '제3자의 개입'이나 '피해자 다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고, 전형적인 위험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살은 '피해자의 다른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행위이다. 즉, '간음으로 인한 위핍 인치사[因姦威逼]'에 해당하는 상황을 현행 형법으로 논한다면, 피해자의 자살로 인해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와 전형적인 위험이 아닌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을 다루는 조선 사회의 형법과 현행 형법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1981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검찰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소한 주요 요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 바로 유서를 쓰고 자살했기 때문에 강간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53] 그러나 피고인들은 강간치사와 관련하여 무죄를 받았는데,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대구 고등법원 판결 : ... 피해자가 ○○○에게 물어보고 승낙받았느냐고 물어본 사실, 이때 ○○○ 등이 만류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정미소 방에 들어간 사실, 그후 ○○○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필자 : 해당 내용은 강간 직후 자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간과 자살 사이에 다양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열거하여 확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강간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움을 못 이겨 농약을 먹고 자살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새로운 의사가 개입되어 일어난 결과에까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니...**[54]

---

53) 대구지방법원 198112.16. 제3형사부 판결 강간치사 ; 대구고등법원 1982.4.15. 제2형사부 선고 82노204 판결 강간치사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치사.

54) 대구고등법원 1982.4.15. 제2형사부 선고 82노204 판결 강간치사.

대법원 판결 :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소론과 같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55]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은 강간 직후 자살이 있었다는 검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강간과 자살 사이에 정미소에 함께 들어가거나 집에 데려다주는 등 많은 다른 행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행위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자살은 피해자의 새로운 의사가 개입된 행위로 이 역시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강간과 자살 사이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강간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리하면, 강간당한 후 자살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에 따른 강간치사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자살에 대한 책임을 강간한 피고에게 물을 수 없는 현행 형법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강간 후 자살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다음은 간음 이후 자살한 차조이(車召史) 옥사에 대한 경기 감사의 보고이다.

여주의 전엇복(全叱福)이 차조이(車召史)와 간음한 일로 인하여 6일 만에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을축년(1805) 3월 5일에 가두었습니다. 초검관인 지평현감 홍윤모(洪允謨) 검장에서 실인(實因)을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것으로 현록했고, 전엇복을 피고(被告)로 현록했으며, 복검관인 음죽현감 이주명(李柱溟) 검장에서 실인과 피고는 초검과 같았습니다. 삼가 이 옥사를 살피건대, 간음을 행하여 죽은 것이 핍박을 당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한 사람은 사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수를 위한 형률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56]

---

5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치사.

당시 사람들에게 강간으로 인한 핍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다. 즉, 강간이라는 기본 범죄에 의해 자살이 발생한 경우, 강간한 가해자에게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여 자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1981년 강간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자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는다. 결국,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가 구조적으로 현행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하더라도, 조선시대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로 처벌했던 피해자의 자살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으로는 전혀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핍인치사'조 자체의 법리를 현행 형법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현행 형법 제253조의 위력자살결의이다. '위핍인치사'조가 기본적으로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고 있다고 할 때, 위력자살결의는 위력에 의해 발생한 자살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위핍인치사'조와 위력자살결의가 각각 인명(人命) 편과 '살인의 죄'라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두 조항을 비교할 때, 역시 '위핍인치사'조의 독특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

56)『日省錄』순조 6년 6월 5일(신사) "驪州 全爰福 因奸車召史 第六日致死 乙丑 三月初五日囚 初檢官 砥平縣監洪允謨檢狀 實因以自縊致死懸錄 全爰福以被告人懸錄 覆檢官 陰竹縣監 李柱溟檢狀 實因及被告人 與初檢同 謹案此獄則 行奸致命 由於被逼則 因奸威逼者死正爲此囚準備之律而 第其中不無事端之可疑"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24장에서 자살을 다루는 조항은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항과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이다.[57] 형법 제253조는 형법 제252조에 위계와 위력이 더해진 것이다. 형법 제252조 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촉탁이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하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승낙은 살해의 결의를 한 자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자살 교사 혹은 방조에 관한 것이다. 자살의 교사란 자살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며, 자살의 방조란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2항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생명의 침해라는 점에서 1항과 공통점이 있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같은 형으로 다루고 있다.

형법 제253조는 형법 제252조의 촉탁, 승낙 혹은 자살의 결의가 위계나 위력에 의해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망이나 유혹 등을 포함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인 힘으로 가해지는 폭행·협박을 뜻하며, 사회적·경제적 지위까지 포함한다. 즉, 현재 우리 형법도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행위를 처

57) 이하 현행 형법 제 253조에 대한 설명은 이재상 외, 앞의『형법총론』(제9판) ; 朴相基, 앞의『刑法總論』(제6판) ; 김성돈, 앞의『형법총론』(제5판) ; 이재상 외, 2017『형법각론』(제10판), 박영사 ; 조인현, 202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연구」『人權과 正義』497호, 대한변호사협회 참고.

벌하고 있으며, 본죄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의 예의 의한다.'는 것은 위계·위력에 의한 자살 결의를 살인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가 위계·위력에 의한 자살 결의를 살인에 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핍박에 의한 자살을 다루는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와는 현저히 다르다.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가해자의 살인 의도, 위력의 강도와 핍박의 강도, 피해자의 자살 의지 등이다. 형법 제253조와 관련한 판결 A[58]와 판결 B[59]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60]

먼저, 형법 제253조에 따라 위력자살결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

58) 서울고법 1989.2.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 판결 : 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를 인정했던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고합612판결))을 파기하고 위력자살결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이다. 해당 사건의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일간 협박과 폭행을 했다. 1988년 1월 6일에는 피고가 공기총으로 형광등을 1회 쏘고 자결하라며 공기총을 피해자의 무릎에 던지며 협박했다. 다음날에는 공업용 청산염을 피해자에게 준비하게 했다. 8일 피고와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간통 사실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하라고 수차 반복하여 강요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했다.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청산염 갭슐을 먹고 사망했다.

59) 부산고법 1996.10.30., 선고, 96노502. 판결 : 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 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1996.6.14. 선고 96고합13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판례이다. 피고인1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2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륜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죽으면 죽었지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1은 준비한 석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죽을 자신 있으면 죽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건네받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즉석에서 사망했다.

60) 판결 A와 B는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자살 결의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형법 제253조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현행 형법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형법 제253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적용 법조로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형법 253조는 형법 규범으로서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조인현, 2021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연구」『인권과 정의』 497, 대한변호사협회, 309쪽) 다만, 해당 판결을 통해서 형법 제253조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또한, 두 사건 이후에 위력자살 결의와 관련한 판결은 판결 A와 판결 B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대표적으로 부산고법 2005노193) 그러므로 두 판결의 내용을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와 비교는 위력·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살인 의도로 행동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행위가 살인에 준하는 죄책을 질 때여야 한다.

> **판결 B : 위력사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가해자의 살인의 범의와 아울러 비로소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판결 B는 위력에 의한 자살 결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의 강약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제반 사정 중 하나가 가해자의 살인 범의이다. 즉, 가해자가 사람을 죽게 하려 의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해야, 위력에 의한 자살 결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 **판결 A : 피고인의 추궁이 그 자살결의에 이르게 된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에 버금갈 정도의(위력자살결의의 법정형은 살인죄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죄책을 질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판결 A는 피고인의 살인 범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에 버금갈 죄책을 질 정도인지를 따지고 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에 준하는 행위인지'가 위력에 의한 자살 결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형법 제253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행했거나, 살인에 버금가는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 **『대명률석의』: '위핍치사'라는 것은 형세로 업신여겨 그 사람이 두려워 자진하는 것으로 죽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61]

『대명률부례』: 위핍(威逼)은 세력으로 위엄으로 핍박하여 사람을 두렵게 하여 부득이하게 자진하게 하는 것이며, 핍박한 사람은 본래 살인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62]

그런데 가해자의 살인 의도에 대해서 『대명률』의 주석서에서는 정반대 의견이 발견된다. 『대명률석의』에서는 가해자가 핍박하여 피해자가 두려워 자살하는 것과 가해자가 자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구분했다. 『대명률부례』에서는 '위핍인치사'조로 다루어지는 가해 행위에는 살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직접 언급했다. 즉, '위핍인치사'조의 가해자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도 없고, 자살을 강요한 것도 아니다. 단지 어떠한 일로 그 일과 관련한 위협이나 핍박을 가했을 뿐인 것이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자살하게 되면, 가해자는 인명(人命)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주요 사건 1〉의[63] 강시조 자살에 대해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를 적용하면서 본심은 살인이 아니라고 한 검관의 판단과 통하는 것이다.[64] 다만, 이러한 법률 적용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 형법에서 범죄를 성립시키는 요소 중 하나인 주관적 구성요건, 즉 범행의 고의를 배제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위핍인치사'의 가해자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에도 인명(人命) 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살이 온전히 자의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볼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차이는 위력의 강도와 핍박의 강도, 그에 따른 피해자의 자살 결의 측면에서 발생한다.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가 성립하기 위한 위력의 강도는 다음과 같다.

---

61) 『大明律釋義』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威逼致死 謂以勢凌之而其人懼而自盡非謂逼其死也"

62)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威逼是以勢以威逼 使人畏之 不得已而自盡者 逼之者 原無殺之之心也"

63) 23쪽, 각주 44번.

64) 『晋州郡昌善面古順里致死男人姜時祚初檢文案』(奎26576), "威逼討財라가 遂使自裁之擧로... 本心이 雖不在於殺人이나 所造가 烏得免於由我리요"

판결 B :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중략)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 것인바,

① ~ ②은 필자 표기임.

① 부분에서 보이는 위력의 강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여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력의 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인데, ②와 같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도 곤란한 것이어야 한다.

판결 A : 한편 공소외 6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들의 관계를 알기 전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 자신은 죽겠다고 하였고 가끔 죽고 싶다고 전화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략)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피고인의 처와 고의적으로 강압에 의해 통정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심한 책임추궁을 받게 되자 죄책감에 괴로워 하던 끝에 스스로 자살을 결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형법 제253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살 결의가 가해자의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즉, 본래 자살의 의사가 없던 사람이 위계나 위력에 의해 자살을 결심해야만 하며, 자살 결의의 다른 원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판결 A를 보면, 피해자가 사건 직전 죽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과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을 죄책감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력자살결의는 부정되었다. 즉, 피해자의 자살 결의가 전적으로 가해자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25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가해자의 위력은 사회 통념상 자살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이어야 하며, 피해자의 자살은 오로지 가해자의 위

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핍박의 강도와 피해자의 자살 결의에 대한 '위핍인치사'조의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핍박의 강도라는 것이 형법 제253조의 위력의 기준보다 약한 것이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 **만약 그 사람이 죽으러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강제로 그를 핍박하여 죽게 하거나 혹은 호세가가 다른 사람의 재산·처녀를 빼앗으려고 자진하게 하는 것은 백성을 고의로 살해한 것[故殺]으로 의율해야 한다.**[65]

『대명률부례』의 위와 같은 해석처럼, 본래 피해자가 죽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죽게 한 경우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자살 자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대명률석의』에서도 "피해자가 두려워 자진하는 것으로 죽는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음을 살펴본 바 있다.[66] 즉, '위핍인치사'조의 핍박이란 형법 제253조와 같이 자살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자살 결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이루어진 것이나,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67]

한편, 중요한 점은 『대명률』에서는 자살 자체를 강요했을 경우, 고의적인 살인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위핍인치사'조에서의 핍박이 자살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즉, 『대명률』에서는 '핍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피해자가 자살하는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자살 자체를 강요하는 상황'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위핍인치사'조로, 후자는 고의적 살인으로 다룬 것이다. 현재 형법 제253조의 위력자살결의는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형

---

65)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第322條 威逼人致死, "若其人不肯就死而用强逼殺之 或豪勢欲奪人財産妻女勒令自盡者 則依故殺民"

66) 『大明律釋義』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威逼致死 謂以勢凌之而其人懼而自盡非謂逼其死也"

67) 나까무라 시게오, 앞의 「자살을 야기시킨(誘起) 경우의 죄책」, 279쪽 :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12쪽.

법 제253조가 유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자살 이외의 선택이 없을 만한 위력을 가해야 한다. 이는 곧 자살 자체를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대명률』은 현재 형법 제253조에 해당하는 사안을 고의적 살인으로 처리한 것이며,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에 해당하는 사안은 현대 형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것이다.[68]

이상으로 현행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253조의 위력자살결의와 '위핍인치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핍인치사'조는 핍박에 의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조항인데, 그와 같은 상황은 현대 형법에서 전혀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즉, 일반적으로 현대 형법에서는 자살 자체가 형법상 피해 사실이 되지 못한다.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만이 형법상 피해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물론이고, 의사가 억압된 것은 아니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발생한 자살 역시 법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사회에서 '위핍인치사'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⑶ 조선에서의 법리

결과적 가중범·위력자살결의와 '위핍인치사'조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살이 조선 사회에서는 형법상 피해 사실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특히 조선 사회에서 '위핍인치사'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68) '위핍인치사'조와 일본의 현행 형법 중 살인죄와 자살관여죄를 비교한 나까무라 시게오는 핍박의 강도에 주목했다. 그는 자살관여죄(자살교사)와 살인죄의 분기점이 '의사의 자유를 구속할 만한 협박'의 유무인데, '위핍인치사'조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남겨진 정도의 것으로 현행 형법 자살교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보면 해당 법률이 중국 전통 법제에서 특이한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나까무라 시게오, 앞의 「자살을 야기시킨(誘起) 경우의 죄책」, 275~280쪽) 그러나 이는 위력의 강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해자의 범의를 간과한 해석이다. 자살교사는 위력의 강도의 측면에서 자유 의지를 완전히 억압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핍인치사'조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자살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살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것이라면, '위핍인치사'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살하게 할 목적으로 핍박을 가한 것이 아니다.

한 법리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핍인치사’조의 법리를 다루기 전에 소위 현대 형법에서 보이는 자살에 대한 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살에 대한 형법적인 고찰은 가벌성(可罰性)을 따지는 것에서 출발한다.[69] 즉, 자살이라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살해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며 벌할 수 있는 범죄인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서 적법하고 불가벌한 것인지 논하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가벌성은 자기결정권설, 법익론설, 구성요건 불해당성, 법익침해설 등 다양한 견해를 통해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자살 교사·방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안락사 문제 등으로 이어진다.

자살에 대한 가벌성을 따지는 현대 형법의 태도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자살은 신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져 죄악시되었으며, 자살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자살한 시체에 모욕을 가했다. 이러한 중세 기독교적 자살관과 자살에 대한 형벌은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 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에 의해 균열을 맞이한다.[70] 형법과 관련해서는 17세기 이후에 시신 모독과 같은 자살자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었고, 자살에 대한 관용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의 기초를 세운 체사레 벡카리아(Cesare Beccaria)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자살은 형벌을 과할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서술되었다.[71] 자살이 범죄라는 관점은 유지했으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같은 시기 몽테스키외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자살의 적법성에 대해 논했으며, 흄은 인간의 자살이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선택을 옹호하기도 했다.[72] 이후 자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으며, 19세기에 접어들어서 자살을 처벌하는 법률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차례로 사라졌다.

이처럼 유럽에서의 자살 관련 논의는 자살의 정당성과 자살에 대한 가벌

---

69) 朴桄顯, 2012 「자살에 관한 형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14집 제3호, 중앙법학회.
70) 이하 중세와 계몽주의 시대 유럽의 자살에 관한 설명은 조르주 미누아 저, 이세진 옮김, 2014 『자살의 역사 : 자발적 죽음 앞의 서양 사회』, 그린비 참고.
71) 체사레 백카리아 저, 한인섭 신역, 2014 『범죄와 형벌』, 博英社, 139쪽.
72) 마르치오 바르발리 저, 박우정 옮김, 2017 『자살의 사회학』, 글항아리, 127～134쪽.

성을 따지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현재 자살에 대한 형법적 고찰로 이어진다. 근대 형법의 틀을 따른 한국 현행 형법에서의 자살도 위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현행 형법의 태도는 생명권의 주체인 본인은 자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형법은 자살은 자신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으나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73]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혹은 자기 책임 행위로 규정하게 되면, 자살자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려워진다. 논리적으로 자기 책임 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형법 제253조의 구성요건에서도 드러난다. 형법 제253조가 성립하기 위한 위력의 강도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이다. 이때 피해자는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거나,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유로운 의사가 박탈된 상황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만 자살자의 가해자를 벌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유럽에서는 자살 자체의 가벌성을 논의했던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에서 도출된 자기 책임 행위로서의 자살이라는 관념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가 완전하게 억압되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과 한국에서는『대명률』'위핍인치사'조를 통해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 즉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 처벌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위핍인치사'조는『당률소의(唐律疏議)』권18 적도편, '이물치인이비(以物置人耳鼻)'조의 공박(恐迫)과 관련한 내용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74] '이물치인이비'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73) 송승현, 2015「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법학연구』제25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41~344쪽.

74) 타카하시 요시로오(高橋 芳郎)는 '위핍인치사'조가『대명률』편찬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율문이 아니라, 당률에서 기원하여 남송·원대의 사회 풍조를 반영하여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高橋 芳郎, 앞의「明律「威逼人致死」条の淵源」) 이하 명대 이전 '위핍인치사'조와 관련한 내용은 타카하시 요시로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만약 사람을 공박(恐迫)해서 두렵게 하여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致死傷] 한 자는 각각 그 정상에 따라서 고·투·희살상으로 논한다.[75]

소의(疏議)는 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위험한 곳을 밟고 있거나 물가 절벽에 서 있는데 고의로 공박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떨어지거나 빠지게 하여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고살상의 법에 의거해서 논한다. 만약 싸우다가 공박하여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투살상의 법에 따른다. 혹은 놀이하다가 공박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하여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희살상으로 논한다. 만약 이와 같은 따위가 있다면 각각 그 정상에 따라서 고·투·희살상의 법에 따라 죄를 준다.[76]

해당 조문의 '치사상(致死傷)'에서는 피해자가 자살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실제 해당 조문을 의율한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남송대 과중한 징채로 인하여 익사한[致授之水] 사람, 구타당한 후 물에 뛰어든 사람[赴水者], 딸이 첩이 되는 핍박을 당하자 자살한 사람[自殺者] 등을 공구핍박인치사(恐懼逼迫人致死)로 보고 각각 고살(故殺)과 투살(鬪殺)로 의율했다. 이처럼 조문 내 '치사상(致死傷)'에는 가해자의 핍박에 의한 피해자의 자살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률의 내용에 따른다면,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는 모두 고살, 투살, 희살 등으로만 논의된다. 이는 남송·원대 만연한 자살 풍조에서 자살자의 가해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되었다. 이에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인 행위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를 구분하여 형벌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고, 이 때문에 별도의 율문으로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가 구성된 것이다. 즉, 인명(人命)에 대한 훼손을 처벌하고자 했던 당률의 법의(法意)는 유지하되, 타살과 자

75) 『唐律疏議』, 卷18 賊盜14, "若恐迫人 使畏懼致死傷者 各隨其狀 以故鬪戲殺傷論" (김택민 주편, 2021 『당률소의 역주Ⅲ』, 경인문화사, 109~110쪽.)

76) 『唐律疏議』, 卷18 賊盜, "疏議曰 (…) 若履危險 臨水岸 故相恐迫 使人墜陷而致死傷者 依故殺傷法 若因鬪恐迫而致死傷者 依鬪殺傷法 或因戲恐迫 使人畏懼致死傷者 以戲殺傷論 若有如此之類 各隨其狀 依故鬪戲殺法科罪"(김택민 주편, 앞의 『당률소의 역주Ⅲ』, 109~110쪽.)

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달리할 필요가 생기자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대명률』을 의용했다. 『대명률』은 조선의 상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명률』의 각 조항을 의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했다.[77] 태종대 '위핍인치사'조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는데, 이는 매장은(埋葬銀)과 관련된 사항이었다.[78] '위핍인치사'조의 기본 형량은 장 100, 매장은 10냥을 추징하는 것이고,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와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는 참형이다. 그런데 참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장 100의 형량을 받았던 가해자에게는 매장은을 징수하면서, 사면을 받은 가해자에게서는 매장은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79] 이러한 형벌의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사면받은 사람에게도 매장은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80] 조선 초 '위핍인치사'조에 관한 논의가 매장은에 국한하여 나타난 것을 보면, 위협과 핍박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위핍인치사'조의 법의는 큰 무리 없이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핍인치사'조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합리화되고 수용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국왕의 심리 기록이 충실하게 정리된 『심리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리록』 내의 자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는 기저에는 상명(償命) 관념과 유아지율(由我之律)이 있었다.

조선시대 상명(償命) 관념은 피살자의 죽음에 대한 대가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념과 그에 따른 형벌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보이는데, 『주례(周禮)』에서는 '부모를 죽인 사람은 불에 태워

77) 『대명률』의 적용과 조선 고유의 상황을 반영하며 생기는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는 鄭肯植·趙志晩, 앞의 「朝鮮 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변용」, 218~238쪽 ; 심재우, 2007 「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124~129쪽 ; 조지만, 앞의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참고.

78) 해당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조지만, 앞의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77~78쪽 참고.

79) 『太宗實錄』 卷8, 태종 4년 9월 24일(壬戌).

80) 『太宗實錄』 卷8, 태종 4년 9월 24일(壬戌) ; 『太宗實錄』 卷12, 태종 6년 12월 1일(丙戌).

죽이고, 왕의 친척을 죽인 사람을 육신을 찢어 죽인다.'고 했으며, '살인한 사람은 죽여 엎어 놓고 3일 동안 저자에서 내놓는다.'고 하였다.[81] 한(漢) 고조 유방(劉邦)이 제시한 약법삼장(約法三章)에서도 살인자는 죽이도록 했다.[82] 살인자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상명(償命) 관념은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조선의 범금8조(犯禁八條)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면 그때에 당하여 죽음으로 배상한다[償殺]'고 하여[83] 상명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여(夫餘)[84], 고구려(高句麗)[85], 백제(百濟)[86] 등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도 상명 관념에 따라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여 상명(償命)해야 한다는 관념은 조선 시대 내내 이어졌다. 특히, 살인자가 국왕의 용서로 사형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신하들은 상명(償命)할 것을 주장했다. 명종(明宗) 21년 종친이었던 이수환(李壽環)은 처남인 명수(命壽)를 살해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위관이 결안(結案)을 하려 하자, 명종은 결안하지 말고 감사(減死)로 조율할 것을 명한다. 이어서 장형(杖刑)까지 면제해준다.[87] 이에 대해 사간원과 사헌부는 다음과 같이 아뢴다.

> **사간원이 아뢰기를,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나라의 일정한 법이 있으니, 가깝고 사사로운 것으로 흔들거나 느슨히 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이 아무리 성상께서 친척을 친하게 여기는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천하 공공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88]**

---

81) 『周禮』 卷9, 「秋官司寇」, 掌戮, "凡殺其親者 焚之 殺王之親者 辜之 凡殺人者 踣諸市肆之三日"
82) 『史記』 卷8, 「高祖本紀」 第8, "與父老約法三章耳 殺人者死"
83) 『漢書』 卷28 下, 「地理志」 第8下, "相殺以當時償殺"
84) 『三國志』 卷30, 「魏書」 第30, 夫餘傳,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85)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49上, 東夷, "殺人行劫者 斬"
86) 『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上, 百濟, "退軍及殺人者 斬"
87) 『明宗實錄』 卷32, 21년 4월 13일(甲戌) ; 『明宗實錄』 卷32, 21년 4월 25일(丙戌).
88) 『明宗實錄』 卷32, 21년 4월 26일(丁亥), "諫院啓曰 殺人者死 邦有常刑 不以親私而撓貸 ... 是雖出於聖上親親之至情 其於壞天下公共之法何哉"(이하 『朝鮮王朝實錄』에 대한 인용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문(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을 참고하여 재번역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길,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제왕의 바꿀 수 없는 법이니 그것을 지키기를 금석(金石)의 견고함 같이 하여 가깝고 사랑하는 사적인 것으로 그 사이에 저앙(低昻)이 있는 것은 불가합니다. … 지금 수환(壽環)에게 여러 번 감형을 그치지 않아, 살인한 중한 죄를 끝내 상명(償命)의 형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천하 공공의 법이 이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89]

사간원과 사헌부의 계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살인한 사람을 사형하는 상명(償命)은 천하 공공의 법으로 국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조선 시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났다.[90]

그런데 상명(償命) 관념은 단순히 살인자를 사형으로 처리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죽음에 대해 반드시 다른 하나의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거나 혹은 갚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것을 흔히 일인상명(一人償命)이라고 한다. 일인상명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정조(正祖) 때 박정효(朴貞孝) 옥사와 배홍적(裵弘績) 옥사이다.

박정효 옥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91] 박정효의 사촌인 박인효(朴仁孝)가 송응이(宋應伊)에게 구타를 당하자, 박정효가 사람들과 함께 송응이를 묶어두고 때려 송응이가 사망하게 된다. 이에 박정효가 주범으로 지목되어 심문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박인효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정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송사 심리에서의 곡직(曲直)은 한쪽의 말만 믿기 어려우나, 이 송사는 한 마디로 판결할 수 있다. 비록 3~4일 사이의 차이가 있으나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어찌 죽음으로 죽음을 갚을 것이 있겠는가? 다시

---

89) 『明宗實錄』 卷32, 21년 4월 26일(丁亥), "憲啓府曰 殺人者死 乃帝王不易之典 守之當如金石之堅 不可以親愛之私 有所低昻於其間也 … 而於壽環則累減不已 使殺人重罪 終逭償命之刑 則天下公共之法 自此而壞矣"

90) 상명(償命) 관념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仁祖實錄』 卷25, 9년 12월 12일(庚辰) ; 『仁祖實錄』 卷37, 16년 10월 16일(乙巳) ; 『英祖實錄』 卷72, 영조 26년 9월 25일(甲子).

91) 박정효 옥사와 관련한 내용은 『審理錄』 卷25, 全羅道 ; 『日省錄』, 정조 18년 9월 29일(癸丑) ; 『日省錄』, 정조 19년 윤2월 27일(己酉) ; 『日省錄』, 정조 19년 3월 14일(乙丑) 참고.

갚아야 할 일이 없는데 성옥(成獄)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92]

정조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일인상명(一人償命) 관념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피살자와 살인자가 상명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면, 송웅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송웅이를 구타한 박정효의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송웅이가 박정효에게 구타를 당하여 죽었고, 뒤따라 앞서 송웅이에게 구타를 당했던 박인효가 자살한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피살자와 살인자가 서로 상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정조는 박인효와 송웅이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통해 더 이상 상명할 것이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판결할 일도 아니라고 치부했다. 이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객관적인 판단보다 하나의 죽음은 다른 하나의 죽음으로 갚으면 된다는 인식이 더 앞서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상명의 방식이 반드시 공적인 형벌에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박인효의 사망처럼, 자살로 인한 죽음으로도 상명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형조는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 **만약 송응이의 죽음이 박인효의 구타로 말미암은 것이고 박인효의 죽음도 송응이의 구타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들 두 사람이 모두 죽은 뒤에는 이것으로 저것을 갚은 것이니 성옥(成獄)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응이의 죽음에 결박하고 때린 사람은 박인효가 아니고, 박인효의 죽음은 스스로 목을 맨 것이지 맞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인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송응이가 구타를 당한 것을 갚으려는 것은 법리를 살펴보면 너무 부당합니다.**[93]

정조와 마찬가지로 형조도 일인상명(一人償命) 관념을 통해 사안을 해석

---

92) 『日省錄』, 정조 18년 9월 29일(癸丑) "訟理之曲直 難信一邊之言而 此訟則 有一言可決者 雖有三日四日之別 打者被打者皆歸 烏有以死償死 更無可償之事 其所成獄不成事理"

93) 『日省錄』, 정조 19년 윤2월 27일(己酉) "若使應伊之死 由於仁孝之所打 仁孝之死亦由於應伊之所打 則兩人俱死之後 以此償彼 更無成獄之可論而 應伊之死 其所縛打者非仁孝也 仁孝之死 乃自縊非被打也 今以仁孝之自縊 欲償應伊之被打者 揆以法理已極不當而"

하고 있다. 즉, 박인효와 송응이가 서로 구타를 통해 사망한 것이라면, 성옥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형조는 해당 사건이 일인상명(一人償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조는 형조의 참판과 참의에게 각각 의견을 아뢰라고 했다. 참판 김노영(金魯永)은 박정효가 정범인 것은 의심할 것이 없고, 더 형신을 가하여 그 실정을 알아내야 한다고 했으며, 참의 윤득부(尹得孚)는 만약 박정효를 처벌하여 다시 송웅이의 죽음을 갚는다면 한 옥사를 두 사람의 죽음으로 갚는 원통함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조는 참의 윤득부의 의견에 동조하여, 한 사람의 죽음에 두 사람의 죽음으로 보상하는 것은 옥사의 체모와 관계되니 가벼운 죄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하며 감사(減死)하도록 했다.

일인상명(一人償命)의 관념은 배홍적 옥사의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94] 배학대(裵學大)가 배홍적의 사촌 형수와 간통했고 이로 인해 집안 내에서 싸움이 발생했다. 배홍적과 그의 어머니 이조이(李召史), 작은 어머니 이조이(李召史)가 배학대를 구타하여 죽게 했다. 『대명률』 '투구급고살인(鬪毆及故殺人)'에서는 2인 이상이 한 사람을 구타하여 죽게 하면, 가장 치명상을 초래한 사람[下手者]을 교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의 핵심은 세 사람 중 누가 주범인지 가리는 것이었다. 초검관은 배홍적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배홍적이 발로 찬 상처에 의해서 배학대가 목숨을 잃게

94)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2, 首從之別11(박석무, 이강욱 역주, 『역주 흠흠신서』 2, 한국 인문 고전 연구소) ; 『審理錄』 卷13, 黃海道 ; 『日省錄』, 정조 8년 5월 29일(癸未) 참고. 배홍적 옥사는 일인상명 담론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희기에 의해 연구되었던 사례이다. 일본의 법사학자 하나무라 요시키(花村美樹)는 『대명률』 '모살인(謀殺人)'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기수한 경우 두 사람을 모두 사형할 수 있는 율문과 달리 조선에서는 일인상명이라는 독특한 담론을 활용하여 국왕이 자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는 『대명률』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재단이 앞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심희기는 배홍적 옥사를 통해 일인상명 담론이 '모살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구급고살인(鬪毆及故殺人)'의 3항인 함께 모의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3항의 내용은 2인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죽게 했을 때, 치명상을 초래한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 가해자 중 사형을 당할 한 사람을 결정해야 했고, 이때 활용된 법리가 일인상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 조선에서 활용한 독특한 법리가 아니라, 『無冤錄』에서 시작되어 명·청률을 의용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것임을 밝혔다.(심희기, 2015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法史學硏究』 51, 韓國法史學會) 본 논문은 심희기의 연구 결과에 동의하면서도, 일인상명이 개별 법 조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본다.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이후 조사에서는 배홍적의 어머니 이조이가 낸 상처가 배홍적이 낸 상처보다 많았다는 점과 배홍적이 주범이 되기에는 어리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주범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배홍적의 어머니 이조이가 옥사(獄死)했다. 이에 대해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도신의 발사(跋辭) 중에 '같이 가둬 놓고 함께 형추하는데, 그 어미가 먼저 죽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들을 거듭 법으로 다스린다면, 이는 한 옥사를 두 사람의 목숨으로 갚는 것이 됩니다.(一獄二償命)'라는 것은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형조의 복계에 배홍적이 오로지 빠져 나가려고만 하여 은연중 그 어미에게 죄를 돌린다고 논열했는데, 이는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의 옥사에 범인이 둘이 되는 것은 불쌍히 여겨야 할 바 있으나 인륜을 해치고 풍속을 무너뜨린 일은 더더욱 엄히 징벌해야 한다. 배홍적은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되, 도신으로 하여금 엄형을 세 차례 가한 후 유배 보내게 하라**[95]

즉, 한 사람의 죽음을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두 사람의 죽음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렇게 일인상명(一人償命) 관념은 살옥 처리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었다. 배홍적 옥사에 대한 최종 조사와 그에 따른 최종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누가 진짜 주범인지 결정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조사 당시까지 주범은 배홍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법률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다면, 이조이의 죽음과 배홍적의 형사상 책임은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조이가 죽자 조사는 종결되었으며, 끝내 주범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한 죽음에 대해 두 사람의 목숨으로 갚을 수 없다는 논리, 다시 말하면 한 죽음은 다른 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일인상명(一人償命)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찰사가 먼저 일인상명의 문제를 제기했고, 정조 또한 동의했다. 주목할 점은 배홍적의 태도에 있다. 형조의 판단

95) 『日省錄』, 정조 8년 5월 29일(癸未), "而道臣跋辭中 同囚幷推 其母先斃 今若復置其子於法 則便是一獄二償命云者 儘有意見 而卿曹覆啓 以弘績之專事掉脫 隱然歸罪其母 有所論列 此則誠然矣 一獄兩犯 在所當恤 傷倫敗俗 尤屬嚴懲 弘績則減死定配 令道臣嚴刑 準三次發配"

이긴 하지만 배홍적은 자신이 면죄 받기 위해 어머니의 죽음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백성들도 일인상명(一人償命)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일인상명(一人償命) 관념이 살옥을 처리하는 데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살옥 심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인상명이란 하나의 죽음을 다른 하나의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이다. 이는 피살자와 살인자의 관계를 넘어서 적용될 수 있었다. 즉, 피살자의 죽음에 대해 직접 살인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가해 집단 내에 누군가 죽게 되면 상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상명의 방식이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옥사(獄死)와 같이 비의도적 죽음과 자살과 같이 사적인 죽음으로도 상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명 관념하에서 당시 사람들은 자살로 인한 억울한 죽음 역시 당연히 갚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조(正祖)대 김순태(金順太)가 과부였던 한조이(韓召史)를 강간하려 했으나, 강하게 저항을 받자 구타하여 죽였다.[96] 김순태는 한조이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정조(正祖)는 '그의 공초에서 비록 한조이가 스스로 목을 매었다고 했으나 죽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계책이다. 설사 정말 스스로 목을 매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죽음으로 갚는 것은[償死] 조금도 빼고 더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97] 이는 구타를 당한 것이든 스스로 목을 맨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상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경상도 초계(草溪) 문(文)여인은 독을 마시고 죽었다.[98] 과부인 문여인이 추문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그 대상이 시아버지인 도응유(都應兪)와 도응유의 종제인 도응천(都應千)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추문에 대상이라고 비방했다. 문여인은 억울한 마음에 단장(斷章)을 관에 제출하고 독을 마시고 죽었다. 이에 대해 대해 정조(正祖)는 '문조이의 자살[自斃]은 마땅히 다른 한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一人償命] 할 듯한데'

96)『審理錄』卷24, 江原道, 江陵金順太獄.
97)『審理錄』卷24, 江原道, 江陵金順太獄, "渠供雖以韓女之自縊 爲死中求生之計 而設使眞箇自縊 渠所償死 毫無加減"
98)『審理錄』卷9, 慶尙道, 草溪都應兪獄.

라고 했다.[99] 즉, 자살로 인한 죽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죽음 역시 상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위핍인치사'조의 기본 형량은 장 100으로 직접 상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을 다루는 가장 주요한 율문이었기에, '위핍인치사'조의 적용 역시 상명 관념을 바탕으로 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 김용귀(金龍龜) 옥사이다.[100] 김용귀의 딸은 정진옥(丁震玉)과 혼인했는데, 시가(媤家)에서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 이에 김용귀가 족당을 이끌고 가 행패를 부렸는데, 정진옥의 할머니였던 안(安)여인이 자상(刺傷)을 입고 사망했다. 이에 김용귀가 살옥의 정범이 되었으며, 형조는 김용귀에게 상복(詳覆)을 시행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런데 정조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부를 내린다.

> **김용귀의 딸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것은 시할머니 안(安)여인의 집에서였으니, 김용귀가 의심하게 된 것은 천리(天理)로나 인정(人情)으로나 그럴 수 있다. 가령, 김(金)여인이 분명히 자결하였는데 안여인이 빌미를 만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여인이 김여인을 항상 괴롭히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하여 원통함을 품고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안여인이 그녀를 죽인 것이다. '몽둥이로 죽였건 칼로 죽였건 죽인 것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은 바로 안여인을 위해 준비된 말이다. 또 생각건대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조**

99)『審理錄』卷9, 慶尙道, 草溪都應兪獄, "文召史之自斃 宜若有一人償命"

100) 〈주요 사건 2〉 1784년(甲辰) 3월 성옥(成獄)되었다. 김용귀(金龍龜)의 딸 김조이(金召史)가 정진옥(丁震玉)의 아내가 된 후 시집살이를 겪다가 시가(媤家)에서 사망했다. 정조(正祖)가 의문이 있다고는 했으나, 김조이는 스스로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고 판정되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김용귀는 아내, 형제, 사촌 등 족당 10여 명을 이끌고 정진옥의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 김용귀의 족당이 정진옥의 가족들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정진옥의 할머니인 안(安)여인이 사망했다. 이때 안여인은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타인에게 찔린 것인지 스스로 찔러 죽은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형조는 김용귀를 살옥의 정범으로 보고 상복(詳覆)을 시행해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정조(正祖)는 8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여인의 사망 원인, 족당 10여 인 중 가장 행패를 부린 사람, 김용귀의 거짓 자백 가능성, 안여인에 대한 구타 사실, 안여인의 (刺傷), 범행의 사용의 칼 문제, 안여인의 나이와 자연사 가능성, 안여인의 손자 갑손의 진술 거부 등이다. 정조(正祖)는 인륜을 고려하고 교화를 숭상해야 한다면서 형신을 가한 후 사형을 감하여 정배할 것을 명했다.(『審理錄』卷12, 開城府 金龍龜獄 ;『日省錄』, 정조 8년 3월 23일(戊申))

는 본래 상명(償命)하는 것이니, 마땅히 상명(償命)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김여인의 아비된 자가 분이 올라 반드시 보복하려는 것을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는가. 마음대로 죽였다고 하여 관에 고하지 않은 율로 논하는 것은 가능하나, 헛되이 죽였다고 하여 상명(償命)하는 율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101]

'위핍인치사'조의 기본 형량은 장 100으로 가해자를 사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조(正祖)는 '위핍인치사'조는 본래 상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실제로 사형을 통해 직접 상명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다루어야 하는 죽음 역시 상명 관념을 적용하여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김용귀 옥사에 대한 정조의 최종 판단은 상명 관념에 의해 작동하는 '위핍인치사'조의 실례를 보여준다. 정조는 위 옥사의 본질이 '안여인에 대한 김용귀의 타살' 혹은 '김용귀의 위협과 핍박에 의한 안여인의 자살'이 아니라, '안여인의 핍박에 의한 김조이의 자살'으로 보았다. 안여인이 김조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고, 이로 인해 스스로 간수를 마신 것으로, 만약 안여인에 대해 처벌을 내린다면 적용할 수 있는 율문이 '위핍인치사'조였다. 그러므로 본래 김조이의 자살에 대해서 상명해야 할 죽음이 있는데, 정조는 안여인의 사망을 통해 상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처럼 핍박으로 인한 자살 역시 상명의 적용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실제 직접 상명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율문이 '위핍인치사'조였던 것이다.

'위핍인치사'조의 적용에 있어 상명 관념이 바탕에 있었다면, 자살의 책임을 핍박한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리가 유아지율(由我之律)이다. 유아지율은 문자 그대로 나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유아지율은 조선에서만 쓰는 법률 용어로서 죽음의 조건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법리이다.[102] 다음 사례들을 통해 유아지율을 활용하는 맥락을

---

101) 『日省錄』, 정조 8년 3월 23일(戊申), "龍龜女之忽地致命 在於媤祖母安女之家 龍龜之致疑 卽天理人情之所固然 而藉令金女分明自決 而安女無作俑之事矣 安女之於金女 常常侵困 備經苦楚 轉以至於齎冤辦死之境 此安女殺之也 挺與刃無異 政爲安女準備語 又思之 威逼人致死 本自償命 當償命之人 爲金女父者 乘憤必報 夫誰曰不可 謂之擅殺 以不告官律論可也 謂之枉殺 以償命律論不可"

102) 선행 연구(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살펴보자.

유아지율을 활용하는 첫 번째 맥락은 구타가 직접적인 사인(死因)인지 불확실한 때이다. 전주 김용채(金龍采) 옥사에서 김용채가 이신방(李辰芳)의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서 7일 만에 죽게 했다.[103] 그런데 아내의 사인이 김용채의 구타에 의한 것인지 불확실했다. 그 이유는 김용채와 이신방이 다투는 사이에 이신방의 아내가 나와 말리면서 우연히 맞은 것이었고, 그 후 7일 동안 아내는 일상적으로 집안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사형은 지나치며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형조는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정조는 '고의로 죽였거나 장난을 치다 죽였거나를 막론하고 유아지율(由我之律)을 그가 어찌 면하겠는가?'라고 말했다.[104] 이는 구타와 죽음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더라도, 김용채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수원 최성신(崔聖臣) 옥사도 이와 유사하다.[105] 임돌몽(林乭夢)이 최성신에게 맞고 15일 후에 사망했다. 그런데 임돌몽의 사인(死因)은 병사가 확실했으며, 이는 관찰사와 형조, 정조(正祖)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맞은 부위가 급소도 아니며 병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최성신은 유

에서는 '유아지율이란 직접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으로, 조선에서만 쓰는 법률 용어이다.'라고 하였으며, '위핍인치사'조의 가해자를 피고(被告)로 기록한 것에 대해 '피고로 기록하고 유아지율로 처벌한 것은 행위의 결과 귀속을 신중히 다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완을 제시한다. 먼저, 유아지율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아닌 죽음의 조건을 제공한 책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현대 형법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 객관적 귀속이론 등이 있다. 조건설은 흔히 필요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조건'이 충족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원인설은 결과에 이르게 된 조건 중 중요한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분하여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이재상 외, 2017, 앞의 책) 조선에서 유아지율은 주로 고의가 없었거나 직접 범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책을 따질 때 활용되는 법리로 원인설의 원인보다는 넓은 의미로 활용한다. 즉, 유아지율은 현대 형법의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유아지율을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라고 정의할 경우 법리를 따지는 데에 혼동이 발생한다. 유아지율은 죽음의 조건을 제공한 책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103)『審理錄』卷3, 全羅道 ;『日省錄』, 정조 3년 1월 30일(乙卯) ;『日省錄』, 정조 8년 윤3월 25일(庚辰).

104)『日省錄』, 정조 8년 윤3월 25일(庚辰), "則無論故殺與戲殺 由我之律 渠烏得免乎"

105)『審理錄』卷14, 京畿道 ;『日省錄』, 9년 5월 12일(庚申).

아지율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를 석방하는 것은 옥사의 체통에 어긋난다며 정배하도록 했다.[106] 이처럼 구타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인(死因)이 아닐 경우, 유아지율(由我之律)이라는 법리를 통해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도록 했다.[107]

유아지율을 활용하는 두 번째 맥락은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때이다. 『추관지(秋官志)』에 수록된 김용환(金龍煥) 옥안이 한 예이다.[108] 정태원(鄭泰元)과 박세응(朴世應)은 사포서의 차인으로 창원에 내려갔는데, 김국신(金國臣)으로부터 그의 계부인 김인대(金仁大)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두 사람은 김인대에게 징채(徵債)할 생각으로 김국신에게 사포서의 돈을 가져다 썼다는 증표를 쓰게 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김인대에게 돈을 요구했다. 김인대의 아들 김용환이 상경하여 이 문제를 알아보는 중에 김인대가 창원부에서 형장(刑杖)을 당해 사망했다. 김용환이 이 문제를 격쟁하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창원부사 정준채(鄭駿采)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김국신도 처벌 대상이었는데, 김용환은 김국신이 함께 공모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김국신은 자신도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경사 감사의 장계와 정조의 하교는 다음과 같다.

(장계하기를) "... 김국신이 간사한 소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 가짜로 수표를 만들어 징채하고 이익을 나누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매우 헤아리기 어려우나 마침내 화가 그 숙부에게 옮겼으니 윤리로 논하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도 엄히 조치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니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교하기를, "이른바 김국신의 죄는 그 숙부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으니, 비록 의도를 가지고 직접한 것이 아닐지라도 유아지율

106) 『日省錄』, 9년 5월 12일(庚申), "雖非要害 亦云因病 而由我之律 渠所難逭 致命又在辜限之內 論以獄理 豈可遽寘勿問之科乎 然今番査啓 又請從輕 不必自上勒令成案依回啓施行 被告人之仍以白放 大乖獄體 崔聖臣定配"

107) 『審理錄』 내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아지율(由我之律)이 활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審理錄』 卷6, 江原道, 金城 金萬泰獄 ; 『審理錄』 卷7, 忠淸道, 李同蕃獄 ; 『審理錄』 卷8, 慶尙道, 新寧 河召史獄 ; 『審理錄』 卷18, 京, 東部 金漢重獄.

108) 『秋官志』 卷2, 詳覆部, 金龍煥獄案 ; 『日省錄』, 정조 12년 8월 18일(丁未) ; 『日省錄』, 정조 12년 9월 27일(乙酉) ; 『日省錄』, 정조 12년 9월 28일(丙戌) ; 『日省錄』 정조 12년 12월 27일(甲寅).

(由我之律)을 어찌 면하겠는가?”[109]

먼저, 김인대 죽음에 대해 논하자면, 김국신은 김인대를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직접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김인대 죽음에 대한 김국신의 형사상 책임은 없는 것이다. 김인대 죽음의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채의 발단을 제공한 김국신의 거짓 수표나 사포서 차인들과의 공모에 대한 처벌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런데, 경상 감사는 두 차례 김국신의 공초를 받았음에도 공모 사실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 윤리의 문제에서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조 역시 범행의 의도와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로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 즉 유아지율은 면할 수 없다고 답하며 김인대 죽음의 책임을 김국신에게도 전가했다.

이처럼 유아지율이 활용되는 두 번째 맥락은 행위자의 고의를 확증할 수 없거나 직접적인 범행이 없었더라도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사람의 죄책을 따질 때 활용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갑산의 박흥빈(朴興彬)이 진후평(陳厚平)의 기생첩 곡진례(曲進禮)와 간통하고 진후평을 살해했는데, 곡진례에게 유아지율로 책임을 물었다.[110] 충주의 이필돌(李必乭)은 어린 아이 박천근(朴千根)이 도둑질한 것을 보고 혼냈는데, 박천근이 도망치다 도랑에 빠져 죽었다. 이에 이필돌에게 유아지율로 책임을 물었다.[111]

유아지율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확증할 수 없음에도 죄인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활용하는 법리였다. 유아지율은 현대 형법의 조건설과 유사하다. 현대 형법에서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다양한 견해 중 하나가 조건설이다. 조건설이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논리학의 필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

109)『日省錄』, 정조 12년 9월 28일(丙戌), “金國臣則 符同奸細 假作手標 欲爲徵錢而分利者 已極叵測而 畢竟移禍於其叔 論以倫紀 罪在罔赦宜 有別般嚴處之道 請令廟堂稟處 敎曰 所謂 金國臣之罪 無異於殺其叔 雖非用意而手犯 由我之律 烏可免乎”

110)『審理錄』卷6, 咸鏡道, 甲山 朴興彬獄.

111)『審理錄』卷5 忠淸道, 忠州 李必乭獄.

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유아지율은 직접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았음에도 '나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는 곧 나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가령, 앞서 '김국신이 가짜 수표를 써 주지 않았더라면 김인대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므로, 조건설에 따라 김국신의 행위와 김인대의 죽음이라는 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결국, 유아지율은 죽음의 조건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선의 법리였다.

이러한 유아지율의 법리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에게 위협과 핍박을 가했던 가해자의 죄책은 당연히 따져야 한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핍박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아지율은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리로서 역할했는데, 이경휘(李京輝)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은 그 관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 **경휘는 묵은 혐의로 최(崔)여인을 위협하고 핍박하였다. … 실인(實因)은 위협과 핍박으로 인해 스스로 물에 빠진 것이다.[威逼自溺] … (형조의 계사) '위협하고 핍박한 과정을 엄히 형신하여 자복을 받겠습니다.' … (정조의 판부) '비록 다른 싸움의 단서가 없더라도 추궁하여 밀어 넣은 것은 바로 이경휘이다. 유아지율(由我之律)을 어찌 벗어나겠는가?' … 좌랑 김이온이 아뢰길, '평소 쌓인 감정으로 7명이 모두 죽었으니, 비록 직접 죽인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가 어찌 유아지율(由我之律)을 벗어나겠습니까.' … (정조의 판부) '정범 이경휘는 비록 손이나 칼로 직접 죽인 것이 아닐지라도 매를 맞은 혐의를 갚고자 풀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나무라고 협박하기가 이르지 않은 바 없어 마침내 동시에 죽게 했으니, 그가 어찌 '위핍인치사'조[威逼之律]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112]

112)『審理錄』卷11, 黃海道, 載寧 李京輝獄, "京輝 因宿嫌 威逼崔女 … 實因威逼自溺 … 威逼節次 嚴訊取服 … 雖無他爭詰之端 推而納之 卽京輝是也 由我之律 渠烏得免 … 佐郎金履溫以爲 以平昔微憾 致七箇幷命 雖有間於手殺 渠何逭於由我 … 正犯京輝 雖不手刃而殺之 欲修受箠之嫌 勒加竊草之名 威喝而迫脅之 無所不至 竟底同時之死 則渠焉逭威逼之律是旀"

이경휘의 행위를 밝히기 위해 더 심문하게 하고, 그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유아지율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즉, 이경휘의 위협과 핍박이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최여인과 그 가족은 자살하게 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율문이 '위핍인치사'조 였던 것이다.

위협과 핍박을 가하여 자살하게 한 가해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핍인치사'조의 법리가 유아지율로 표현되는 조건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언설이 '너의 소의 뿔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담장이 무너졌겠느냐?(非汝牛角 何壞我墻)'라는 정조의 발언이다. 각각 아내를 책망하여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찌른 이용득(李龍得) 옥사와 아내가 강간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남편 이경증(李景曾)이 수치심에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강웅이(姜雄伊) 옥사, 간음을 거절한 한조롱(韓鳥籠)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장수원(張水元) 옥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 **속담에 이르지 않았던가? 너의 소의 뿔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담장이 무너졌겠는가? 바로 이용득을 두고 하는 말이다.**[113]

> **속담에 이르지 않았던가? 너의 소의 뿔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담장이 무너졌겠는가? 만일 강웅이가 밤에 방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어찌 이경증이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겠는가?**[114]

> **속담에 이른바 '너의 소의 뿔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담장이 무너졌겠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해 준비된 말이다.**[115]

위와 같은 발언은 각 자살 사건의 인과관계 판단이 조건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논리적 유사성이 주목된다. 앞서 언급했듯

113)『審理錄』卷4, 咸鏡道, 端川 李龍得獄, "諺不云乎 非汝牛角 何壞我墻者 政爲龍得道也"
114)『審理錄』卷4, 忠淸道, 公州 姜雄伊獄, "諺不云乎 非汝牛角 何壞我墻 倘無雄伊之昏夜入房 安有景曾之忽地致斃"
115)『審理錄』卷13, 慶尙道, 咸陽 張水元獄, "諺所謂非汝牛角 何壞我墻者 政是準備語也"

이 조건설은 논리학의 필요조건 공식을 사용한다. 즉,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면 된다. ‘너의 소의 뿔이 없었다면, 우리 담장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문은 필요조건 공식과 같다. 이것은 정조(正祖)가 형사 사건의 판단에 있어 조건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정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강웅이 옥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입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강웅이가 밤에 도둑질을 하려고 오(吳)여인이 있는 방에 침입했다. 이에 오여인의 남편 이경증이 아내가 강간당했다고 생각하여 자살했다.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강간의 여부이기도 했으나, 정조는 그것과 상관없이 강웅이의 침입과 이경증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즉, 강웅이가 밤에 침입하지 않았다면, 이경증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져 물은 것이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형사 사건을 다루며 현대 형법의 조건설과 유사한 유아지율이라는 법리를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가해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116] 이는 ‘위핍인치사’조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116) 조선의 형법 체계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원리가 오직 유아지율과 같은 조건설에만 기반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은 개별 범죄 종류별로 그 특성에 맞추어 인과관계를 판정했다. 가령, 조선에서는 폭행 이후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保辜) 기간을 따졌다. 이는 폭행 후 일정 기한 안에 사망하면 그 원인을 폭행으로 추급하고, 그 기한을 넘어 사망하면 폭행한 가해자에게 살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즉, 인과관계를 산술적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안성훈, 김성돈, 2015『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1~83쪽) 그러므로 조선시대 형법상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법리에 대해서는『대명률』의 인과관계 규정과 다양한 판결을 종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지율이 조건설과 같은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할 때,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건설은 가장 기초적인 인과관계 이론으로 실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건설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명제는 ‘철물점에서 칼을 팔지 않았더라면,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해자를 출산하지 않았더라면,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은 명제도 성립시키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건설로서 유아지율을 활용한 조선의 법리가 낮은 수준이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필자의 단견으로는 유아지율이 조선의 성문법주의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거의 500년 동안『경국대전』을 비롯한 국전과『대명률』을 통해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나 법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조문을 의율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해당 조문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조문을 차용하는 인율비부(引律比附)를 하거나 국왕의 수교

데 있어, 가해자의 위협이나 핍박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성립시켜 주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로 기능했다.[117] 유아지율은 비교적 널리 퍼져 있었었던 관념으로 생각된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발생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는 검안류 자료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 **당초 시친(屍親)의 발고가 이 죄수에게 돌아가니, 논하자면 유아지율(由我之律)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한홍서(韓弘瑞)는 피고로 기록하오며**[118]

> **제가 한갓 저희 집의 수치를 생각하여 이씨 아내의 한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거사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범한 바를 돌아보면 어찌 유아지율(由我之律)에서 벗어나겠습니까?**[119]

첫 번째 내용은 1895년 곡산군에서 발생한 한대곤(韓大坤) 자살에 대한 초검관의 보고 기록 중 일부이며, 두 번째 내용은 1889년 수안군에서 발생한 강조이(姜召史) 자살에 대한 가해자 김동식(金東植)의 진술 내용 중 일부이다. 이처럼 19세기 후반까지 유아지율을 통해 자살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었다. 일반 백성이었던 강동식의 진술에서 유아지율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면, 그러한 범죄와 책임에 대한 유아지율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위핍인치사'조가 어떤 법리에 의해서 조선에서 의율될 수 있었는지 확인했다. 조선 사회에서 상명(償命) 관념은 죽음과 관련

(受敎)를 모은 법령집을 꾸준히 출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률을 통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유아지율을 통해 인과관계를 판정하고 죄책을 추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설은 필자의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117) '위핍인치사'조의 인과관계 판정이 조건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일본 학자 나까무라 시게오가 앞서 밝힌 내용이다.(나까무라 시게오 저, 임대희 옮김, 2004, 앞의 책, 286~287쪽) 다만, 중국에서는 이를 죄좌소유(罪坐所由)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유아지율과 죄좌소유의 비교는 추구 과제로 남긴다.

118) 『谷山郡上圖面坊洞里小地名初洞致死男人韓大坤初檢文案』(奎21551), 47a면, "當初屍親之發告歸重於此囚則 論以由我之律 烏得免乎 韓弘瑞段以被告懸錄爲乎旀"

119) 『遂安郡城洞棰梅洞致死女人姜召史及兩個男兒初檢案』(一簑古614.68-Su12s), 34b~35a면, "矣身徒念自家之羞恥 莫知李妻之憾憤 妄率擧事 至於此境 自顧所犯 焉逭由我之律乎"

된 사건을 다루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었다. 이것은 살인자를 사형시켜 피살자의 죽음을 보상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죽음을 다른 하나의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거나 혹은 갚을 수 있다는 사유로 나타났고, 그 대상이나 방식을 초월하여 두 죽음을 등가로 교환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위협과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 역시 이러한 상명 관념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죽음이었고, 그러한 관념을 현실에서 구현하게 할 수 있었던 율문이 '위핍인치사'조였다. 한편, 조선 사회에서는 형법상 인과관계를 따지는 법리 중 하나로 유아지율(由我之律)이 있었다. 이는 현대 형법의 조건설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인정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논리이다. 그런데 자살 문제에 있어 유아지율을 적용하면, 자살을 하게 한 조건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어떤 위협과 핍박이 없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지율을 통해 위협과 핍박을 가한 가해자에게 그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에 대한 책임을 귀속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Ⅰ장 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핍인치사'조는 위협과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율문이다. '위핍인치사'조가 다루는 상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로 위협과 핍박을 당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핍박을 가한 가해자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는 조문이 바로 '위핍인치사'조이다. 그런데 '위핍인치사'조가 다루는 상황은 현대 형법으로는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현대 형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자살이라는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자살과 관련된 현행 형법 제253조는 자유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것으로 이는 조선 사회에서는 고의적 살인으로 여겨졌다. 즉, 현재 우리 사회는 '위핍인치사'조와 같은 상황을 형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핍인치사'조의 법률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위핍인치사'조는 상명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유아지율이라는 법리를 통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상명은 하나의 죽음에 대해 다른 하나의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관념으로 인명(人命)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자살에 의한 죽음 역시 갚아야 하는 죽음으로 생각했다. 더욱이 그 자살이 위협과 핍박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당연히 상명하여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 사형에 이르는 형량은 아니지만, '위핍인치사'조는 그러한 자살을 처리하는 율문이었다. 한편, 위협이나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는 유아지율을 활용하여 판정했다. 유아지율은 조선에서 활용한 인과관계론으로서 현대 형법의 조건설과 유사하다. 즉,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살과 관련해서는 '그 위협과 핍박이 없었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므로 핍박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협하거나 핍박을 가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사회에서는 상명 관념과 유아지율을 통해 '위핍인치사'조를 의율할 수 있었다.

2.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조에서의 자살

‘위핍인치사’조는 핍박을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율문이다. 앞서 Ⅰ장 1절 ⑵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한국의 현행 형법을 비롯한 현대 형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현행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살을 자유로운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 사회에서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다루는 자살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의 자살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이다.[120] 그러나 어떤 행위를 자살로 볼 것인지 혹은 자살이 어떤 행위를 상정하는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뒤르켐은『자살론』에서 자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살자 자신이 그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의 경우를 뜻한다.**[121]

뒤르켐이 정의하는 자살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알고도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알고 행한다는 것이다. 뒤르켐은 자살자의 직접적인 행동으로만 자살을 국한하지 않았다. 뒤르켐의 정의에 따르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 죽임을 당한 종교적 순교자들의 순교 행위 역시 자살이었다.[122]

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자살이라는 행위는 사인(死因)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2022 자살예방백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가운데 ‘고의적 자해(X60~X84)’에 해당하는 사망만을 자살로 분류했다.[123] 이는 자살자가 처한 상황이나 자살자의

120)『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121) 에밀 뒤르켐 저, 황보종우 옮김, 2019『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청아출판사, 22쪽.

122) 에밀 뒤르켐 저, 황보종우 옮김, 앞의『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286쪽.

123)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14년부터 매년『자살예방백서』을 발간해 왔다.『자살예방백서』는 발간 연도 기준 전전년의 자살 현황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자살과 관련한 새로운 주제를 정해 관련 연구나 예방 사업 등을 소개

의도보다 사망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자살이라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뒤르켐이 자살로 규정했던 종교적 순교자들의 순교 행위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살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처럼 관점에 따라 자살이라는 행위가 다르게 규정된다면,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다루는 자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법전과 형사 사건 관련 기록에서 '위핍인치사'조의 피해 사실은 자결(自決), 자살(自殺), 자재(自裁), 자진(自盡), 자폐(自斃)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데, 각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다.[124] 그러므로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는 '위핍인치사'조에서의 자살은 인명(人命) 사건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맥락을 통해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이에 ⑴항에서는 검험(檢驗)의 지침서였던 『무원록(無冤錄)』의 사망 원인[實因] 분류와 『흠흠신서』「상형추의」 가운데 자살과 타살을 구분한 사례[自他之分]를 바탕으로 '위핍인치사'조에서의 자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또한, 서유구의 『완영일록』을 통해 '위핍인치사'조에서의 자살을 판정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⑵항에서는 ⑴항에서 규정한 자살이 결과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고 있다.

124) '위핍인치사'조의 피해 사실로서 자살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자결(自決) : 藉令金女分明自決 而安女無作俑之事【是良置】 安女之於金女 常常侵困 備經苦楚 轉以至於齎寃辦死之境 此安女殺之也(『審理錄』 卷12, 開城府, 金龍龜獄)
- 자살(自殺) : 若其計必出於逼殺 又其事不得不自殺 又其情地 不得不七人並死 然後李景輝乃爲威逼殺人之人 又爲逼殺七人之人(『欽欽新書』 卷7, 祥刑追議9, 威逼之阨1)
- 자재(自裁) 및 자폐(自斃) : 景曾之自斃 明是浪死 歸之由我之科 斷以償命之律 … 徒然自裁 成獄一款 殊涉過重(『審理錄』 卷4, 忠淸道, 公州 姜雄伊獄)
- 자진(自盡) : 威逼是以勢以威逼使人畏之不得已而自盡(『大明律附例』 卷19, 刑律人命, 威逼人致死), 臣等以爲 被縛號泣 服鴆自盡 三生讐冤 尙逭常憲 九地幽鬱 無時可洩(『審理錄』 卷15, 京畿, 龍仁 朴三奉獄)

(1)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에 대한 판정

‘위핍인치사’조에서의 사망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발생했던 모든 자살이 ‘위핍인치사’조에 의해 처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살 가운데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다루는 자살과 그렇지 않은 자살로 나뉘게 된다. 이는 분명한 기준을 통해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신고된 사망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인명(人命)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고을 수령과 주변 고을 수령은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을 진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인 검안(檢案)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했다.[125] 검험(檢驗) 과정은 직접 시신을 관찰하는 검시(檢屍)와 관련 인물에 대한 진술 조사로 진행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망의 원인[實因]을 판정하는 것이다.

> **검안보고서에서 볼 것이라고는 사망의 실제 원인[實因]에 대해 기록한 한 구절뿐이다.**[126]

정약용(丁若鏞)의 지적처럼 검험의 핵심은 사망 원인[實因]을 파악하는 것이며, 인명 사건 처리 절차는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판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분류하고 파악했던 여러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검험 지식을 담은 각종 검험서(檢驗書)에서 파악할 수 있다.[127] 동아시아의 검험 지식은 1247년 남송의 송자(宋慈)에 의해 편찬된 『

---

125) 심재우, 1997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역사와 현실』 23, 한국역사연구회, 220~221쪽 ; 김호, 1998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56~162쪽.

126) 『欽欽新書』 卷6, 祥刑追議4, 自他之分11, “夫檢案所觀 只是實因一句”(정약용 저, 박석무·이강욱 역, 2019 『역주 흠흠신서』, 한국인문고전연구소, 370쪽)

127) 이하 동아시아 지역의 검험 지식과 검험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최해별, 2014 「宋·元시기 "檢驗지식"의 형성과 발전: 『洗寃集錄』과 『無寃錄』을 중심으로」『중국학보』 69, 한국중국학회 ; 최해별, 2015 「동아시아 전통 ‘檢驗’ 지식의 계보: 檢驗 서적의 편찬·전파·변용을 중심으로」『梨花史學硏究』 50, 梨花史學硏究所 ; 최해별, 2017 「13-18세기 동아시아 ‘檢驗(檢屍)’ 지식의 전승과 변용 ; 死因 분류 체계와 死因 규명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역사문화연구』 6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

세원집록(洗寃集錄)』과 원대 왕여(王與)에 의해 편찬된 『무원록(無冤錄)』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에서는 세종 20년(1438) 『무원록』에 주석을 달아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을 완성했고, 1440년부터 간행하여 활용했다.[128] 명나라에서는 『세원집록』을 보충·수정하는 서적들이 출간되었고, 청대에 이르면 강희(康熙) 33년인 1694년 율례관(律例館)의 교정을 거친 『율례관교정세원록(律例館校正洗冤錄)』(이하 『교정세원록』)이 편찬되었다. 조선에서는 영조대 『교정세원록』의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조선 학자들의 의견을 담은 『증수무원록대전』을 편찬했고, 언해본까지 완성했다.[129] 일본은 조선의 『신주무원록』 수입하여 1768년 『무원록술(無冤錄述)』 간행하여 활용했다.

동아시아의 검험 지식은 『세원집록』의 발간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으며, 『무원록』에 의해 검험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폭 보완되었다. 이후 중국, 한국, 일본은 두 검험서를 취사 선택하면서 그 지식을 이어나갔다. 가령, 조선에서는 검험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던 시기에 『무원록』을 기반으로 한 『신주무원록』이 발간되었다. 이후 범죄 기술의 진화 등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증수무원록대전』과 그 언해본이 나왔다. 『증수무원록대전』에서는 『신주무원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절차 규정 및 공문서 투식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교정세원록』의 새로운 검험 지식과 조선의 사정을 반영한 내용이 추가되었다.[130]

검험 지식의 전승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망 원인[實因]의 분류 체계이다. 『세원집록』에서는 총 24개의 사인을 분류했으며, 그 가운데 '액사(縊死)', '익사(溺死)', '구타(毆打)', '살상(殺傷)', '자형(自刑)', '화상(火傷)', '복독(服毒)', '병사(病死)' 등 8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주된 내용을 구성했다. 그 밖의 사인은 매우 짧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사망 원인의 분류 체계가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세원집록』

구소 참고.

128) 『신주무원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金澔, 2003 「『新註無冤錄』과 조선전기의 檢屍」『法史學硏究』, 韓國法史學會 참고, 조선 전기 『무원록』의 수용과 활용에 관한 내용은 鄭肯植, 앞의 「朝鮮前期 中國法書의 受容과 活用」 참고.

129) 『증수무원록대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김호, 2020 「《무원록》과 옥정 파악의 중요성」『정조의 법치-법의 저울로 세상의 바름을 살피다』, 휴머니스트 참고.

130) 최해별, 앞의 「동아시아 전통 '檢驗' 지식의 계보: 檢驗 서적의 편찬·전파·변용을 중심으로」.

에서 중시된 8가지 유형의 사망 원인이 계속 중시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항목을 분류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점이다. 가령, 『세원집록』의 사망 원인[實因] 중 하나인 익사(溺死)는 『증수무원록대전』에서는 '익수사(溺水死)'라는 편제 아래 '자익사(自溺死)', '피인익사(被人溺死)' '피인살가작자익(被人殺假作自溺)' '변생전사후익(辨生前死後溺)' 등의 내용으로 세분화된다. 마지막으로 8가지 유형 외의 기타 사망 원인은 더욱 간단하게 정리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131]

위와 같은 사망 원인[實因] 분류 체계의 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조선에서 주로 활용한 『신주무원록』과 『증수무원록대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검험서에서 제시하는 사망 원인[實因]을 기재 순서대로 정리하면 〈부표 1〉과 같다. 『신주무원록』에 비해 『증수무원록대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체계적인 항목 분류가 시도되면서도, 사망 원인[實因]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신주무원록』의 늑사(勒死)와 자액사(自縊死)는 『증수무원록대전』의 늑액사(勒縊死)에 편제되었다. 한편 『신주무원록』의 늑사(勒死)에는 스스로 목을 졸라 죽은 자늑사(自勒死)와 다른 사람에게 목이 졸려 죽은 피인늑사(被人勒死)가 함께 수록되어 있었으나, 『증수무원록대전』에서는 자늑사(自勒死)와 피인늑사(被人勒死)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자상(刺傷)과 관련한 내용도 『신주무원록』에서는 인상사(刃傷死), 자사(刺死), 자할사(自割死) 등이 개별적으로 수록되었는데, 『증수무원록대전』에서는 인상사(刃傷死) 편제 아래 정리되었다. 또한, 『신주무원록』의 자할사(自割死)의 내용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찔린 경우와 이[齒]로 손가락을 문 경우 등 자할(自割)과 다소 상관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증수무원록대전』의 자할사(自割死)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반면에 스스로 찌른 후에는 다시 벨 수 없다거나, 어느 손으로 찔렸는지에 따라 오른편, 왼편의 사후 경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 등 자할사(自割死)을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132] 독사(毒死)의 경우에도 다양한 독물에 의한 죽음을 증보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133]

---

131) 최해별, 앞의 「13-18세기 동아시아 '檢驗(檢屍)' 지식의 전승과 변용 : 死因 분류 체계와 死因 규명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245~249쪽.
132) 김호, 앞의 「《무원록》과 옥정 파악의 중요성」, 102~103쪽.
133) 최해별, 앞의 「13-18세기 동아시아 '檢驗(檢屍)' 지식의 전승과 변용 : 死因 분류

위와 같이 사망 원인[實因]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세분화는 청대 검험 지식의 수용과 조선 고유의 상황을 반영할 결과였다. 여기에는 살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살인 이후 자살 등으로 위장하거나 은폐한 사건을 분명하게 간파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134] 특히, 정조(正祖)는 모든 살옥 조사를 『증수무원록대전』에 근거하여 진행하도록 했으며, 본인이 보고 받은 사안도 『증수무원록대전』과 일일이 대조하여 검토했다. 그러니 살옥을 조사하는 지방관들 역시 『증수무원록대전』에 따라야 국왕을 설득할 수 있었다.[135] 예를 들어 송수은(宋壽殷)은 송북자(宋北者)를 칼로 찔러 죽이고, 송북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했는데, 복검관은 『무원록』의 인상사(刃傷死) 내용 중 한 번에 찔려 사망한 경우[一刃直致命者]에 해당한다고 하며 타살로 판단했다.[136]

그런데 『신주무원록』과 『증수무원록대전』 등 검험서의 활용 목적이 자살로 위장된 살인 사건, 은폐된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자살 사건을 타살로 판정하여 잘못 판정하지 않기 위함도 있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김봉추(金奉秋)가 정선이(鄭先伊)를 고발하여,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137] 그런데 김봉추가 정선이를 만난 이후 자상(刺傷)을 입고 사망했다. 이에 검관은 정황상 정선이가 김봉추를 살인한 것이 분명하지만,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끝까지 실토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조(正祖)는 『무원록』의 조문을 근거로 김봉추의 자상(刺傷)을 자기 스스로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사망 원인[實因]의 정확한 판정은 위장·은폐된 타살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자살과 타살을 정확하게 판정하여 혹 자살이 타살로 판단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했다.

체계와 死因 규명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249~265쪽.

134) 김호, 앞의 「《무원록》과 옥정 파악의 중요성」, 101~108쪽.

135) 김호, 앞의 「《무원록》과 옥정 파악의 중요성」, 110~112쪽.

136)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3, 自他之分2, “覆檢跋詞曰 肚腹旣係要害 內腸又至露出 此無冤錄所謂一刃直致命者也”, 해당 사건은 『심리록』에도 수록되어 있으나,(『審理錄』 卷11, 平安道, 龍岡 宋壽殷獄)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검험 단계에서 타살이 확정되었고, 그것이 쟁점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37)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審理錄』 卷15, 黃海道, 金川 鄭先伊獄 ;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3, 自他之分1 참고.

결국, 옥사를 처리하는 첫 시작은 사망 원인[實因]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신주무원록』과 『증수무원록대전』 등의 검험서에서의 사망 원인 분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기준이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구분은 그것이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타살은 언제든지 자살로 위장되거나 은폐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했으며, 자살을 타살로 잘못 판단해도 안 되는 것이었다. 이는 송북자(宋北者)와 김봉추(金奉秋)의 사망 원인 판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수무원록대전』의 사망 원인 분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장 빈번한 사망 유형에 해당하는 늑액사(勒縊死), 익수사(溺水死), 인상사(刃傷死)는 모두 자액사(自縊死), 자늑사(自勒死), 자익사(自溺死), 자할사(自割死)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 이는 그만큼 자살과 타살의 판정이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독사(毒死)의 경우에도 “스스로 알고 먹은 것은 복독(服毒)이며, 알지 못하고 먹은 것은 중독(中毒)이다.”라고[138] 구분함으로써 자의에 의한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을 다르게 이해했다.

> **(附)근래 경외에서 검험하는 법은 단지 결항(結項) 혹은 인상(刃傷) 등 두 글자로만 현록(懸錄)하는데, 매우 법의(法意)가 아니다. 앞으로는 각 항의 스스로 죽은 경우[自死]와 죽임을 당한 경우[被死]를 명확히 분별하여 상세히 기록하라.[139]**

> **검안보고서에서 볼 것이라고는 사망의 실제 원인에 대해 기록한 한 구절뿐이다. 사망의 실제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면 정범(正犯)이 있고, 사망의 실제 원인이 자기 때문이면 피고(被告)가 있다. 이것이 검안보고서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140]**

---

138) 『增修無冤錄大全』 下, 條例, [中毒死], “(增)自知而服 爲服毒 不知而中 爲中毒”

139) 『增修無冤錄大全』 上, 檢覆, [屍帳式], “(附)近來京外檢法 只以結項或刃傷等二字懸錄 大非法意 今後 各項自死被死 明辨詳錄”

140) 『欽欽新書』 卷6, 祥刑追議4, 自他之分11, “夫檢案所觀 只是實因一句 實因他人則斯有正犯 實因自己 則斯有被告 此檢案之大經大法也”(정약용 저, 박석무·이강욱 역, 2019 『역주 흠흠신서』, 한국인문고전연구소, 370쪽)

첫 번째 사료는『증수무원록대전』부주(附註)로 정약용이 국왕의 수교(受敎)라고 소개한 내용이다,[141] 두 번째 사료는 검험과 검안의 본질에 대한 정약용의 설명이다. 부주(附註)의 내용을 보면, 검안에서 결항(結項)이나 인상(刃傷)과 같이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만을 기록하는 것을 지적하며, 그보다 앞서 자살과 타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약용의 설명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검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사망 원인이다. 그리고 그 사망 원인은 그 행위자가 타인인지 자신인지에 따라 대별된다. 사망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은『무원록』의 사망 원인 중 '피인(被人)'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인늑사(被人勒死), 피인익사(被人溺死), 피타사(被打死), 피인살사(被人殺死), 피인소사(被人燒死) 등이며,『증수무원록대전』에서의 피사(被死)이다. 타살의 경우 그 가해자는 정범(正犯)으로 기록해야 했다. 반면, 사망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자액사(自縊死), 자늑사(自勒死), 자익사(自溺死), 자할사(自割死) 등을 뜻하며,『증수무원록대전』에서의 자사(自死)에 해당한다. 자사(自死)의 경우 그 가해자를 피고(被告)라 명명함으로써 타살의 가해자와 구분한 것이다.[142]

---

141)『欽欽新書』 卷6, 祥刑追議4, 自他之分9, "健陵晩年 新增無冤錄附注云 今後各項自死被死 或係有他違端 難於執定 則具由懸錄 毋嫌字多 此蓋受敎也"

142) 이처럼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정범과 피고를 구분하여 검안에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한상권은 살옥의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신중히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한상권, 앞의「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한편, 정약용이 사망 원인[實因]에 따라 정범(正犯)과 피고(被告)를 구분한다고 한 검안의 원칙은 가해자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해당 원칙을 설명하게 된 사례는 구타를 당하다가 그것을 피해 도망치며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었다. 즉, 구타가 사망 원인이라면 그 가해자는 정범으로, 익사가 사망 원인이라면 그 가해자는 피고로 기록했어야 한다고 평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약용이 사망 원인에 따라 정범과 피고를 구분한다고 한 원칙은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모든 자살 사건에서 무조건 피고를 기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살의 경우 위협과 핍박의 정황까지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면, 그 가해자를 피고로 기록했다. 실제로 자살 사건이 기록된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85건 가운데 11건은 피고가 기록되지 않았다.(오승관, 앞의「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 〈부표〉) 가령, 1906년 서흥군수 최동식(崔東埴)이 독사(毒死)했다.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시국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자살로 판정되었다. 최동식에게 위협이나 핍박을 가한 사람이 확인되 않았기 때문에, 검안에서 가해자인 피고는 기록되지 않았다.(『黃海道裁判所瑞興前郡守崔東埴暴死査案』(奎26280) ; 김호, 2018「우국지사인가, 탐관오리인가-황해도 서흥군 군수 최동식 사건-」『100년 전 살인사건-검안을 통해 본

이처럼 살옥에 대한 처리는 죽음을 이르게 한 행위가 타인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모두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에 이르게 한 위협과 핍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자결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즉시 정말로 협박한 정황이 없었는지를 물어본 뒤에 곧바로 풀어주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야 합니다.**[143]

위 내용은『흠흠신서(欽欽新書)』에 실린 인명(人命) 사건 조사에 대한 청나라 관료 이사정(李士禎)의 논의 가운데 일부이다. 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살한 것이 확인되면 그 즉시 위협과 핍박의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협과 핍박의 정황이 있다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심리와 판결로 이어진다. 위협과 핍박의 정황이 없으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수 없는 자살이 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형사 관련 자료 내에서 핍박의 정황을 판단했던 논리와 과정을 면밀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 다만, 서유구의『완영일록』에서 그 정황을 판단했던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144]

서유구는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전라도 관찰사로서 총 50건의 자살 사건을 보고 받았다. 각 지역의 수령이 신고를 접수하고 검험(檢驗) 혹은 조사를 진행한 후 검안, 사안(査案) 등의 문서로 관찰사에게 보고한 것이다.『완영일록』에는 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뎨김[題音]이 기록되어 있다. 서유구가 보고 받은 50건의 자살은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가해자인 피고(被告)의 유·무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검안에서의 피고(被告)는 사망 원인[實因]이 자기

조선의 일상사-』, 휴머니스트)

143)『欽欽新書』卷2, 批詳雋抄1, 李士禎人命條議六條通論, "或有自盡身死者 隨卽詢其無有眞正威逼情形 卽便趕釋不究"(정약용 저, 박석무·이강욱 역, 2019『역주 흠흠신서』1, 한국인문고전연구소, 421쪽)

144) 형사 관련 기록으로서『완영일록』의 자료적 특징은 Ⅱ장 1절에서 상술한다.

자신에게서 비롯된 죽음일 때 그 가해자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검안, 사안(査案) 등에서 피고가 없는 것은 해당 자살의 가해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수 없는 자살인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기록되지 않은 자살을 살펴보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에 대한 판정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서유구가 보고 받은 50건의 자살 중 피고가 없는 경우는 총 14건이다. 이들 자살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죽음으로 판정되지 않은 이유에는 몇 가지 경향성이 확인된다. 첫째는 자살의 이유가 분명하게 파악된 경우이다. 남원의 신백수와 용안의 이보갑은 모두 빈곤함을 비관하다가, 신백수는 스스로 목을 매서, 이보갑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서유구는 신백수와 이보갑의 자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죽은 자는 굶주림과 곤궁함에 몰려 있고 아내와 자식이 따로 흩어지게 되었으니, 차라리 먼저 세상을 떠나고 싶어 자살[自裁]을 결심한 경우이다.**[145]

> **다만 '가난'이라는 한 글자가 빌미가 되어 갑자기 6척의 몸을 스스로 죽이고 말았다.**[146]

자식의 죽음 역시 자살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옥구현의 장조이(張召史)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서유구는 '단지 자식을 잃은 비통함에서 끝내 목숨을 잃는 변고에 이르렀으니, 죽음이 진실로 허망하고 실정이 참혹하다.'고 기록했다.[147] 이처럼 자살이 다른 사람의 위협과 핍박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자살의 분명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곧 해당 자살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다.

---

145)『完營日錄』卷1, 癸巳年, 5월 2일, "死者之迫於飢困 妻孥分散 寧欲溘先決意自裁者"(이하『완영일록』에 대한 인용문은 김순석 외 번역, 2018『완영일록』, 흐름의 국문 번역을 참고하여 재번역하였다.)

146)『完營日錄』卷5, 甲午年, 3월 18일, "只緣一貧字爲祟 遽致六尺軀自戕"

147)『完營日錄』卷1, 癸巳年, 8월 13일, "只緣喪明之慟 終致喪命之變 死固浪矣 情則慽矣"

두 번째는 자살한 사람이 범죄자 혹은 범죄의 피의자인 경우이다. 진산의 오명진은 자기 조카 집의 물건을 훔치곤 했는데, 그것이 들통나자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서유구는 오명진의 사망에 대해 '재앙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는가'라고 했다.[148] 그럼에도 혹시 도둑맞은 친족들에 의한 위협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다. 걸인 전화춘은 다른 걸인 한광진을 구타한 뒤 스스로 겁을 내 목을 매었으며,[149] 최호련을 살해한 박덕삼도 수금되어 조사받던 도중에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150] 역시 위 사건들의 피고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는 위협과 핍박을 가한 가해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로 판정되지 않는 마지막 경우는 갈등 관계가 확인되지만, 그것을 범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함열의 조조이(趙召史)는 시어머니와 언쟁 후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서유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뎨김을 내렸다.

> **시장을 받아보니, 고부(姑婦)가 다투는 것은 본디 풍속을 상하게 하는 악습이고, 스스로 목을 매 헛되게 죽는 것은[溝瀆自經] 매번 성품이 편벽된 우매한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나, 암퍅(暗愎)하여 도리가 없는 것은 조 여인보다 심함이 있겠는가? 삼을 물에 담그고 벼논에 김매는 것은 모두 농가의 본분이고 타일러 경계하고 이끌어 독려하는 것도 집안 어른의 일상적인 일인데, 무슨 연유로 화내고 한스러워 이렇게 스스로 죽게 된 것인지, 죽음이 진실로 헛되고, 인정도 사납다.**[151]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시어머니로부터 책망을 당한 며느리가 자살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서유구의 뎨김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주목된다. 첫 번째는 위와 같은 갈등이 예사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집 안의 어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판단이다.

---

148)『完營日錄』卷5, 甲午年, 3월 20일, "孽由自作 更誰怨尤"
149)『完營日錄』卷5, 甲午年, 3월 21일.
150)『完營日錄』卷4, 甲午年, 3월 14일 ;『完營日錄』卷4, 甲午年, 3월 15일.
151)『完營日錄』卷1, 癸巳年, 7월 5일, "屍帳捧上是在果 婦姑勃豀 自是傷風之惡俗 溝瀆自經 每出偏性之愚婦 其暗愎無理 豈有如趙女之甚者乎 溫麻鉏稻 俱爲農家之本分 訓戒提督 亦是家老之常事 緣何恚恨 致此自戕是隱喩 死固浪矣 情亦悍矣"

두 번째는 조조이(趙召史)의 성품이 편벽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삿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위계질서 내에서의 핍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은 '위핍인치사'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전에 꾸지람을 듣고 독을 먹은 마음섬(麻音閃)의 사망이다.

> **고생하는 것을 세세히 살피고 작은 일로 크게 성내는 것은 본디 비(婢)를 부리고 노(奴)를 경계하는 예삿일인데, 뼈에 부러지고 살을 도려내는 무슨 원통함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성급하고 악독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152]

마음섬의 자살에 대한 평가는 조조이(趙召史) 자살에 대한 평가와 매우 유사하다. 주인이 노비를 닦달하는 것은 으레 있는 일인데, 성품이 좋지 못한 비(婢)가 쉽게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 내 위계 혹은 주노 관계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위계질서 내에서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Ⅰ장 1절 ⑴항에서 확인한 율문 검토 내용과 합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위핍인치사'조는 친족 관계 내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핍박한 경우에는 복제 관계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했으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협하여 죽게 한 경우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조이(趙召史)의 자살에 대한 처분은 율문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위계질서 내에서 발생한 자살을 모두 '위핍인치사'조의 피해 사실로 다루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령, 『심리록』에는 빙모의 협박에 의한 사위의 자살이나[153] 남편의 핍박에 의한 아내의 자살도 수록되어 있고,[154] 『일성록』에는 아버지의 꾸지람에 의한 아들의 자살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155] 즉, 사회적으로 공인된 위계질서 내에서 발생한 자살이 모두 '위핍인치사'조의 피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기보다는, 피해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152) 『完營日錄』 卷5, 甲午年, 3월 21일, "契活刺刺 小嗔大怪 自是役婢警奴之例事 有何切骨憯膚之冤憤而自戕性命 不少留難 似此褊毒 非盧攸及"
153) 『審理錄』 卷8, 全羅道, 金堤劉夢骨獄
154) 『審理錄』 卷7, 咸鏡道, 端川李龍得獄
155) 『日省錄』, 순조 10년 2월 11일(乙未)

볼 수 있다.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는 자살에 대한 이상의 판정 사례는 그 수가 매우 적고, 서유구 한 사람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을 판정하는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현재로서 일관된 기준으로 판정된 사례들이기에 그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조선 사회의 다양한 자살 가운데,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에 대한 판정은 사망 원인[實因]과 가해자인 피고(被告)의 유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망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 신고된 사망을 조사하는 첫 단계는 검험인데, 검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때 사망 원인은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경우와 타인에게서 비롯된 경우로 나뉜다.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의 자살이다. 이렇게 사망 원인[實因]이 분명해지면, 위협과 핍박의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 위협과 핍박의 정황이 있다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 되는 것이다. 위협과 핍박의 정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논리와 과정을 파악할 수 없으나, 자살의 이유가 분명한 경우, 자살자가 범죄자인 경우, 사회적으로 공인된 위계질서 내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⑵ 피살(被殺)로 여겨지는 자살

앞서 Ⅰ장 2절 ⑴항에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을 판정하는 문제를 확인했다. 본 항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을 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자살에 대한 인식은 해당 자살의 유형,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는 자살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은 자살의 사례를 보자. 문종대 박이창(朴以昌)은 명나라에 성절사로 돌아온 후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죽었다.[156] 명나라로 가는 사신은 휴대할 수 있는 미곡의 양이 정해져 있었는

데, 박이창은 정해진 양보다 많은 미곡을 가지고 갔다. 문종은 의금부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에 도착한 박이창을 잡아 오도록 했는데, 박이창은 평안도 신안역(新安驛)에서 스스로 목을 찔렀다. 국왕은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했으나 살리지 못했다. 박이창은 자살하기 직전 서장관 이익(李翊)에게 자신이 국법을 어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는 "지금은 이미 국법을 어긴 것이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성상을 알현하며 무슨 낯으로 동렬(同列)의 대신들을 만나겠는가? 거듭 생각해봐도 스스로 죽는 것만[自死] 못하다."라고 했다.[157] 문종은 직접 제문을 지어 내렸는데, '경의 부끄러움이 다하자, 의(義)를 위해 죽어[捐軀] 결백을 보였다.'고 썼다.[158] 문종은 박이창의 자살을 의로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평가한 것이다.

영조대 화순옹주(和順翁主)의 자살도 '위핍인치사'조의 자살과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159] 화순옹주는 남편 김한신(金漢藎)이 죽자 14일간 단식 후 사망했다. 단식 7일째, 영조가 직접 음식을 권하기도 했으나, 끝내 그녀의 단식을 막지 못했다. 영조는 화순옹주의 자살에 대해 상심하고 슬퍼하면서도, 늙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은 것은 불효하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신하들은 화순옹주를 정려(旌閭)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영조는 효(孝)에 부족함이 있다며 거절했다. 사도세자는 평소 화순옹주의 절의가 굳은 것에 탄복하여 자주 말했다고 하며, 정조는 화순옹주의 집에 정문(旌門)을 세우고 그녀 행동을 극찬했다. 이처럼 하나의 자살을 두고도 다양한 주체에 따라 그 인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 사람들은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는 자살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시 사람들은 '위핍인치사'조 자살을 살인의 결과인 피살(被殺) 당한 것

156)『文宗實錄』卷9, 1년 9월 2일(丁酉) ;『文宗實錄』卷9, 1년 9월 19일(甲寅) ;『文宗實錄』卷9, 1년 9월 20일(乙卯) ;『文宗實錄』卷9, 1년 9월 21일(丙辰) ; 송병우, 2015「조선시대 개인의 자살, 사회적 타살-『조선왕조실록』자살 사례를 통하여」,『동양한문학연구』40, 동양한문학회.

157)『文宗實錄』卷9, 1년 9월 20일(乙卯), "今旣犯邦憲 將何面目 以見聖上 亦何顔更會同列大臣乎 反復思之 不若自死之爲愈也"

158)『文宗實錄』卷9, 1년 9월 20일(乙卯), "致卿愧恥 捐軀以白"

159) 이하 화순옹주 관련한 내용은 박주, 2012,「영조의 딸 열녀 화순옹주의 삶과 죽음」『한국사상과 문화』64, 한국사상문화학회 참고.

으로 여겼다. 이는 앞서 '위핍인치사'조의 율문 검토나 사망 원인[實因]으로서의 자살·타살 문제에서 살펴본 내용과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위핍인치사'조에서의 자살이 명시적인 피살(被殺)은 아니었다. 인명(人命)편에서 가해자에 의한 직접 살인은 모두 살(殺)이라는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살인(謀殺人), 살일가삼인(殺一家三人), 투구급고살인(鬪毆及故殺人) 등이 그러하다. '위핍인치사'조 자살은 치사(致死)의 결과로서 가해자에 의한 직접 살인과 다르다. 또한, 사망 원인[實因]을 밝히는 과정에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죽음과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한 죽음, 그에 따른 정범과 피고의 구분도 있었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 '위핍인치사'조 자살이 직접적인 살인의 결과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살을 대면한 후 직관적으로 내리는 자살에 대한 인식은 이와 달랐다. 자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가해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었던 법률 체계 아래에서, 당시 사람들은 자살자에게 위협과 핍박을 가한 가해자를 찾게 된다. 실제로 가해자는 직접 살인한 것이 아니라 위협과 핍박만 가했을지라도, 자살자의 유가족과 주변인은 그 자살자가 가해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살을 피살(被殺)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앞서 〈주요 사건 2〉의[160] 김용귀 옥사에서 정조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자.

> **김용귀의 딸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것은 시할머니 안(安)여인의 집에서였으니, 김용귀가 의심하게 된 것은 천리(天理)로나 인정(人情)으로나 그럴 수 있다. 가령, 김(金) 여인이 분명히 자결하였는데 안여인이 빌미를 만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여인이 김여인을 항상 괴롭히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하여 원통함을 품고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안여인이 그녀를 죽인 것이다. '몽둥이로 죽였건 칼로 죽였건 죽인 것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은 바로 안여인을 위해 준비된 말이다. 또 생각건대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조는 본래 상명(償命)하는 것이니, 마땅히 상명(償命)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김여인의 아비된 자가 분이 올라 반드시 보복하려는 것을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는가. 마음대로 죽였다고 하여 관에 고하지 않은 율로 논하는 것은 가능**

160) 48쪽, 각주 100번.

하나, 헛되이 죽였다고 하여 상명(償命)하는 율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161]

정조는 김용귀의 딸인 김(金) 여인의 자살에 대해 “이것은 안 여인이 그녀를 죽인 것[此安女殺之也]”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또한, 이것이 몽둥이나 칼로 죽인 것과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국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든 살옥 심리에 깊이 고뇌했다고 자부하는 정조의 생각에서,[162] 음독 자살이라고 판정된 김여인의 죽음은 피살(被殺)의 결과였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족당을 이끌고 정진옥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 김용귀도 딸의 자살을 정진옥 가족들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서 자살은 피살(被殺)로 여겨졌다.

‘위핍인치사’조 자살을 피살(被殺)로 여겼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용어가 핍살(逼殺)이다. 핍살은 말 그대로 ‘핍박하여 죽인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자살로 죽었을 때 가해자의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정조대 이해인(李海寅)이 박성재(朴成才)가 자기 집의 사판(祠版)과 제기(祭器)를 훔쳤다고 의심하여 집을 수색하고 사형(私刑)을 가했다. 이에 박성재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163]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정조(正祖)와 형조, 관찰사는 위핍지죄(威逼之罪), 위핍지율(威逼之律) 등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것을 염두하고 심리했다. 그런데 정조는 최종 판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핍살(逼殺)한 것은 비록 감추고 숨기지 않았으나, 혐살(嫌殺)한 것은 끝

---

161) 『日省錄』, 정조 8년 3월 23일(戊申), “龍龜女之忽地致命 在於媤祖母安女之家 龍龜之致疑 卽天理人情之所固然 而藉令金女分明自決 而安女無作俑之事矣 安女之於金女 常常侵困 備經苦楚 轉以至於齎冤辦死之境 此安女殺之也 挺與刃無異 政爲安女準備語 又思之 威逼人致死 本自償命 當償命之人 爲金女父者 乘憤必報 夫誰曰不可 謂之擅殺 以不告官律論可也 謂之枉殺 以償命律論不可”

162) 심재우, 2009『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10~211쪽.

163) 이해인의 위핍에 의한 박성재 자살에 대한 내용은『審理錄』卷8, 江原道, 襄陽 李海寅獄 ;『日省錄』, 정조 6년 6월 13일(戊寅) :『日省錄』, 정조 6년 9월 27일(辛酉) :『日省錄』, 정조 7년 4월 28일(戊子) ;『日省錄』, 정조 9년 5월 11일(乙巳) ;『日省錄』, 정조 9년 7월 22일(己巳) ; 김호, 앞의 「조선후기 '위핍률(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對民觀)」, 556~557쪽 참고.

내 자백하지 않았다.[164]

이해인의 행위는 핍살과 혐살의 사이에 있었다. 혐살에 대한 용례가 거의 없어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다만, 형조가 숙혐(宿嫌)이 있었는지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혐의가 있어 고의로 죽인 것을 혐살로 지칭한 것 같다. 즉, 이해인은 자신이 핍박을 가하여 박성재가 스스로 목을 맨 사실은 인정했으나, 박성재를 고의로 죽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성재의 자살은 이해인의 핍살에 의한 것이며, 피살(被殺)로 인식되는 자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해 행위로서의 핍살과 그에 따른 피살(被殺)로서 자살은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종대 박태원(朴泰遠)이 산송으로 인해 형리(刑吏)와 사령(使令), 관노 등을 보내 민진표(閔震標)를 위협했는데, 이에 민진표가 자살했다.[165] 정조대 윤수일(尹守一)이 물고기 값을 두고 김정한(金禎翰)과 다툰 후 독을 마시고 죽었다.[166] 이기대(李器大)는 노(盧)여인에게 억지로 사주단자를 보내는 등 강제 결혼을 시도했는데, 노 여인이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167] 순조대에는 이광필(李光弼)에 의해 박(朴)여인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168] 해당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왕과 신료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핍살(逼殺)인지를 따졌다. 이처럼 핍살과 '위핍인치사'조 자살은 가해 행위와 피해 행위로서 짝하는 것이었다.

핍살과 '위핍인치사'조 자살은 조선 후기 야담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야담(靑邱野談)』에 수록된 「송부원금성여격고(訟夫寃錦城女擊鼓)」에서 상민은 양반 여성을 핍살했다.[169]

---

164)『審理錄』卷8, 江原道, 襄陽 李海寅獄, "逼殺雖無隱諱 嫌殺終不輸款"

165)『承政院日記』418책, 숙종 30년 6월 1일, "震標 不勝困迫 終至殞命 而前後推官曲護泰遠 檢驗不明 窮天之冤 無以伸雪云 果如狀辭 則此雖非泰遠手殺 其因爭山 逼殺無辜之狀" : 『承政院日記』 421책, 숙종 30년 10월 3일, "且於頃日朴泰遠山訟時多發官差 凌逼訟民 以致自斃"

166)『審理錄』卷3, 慶尙道, 蔚山 尹守一獄, "本道啓 服毒丁寧 雖不成獄 徵事詬辱 難免逼殺"

167)『審理錄』卷12, 洪忠道, 堤川 李器大獄 "因此而 直歸於故殺逼殺之科"

168)『日省錄』, 순조 5년 5월 24일(丁未), "徐邁修以爲 朴女之自縊 雖曰可尙而 旌褒之典 恐難遽議 蓋其縊死之根因則 李光弼是已而 觀於前後之招 兇獰極矣 逼殺之律 烏得免乎"

나주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고 비복(婢僕)이 없어 스스로 농업에 힘쓰니 그 아내와 딸도 심상히 향인(鄕人)과 내외의 구분이 없었는데, 문 앞 채소 밭 몇 이랑이 있어 그 딸이 비녀 꽂을 나이가 지나도 손수 김매기를 했다. 그 근처에 상놈의 밭도 있어, 상놈도 함께 김매기를 하는데 지나는 말로 그 처녀를 깔보니, 처녀가 화내며 말하길, "나는 양반이고, 너는 상놈인데, 어찌 감히 나를 깔보는가?" 상놈이 말하길, "너와 같은 양반은 내 집 대청 밑에 우글우글 많다."고 했다. 그 처녀가 분노하여 집에 돌아오자마자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 그 아비가 '상놈이 그 딸을 핍살(逼殺)한 죄'로 발고하여...[170]

상민에게 모욕을 당한 선비의 딸은 곧바로 간수를 마시고 자살했다. 이에 대해 선비는 자신의 딸이 핍살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관에 발고한다. 즉, 선비는 딸의 자살을 핍살에 의한 피살로 인식했던 것이다.

피살로서의 자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자료는『추관지(秋官志)』이다.『추관지』는 18세기 후반 편찬된 자료로서 역대 형정(刑政)과 재판 관련 제도와 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형조 좌랑이었던 박일원(朴一源)의 사찬 저술로 시작되었으나, 국왕 정조의 명령으로 증보되었다.『추관지』권2「상복부(詳覆部)」에는 계복(啓覆), 윤상(倫常), 복수(復讎), 간음(奸淫), 심리(審理)라는 표제 아래 약 250개의 옥사를 분류해 기록했다. 여러 옥사 중에는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각 자살 사건이 포함된 조목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이용득(李龍得)이 가을옷 만들기를 미룬다는 이유로 아내를 책망했는데, 이에 아내가 스스로 목을 찌르고 죽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이용득(李龍得) 옥사는『추관지』「상복부」 윤상(倫常) 살처

169)「송부원금성녀격고(訟夫寃錦城女擊鼓)」의 사회적 갈등과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오수창, 2009「조선후기 야담과 소설에 담긴 사회적 갈등과 신분인식」『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태학사, 419~420쪽 참고.

170)『靑邱野談』 卷4,「訟夫寃錦城女擊鼓」(정환국 책임교열, 2021『정본 한국 야담전집7』, 보고사), "羅州有一士人, 家貧無婢僕, 自樹農業, 而其妻與女亦尋常, 與鄕人無內外之別, 門前有菜田數畝, 其女子年則過笄, 而手自鋤菜, 其隣又有常漢之田, 厥漢亦同時鋤菜, 而微言侵侮其處女, 處女怒曰: "我則兩班, 汝則常漢, 何敢侵侮我乎?" 厥漢曰: "如汝兩班 吾家廳底井井多矣." 處女忿怒, 卽還其家, 飮滷水里死. 其父發告以常漢逼殺其女之罪, ..."

(殺妻)조에 수록되었다.[171] 최맹징(崔孟徵)의 아내 김(金)씨는 강간 시도를 당하여 독을 마시고 죽었는데, 이 사건을 다루는 김봉기(金鳳起) 옥사는 간음(奸淫) 인간살인(因奸殺人)조에 수록되어 있다.[172]

〈표 3〉『추관지』「상복부」 살처(殺妻), 인간살인(因奸殺人) 수록 자살 사건

조목	가해자	피해자	사건 개요
倫常 殺妻	이용득 (李龍得)	김조이 (金召史)	남편이 집안일로 아내를 책망하자, 아내가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사망
奸淫 因奸殺人	김봉기 (金鳳起)	김씨 (金氏)	김봉기가 최맹징의 아내 김씨를 강간 시도 후, 김씨가 음독
奸淫 因奸殺人	김춘동 (金春同)	김조이 (金召史)	김춘동이 김조이를 강간한 후, 김조이가 음독
奸淫 因奸殺人	오일운 (吳日運)	서여인 (徐女)	오일운이 서 여인의 치마를 잡아당긴 후, 서 여인이 스스로 목을 매 사망
奸淫 因奸殺人	이창범 (李昌範)	김이단 (金已丹)	이창범이 김이단을 강간하려 했으나, 김이단이 목을 매 자살
奸淫 因奸殺人	이기대 (李器大)	노 여인 (盧女)	이기대가 노 여인에게 억지로 사주단자를 보내니, 노 여인이 음독
奸淫 因奸殺人	박승문 (朴升文)	황 여인 (黃女)	박승문이 황 여인을 강간한 후, 황 여인이 스스로 목을 사망
奸淫 因奸殺人	강취문 (姜就文)	편련 (判連)	강취문이 편련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자, 편련이 음독

〈표 3〉은『추관지』의 '살처'조와 '인간살인'조에 수록된 자살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자살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자살이 피살당한 것이라는 인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관서지에 수록될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피살(被殺)로 여겨지는 자살 인식은 기층 사회의 일상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자살에 의한 죽음도 복수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복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모습에서 확인된다. 광주의 박정득(朴正得) 옥사가 대표적인 사례

171)『秋官志』卷2 詳覆部 倫常 殺妻, 李龍得獄案
172)『秋官志』卷3 詳覆部 奸淫 因奸殺人, 金鳳起獄案

이다.[173] 문(文)여인이 박정득의 어머니인 조씨가 음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리자, 조씨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이후 약 3년이 지나 박정득이 문여인을 죽이는 복수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형조와 대신, 정조는 모두 박정득을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며, 최종적으로 그를 풀어주게 된다. 옥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대명률』'투구(鬪毆)'조에서 살해당한 부모·조부모에 대해 자식이나 손자가 복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살도 때에 따라 살해당한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에 따라 위협하고 핍박하여 다른 사람을 자살하게 한 사람 역시 살인한 사람으로 여겨져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자살에 대한 다양한 인식 중 피살로 여겨지는 자살이 있다면,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자살 인식 사이에서의 경합이다. 즉, 하나의 자살을 두고 피살당한 자살인지 혹은 다른 유형의 자살인지 다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피살 당한 자살이라는 인식 속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 판단과도 연결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첫 번째는 피살로 여겨지는 자살과 다른 유형의 자살 인식 사이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윤선거(尹宣擧)의 아내 공주 이씨의 자살에서 그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공주 이씨는 병자호란 때 윤선거와 함께 강화도로 피난 갔다가, 청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자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이때 살아서 도망친 윤선거의 행적은 훗날까지 문제가 되었으며,[174] 공주 이씨는 숙종 7년(1681) 정려(旌閭)되었다.[175] 그런데 공주 이씨의 자살에 대한 평가에는 붕당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현종 즉위년(1659), 국왕이 윤선거를 보기를 원하는데, 윤선거가 자신은 죽을 죄를 진 신하라며 거절했다. 이 상황을 설명한 사론(史論)에서 공주 이씨의 자살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173)『審理錄』卷19, 全羅道, 光州牧 朴正得獄 ;『日省錄』, 정조 13년 11월 21일(癸卯) ;『秋官志』卷3 詳覆部 復讎 復母讎, 朴正得獄案

174) 김용흠, 2016「스승을 비판한 백의정승 명재 윤증의 탕평론과 회니시비」『내일을 여는 역사』62,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69~271쪽.

175)『肅宗實錄』卷12, 7년 7월 21일(壬申)

선거의 마음은 대략 이상과 같은데 알지 못하거나[不知] 좋아하지 않는[不悅] 자들이 말하기를 "윤선거가 강도의 난에서 그 아내를 먼저 죽이고[先殺其妻] 자기만 죽지 않은 것을 항상 부끄럽게 여겨 벼슬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절개로서 죽은 것은[死節] 선거가 핍살(逼殺)한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오로지 아내가 죽었는데 함께 죽지 못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거가 상소 가운데서 진술한 것이 대개 그 실상인 것이다.[176]

위 내용에서 공주 이씨의 자살은 두 가지 인식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절(死節)로서 절개를 위한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윤선거가 공주 이씨를 죽였다고 하는 핍살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에만 수록되어 있다. 본래『현종실록(顯宗實錄)』은 숙종 초 남인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경신환국(庚申換局, 1680) 이후 서인(西人)이 집권하여『현종실록』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고, 이에『현종개수실록』이 편찬되었다.[177] 그러므로 위 사론은 서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남인과 서인 사이에 공주 이씨의 자살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사료를 조금 더 음미하면, 공주 이씨의 자살을 인식하는 세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주체는 윤선거를 좋아하지 않는[不悅] 사람들, 즉 남인들이다. 이들은 공주 이씨의 자살을 윤선거에 의한 핍살로 규정한다. 한편, 윤선거를 잘 모르는[不知]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역시 공주 이씨의 자살을 핍살이라고 생각했다. 즉,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도, 공주 이씨의 자살을 윤선거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했던 것이다. 반면, 세 번째 주체이자 위 사론을 작성한 사람은 공주 이씨의 자살을 절개를 위한 죽음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할 필요를 느껴,『현종개수실록』에 위와 같은 사론을 남겼다.

---

176)『顯宗改修實錄』 卷1, 즉위년 7월 18일(丁丑), “宣擧心跡 大略如右 而不知不悅者謂宣擧於江都之亂 先殺其妻 己獨不死 常以爲愧恥 無意供仕云 其妻死節 旣非宣擧之逼殺 其所以自愧者 又非專爲妻死 而不得同死也 宣擧疏中所陳 蓋其實狀也”

177)『현종실록』과『현종개수실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오항녕, 2018「『현종실록』과『현종개수실록』」『후대가 판단케 하라 -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 역사비평사 참고.

중요한 점은 한 자살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이 경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살 인식 사이에서, 살인의 결과로서의 자살과 다른 유형의 자살은 인식 상 경합하기도 했다.

공주 이씨 자살에 대한 인식의 경합은 끝내 공적 영역으로도 확장되었다.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대거 실각한 후, 공주 이씨에 대한 정려(旌閭)가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적으로 그녀의 자살을 사절(死節)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모두 바뀐 것은 아니었다. 특히, 노소분기(老少分岐)와 배사론(背師論) 등 윤선거의 아들이었던 윤증(尹拯)의 정치적 동향에 따라 핍살 혐의는 짙어졌다.[178] 숙종 10년(1684) 윤증이 스승인 송시열(宋時烈)을 비판했다는 신유의서(辛酉擬書)가 논란이 된다. 숙종 13년 윤증을 두둔한 나양좌(羅良佐)의 상소에 반대하여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한성보(韓聖輔) 등이 상소하는데, 그 상소에서는 윤선거의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또 강도의 난리 뒤에는 이미 윤선거가 그의 아내를 핍살(逼殺)했다는 비방이 있었습니다. 대개 강도에서 사절(死節)한 부녀(婦女)들을 즉시 모두 정문(旌門)했었지만, 유독 윤선거의 아내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40, 50년 뒤에서야 비로소 정문하도록 허락했었습니다. 당초에 윤선거도 그의 아내가 자진해서 절개를 지켜 죽어간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세상의 공론이 믿지 않다가, 윤선거가 자신을 30여 년이나 지켜 종신토록 출사하지 않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이 그의 말을 믿음직하다고 여겨, 이렇게 추후의 은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179]

위 언급이 윤선거가 그의 아내를 핍살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돌던 소문과 공주 이씨의 정려가 늦어진 것을 근거로 하여 은연

---

178) 윤증을 중심으로 한 노소분기와 배사론에 대한 설명은 김용흠, 앞의 「스승을 비판한 백의정승 명재 윤증의 탕평론과 회니시비」 ; 이경구, 2018『조선, 철학의 왕국』, 푸른역사 ; 나종현, 2022「18세기 초반 호론계 배사론(背師論)의 전개」『韓國思想史學』70, 韓國思想史學會 참고.

179)『肅宗實錄』卷18, 13년 4월 14일(辛酉), "且江都亂後 宣擧已有逼殺其妻之謗 蓋江都死節婦女 卽皆旌門 而獨宣擧妻未也 四五十年後 始許旌門 當初宣擧 亦非不言其妻自辦死節 而世議不之信 及宣擧自守三十餘年 終身不出 而後世始以其言爲可信 有此追典"

중에 윤선거의 행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윤선거가 아내의 죽음이 사절(死節)이라고 말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상황도 설명했다. 이처럼 공주 이씨에 대한 정려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녀의 자살을 윤선거의 핍살로 인식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윤선거의 핍살 혐의는 병신처분(丙申處分, 1716) 직후 다시 나타난다. 숙종은 송시열과 윤증의 논쟁에 대해 송시열이 옳았다는 판정을 직접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병신처분이다. 이후 윤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윤선거와 윤증을 비판하는 상소도 올라왔다. 숙종 42년(1716) 7월 경기, 충청, 전라 유생 60인의 상소에서 "또 그 아내를 핍살하고 홀로 죽지 않았으며"라며 공주 이씨의 자살을 윤선거의 핍살로 단정했다.[180]

이상의 상황은 자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피살(被殺)로 여겨지는 자살과 다른 유형의 자살 인식이 경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공주 이씨의 자살이 윤선거의 핍살에 의한 것이라는 폄훼는 정치적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사회 전반의 상황이 아닌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언사 역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상황을 기반으로 하며, 그 언사는 다시 타자를 설득해야 하므로 단순히 수사적 표현만으로 일관할 수 없다. 즉, 윤선거의 핍살이 사람들 사이에서 운위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로 선택될 수 있었고, 그것은 타인에게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자살이 살인의 결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피살(被殺)로 여겨지는 자살을 둘러싼 두 번째 상황은 자살의 책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위핍인치사'조를 처리하는 법률적 판단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의 판단 이전에 자살을 대면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판단이 앞선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영조대 역관 홍대성(洪大成) 며느리 최씨의 자살 사건이다.[181] 영조 30년(1754) 4월 28일 정언 정유(鄭楺)가 서평군(西平君)이 홍대성 가문에게

180)『肅宗實錄』卷58, 42년 7월 25일(壬午), "又逼殺其妻而獨不死"

181)『英祖實錄』卷81, 30년 4월 28일(丁未) ;『英祖實錄』卷81, 30년 윤4월 4일(癸丑) ;『承政院日記』1105책, 영조 30년 4월 28일(丁未) ;『承政院日記』1105책, 영조 30년 4월 29일(戊申) ;『承政院日記』1105책, 영조 30년 4월 30일(己酉)

징채(徵債)를 심하게 하여 홍성대의 며느리와 제수(弟嫂)가 자살했다고 아뢰었다. 이어서 서평군을 파직할 것을 요청했다. 영조는 이 문제 인명(人命)에 관련되어 있다고 즉답을 회피한다. 다음날, 대신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영조는 홍봉한(洪鳳漢)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묻는다. 홍봉한은 한성우윤(漢城右尹) 신회(申晦)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는데, 홍성대의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그 직후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영조는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 아버지의 일은 윤리와 관계된 것인데, 살인(殺人)은 종반(宗班)이 아니라, 그 아비가 한 것이다.**[182]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그렇다면 이는 서평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 재물을 아껴 그 딸을 죽게 한 것이니,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다.**[183]

영조의 위와 같은 발언은 최씨 자살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이다. 그 이유는 위 발언을 한 후에 한성우윤 신회를 불러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으며, 다음 날인 30일에 이 사건에 대한 문안을 받아서 대신들과 함께 읽고 논의했기 때문이다. 즉,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내용을 듣기 전에 '최씨의 아버지가 최씨를 죽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살인의 결과로 여겨지는 자살 인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 이 사안에 관한 보고를 들었을 때 영조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서평군이 최씨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최씨의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정보를 듣자, '서평군이 아니라 아비가 죽인 것'이라고 했다. 즉,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자살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한 살인의 결과였고, 그

182)『承政院日記』1105책, 영조 30년 4월 29일(戊申), "而其父之事 係關倫紀 殺人非宗班也 乃其父也"
183)『英祖實錄』卷81, 30년 4월 28일(丁未), "然則此非西平殺之也 其父吝財 使其女死 眞忍人也"

렇다면 누가 살인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 Ⅰ장 2절에서는 ‘위핍인치사’조의 피해 결과로서 자살에 대해 정리했다. ‘위핍인치사’조는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율문이기에, 여러 자살 가운데 해당 율문을 적용할 만한 자살을 판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는 명확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인명(人命)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에 대한 판정은 사망 원인[實因]과 핍박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인명 사건에 대한 첫 조사인 검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당시의 사망 원인은 크게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나뉜다. 즉,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타인에게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행위 주체가 타인이면 오늘날의 타살,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이면 오늘날의 자살에 해당한다. 검험 결과 사망 원인[實因]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면, ‘위핍인치사’조의 피해 결과로서의 자살로 여겨질 수 있었다.

사망 원인[實因]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판정된 모든 자살이 곧 ‘위핍인치사’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협과 핍박의 정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형사 관련 자료에서 핍박의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고가 기록되었다. 만약, 피고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는 핍박에 의한 자살이 아닌 개인적 선택으로서의 죽음이 된다. 핍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심리(審理) 주체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았던 자살, 즉 피고가 기록되지 않는 자살의 경우를 통해 그 판정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핍박이 없었고 다른 자살의 이유가 분명하게 파악된 경우, 자살자가 범죄 행위자인 경우, 당시 사회에서 공인된 위계 질서 내의 갈등 관계에서 자살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를 기록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자살은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당시 사람들은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을 피살(被殺)의 결과로 생각했다. ‘위핍인치사’조에서의 자살은 사망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가해자는 살인의 의도가 없이 위협하거나 핍박한 것이었

다. 그러나 자살로 인한 사망에 가해자를 찾아 처벌하고자 했으며 그 가해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법률하에서, 자살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 행위는 핍살(逼殺)로 표현되었다. 결국, '위핍인치사'조의 피해 결과로서 자살은 핍살(逼殺)에 의한 피살(被殺)로 인식된 것이다.

Ⅱ. ‘위핍인치사’의 실태와 범죄 양상

1. 실태 분석의 시각과 자료

Ⅰ장에서 『대명률』 ‘위핍인치사’조의 법률적 의미와 그 피해 결과로서 자살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의 실태를 중심으로 그 범죄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율문상으로 ‘위핍인치사’조는 ‘인사(因事)’, ‘인간(因姦)’, ‘인도(因盜)’ 등을 원인으로 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핍박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이 어떤 것일지라도 혹은 위협과 핍박의 강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으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은 그 피해 결과인 자살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과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의 형사(刑事) 관련 자료에서 발견되는 자살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한다. ‘위핍인치사’조라는 법률과 자살을 형법으로 처리하는 법적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刑事) 관련 자료에 기록된 자살은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의 피해 사실로 여겨지던 자살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살을 실태 파악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실태 파악의 대상이 된 자살을 분류한 첫 번째 기준은 사망 원인[實因]이 분명하게 자살인 경우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는 것은 인명(人命)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고, 검관(檢官)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살과 타살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가령, 『심리록』의 김영룡(金永龍) 옥사가 그러하다.[1] 초검에서는 피해자 김명웅(金命雄)이 목을 맨 것이라고 했으나, 복검과 삼검에서는 구타당하여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세 차례 검험(檢驗)을 했음에도, 자살과 타살을 구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당시

1) 『審理錄』 卷16, 咸鏡道, 慶興府 金永龍獄.

사람들이 자살과 타살을 명백하게 판명하지 못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 기준은 해당 옥사 내에서 피해 사실로서 처리된 자살을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심리록』에 수록된 김창윤(金昌允) 옥사에서는 김창윤의 첩이 음독 자살한 사례가 나온다.[2] 사비(私婢) 엇단(叱丹)이 첩의 추행을 폭로했는데, 첩이 그것을 듣고 자살한 것이다. 그러자 김창윤이 엇단을 구타하여 죽게 했다. 해당 옥사의 피해 사실은 엇단의 사망이며, 그 가해자는 김창윤이다. 첩의 자살은 해당 옥사에서의 피해 사실이 아니며, 첩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엇단도 옥사의 피고가 아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첩의 자살은 실태 파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刑事) 관련 자료 내에서 자살이 피해 사실로서 기록된 사건만을 실태 파악의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가해자인 피고(被告)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Ⅰ장 2절 ⑴항에서 살펴본바 피고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는 자살로 판정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형사(刑事) 관련 자료에서 사망 원인이 분명하게 자살로 판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옥사에서 피해 사실이 되는 자살과 그 가해자인 피고(被告)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의 실태와 '위핍인치사'의 양상을 다룰 것이다.

'위핍인치사'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조선 시대 살옥(殺獄)의 처리 절차와 자료의 문제이다. 먼저 조선 시대 살옥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3] 첫 번째 단계는 신고

2) 『審理錄』 卷24, 全羅道, 順天府 金昌允獄.

3) 조선 전기 형사 절차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田中俊光, 2011 『朝鮮初期 斷獄에 관한 硏究-刑事節次의 整備過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학위 논문 참고, 조선 후기 살옥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조윤선, 2021 「조선 후기 삼복(三覆) 제도 연구」 『法史學硏究』 64, 韓國法史學會 ; 문준영, 2022 「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 : 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 『법과 사회』 69, 법과사회이론학회 ; 문준영, 2022 「19세기 '심리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일성록』·『추조결옥록』·장계등록을 이용한 살옥사건 기록의 재구성-」 『民族文化』 제60집, 한국고전번역원 참고, 조선 후기 서울 지역의 살옥 사건의 처리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유승희, 2014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학사, 43~45쪽 ; 이선희 2017, 『

에서 성옥(成獄)까지이다. 거의 모든 사건은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살인 사건이나 변사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수령이 초검(初檢)을 진행한 후 관찰사에게 보고했다. 관찰사는 인근 고을 수령에게 복검(覆檢)을 지시하고, 복검관(覆檢官)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관찰사는 초검과 복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했다. 만약, 병사(病死)나 사고사와 같이 살옥 관련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비살옥 사건으로 처리했다. 만약 살옥 사건으로 판단된다면, 죄인을 살옥 죄인으로 수금함으로써 성옥(成獄)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동추(同推)에서 완결(完決)까지의 단계이다. 동추는 관할 수령과 인근 수령이 합동으로 죄인과 증인을 심문하는 것이다.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며 남긴 『완영일록』에서는 보통 초검관과 복검관이 그대로 동추관이 되어 조사를 진행했다. 매월 세 차례 동추를 해야 하고 이때 죄인에게 고신(拷訊)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동추 후에 범죄 사실이 분명해지고 죄의 유무가 가려지면, 관찰사는 조사를 마치고 완결한다. 이때 만약 죄인에게 내릴 형량이 유형(流刑) 이하로 관찰사가 직단(直斷)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관찰사가 직접 처결했다. 만약 관찰사가 직단(直斷)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검험과 동추의 내용 및 자신의 의견을 포함한 장계를 올렸다. 해당 사건이 국왕에게 처음 보고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국왕의 숙의 과정으로 보통 심리(審理)·소결(疏決)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관찰사가 올린 장계를 대상으로 했다. 장계가 올라오면, 형조가 검토한 후 의견을 달아 국왕에게 아뢴다. 국왕은 검안부터 형조의 의견까지 열람한 후 판부(判付)를 내리는데, 판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대신에게 내용을 문의하라고 하면 대신의 의견을 받아 다시 아뢰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찰사에게 다시 동추할 것을 지시했다. 혹은 따로 사관(査官)을 임명하여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도 있는데, 방송(放送)에서 정배(定配)까지 사형 이외의 처분을 명하기도 했다. 간혹 국왕의 특명으로 밀려 있는 살옥안을 보고하도록 하여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고, 백성들이 격쟁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

19세기 전반 서울의 刑政運營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65～175쪽 참고.

고 그 내용을 보고받아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은 사형(死刑)을 집행해야겠다고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보통 계복(啓覆) 혹은 삼복(三覆)이라고 한다. 죄인에게 지만(遲晩) 공초와 결안(結案)을 받으면, 형조의 조율(照律), 의정부의 상복(詳覆)과 삼복(三覆)을 진행한 후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시기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사이에는 강상·역모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살옥에 대해서는 계복을 진행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사건이 세 번째 단계인 국왕의 심리(審理)에 의해 종결되었다.[4)]

정리하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위핍인치사' 사건에 대한 처리는 일반적인 살옥의 처리 절차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첫 번째가 신고에서 성옥, 두 번째가 동추에서 완결, 마지막이 국왕의 심리이다.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그 목표가 조금씩 다르며, 각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의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초검과 복검이 이루어지는데, 사망자의 사망 원인[實因]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이때 남겨진 기록이 검안(檢案)이다. 검안에는 오늘날의 부검과 같은 검시(檢屍)의 내용과 유가족과 가해자, 목격자 등 주변인에 대한 최초 심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합동 조사인 동추(同推) 전후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찰사가 해당 사건을 직단(直斷)할지 국왕에게 보고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왕에게 보고된다면 관찰사의 장계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찰사가 직단(直斷)한 경우 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서유구(徐有榘)의 『완영일록(完營日錄)』과 같이 관찰사가 남긴 기록이나 각 지역에서 산출된 보첩(報牒)류 자료를 통해 파편적으로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5)] 마지막은 국왕의 심리 과정이다. 18세기

4) 19세기 계복이 시행되지 않고 국왕의 심리만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윤선, 앞의 「조선 후기 삼복(三覆) 제도 연구」 ; 문준영, 앞의 「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 : 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 ; 문준영 2022, 「사형 판결 없는 살옥죄인의 처리와 징벌-19세기 살옥 사건 심리·처결의 경향과 특징-」『한국문화』 9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고.

5) 최근 1797년에서 1802년까지 충청도 연기현에서 감영에 올린 보첩(報牒), 관할 면(面)에 보낸 전령(傳令)을 모아놓은 『기양문적(岐陽文籍)』에서 여성의 사망과 관련한 사건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김동일, 앞의 「죽은 여성의 복수 부촉(咐囑)과 설원(雪冤) 대행(代行)」)

후반 이후에는 국가의 최종 판결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이 정조(正祖)의 심리(審理) 기록을 모은 『심리록(審理錄)』이다. 정조대 이후에는 『일성록(日省錄)』에서도 비교적 충실한 심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현재로서 '위핍인치사'와 관련하여 사법 처리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구성하는 것도 온전할 수 없다. 『심리록』과 『일성록』에는 검안이나 장계 내용은 대폭 생략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절차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간단한 사건의 개요와 국왕의 의견만 파악하게 된다. 중앙 정부에 보고된 사건의 검험, 동추 과정, 형조의 논의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산출된 자료들은 취합하여 하나하나 대조하여 찾아야 한다. 반대로 현존하는 검안에 수록된 사건은 거의 19세기 후반에 분포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전의 검험 과정은 매우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 사건에 대해서 검험에서 국왕의 심리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각 단계에 남아 있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각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별로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할 때, 함께 염두에 둘 것은 사건의 첨예함이 자료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초검과 복검을 기록한 검안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모든 자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위협과 핍박의 강도가 약한 사건이거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 등 대체로 경미한 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간혹 피고가 기록되지 않아 '위핍인치사'로 보기 어려운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국왕이 심리하는 자살의 경우, 매우 첨예한 사건이거나 성(性)·강상(綱常) 문제와 연결된 중대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검안류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자살과 『심리록』을 통해 파악하는 자살은 그 실태와 범죄의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또 중요하게 짚어야 하는 점은 '위핍인치사'조의 형량으로 인해 그와 관련한 사건은 관찰사의 직단(直斷)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Ⅰ장 1절 ⑴항에서 정리한 것처럼, '위핍인치사'조의 기본 형량은 장

100이며, 자살자와 피고의 친족 관계와 간음·도둑 등 핍박의 원인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정해졌다. 특히,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할 관계의 윗어른에 대한 '위핍인치사'와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 '도둑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에 대한 형벌은 각각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었고, 그 외 경우는 유형(流刑) 이하의 형벌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관찰사가 직단(直斷)할 수 있는 형량이 유형(流刑)까지였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관찰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고, 어떤 경우에는 국왕에게 보고된 것이다. 즉, 국왕이 심리하게 된 자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거나 첨예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살옥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다른 성격의 자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자료별로 '위핍인치사'의 실태에 접근한다면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른 편차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완영일록』에 기록된 자살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완영일록』은 서유구가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며 남긴 기록이다. 각 분야의 행이 문서가 매우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검안, 동추 등에 대해서 서유구가 직접 내린 뎨김[題辭]과 국왕에게 보고한 심리 장계 등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표 4〉『완영일록』 내 자살의 발생 상황

문서 종류	자살의 종류 및 처리 결과	자살 건수
검안 및 사안	기타 자살	14
	'위핍인치사'조 자살	36
심리 장계	'위핍인치사'조 자살	1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자살은 총 50건이다. 그중 14건은 앞서 Ⅰ장 2절 ⑴항에서 다룬 것처럼,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고자 했던 자살이다. 그 외 36건은 피고(被告)와 사망 원인[實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가 되는 자살이다. 중요한

점은 36건의 자살 중 국왕에게 보고된 경우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36건의 자살은 모두 관찰사의 판결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실은 『완영일록』에 기록된 자살과 『심리록』·『일성록』에 기록된 자살 사건의 경중(輕重)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즉, 살옥 처리의 첫 단계에서 산출되는 자료인 검안류 자료에서는 매우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혹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 아님에도 검험(檢驗)이 이루어져 기록될 수 있었다. 또한, 현실에서 거의 모든 사건은 관찰사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국왕에게 보고된 자살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 한편, 서유구가 재직기간 동안 국왕에게 보고한 자살 사건은 한 건인데, 바로 최평군(崔平軍) 옥사이다.[6] 해당 사건은 약 18년 전인 1815년

6) 〈주요 사건 3〉 최평군(崔平軍)의 핍박으로 인해 송덕이(宋德已)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으로 서유구의 『완영일록』과 『일성록』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1815년 익산의 최평군 외 3인은 송덕이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진영(鎭營)의 군교(軍校)라고 가탁하고 송덕이를 핍박했다. 네 사람이 송덕이를 구타하고 진영으로 끌고 가려고 시늉을 하자, 송덕이가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네 사람 중 최평군만 체포되어 수금되었다. 초검관이었던 고산현감 어재완(魚在琓)은 사망 원인[實因]으로 '피타후 자익치사(被打後 自溺致死)'라고 기록했으며, 피고(被告)는 최평군으로 기록했다. 복검관이었던 용안현감 조형진(趙亨鎭)은 사망 원인[實因]은 초검과 같으나, 최평군을 정범(正犯)으로 기록해 보고했다. 1821년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서구(李書九)는 장계를 올려 중앙에 해당 사건을 보고했다. 형조는 해당 사건을 강도 살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므로 최평군을 정범이 아닌 피고로 기록한 초검관을 추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엄형을 통해 해당 옥사의 사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최평군은 약 20년간 수금되어 500여 차례 형추를 받았다. 1831년 형조에 의해 한 차례 국왕에게 보고되었으며, 1833년 서유구가 해당 옥사에 대한 장계를 다시 올린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옥사를 강도 살인으로 보고 최평군을 정범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로 보고 피고로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서유구의 장계에서도 최평군을 정범으로 칭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서유구는 송덕이가 구타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에 빠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네 사람에게 적용될 율문은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유구는 해당 장계에서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라고 하더라도 강도로 인한 살인은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근거로 네 사람의 형벌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최평군 외 두 명이 추포되어 수차례 형신을 가하고 방송하였는데, 앞서 수금된 최평군은 여전히 수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구는 최평군 외 두 명을 충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두 사람에게는 차율(次律)이 시행되었으며, 최평군은 계속 신추(訊推)을 받았다. 2년 후에 전라도 관찰사 김흥근(金興根)이 다시 장계를 올렸으며, 국왕은 최평군에게 상명(償命)하기는 어렵다며 경전(輕典)을 시행하라고 했다. 최종 판결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최평군은 약 20년간 수금되어 형추를 받은 후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다. (『日省錄』, 순조 21년 7월 27일(乙亥) ; 『日省錄』, 순조 31년 2월 29일

에 발생했는데, 1821년 당시 관찰사였던 이서구(李書九)에 의해 처음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그 후 1831년 형조에서, 1833년 전라도 관찰사였던 서유구(徐有榘)에 의해 다시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1835년인 헌종(憲宗) 1년 최종적으로 처리되었다.

각 자료별로 사안의 경중을 달리한다는 설명에 대해 첨언하면, 『심리록』에 수록된 인명 관련 범죄는 약 1000건이지만,[7] 대부분 살인 사건이다. 『심리록』에서 '위핍인치사'로 판단되는 사건의 수는 40건에 불과하다. 반대로 『완영일록』에서 서유구가 1년 9개월 동안 뎨김[題辭]을 내린 인명 범죄는 총 96건으로 타살이 36건, 병사와 같은 기타 사망이 10건이었고, 자살이 50건이었다.[8] 본 논문은 50건의 자살 중 36건을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자살로 규정한 것이다. 즉, 당시 사회에서는 타살보다 자살이 더 많이 발생했으며, '위핍인치사'와 타살의 발생률은 거의 비슷했다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왕에게 보고되는 사건은 타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살이 보고되는 것은 희소한 경우였다. 이는 자살보다 타살이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왕에게 보고될 정도의 자살은 그 사안이 매우 중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법 처리 단계마다 산출되는 자료별로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하면, 일관된 기준을 가진 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살을 처리하는 각 단계마다 드러나는 자살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살옥 처리의 첫 절차에서 산출되는 검안류 자료를 통해서는 일반 백성들이 직접 대면하는 자살과 신고하는 자살, 관련인들의 생생한 진술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국왕의 심리 기록 속에서는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던 자살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료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규장각 소장의 검안류 자료, 서유구의 『완영일록』, 정조대 『심리록』과 순조~철종까지 『일성록』의 살옥 심리 기사, 『사법품보』를 바탕으로 하여 '위핍인치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壬子) ; 『日省錄』, 순조 33년 10월 5일(壬寅) ; 『日省錄』, 헌종 1년 12월 11일(乙丑) ; 『完營日錄』 卷1, 癸巳年, 7월 26일)

7) 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8) 김선경, 2012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옥 사건과 심리: 『완영일록』의 분석」 『역사교육』 122, 역사교육연구회, 95~96쪽.

한다.

마지막으로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할 개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규장각 소장 검안 자료이다. 검안은 조선시대 인명 사건에 대한 최초 조사 기록이다.[9] 인명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수령이 1차 조사를 인근 수령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관찰사는 개별적인 두 조사를 보고 받고 큰 의심이 없다면, 이후 사법 절차를 진행했다. 만약,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3차 혹은 그 이상의 검험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 보고서가 검안류 자료이다. 검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건의 관련자들을 심문한 기록이며, 다른 하나는 시체에 대한 검사 보고서인 시장(屍帳)이다. 보통 유가족인 시친(屍親)과 가해자인 정범(正犯)·피고(被告)를 비롯한 관련자의 진술을 받은 후, 시체를 검사했다. 그리고 다시 관련자의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는 약 600여 종에 달하는 검안류 자료가 있다.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검안류 자료의 단점은 시기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적 분포가 불균등하다는 것이다.[10] 그러나 인명(人命) 사건의 1차 조사 보고서라는 점에서 기층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실상과 당시 민중의 직접적인 진술 파악하고 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논문은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를 통해 자살 문제를 살펴본 선행 연구를[11] 기반으로 ‘위핍인치사’의 실태에 접근한다.

두 번째 자료는 서유구의 『완영일록』이다.[12] 서유구는 1833년 4월부터

---

9) 이하 검안류 자료에 대한 설명은 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 김호, 앞의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 ; 김호, 2015 「검안, ‘예외적 정상’의 기록들」『藏書閣』,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 검안 자료와 관련한 연구사 검토는 심재우, 2017 「조선후기 범죄와 판례 연구의 현황」『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49~54쪽 참고.

10) 다만,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지역은 황해도 지역인데, 이는 당시 황해도 지역에 유리민이 운집했던 사실과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큰 군현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김호, 앞의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 164쪽 참고.)

11) 오승관, 앞의 「19세기 말 ~ 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

12) 서유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유봉학, 2013 「‘실학자’-풍석 서유구의 학문과 사상」『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참고, 『완영일록』에 대한 해제는 김순석, 2019, 「풍석 서유구의 《완영일록(完營日錄)》, 『완영일록』 1, 흐름 참고, 『완영일록』을 주요

1834년 12월까지 21개월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했는데, 이때 공무를 기록한 자료가 『완영일록』이다. 『완영일록』에는 전라도 관찰사로서 처리했던 행이 문서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15종 1,071건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인명 사건의 처리 기록이 충실한 편인데, 각 군현에서 올라온 검안(檢案), 사안(査案), 동추장(同推狀) 등에 대해 처결한 서유구의 뎨김[題辭]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완영일록』은 2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전라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만 기록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 명의 관찰사에 의해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위핍인치사'가 관찰사의 직단(直斷)으로 처리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사회가 자살을 처리하는 실질적·공식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유구가 재직하던 때에 발생하여 기록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 자료는 『심리록』과 『일성록』의 살옥(殺獄) 심리(審理) 기사이다. 『심리록』은 국왕 정조(正祖)의 판부를 모아놓은 자료이다.[13] 사건에 대한 개요와 관찰사·형조의 계사 등을 요약해두었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인 정조의 판부가 수록되어 있다. 『심리록』에서는 약 천 여건의 옥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40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조대 이후 국왕의 심리 기록은 『일성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14] 형조는 지방에서 올라온 살옥안을 취합하여 주기적으로 국왕에게 복계했다. 국왕은 이를 심리하여 처결했다. 당시 백성들은 격쟁을 통해 인명(人命) 사건 자체를 국왕에게 알리기도 했는데, 국왕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지시하고 추후에 보고받았다. 살옥과 관련한 심리와 격쟁에 대한 내용도 모두 『일성록』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은 살옥 심리 기록이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는 순조대에서 철종대까지를 중심으로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자료로 활용하여 관찰사의 사법 처리 실태를 밝힌 연구는 김선경, 앞의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옥 사건과 심리: 『완영일록』의 분석」 ; 심희기, 2021 「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 『古文書硏究』 58, 한국고문서학회 참고.

13) 『심리록』 판본, 체제 및 가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25~27쪽, 73~103쪽 참고.

14) 범죄·살옥 사건을 수록한 『일성록』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유승희, 「조선 시대 범죄의 기록, 『일성록』」, 앞의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문준영, 앞의 「19세기 '심리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 참고.

『심리록』과 『일성록』을 통해 파악하는 '위핍인치사'의 의미는 당시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여긴 자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현 단위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자살이 국왕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완영일록』의 사례를 통해 보면, 국왕에게 자살이 보고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관찰사에 의해 자체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국왕에 보고된 자살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정조대에서 철종대까지 약 100년에 가까운 시기를 대상으로 비교적 일관된 체계로 쓰인 기록을 바탕으로 자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자살의 시계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료는 『사법품보』이다.[15] 『사법품보』는 갑오개혁 이후 지방 재판소가 법부에 보낸 문서를 모아놓은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각 지역에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외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16] 각급 재판소는 종신 유배·징역과 같은 형을 내려야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해야 할 경우, 법률 적용의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법부의 지령을 요청하여 판결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취합된 문서를 모아놓은 자료가 『사법품보』이다. 『사법품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자료이고, 외형상 일지라도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라는 점에서 본 논문이 주로 활용하는 자료와 다소 결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 먼저 1905년까지 근대적 형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명률』이 준용되었다. 이는 '위핍인치사'조가 여전히 자살을 다루는 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1905년 간행된 『형법대전』에서도 '위핍인치사'조와 유사한 조문이 계속 유지되었다.[17]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시대와 같은 방식의 검험 조사가 계속되었다는 점, 지방 재판소의 판·검사는 여전히 수령과 관찰사가 겸직했다는 점 등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사법품보』에 기록된 자살을 정리한 선행 연

15) 『사법품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도면회, 2018 「사법품보를 통해 본 갑오개혁 이후 사법제도의 운영」 『역주 사법품보』 1, 봄날의책 참고.
16)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은 문준영, 2010 『법원과 검찰의 탄생-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 도면회, 2014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 이승일, 2021 『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경인문화사 참고.
17) 원재연, 앞의 「1890년대 후반 유교 이념과 위핍률(威逼律)」

구를 바탕으로[18]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5〉 '위핍인치사'의 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자료의 성격과 시기 분포

<table>
<tr><th>살옥의 처리 절차</th><th colspan="6">실태 파악에 활용되는 자료</th></tr>
<tr><td>1단계
(신고~성옥)</td><td colspan="4" rowspan="3"></td><td colspan="2">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td></tr>
<tr><td>2단계
(동추~완결)</td><td colspan="2">『완영일록』</td><td colspan="2" rowspan="2">『사법품보』</td></tr>
<tr><td>3단계
(심리)</td><td>『심리록』</td><td colspan="3">『일성록』</td></tr>
<tr><td>왕대</td><td>정조</td><td colspan="2">순조</td><td>헌종</td><td>철종</td><td>고종 전반기</td><td>고종 후반기</td></tr>
</table>

이상 본 논문이 활용할 자료의 성격과 시기 분포를 정리하면 위 표와 같다. 살옥의 처리 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처음 산출되는 자료가 연구 대상 시기에서 가장 뒷 시기에 분포한다. 반대로 살옥 절차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국왕의 심리 기록은 시기적으로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의 시계열적 성격 변화보다는 살옥을 처리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시기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완영일록』, 국왕의 심리 기록 순서로 자살의 실태를 파악하며, 참고 자료로서 『사법품보』에서의 양상을 함께 정리한다.

18) 송지영, 앞의 「『사법품보(司法稟報)』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1895~1906)」

2. 실태 분석

Ⅱ장 1절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형사 관련 기록 중 피해 사실로서의 자살, 가해자인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자살, 사망 원인이 분명히 자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⑴항에서는 기초적인 사항들을 확인한다. '위핍인치사' 사건 발생의 시기별 추이와 자살자의 성별·연령, 자살의 원인이 되는 사건 유형 등을 다룰 것이다. 이어서 ⑵항에서는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를 확인한다.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단순히 자살자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해당 자살은 살인의 결과로서의 자살이면서, 피고에 의해 발생한 자살이기에 반드시 자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위핍인치사'의 실태와 범죄 양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살자와 피고의 연령·성별 관계, 가족 관계, 신분 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⑶항에서는 위협·핍박의 양상을 정리한다. 이는 자살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폭력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된다.

⑴ 기초적인 사항

본 항에서는 '위핍인치사'의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먼저, 자료별로 실태 파악의 대상이 된 '위핍인치사'의 사건 수는 다음과 같다.

〈표 6〉 자료별 '위핍인치사'의 총 사건 수

자료	『심리록』	『일성록』	『완영일록』	검안류 자료	『사법품보』
건수	40	58(61)	36	75	129(130)

*비고 : ( )의 수치는 총 자살자의 명수이다. 한 사건에서 두 명 혹은 세 명이 자살한 경우이다.

먼저 『심리록』에서의 자살 사건은 총 40건,[19] 『일성록』 살옥 복계에서의 자살 사건은 58건, 총 자살자는 61명이다.[20] 앞서 설명한바, 이는 당시

전국에서 발생한 자살의 총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왕에게 보고되어 국왕이 심리한 '위핍인치사' 사건 수를 의미한다. 『완영일록』에서의 '위핍인치사' 사건 수는 36건이다. 서유구가 보고 받은 자살이 총 50건이므로, 전체 자살 기록의 약 70%가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로 판단된 것이다. 검안류 자료에서는 약 75건의 해당 자살을 확인할 수 있다. 검안류 자료에서 발견되는 자살 중 11건은 피고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21] 마지막으로 『사법품보』에서는 총 129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22]

먼저 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위핍인치사' 사건 발생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심리록』 수록 '위핍인치사' 사건의 시기별 발생 추이는 〈표 7〉과 같다.

---

19) 『심리록』 내 자살 건수에 대해 심재우는 40건으로(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145쪽), 김현진은 47건으로(김현진, 앞의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자살 실태와 그 사회적 함의」, 203쪽) 정리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살을 파악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20) 문준영은 순조에서 갑오개혁 직전까지(1801~1893) 총 2677건의 살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 중 피해자가 자살하여 '위핍인치사'조가 성립되는 경우는 38건(1.4%)이라고 보고했다.(문준영, 앞의 「사형 판결 없는 살옥죄인의 처리와 징벌-19세기 살옥 사건 심리·처결의 경향과 특징-」, 317쪽 참고) 본 논문은 순조~철종대까지 총 61건의 '위핍인치사'조 자살을 정리했다.

21) 필자는 검안류 자료에서의 자살 실태를 분석하면서 86건의 자살을 분석한 바 있다.(오승관, 앞의 「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 참고.) 이 중 11건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본 논문이 제시한 '위핍인치사'조 자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2) 『사법품보』 내 '위핍인치사'조 자살은 송지영이 제시한 『사법품보』 내 자살 목록을 활용했다. 송지영은 『사법품보』에 기록된 자살 및 자살 관련 사건 195건을 정리한 바 있다.(송지영, 앞의 「『사법품보(司法稟報)』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1895~1906)」) 본 논문은 송지영이 정리한 자살 사건 중 본 논문이 제시한 '위핍인치사'조 자살 기준에 부합하는 자살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7〉『심리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시기별 발생 추이

연도	성옥(成獄)	최초 판부	연도	성옥(成獄)	최초 판부
1738	1		1787	1	
1775	1		1789		1
1777	1		1790		2
1778	2	1	1791	2	
1779	4	1	1792		1
1780	6		1794	2	1
1781	6	4	1795	1	2
1782	3	10	1796	3	
1783	1	2	1797	2	3
1784	1	5	1798	1	3
1785	1	3	1799		1
1786	1				

『심리록』에 수록된 사건에 대해서는 성옥 연도와 최초 판부 연도를 확인할 수 있다.[23] 성옥은 가해자가 인명 사건의 피고로 수금된 시점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가깝다. 최초 판부 연도는 정조(正祖)가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 처음 판부를 내린 시점이다.『심리록』 내에 수록된 40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자살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니라 국왕에게 보고된 자살이라는 점에서 성옥 연도보다 국왕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최초 판부 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을 때는 한 해에 한 건의 자살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많을 때는 10건까지 보고 받기도 했다.[24] 정조는 약 24년 동안 40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 1.6건이 된다.

다음은 순조~철종대『일성록』에 수록된 '위핍인치사' 사건의 시기별 발생 추이이다.『일성록』의 경우에도 성옥(成獄) 연도와 초출(初出) 연도를 구

23)『심리록』 내 성옥 연도와 최초 판부 연도에 대해서는 심재우, 앞의『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103~106쪽 참고.

24) 1781~1783년 사이는 정조의 즉위 직후 혼란이 극복되고, 국정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른 시기이다. 이때 정조는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심재우, 앞의『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114쪽 참고.)

분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성옥 연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앞서, 『심리록』에서 국왕의 최초 판부를 기준으로 한 것과 같이 국왕에게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건의 초출(初出) 연도가 중요하다. 이에 초출(初出) 연도를 기준으로 시기별 발생 추이를 정리했다.

〈표 8〉『일성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시기별 발생 추이

연도	초출(初出)	연도	초출(初出)
1798	1	1828	2
1800	1	1830	1
1805	2	1832	2
1806	3	1836	2
1807	1	1838	2
1808	2	1842	4
1809	4	1846	1
1810	1	1847	2
1813	2	1848	2
1815	1	1850	1
1820	1	1852	4
1821	4	1853	1
1824	2	1855	1
1825	2	1857	1
1827	3	1858	2

〈표 9〉『심리록』·『일성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연대별 발생 추이

연대	최초 보고 시점
1770년대	2
1780년대	25
1790년대	14
1800년대	13
1810년대	4
1820년대	12
1830년대	7
1840년대	9
1850년대	10

1798년에서 1858년까지 60년 동안 58건이 국왕에게 보고된 것으로 한 해 평균 1건 정도이다. 그러나 한 해에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해가 30여 년이며, 두 건 이상 보고된 해는 18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리록』과 『일성록』에서의 자살은 국왕에게 보고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같다. 그러므로 두 자료에서 확인한 '위핍인치사' 사건의 발생 추이를 연대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표 9〉와 같다. 평균적으로는 10년에 약 10여 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1780년대는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10〉『완영일록』 내 '위핍인치사' 사건의 월별 발생 추이

연도	1833			1834			
월	4~6	7~9	10~12	1~3	4~6	7~9	10~12
건수	4	4	7	4	7	4	6

다음은 『완영일록』에서의 '위핍인치사' 사건 발생의 월별 추이이다. 『완영일록』은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약 21개월 동안 기록된 자료로서 월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3개월을 한 단위로 하면, 적을 때는 4건, 많을 때는 7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이 관찰사에게 보고되었다. 당시 관찰사는 3개월에 평균 5건 정도의 관련 사건을 보고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살 발생에 있어 계절에 따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하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국왕은 한 해 평균 약 1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을 보고 받아 심리했으며, 관찰사는 3개월에 약 5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을 보고받아 처리한 것이다.[25]

다음으로 피해자인 자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다. 실태 파악의 대상 자료 중 자살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검안류 자료뿐이다. 검안류 자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하여 진술한 사람들의 연령까지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검안류 자료 내에서 자살자의 연령과 성별을

25) 검안류 자료와 『사법품보』는 일관된 기준으로 생산되거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생산되어 기록된 것으로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만,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내 자살자의 연령과 성별

성별 / 연령	자살자 수		합계(명)	비율(%)
	남성	여성		
10대 이하		2	2	2.81
20~29		14	14	19.7
30~39	3(1)	8	11(1)	16.9
40~49	7(2)	5(1)	12(3)	21.1
50~59	13	6	19	26.8
60대 이상	6	3	9	12.7
미상	2	2	4	
합계(명)	34	41	75	
비율(%)	45.33	54.66		100

*비고 : ( )의 수치는 연령이 불분명하여 屍帳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가령, 『靈山郡道沙面車衣洞金三敦致死初檢案』(奎 25195)에서 김삼돈의 연령은 '三十○'으로 일부 결락되어 있으나, 屍帳에서는 37~38세로 보인다고 하였다.

주목할 점은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20대 이하 자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전체 여성 자살자 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았다. 반면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가 발생한 구간은 50대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살자의 평균 연령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성 자살자의 평균 연령은 36.44세, 남성 자살자의 평균 연령은 52.17세였다. 즉, 여성은 어릴수록 '위핍인치사'의 피해자가 될 경우가 많았고,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위핍

검안류 자료와 『사법품보』에서의 '위핍인치사'조 자살의 발생 추이

연도	검안류 자료	『사법품보』	연도	검안류 자료	『사법품보』
1885	1		1900	3	7
1889	1		1901	5	12
1894	1	1	1902	5	13
1895	4	6	1903	4	11
1896	4	11	1904	6	11
1897	12	13	1905	1	1
1898	9	15	1906	11	16
1899	5	13	미상	3	

인치사'의 피해자가 될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살 발생에 있어 연령 분포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12〉 자료별 자살자의 성별 분포

성별 / 자료	자살자 수(%)	
	남	여
검안류 자료	34(45.33)	41(54.66)
『완영일록』	17(47.2)	19(52.8)
『심리록』	10(25)	30(75)
『일성록』	21(34.4)	40(65.6)
『사법품보』	49(37.7)	81(62.3)

〈표 12〉은 자살자의 성별을 자료별로 살펴본 것이다. 모든 자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남성 자살보다 여성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률 통계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한국 사회의 자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살 가운데 남성 자살은 68.9%, 여성 자살은 31.1%였다.[26] 이는 19세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뒤르켐의 『자살론』에 따르면, 유럽에서 여성 자살은 남성 자살에 비해 5분의 1 또는 6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 차이가 가장 적었다고 한 영국의 경우 여성 천 명꼴로 남성 2700명이 자살했다.[27] 그러므로 자살 관련 연구 중 일부는 남성이 왜 더 많이 자살하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28] 이런 점에서 조선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자살했다

---

26) 『2022 자살예방백서』

27) 에밀 뒤르켐 저, 황보종우 옮김, 앞의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201쪽

28) 가령, 고전 사회학 이론의 뒤르켐은 여성의 자살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그만큼 여성이 집단생활에 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에밀 뒤르켐 저, 황보종우 옮김, 앞의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392쪽 참고) 사실 뒤르켐은 여성 자살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살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고 보는 그의 견해에 비춰보면, 사회적 활동이 저조한 여성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당연했다.
최근에 조이너(Joiner)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자해 능력 획득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사는 남성들은 자해 능력을 획득하기 쉬운 반면,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남성들의 자살 시도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여성들의 자살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

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29]

한편, 자료별 경향성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는 전체 자살 중에 여성 자살이 50%를 약간 넘는 수치이다. 그런데, 『심리록』에서는 75%, 『일성록』에서는 약 65%가 여성의 자살이었다. 이는 기층 사회에서의 자살 발생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많은 정도이지만, 국왕에게까지 보고된 사건은 여성 자살이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품보』에서의 여성 자살도 약 62%로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보다 높았으며, 『일성록』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법품보』도 중앙 부처인 법부(法部)에 보고·질품한 사건이 수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심리록』·『일성록』과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기층 사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더 많이 자살했지만,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게 다루어진 자살은 여성의 자살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의 원인이 된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갈등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으며, 한 사건이 반드시 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심리록』을 다룬 선행 연구의 사건 원인 분류를 참고하여[30] 가정 불화, 갈등 및 우발, 부세 및 관(官), 사형(私刑), 산송, 성(性), 재물 및 경제로 나누었다.

'가정 불화'는 가정 내 문제로 인해 자살이 발생한 경우이다.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친척, 인척 관계일 때 이 유형에 해당한다. 『심리록』

것이다.(John F. Gunn III, David Lester 저, 김영범·양준석·유지영·이정은 옮김, 2019 『자살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 박문사)

29) 현재로서 여성의 높은 자살률을 해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해당 자살이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자살과 다른 유형이라는 점은 짚어둔다. 해당 자살은 '위핍인치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살이다. 현재는 '위핍인치사'와 같은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자살의 유형·특성, 자살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 과거와 현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당시 여성의 높은 자살률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유형, 당시 사람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이 현재 우리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30) 해당 유형 분류는 『흠흠신서』 「상형추의」의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심리록』의 살인 사건 원인을 분류한 심재우의 방식을 참고했다. (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150쪽.) 심재우의 유형 분류 중 자살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과실 및 사고', '복수(復讐) 및 위친(爲親)'는 제외하였고, '음주'는 '갈등 및 우발'에 포함하여 분류했으며, '성관계'와 '여성(女性) 및 추문(醜聞)'은 한 범주로 묶어 파악했다.

에 수록된 이용득에 의한 김조이(金召史)의 자살과 『완영일록』에 수록된 조수정에 의한 강조이(姜召史)의 자살과 같은 사건이 가정 불화에 해당한다. 함경도 단천의 이용득은 가을 옷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 김조이를 구박했는데, 김조이가 스스로 목을 찌르고 죽었다.[31] 전라도 남평현의 강조이는 시모(媤母)와의 언쟁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자,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32] 이러한 종류의 자살을 '가정 불화'로 분류했다.

'갈등 및 우발'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거나 사소한 갈등, 우발적인 다툼 후에 자살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다툼도 해당 유형에 포함하여 파악했다. 서울의 공만빈과 조범봉은 술에 취해 서로 싸웠는데, 4일 후 조범봉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33] 강계부의 최상반은 고공이었는데, 주인의 소가 김용은의 밭을 침범했다. 이에 김용은이 최상반을 구타했는데, 구타를 당한 최상반은 야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34] 이와 같은 사소하고 우발적인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갈등 및 우발' 유형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부세 및 관(官)'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부세 징수 과정에서의 갈등이 발단이 되어 자살이 발생했거나, 포교의 기찰과 같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유형으로 분류했다. 서유구의 『완영일록』에는 '부세 및 관(官)'과 관련한 '위핍인치사' 두 건이 수록되어 있다. 1833년 전주에서는 포교 두 사람이 그릇을 훔친 이복손에게 뇌물을 요구하자, 이복손이 목을 매 죽었고,[35] 1834년 금산에서는 포교 최광학이 이원복을 도적으로 몰아 체포하자, 이원복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36]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부세 및 관(官)' 유형에 해당한다.

토호나 양반이 신분적 위세를 이용하여 사적인 형벌을 가한 경우에는 '사형(私刑)'으로 분류했다. Ⅰ장 2절 ⑵항에서 소개한 이해인 옥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판(祠板)과 제기(祭器) 등을 잃어버린 이해인이 박성재를

31) 『審理錄』 卷7, 咸鏡道, 端川李龍得獄.
32) 『完營日錄』 卷1, 癸巳 7월 10일.
33) 『審理錄』 卷18, 京, 西部孔萬彬獄.
34) 『江界府[檢屍文案]』 (奎 25220)
35) 『完營日錄』 卷1, 癸巳 9월 6일.
36) 『完營日錄』 卷7, 甲午 9월 20일.

의심하여 주리를 트는 등 사형을 가했다. 이에 분함을 느낀 박성재는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37] 정조(正祖)는 해당 사건의 본질을 토호가 양민을 학대한 것으로 보았다. 정조는 이 옥사를 단순히 '위핍인치사'조로만 적용하여 처리하면 토호가 양민을 학살하는 버릇을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원통함도 풀지 못한다고 했다.[38] 이처럼 신분적 위계 질서를 통해 사적으로 형벌을 가하여 자살하게 된 경우는 '사형(私刑)' 유형으로 분류했다.

산송이나 산지 갈등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송'으로 분류했다. 공주의 황유직은 최상문과 선산을 두고 다투었는데, 최상문이 협박을 당하는 것을 보자 그의 아내 서(徐)여인이 스스로 허벅지를 찌르고 독을 먹었다.[39] 1897년에 발생한 청안군 이면하 자살의 경우도 산송으로 분류된다.[40] 유병승이 이면하의 선산 근처에 부친의 무덤을 쓰자, 이면하의 맏아

---

37) 이해인의 위핍에 의한 박성재 자살에 대한 내용은『審理錄』卷8, 江原道, 襄陽 李海寅獄 ;『日省錄』, 정조 6년 6월 13일(戊寅) ;『日省錄』, 정조 6년 9월 27일(辛酉) ;『日省錄』, 정조 7년 4월 28일(戊子) ;『日省錄』, 정조 9년 5월 11일(乙巳) ;『日省錄』, 정조 9년 7월 22일(己巳) ; 김호, 앞의 「조선후기 '위핍률(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對民觀)」, 556~557쪽 참고.

38)『審理錄』卷8, 江原道, 襄陽 李海寅獄, "今若斷以威逼之律 使海寅生出獄門 則奚但土豪肆虐 難以知戢 亦恐死者茹寃 無以少洩"

39)『審理錄』卷1, 忠淸, 公州黃惟直獄.

40) 〈주요 사건 4〉 1897년 충청도 청안군의 이면하(李勉夏)가 유서를 남기고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다. 유병승(劉秉昇)이 이면하의 선산 근처에 부친의 무덤을 조성했다. 그런데 이(李)씨 문중에서는 이를 투장(偸葬)으로 여겼고, 이면하의 아들 이정현(李貞鉉)을 비롯한 족인 30여 면이 무덤을 파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유병승의 집으로 갔다. 유병승은 부재했고, 족당은 유병승의 아들 유목렬(柳穆烈)을 결박하여 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족당은 유목렬에게 조부의 무덤을 파낼 것을 강요했고, 유목렬은 직접 분묘를 부수다가 파묘해도 좋다는 수표(手標)를 써준다. 이정현 등 족당들은 파묘 후 관을 옮겨 놓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병승은 이정현을 늑굴(勒掘) 혐의로 관에 고소하고, 이정현은 수감되었다. 이후 이면하는 근처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신 후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연못으로 안내하라는 말을 남기고 연못에 투신하여 죽었다. 이면하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이면하의 가족들은 이면하의 시신을 유병승의 집에 가져다 두고, 산송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유병승을 처벌해야 한다며 관에 알린다. 초검관이었던 청안군수 구봉조(具鳳祖)는 사망 원인[實因]은 '자익치사(自溺致死)'로 피고는 유병승으로 기록했다. 복검관이었던 괴산군수 안창렬(安昌烈)도 동일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이면하와 유병승 모두 수감되었다. 충청북도 관찰사 박규희(朴珪禧)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면하의 자살에 대해 유병승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모두 석방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淸安郡西面萬水洞致死男人李勉夏屍身初檢文案』(奎21602) ;『

들 이정현이 족인 30여 명을 이끌고 유병승의 집으로 갔다. 이정현이 유병승의 아들 유목렬을 이끌고 선산의 올라 조부의 무덤을 파낼 것을 강요했다. 실제로 무덤으로 파묘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병승이 이정현을 고소했다. 이정현은 수감되었으며, 이후 이면하는 유서를 남기고 연못에 빠져 죽었다. 이처럼 산송과 선산, 파묘 등이 발단이 되어 자살이 발생한 경우 '산송'으로 분류했다.

강간, 화간, 늑혼(납치), 추문 등 성(性)과 관련한 문제로 자살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성(性)' 유형으로 분류했다. '성(性)' 유형은 대체로 남성의 강간 혹은 강간 시도, 성적 희롱에 의해 여성이 자살한 경우이다. 성적인 추문이 돌자 자살하기도 했으며, 늑혼을 당하여 자살하기도 했다. 1806년 황해도 신천의 임명금(林明金)은 이웃에 사는 김조이(金召史)를 겁탈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김조이가 자신과 화간하는 사이라고 소문냈다. 이에 김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41] 1901년 강화도의 조상록(曺尙祿)은 이웃의 조씨(趙氏) 처녀와 간통하는 사이라고 소문을 냈다. 그러자 조씨 가족들이 조상록을 잡아 묶어두고 때리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조상록의 형인 조봉실이 강화부에 발고하여 조씨 가족들이 투옥되었다. 이어서 조씨(趙氏)의 집 주위를 돌며 소리치고 위협했다. 이에 조씨(趙氏)가 조상록의 집에 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었다.[42] 이와 같이 성(性)과 관련한 갈등으로 자살이 발생한 사건을 '성(性)' 유형으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둘러싼 분쟁이나 채무 독촉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살했다면, '재물 및 경제'에 포함시켰다. 경상도 영천의 조걸방(趙乞方)은 빚을 독촉 당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으며,[43] 전주의 박복천(朴卜千)은 유조이(柳召史)의 빚 독촉에 스스로 비상을 먹고 죽었다.[44] 유조이는 채무를 이유로 박복천의 집을 뒤지기도 했다. 한편, 1904년

司法稟報』(甲), 20책, 報告書 第18號 ;『司法稟報』(甲) 21책 報告書 第25號 ; 심재우, 2018「검안에 나타난 조선말기의 산송」『검안과 근대 한국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오승관, 앞의「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

41)『日省錄』, 순조 6년 5월 22일(己巳) ;『日省錄』, 순조 10년 9월 3일(乙卯) ;『日省錄』, 순조 11년 3월 12일(庚申).

42)『司法稟報』(甲), 72冊, 質稟書 第107號.

43)『日省錄』, 정조 22년 9월 1일(辛酉) ;『日省錄』, 순조 2년 7월 18일(丙戌).

창원의 정조이(鄭召史)는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동생 정선언과 다투다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45] 이처럼 채무 독촉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재물 및 경제' 유형으로 분류했다.

---

44) 『完營日錄』 卷1, 癸巳 10월 9일 ; 『完營日錄』 卷1, 癸巳 10월 10일 ; 『完營日錄』 卷1, 癸巳 10월 13일 ; 『完營日錄』 卷7 甲午 8월 12일.

45) 〈주요 사건 5〉 1904년 4월 창원의 정조이(鄭召史, 51세)는 동생 정선언(鄭善彦, 45세)과 전답을 두고 다투다, 정선언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분쟁이 된 전답은 21두락이었는데, 정조이와 정선언은 각자 전답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조이의 아들인 김학기(金學基, 32세)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전답은 정조이의 부친과 정조이가 함께 매득한 것인데, 결가(結價) 360냥 중 정조이가 105냥을 지불했었다고 한다. 이후에 정조이의 남편과 아들이 경작하면서 소출의 일부를 천정에 보냈다가, 부친이 사망한 후 깃금[衿給]으로 받아 계속 경작해왔다고 했다. 반대로 정선언은 부친이 구매한 후 누이와 매형에게 경작하게 했던 것이고 부친 사후에 자신이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이 죽은 뒤 9년이 지나 정조이와 정선언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전답을 방매하게 되었다. 정선언에게서 전답을 구매한 새 주인이 차인(差人) 이주흥(李周興, 62세)을 보내 당시 전답을 경작하고 있던 정조이의 아들에게 소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흥과 정조이가 함께 정선언의 집으로 갔다. 전답을 두고 논의 하는 가운데 정조이의 모친이 말하길, '너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지금 9년이나 오래 되었고, 해마다 소출은 나누어 가져왔는데, 지금 갑자기 깃금[衿給]을 칭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하기도 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정조이는 정선언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가족들이 모두 나간 사이에 정조이가 스스로 목을 매고 죽었다.

초검관이었던 창원군수 권익상(權益相)은 사망 원인[實因]은 '자액치사(自縊致死)'로 피고(被告)는 정선언으로 기록해 보고했다. 복검에서 정조이와 정선언의 처가 서로 붙잡고 발로 찼다는 진술이 있어 삼검(三檢)까지 진행되었으나,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판정되었다.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성기운(成岐運)은 동기간의 후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명률』「잡법편」 '불응위'조를 적용하여 정선언을 태(笞) 80에 처했다고 법부에 보고했다.(『昌原郡下南面井里致死女人鄭召史屍體案』(奎 25059) ; 『司法稟報』(甲), 94冊, 第11號 報告書)

〈표 13〉 자료별 ‘위핍인치사’의 갈등 유형

자료·성별 / 사건 유형	검안류 자료	『완영일록』	『심리록』	『일성록』	『사법품보』
가정 불화	9(12.2)	6(16.7)	5(12.5)	2(3.8)	18(14.9)
갈등 및 우발	32(43.2)	12(33.3)	7(17.5)	10(18.9)	23(19)
부세 및 관(官)	3(4.1)	2(5.5)		3(5.6)	1(0.8)
사형(私刑)	1(1.35)		1(2.5)	2(3.8)	1(0.8)
산송	1(1.35)	1(2.8)	2(5)	2(3.8)	6(5)
성(性)	18(24.3)	9(25)	22(55)	31(58.5)	44(36.4)
재물 및 경제	10(13.5)	6(16.7)	3(7.5)	3(5.6)	28(23.1)
미상	1			5	8
합계	75	36	40	58	129

※ ( )은 미상 수를 제외한 전체 건수 대비 비율

이상 사건의 갈등 유형을 자료별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각 자료별로 사건 유형의 빈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는 ‘갈등 및 우발’, ‘성(性)’, ‘재물 및 경제’, ‘가정 불화’ 순으로 ‘위핍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반면, 『심리록』과 『일성록』에서는 ‘성(性)’과 관련한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 유형은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했다. 『사법품보』에서 ‘성(性)’, ‘재물 및 경제’, ‘갈등 및 우발’, ‘가정 불화’ 순으로 사건 유형이 분포했다.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 ‘성(性)’ 유형이 약 25%를 차지했는데, 『심리록』과 『일성록』에서는 모두 50%를 넘은 점이 특징적이다.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의 사건 유형을 보면, 기층 사회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위핍인치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중앙정부에 보고되어 국왕이 심리하게 된 사건은 ‘성(性)’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성(性)’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국왕에게 보고되지 않고 관찰사에 의해 직단(直斷)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율문의 측면에서는 ‘성(性)’과 관련한 사건은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에 대한 적용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는 참형(斬刑)이었으므로 반드시

국왕의 판결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국왕은 ‘성(性)’과 관련한 ‘위핍인치사’ 사건을 보고받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위핍인치사’ 사건의 발생은 다양한 갈등 유형을 배경으로 하지만,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처리된 ‘위핍인치사’ 사건은 ‘성(性)’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⑵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이 자살자와 피고(被告)의 관계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핍박을 당한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 기록에서 다루는 자살에는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있다. ‘위핍인치사’의 실태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가한 가해자인 피고와 피해자인 자살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자살자와 피고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안류 자료부터 살펴보자. 검안류 자료 내 ‘위핍인치사’의 피고는 남성이 57명, 여성이 16명이다. 이는 여성 자살자가 41명, 남성 자살자가 34명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즉, 피해자로서 자살하게 된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많았으나, 가해자인 피고는 남성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표 14〉 검안류 자료에 나타난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연령 관계

자살자 \ 피고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20대 이하										
	30대		1	2							
	40대		2	3			1				
	50대	1	6	3		1					
	60대 이상	1	2		1						1
여성	20대 이하	2	2	1		1	2		1	1	2
	30대	1	2			1	1	1	1		
	40대			2	1				1		
	50대		1	1	2			1			
	60대 이상		1	2							

75명의 피고 중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56명인데, 이를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과 연령대별로 정리한 것이 〈표 14〉이다. 남성 피고는 총 43명으로 평균 연령은 40.83세이다. 여성 피고는 총 13명으로 평균 연령은 42.69세이다. 이는 여성 자살자의 평균 연령이 36.44세, 남성 자살자의 평균 연령이 52.17세로 크게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연령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살자와 피고가 동년배인 경우가 17건, 자살자보다 피고의 나이가 많은 경우가 14건, 자살자보다 피고가 어린 경우가 25건이었다. 연소자에 의한 핍박으로 인해 연장자가 자살한 경우가 다소 많았으며, 연장자의 핍박에 의한 연소자의 자살이 가장 적었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따져볼 수도 있다. 여성 피고의 핍박에 의한 남성 자살의 경우는 2건에 지나지 않기에 큰 의미는 없다. 반대로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의 경우는 20건인데, 피고와 자살자가 동년배인 경우는 8건이었다. 남성 연소자의 핍박으로 여성이 자살한 경우와 남성 연장자의 핍박으로 여성이 자살한 경우 모두 6건이었다. 이는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 관계에서 연령은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든, 어린 남성이든 모두 여성 자살자에 대한 가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위핍인치사'와 관련한 갈등 관계에서는 연령에 관계 없이 남성이 여성

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뜻한다.

특이한 점은 동성 자살자·피고인 경우이다. 남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은 23건인데, 자살자보다 피고가 어린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여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은 11건인데, 자살자보다 피고가 연장자인 경우가 5건, 동년배인 경우가 4건이었다. 즉 남성 간의 갈등 관계에서는 연소자가 연장자를 핍박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면, 여성 간의 갈등 관계에서는 연장자가 연소자를 핍박하여 자살하게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남성 간의 갈등 관계에서 연소자가 연장자를 자살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는 〈주요 사건 1〉에서[46] 소개한 조영순에 의한 강시조의 자살 사례이다. 가해자였던 조영순, 고쌍동, 오화선은 모두 23살이었다. 반면, 피해자였던 강시조는 63살이었다. 강원도 김화군 순교청(巡校廳)에서 지순이(池順伊)가 목을 매 죽었다.[47] 그런데 이때 지순이의 나이가 72살이었으며, 피고로 지목된 윤경문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사건 발생 2년 전 동학교도들이 천주교도들이 모여 사는 집을 불태웠는데, 그 후 집값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징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순이가 돈을 내지 못하자 윤경문 등이 지순이에게 욕하고, 순교청에 발고했다. 순교청에 수감 된 지순이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강시조 자살과 지순이 자살의 공통점은 모두 징채(徵債)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순교(巡校)을 사칭하거나 관권(官權)을 빙자하여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즉, 연소자에 의한 연장자의 자살이 많았던 남성 간 자살자·피고 관계에서는 각 주체의 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간의 갈등 관계에서 가장 나이 차이가 큰 경우는 시모(媤母) 이조이(李召史)의 시집살이에 의해 며느리 장조이(張召史)가 자살한 사례이다.[48] 이때 장조이의 나이는 20세였고, 이조이의 나이는 61세였다. 사례가 많지 않아 단언할 수 없으나, 여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은 가족 내 질서와 연령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6) 23쪽, 각주 44번.

47) 지순이 자살과 관련한 내용은 『金化郡巡校廳保授自縊致死男人池順伊文案』(奎21448) : 김호, 앞의 「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 200쪽.

48) 『金溝郡東面堂月里致死女人張召史屍身文案』(奎21416)

다음은 자료별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성별 관계는 총 4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남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 여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 여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이다.

〈표 15〉 자료별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

성별 관계 / 자료	남성피고 남성자살	남성피고 여성자살	여성피고 여성자살	여성피고 남성자살	합계
검안류 자료	30(40.5%)	27(36.5%)	14(18.9%)	3(4.1%)	74
『완영일록』	14(38.9%)	16(44.5%)	3(8.3%)	3(8.3%)	36
『심리록』	9(22.5%)	29(72.5%)	1(2.5%)	1(2.5%)	40
『일성록』	21(37.5%)	34(60.7%)	1(1.8%)	0(0%)	56
『사법품보』	46(36.2%)	58(45.7%)	20(15.7%)	3(2.4%)	127

※비고 : 다수의 피고에 의한 한 명의 자살, 한 명의 피고에 의한 다수의 자살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검안류 자료에서는 두 명 피고에 의한 한 명의 자살이 한 건 있었다. 『일성록』에서는 한 명의 피고에 의한 두 명의 자살, 한 명의 피고에 의한 세 명의 자살 사건이 1건씩 있었다. 『사법품보』에서는 한 명의 피고에 의한 두 명의 자살, 7명의 피고에 의한 한 명의 자살이 1건씩 있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자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남성 피고에 의해 발생한 자살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검안류 자료에서는 전체 피고의 77%가 남성 피고였으며, 『심리록』과 『일성록』에서는 전체 피고의 95% 이상이 남성이었다. 자살을 유발하는 가해자의 다수는 남성이었다는 것이다.[49]

성별 관계의 4가지 경우도 살옥 처리의 단계에 따라 편차를 드러낸다. 주목되는 것은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과 여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다. 남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자료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의 경우 검안류 자료에서는 전체 사건 중 36.5%를 차지했는데, 『심리록』에서는 72.5%라는

49) 인명 범죄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구도는 대체로 위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심리록』에서 인명 범죄, 즉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남성이 965명, 여성이 39명이었다(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132쪽.)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대로 여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의 경우 검안류 자료에서는 18.9%, 『사법품보』와 『완영일록』에서는 각각 15.7%, 8.3%를 차지했는데, 『심리록』과 『일성록』에서는 각각 한 건에 그쳤다. 즉, 여성 자살과 관련하여 자료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전체 자살에서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의 실제 비중에 비해, 중앙 정부에 보고되어 처리되는 사건은 더욱 많았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여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자료별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 내 친족 여부

성별관계 / 자료	남성피고 남성자살	남성피고 여성자살	여성피고 여성자살	여성피고 남성자살	합계	전체 사건
검안류 자료	4	11(4)	3	1	19	75
『완영일록』		8(7)		2(1)	10	36
『심리록』		8(2)	1	1	10	40
『일성록』	1	2			3	58
『사법품보』	2	13(7)	9	1	25	129

※비고 : ( ) 안의 수는 부부인 경우이다. 가령, 검안류 자료에서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은 총 11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4건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에 이어서 살펴볼 것은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한 〈표 16〉에 보면, 『일성록』을 제외한 각 자료에서 전체 '위핍인치사'조 자살 중 20~30%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성별 관계와 함께 종합하여 보면,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자살도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 가장 많았다. 가령, 검안류 자료에서 남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은 30건인데 그중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3건으로 10%에 불과했다. 그런데,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은 27건 중 10건이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완영일록』에서도 13건의 남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 중 가족 관계는 한 건도 없었으나.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의 경우 16건 중 8건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남성에 비해 협소하고, 가족 관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에서 가족 관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아 가족 질서 내에서 여성은 다른 남성 구성원에 의해 억압받는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50]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핍박과 자살의 가장 두드러지는 원인은 시집살이이다. 이때 가해자인 피고는 시댁 식구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 남편도 주요 가해자 중 한 사람이었다. 강원도 금성(金城)의 안광금(安光金)은 시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했는데, 아내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51] 임피군의 강명철은 자신의 아내가 옷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나무라는 시어니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했다. 구타를 당한 아내는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52] 이처럼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시집살이는 가정 내에서 여성이 자살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과부가 된 여성에 대한 시가(媤家) 구성원의 핍박도 주목된다. 경상도 초계(草溪) 문(文)여인이 관에 발고한 후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53] 과부였던 문여인이 추문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그 대상이 시아버지인 도응유(都應兪)와 도응유의 종제인 도응천(都應千)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추문에 대상이라고 비방했다. 문여인은 억울한 마음에 단장(斷章)을 관에 제출하고 독을 마시고 죽었다. 정조는 종형제가 서로 무고하는 상황을 질타했으며, 문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차율(次律)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감사도배(減死島配)를 명했다.

위와 같은 시가 구성원과 과부의 성(性)·재가(再嫁) 등의 문제는 1900년대까지 이어진다.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반대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1906년 평안북도 박천의 한조이(韓召史)는 친부의 권유와 시부(媤父)의 허락으로 재가를 결정했다.[54]

---

50) 〈표 16〉과 같은 가족 관계 내에서의 성별 분포는 살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심리록』에서는 친족 내 남성 가해자에 의한 남성 피해가 60건, 여성 피해가 94건인 반면, 여성 가해자에 의한 남성 피해는 2건, 여성 피해는 6건에 불과했다.(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175쪽.)

51) 『審理錄』 卷9, 江原道, 金城安光金獄.

52) 『司法稟報』(甲), 67冊, 第6號 質稟書.

53) 『審理錄』 卷9, 慶尙道, 草溪都應兪獄.

이후 이웃의 박태평과 혼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를 전해 들은 집안 사람 현제근이 '과녀가 이웃집에 개가하여 창피 막심하니 이제 정속(定屬)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며, 한조이를 찾으러 온 박태평에게 돌을 던져 내쫓았다. 이에 한조이가 자살했다.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이근풍은 '위핍인치사'를 계승한 『형법대전』 제492조 '事을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하야 自盡에 致ᄒᆞᆫ 자'로 조율했다고 보고했다.

가족 간의 경제적 분쟁도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나동준의 아내는 나동준이 처가의 논을 멋대로 처분하자 독약을 먹고 죽었으며,[55] 북청의 과부 이조이(李召史)는 시족(媤族)이었던 김두연이 전답을 몰래 팔고 다른 밭까지 뺏으려 하자,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56] 박치문이 개가한 형수의 재산을 뺏으려고 무리를 끌고 가 협박했는데, 이에 형수가 목을 매 죽었다.[57] 〈주요 사건 5〉처럼[58] 남매였던 정조이와 정선언은 죽은 아버지의 전답을 두고 다투었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러 정선언의 집에 갔던 정조이는 그 집에서 목을 매서 죽었다.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신분 관계이다. 그런데 검안류 자료와 『사법품보』의 '위핍인치사' 사건은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1894년 이후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신분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완영일록』과 『심리록』·『일성록』을 중심으로 신분 관계의 실태를 파악한다. 아쉬운 것은 각 자료에서 자살자와 피고의 신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심리록』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신분을 규정했다.[59] 해당 연구에서는 신분이나 직역의 단서가 전혀 없는 경우는 평민층으로 분류했고, 그 외 내용에서 확인되는 단서를 통해 신분을 분류했다. 해당 분류 기준에 따른 신분 파악은 당시 사람들의 신분을

54) 한조이 자살에 대한 내용은 『司法稟報』(甲), 113冊, 第41號 報告書 ; 송지영, 앞의 「『사법품보(司法稟報)』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1895～19060)』, 32～33쪽 참고.
55) 『完營日錄』 甲午 2월 30일.
56) 이조이 자살에 대한 내용은 『司法稟報』(甲), 43冊, 第1號 質稟書 ; 송지영, 앞의 「『사법품보(司法稟報)』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1895～19060)』, 32쪽 참고.
57) 『完營日錄』 甲午 10월 14일.
58) 108쪽, 각주 45번.
59) 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126～127쪽.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살자와 피고의 정확한 신분 관계를 확인한다기보다, 자살자와 피고의 상하 관계와 그 경향성을 확인한 수준으로 활용한다. 각 자료에서의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17〉 ~ 〈표 19〉와 같다.

〈표 17〉『완영일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자살자 \ 피고		남성				여성			
		천인	평민	중인	양반	천인	평민	중인	양반
남성	천인								
	평민		12	2			3		
	중인								
	양반								
여성	천인				1				
	평민		13		1		2		
	중인								
	양반		1						1

〈표 18〉『심리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자살자 \ 피고		남성				여성			
		천인	평민	중인	양반	천인	평민	중인	양반
남성	천인								
	평민		8		1		1		
	중인								
	양반								
여성	천인		1						
	평민	3	13		4	1			
	중인		1	1					
	양반		3	1	2				

〈표 19〉『일성록』 내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신분 관계

자살자 \ 피고		남성				여성			
		천인	평민	중인	양반	천인	평민	중인	양반
남성	천인		2	1	1				
	평민	1	11	2					
	중인				1				
	양반		1	1					
여성	천인				1				
	평민		21						
	중인								
	양반		12				1		

『완영일록』, 『심리록』, 『일성록』의 '위핍인치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가해자와 피고가 동일 신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살은 같은 신분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하위 신분 피고에 의한 상위 신분의 자살자나 상위 신분 피고에 의한 하위 신분의 자살자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는 '위핍인치사'를 발생하게 하는 갈등이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그러한 갈등이 신분을 넘나들며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60]

'위핍인치사' 사건 발생에 있어 신분 관계가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건의 발생 측면에서 서로 다른 신분 간의 갈등 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신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으나, '위핍인치사'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추론부터 설명하자면, '위핍인치사' 사건은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격화된 갈등이다. 가해자 혹은 가해자 집단의 핍박에 대해, 피해자는 그 핍박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60) 이 역시 살인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결과이다. 『심리록』에 수록된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로 이웃과 주변이었으며, 그다음이 가족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상하 신분 관계나 관민 사이에 발생한 살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147쪽)

때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즉, 양자 간의 갈등이 매우 격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신분에 따른 권력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갈등이 자살에 이를 만큼 격해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상위 신분은 하위 신분이 자살할 만큼 핍박을 가하지 않고도 아랫사람을 제압할 수 있으며, 하위 신분의 사람은 자신보다 윗사람이 자살할 정도로 핍박을 가하는 것이 애초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신분 간 갈등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신분 사이에서는 자살에 이를 만한 갈등의 내용이 부재한 것일 수도 있다. 가령, 조선 후기 야담에서는 양반과 평민의 갈등, 양인과 노비의 갈등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두 갈등이 실존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명료한 사회적 갈등으로 드러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양반과 천인에 갈등에서는 추노 문제가 주를 이루며, 양반과 중인의 갈등에서는 혼인 문제가 주를 이룬다.[61] 이는 신분의 차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의 내용, 즉 어떤 사회 문제인지가 중요한 본질임을 보여준다. 즉, 서로 다른 신분에서 '위핍인치사' 사건이 발생할 만큼의 중요한 사회 문제 혹은 당시 사회에서 명료하게 사회적 갈등으로 인식한 내용은 없던 것이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여성의 성(性) 문제이다. 동일 신분 내 갈등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남성 하위 신분 사람에 의한 여성 상위 신분 사람의 자살이 눈에 띈다. 『심리록』과 『일성록』에서 각각 8건, 12건이다. 그런데 『심리록』 8건 중 7건이 성(性)과 관련한 문제로, 희롱, 강간 및 강간 시도, 혼인 강요, 추문과 관련한 것이었다. 『일성록』의 12건 중에 9건이 성(性) 관련한 문제였다. 즉, 하위 신분 남성에 의한 성(性)적 유린이 상위 신분 여성의 자살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성(性) 혹은 정절과 같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신분 사이에 갈등이 드러난 것이다.

'위핍인치사' 사건에 있어 신분 관계가 두드러지지 않은 두 번째는 이유는 서로 다른 신분 사이의 갈등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거나 신분의 상하관계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Ⅰ장 2절 ⑴항

61) 조선후기 야담과 소설 내에서의 사회적 갈등 및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오수창, 앞의 「조선후기 야담과 소설에 담긴 사회적 갈등과 신분인식」 참고.

에서 살펴본바, 서유구는 고부(姑婦)관계에서의 며느리의 자살, 주노(主奴)관계에서의 비(婢)의 자살은 '위핍인치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공인된 사회 질서 내에서 윗사람에 의한 아랫사람의 폭력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각 자료에도 상위 신분에 의한 하위 신분의 자살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야담의 내용이긴 하지만 앞서 Ⅰ장 2절 ⑵항에서 핍살(逼殺)의 한 사례로 소개한 『청구야담(靑邱野談)』의 「송부원금성여격고(訟夫寃錦城女擊鼓)」가 주목된다.[62] 나주의 한 선비가 집이 가난하여 그 딸이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데, 근처 상놈이 지나는 말로 그녀를 깔보았다. 상놈이 '너와 같은 양반은 내 집 대청 밑에 우글우글 많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집에 돌아와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 선비는 상놈이 자신의 딸을 핍살했다고 발고했다. 이에 상놈은 관가에 잡혀 한 달에 세 번씩 동추(同推)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여 눈이 멀었다. 이에 그 아내는 상경하여 신문고를 쳤고, 국왕은 심리 어사를 파견했다. 심리 어사가 온다는 말을 들은 상놈은 눈을 뜨게 되었고, 문안을 살펴본 심리 어사의 판결에 의해 방송된다. 선비의 딸에 대한 상놈의 모욕은 직접적인 신분 갈등이다. 그러나 심리 어사는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 야담이 국가가 범죄행위를 판단하는데 신분적 관계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범법 여부를 판단하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실제 형사 관련 기록에서 신분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심리록』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분과 직역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위핍인치사' 사건에서의 자살의 실태와 범죄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자살자와 피고의 연령, 성별, 가족 관계, 신분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연령 파악은 검안류 자료에서만 가능하기에 제한적이지만, 남성 피고와 여성 피고의 평균 연령은 40대였던 반면, 남성 자살은 50대, 여성 자살은 20대에서 가장 많았다. 성별 관계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층 사회에서

62) 「송부원금성녀격고(訟夫寃錦城女擊鼓)」의 사회적 갈등과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오수창, 앞의 「조선후기 야담과 소설에 담긴 사회적 갈등과 신분인식」 419~420쪽 참고.

는 남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 보고되어 국왕이 심리하게 된 사건은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족 관계에서도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가정 내에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자살자와 피고는 대부분 동일 신분이었으며, 서로 다른 신분 간 갈등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료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위 남성 피고에 의한 상위 여성의 자살 양상은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성(性)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의 자살이다.

⑶ 핍박의 여러 양상

'위핍인치사' 사건의 실태와 범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살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핍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위핍인치사'에 관한 명·청대 주석서는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차이를 보인다. 명나라의 주석서는 조건설에 따라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청나라의 주석서에서는 그 관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63]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시대 주석서 모두 핍박의 실정은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모두 셀 수 없다고 여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율문의 내용과 현장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먼저 율문상으로 '위핍인치사'조에서 인사(因事), 인간(因姦), 인도(因盜) 등 범행의 동기는 구분하면서도, 핍박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건의 현장에서는 자살이 먼저 발생하고 신고가 이루어 지면, 핍박한 사람과 핍박의 유·무와 그 양상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위핍인치사'조로 의율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율문의 내용과 현장의 상황을 따져보면, 핍박의 종류와 유형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핍박의 양상은 천태

63) 한상권, 앞의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21~23쪽.

만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핍박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위핍인치사'의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때 가능하다.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를 바탕으로 핍박의 양상을 정리했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 실태를 따져 본다.[64]

〈표 20〉 '위핍인치사'에서 핍박의 양상과 그에 따른 피고

핍박의 양상			구체적 행위	피고
직접	물리적 폭력		폭행, 私刑 등 자살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폭력을 행사한 사람
	언어적 폭력		누명을 씌워 협박하거나 관에 무고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	협박하거나 누명을 퍼트린 사람
	경제적 압박		경제적 분쟁·압박을 겪은 경우	채권자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한 사람 경제적 분쟁의 상대
	시집살이		시집살이	시가(媤家) 구성원
	성	간통	간통이 발각된 경우	간통의 상대
		추문	추문이 퍼진 경우	추문을 퍼트린 사람
		납치	과부에 대한 납치 혹은 혼인 강요	과부를 납치하거나 혼인을 강요한 사람
		강간	강간 및 강간 시도 성적 희롱	강간 및 강간을 시도한 사람
간접	가족이 투옥된 경우		가족 구성원 투옥된 경우	가족 구성원을 관에 발고한 사람
	가족이 분쟁에 휘말린 경우		가족 구성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갈등 관계에 놓인 경우	가족 구성원의 분쟁 상대
	가족의 성(性) 문제		가족 구성원의 성적 피해	성적 가해자

〈표 20〉은 '위핍인치사' 개별 사건에서 확인되는 핍박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에 따른 피고를 정리한 것이다. 핍박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직접적인 핍박과 간접적인 핍박이다. 직접적인 핍박은 피고의 가해 행위의 대상이 자살자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피고가 어떤 사람을 폭행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한 경우이다. 간접적인 핍박은 가족 구성원이 직접 피

64) 오승관, 앞의 「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

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사람이 자살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피고가 어떤 사람을 폭행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나 아내가 자살한 경우이다.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이 자살하는 직접적인 핍박의 양상은 다시 5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폭력으로 폭행, 감금, 사형(私刑) 등이 해당한다. 1896년 강계부에서 고공이었던 최상의 주인집 소가 김용은의 밭을 침범하자, 김용은이 최상반을 모욕하고 구타했다.[65] 그날 밤 최상반은 야산에 올라 자살했다. 이때 김용은이 가한 모욕과 구타가 핍박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언어적 폭력이다. 피고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욕설 등을 하거나 누명을 씌워서 협박하는 경우이다. 때로는 누명을 씌워 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실의 고고장(高古長)은 김덕화(金德化)을 협박했는데, 김덕화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김덕화의 시신에서는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없었다.[66] 제주 대정현의 강제평은 정시목이 솥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에게 뇌물을 요구했다.[67] 정시목이 자살하자, 강제평은 피고가 되었다. 즉, 욕설, 누명이나 무고도 '위핍인치사'의 핍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경제적 분쟁·압박이다. 대체로 채무 관계에서 빚 갚기를 요구한 것이다. 빚 갚기를 요구하는 과정에는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있더라도 채무 독촉이 목적이라면, 경제적 분쟁·압박으로 분류했다. 물리적·언어적 폭력 없는 경제적 분쟁·압박으로도 자살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서 〈주요 사건 5〉에서[68] 소개한 창원군 정조이의 자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도 물리적 폭력은 없었고, 재산을 둘러싼 논쟁 후에서 정조이가 자살했는데, 분쟁의 상대였던 동생 정선언이 피고가 되었다. 즉, 이러한 경제적 분쟁이나 채무 독촉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다면, 그와 같은 갈등 자체가 자살에 이르게 한 핍박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

65) 『江界府[檢屍文案]』(奎25220).
66) 『完營日錄』 권1, 癸巳 8월 16일.
67) 『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謄本』(奎21550).
68) 108쪽, 각주 45번.

다음은 여성과 관련한 핍박의 양상이다. 시집살이는 그 차제로 핍박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주요 사건 2〉의[69] 김용귀 옥사에서 김조이의 자살이 대표적으로 시집살이에 의한 '위핍인치사' 사례이다. 이 경우 물리적·언어적 폭력 행위가 나타나긴 했으나, 장기간 이루어진 폭력적 상황과 시가(媤家)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핍박 양상으로 따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성(性)과 관련한 핍박 행위이다. 강간, 간통, 과부에 대한 납치와 혼인 강요, 추문 등이다. 위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이후에 자살이 발생했다면, '위핍인치사' 중에서도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로 의율할지를 판단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여성에 대한 성(性)적 폭력 행위 자체가 '위핍인치사'의 핍박이 된다.

간접적인 위핍은 크게 3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투옥된 경우이다. 1898년 서흥군의 이조이는 자신의 아들인 유원양이 투옥되자, 아들을 신고한 유원흥의 집에서 자살했다. 유원흥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일로 유원양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유원흥이 유원양을 순교청(巡校廳)에 무고한 것이다. 이에 이조이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이조이 자살에 대한 피고는 유원흥이 되었다.[70] 〈주요 사건 4〉에[71] 소개한 이면하의 자살 역시 아들 이정현의 투옥이 빌미가 되었다. 즉,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발고와 수금으로 인해 다른 가족이 자살했다면, 발고 행위 자체를 핍박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분쟁에 휘말리거나 그로 인해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경우이다. 자살한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다른 가족이 폭행을 당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자살을 감행하기도 했다. 『완영일록』에 수록된 길이석의 어머니 이조이(李召史)의 자살이 여기에 해당한다.[72] 과부였던 이조이와 여봉영의 누이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이에 길이석이 여봉영의 누이에게 강제로 오물을 먹게 하여 죽게 했다. 여봉영이 누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길이석을 묶었는데, 그것을 본 이조이가 스스로

69) 48쪽, 각주 100번.
70) 『瑞興郡龍淵坊三里小地名金井村柳遠興柳遠揚等文案成冊』(奎26570).
71) 106쪽, 각주 40번.
72) 『完營日錄』 癸巳 6월 26일.

목을 매 죽었다. 길이석은 여봉영 누이의 죽음에 피고로, 여봉영은 이조이 죽음에 피고로 각각 수금되었다. 황해도 황주의 손술찬은 징채(徵債)를 목적으로 부상(負商)을 동원하여 노병주(魯丙周)를 끌고 오도록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노병주(魯丙周)의 장모 백조이(白召史)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73] 백조이는 직접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가족의 구성원의 분쟁으로 인해 자살했음에도, 손술찬에게는 '위핍인치사'가 적용되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이 분쟁에 휘말리는 간접적 폭력 상황도 '위핍인치사'의 핍박으로 인정되었다.

간접적 핍박의 마지막은 가족의 성(性) 문제이다. 『심리록』 수록된 이경증의 자살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경증은 강웅이가 자신의 아내 방에 침입한 사실로 소문이 퍼지자 자살했다.[74] 이에 이경증의 자살에 대해서 강웅이가 피고가 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핍박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핍박은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가족이 폭행을 당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위핍인치사'에서의 핍박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으며,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한 모든 행위를 핍박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핍박의 양상을 광범위하게 생각한

---

73) 〈주요 사건 6〉 1901년 2월 황주의 백조이(白召史, 70세)는 손술찬(孫述贊, 44세)이 사위 노병주(魯丙周, 42세)를 잡아가자 들보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다. 백조이의 딸인 김조이(金召史 39세)는 수 년 동안 과부로 지내다가, 손술찬에게 중매를 부탁했다. 손출찬은 김조이와 박가(朴哥)를 맺어주면서, 박가에게 중매비와 김조이에게 보내는 돈 40냥을 받았다. 이때 10냥은 김조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받기로 하고 손술찬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김조이가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서 노병주에게 개가하였다. 박가가 40냥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손술찬은 김조이에게 받을 생각으로 김조이를 찾았다. 마침, 김조이도 손술찬에게 10냥을 받을 생각으로 손술찬을 찾아갔다. 이때 손술찬은 김조이가 노병주에게 개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노병주에게 40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부상(負商) 김영수(金永守, 32세)와 이달문(李達文, 29세)에게 노병주를 잡아 오라고 시켰다. 두 사람이 노병주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백조이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초검관이었던 황주군수 조윤희(趙胤熙)는 사망 원인[實因]은 '자액치사(自縊致死)'로 피고(被告)는 손술찬으로 기록해 보고했다. 황해도 재판소 판사 김완수(金完秀)는 손술찬에게 『대명률』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여 태(笞) 100대를 선고하고 매장은 10냥을 추징하였다. 손술찬의 지시를 받았던 부상 두 명은 피고에게 적용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90대로 선고되었다.(『黃州郡九林坊和洞里致死女人白召史屍身初檢文案』(奎21468) ; 『司法稟報』(甲), 67冊, 第37號 報告書)

74) 『審理錄』 卷4, 忠淸道, 公州 姜雄伊獄.

것은 명확하게 규정된 핍박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자살에는 그에 상응하는 핍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현실에서는 자살 사건을 대면했을 때,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는 핍박을 찾아 나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에서의 핍박은 명확히 규정되기보다 자살과 관련된 모든 가해 행위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고, 그 양상은 천태만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상으로 정리한 핍박의 양상을 바탕으로 자료별 어떤 핍박이 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에서 주요 변수로 파악했던 성별 관계와 함께 핍박의 양상을 확인한다. 먼저, 검안류 자료에서 확인되는 핍박의 양상이다.

〈표 21〉 검안류 자료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핍박의 양상 \ 자살자·피고의 관계			남성 피고 남성 자살	남성 피고 여성 자살	여성 피고 여성 자살	여성 피고 남성 자살	합계
직접	물리적 폭력		11	5	7	2	25(34.2%)
	언어적 폭력		6	1	1		8(11%)
	경제적 압박		6	1			7(9.6%)
	시집살이			4	3		7(9.6%)
	성	간통		1			16(21.9%)
		추문	3	3	2	1	
		납치		5			
		강간		1			
	기타		1	2			3(4.1%)
간접	가족이 투옥된 경우		2	2			4(5.5%)
	가족이 분쟁에 휘말린 경우		1	2			3(4.1%)
	가족의 성(性) 문제						
미상					1		1

검안류 자료에서 확인되는 핍박의 양상은 약 90%가 직접적인 핍박이었

으며, 약 10%는 간접적인 핍박이었다. 직접적인 핍박 중 물리적 폭력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性) 관련 핍박이 1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언어적 폭력, 경제적 압박, 시집살이 순으로 나타났다. 성(性) 관련 핍박에서 주목되는 것은 추문으로 인한 남성의 자살이다. 이에 해당하는 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며느리와의 추문이 빌미가 되어 자살했다.[75]

〈표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향 중 하나는 피고의 성별에 따라 핍박의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직접적인 핍박 중 경제적 압박에서 여성 피고는 전혀 없었다. 보통 경제적 압박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러한 핍박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언어적 폭력도 그러한데, 언어적 폭력은 단순히 욕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 누명, 무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여성이 행사하기 어려웠다. 더 분명한 것은 간접적 핍박에서 여성 피고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폭력이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이를 정도의 강도를 보이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위핍인치사'에 있어 성별 변수는 자살한 사람뿐 아니라 피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여성이 다양한 핍박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대 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75) 『開城府北東面深川里馬踰洞致死男人朴致彦獄案』 (奎27510) ; 『石城郡縣內面蓮下里致死男人皮漢李今得屍身文案』 (奎21280) ; 『文義郡二道面外三里致死男人吳瓚錫屍身文案』(奎21415) ; 『忠州郡東良面長善里致死男人金鼎禹初檢文案』(奎21899).

〈표 22〉『완영일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핍박의 양상 \ 자살자·피고의 관계			남성 피고 남성 자살	남성 피고 여성 자살	여성 피고 여성 자살	여성 피고 남성 자살	합계
직접	물리적 폭력		6	10	2	1	19(54.3%)
	언어적 폭력		3	1	1	1	6(17.1%)
	경제적 압박		2	1		1	4(11.4%)
	성	간통	2				4(11.4%)
		강간		2			
간접	가족이 분쟁에 휘말린 경우			1			1(2.9%)
	가족의 성(性) 문제		1				1(2.9%)
미상				1			

『완영일록』 내 핍박의 양상 역시 대부분 직접적인 핍박이었으며, 그중에서 물리적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다음으로 언어적 폭력, 경제적 압박과 성(性)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검안류 자료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성차에 따른 핍박의 양상이 확인되는데, 간접적인 핍박에서 여성 피고는 전혀 없었다.

검안류 자료에서 확인한 핍박의 양상과 비교할 때, 보이는 특징 중 시집살이에서 나타난다. 검안류 자료에서는 시집살이에 의한 자살이 7건으로 전체 자살 중 약 10%를 차지했다. 그런데 『완영일록』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래 〈표 23〉·〈표 24〉의 『심리록』과 『일성록』의 핍박의 양상에서도 1건에 그쳤다. 이는 당대 시집살이에 의한 핍박과 자살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료에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Ⅰ장 2절 (1)항에서 살펴본바 고부간 다툼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대해 서유구는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로 판정하지 않았다. 즉, 신고가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검험(檢驗)을 진행해야 하기에, 검안류 자료에서는 시집살이에 의한 자살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로 인정하지 않았던 세태에서 사법 처리 단계가 올라갈수록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표 23〉『심리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핍박의 양상 \ 자살자·피고의 관계			남성 피고 남성 자살	남성 피고 여성 자살	여성 피고 여성 자살	여성 피고 남성 자살	합계
직접	물리적 폭력		7	5			12(30.8%)
	언어적 폭력			2		1	3(7.7%)
	성	추문		3	1		20(51.2%)
		납치		3			
		강간		13			
	기타			1			1(2.55%)
간접	가족이 분쟁에 휘말린 경우			2			2(5.1%)
	가족의 성(性) 문제		1				1(2.55%)
미상			1				1

〈표 24〉『일성록』 내 자살자·피고의 성별 관계와 핍박의 양상

핍박의 양상 \ 자살자·피고의 관계			남성 피고 남성 자살	남성 피고 여성 자살	여성 피고 여성 자살	여성 피고 남성 자살	합계
직접	물리적 폭력		12	1			13(26%)
	언어적 폭력		3	2			5(10%)
	경제적 압박		2				2(4%)
	시집살이			1			1(2%)
	성	간통	1				27(54%)
		추문		12	1		
		납치		2			
		강간		11			
	기타		1				1(2%)
간접	가족의 성(性) 문제		1				1(2%)
미상			1	5			6

『심리록』과 『일성록』 내 핍박의 양상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성(性)

과 관련한 핍박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과 관련한 핍박은 25%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심리록』과 『일성록』에서 성 관련 핍박은 각각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대로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했던 경제적 압박의 경우, 『일성록』에서 두 건에 그쳤다. 이를 통해 핍박의 양상에서도 자료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층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는 다양한 핍박의 양상이 보이는 가운데 물리적 폭력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국왕에게까지 보고되는 핍박은 성(性)적인 핍박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상 Ⅱ장에서는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로서 자살의 실태와 범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태 파악의 대상은 사망 원인[實因]이 자살로 판정된 사건, 가해자인 피고를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사건, 해당 옥사 내에서 자살이 피해 사실인 사건이었다.

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검안류 자료, 『완영일록』, 『심리록』, 『일성록』이었으며, 참고 자료로서 『사법품보』도 함께 검토했다. 자료 활용에 있어 본 논문이 주목했던 것은 살옥의 처리 절차에 따라 자료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살옥 사건의 처리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망 원인[實因]을 판정하는 검험(檢驗)에서 죄인을 수금하는 성옥(成獄)까지의 단계, 동추(同推)에서 완결(完決)까지 관찰사가 주도하여 심리하는 단계, 중앙 정부에 보고된 이후 국왕에 의한 심리 단계이다. 검안류 자료, 『완영일록』, 『심리록』, 『일성록』은 각 처리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들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자료가 수록하고 있는 사건의 경중(輕重)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검안류 자료는 신고되어 검험이 진행된 모든 사건 포괄한다. 반면, 『심리록』에 수록된 사건은 관찰사가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검안류 자료는 사소하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심리록』이나 『일성록』에 수록된 사건은 해결하기 어렵거나 매우 중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의 '위핍인치사' 사건은 대체로 당

시 기층 사회에서의 발생하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했으며, 『심리록』과 『일성록』에서의 '위핍인치사' 사건은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게 다룬 사건들로 이해했다.

위와 같은 자료 이해를 바탕으로 '위핍인치사'의 실태와 범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유구의 『완영일록』에서의 사례이긴 하지만, 당시 관찰사는 3개월에 약 5건의 새로운 '위핍인치사' 사건을 보고 받아 심리했으며,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국왕은 한 해 1건의 '위핍인치사' 사건을 보고 받아 심리했다.

피해자인 자살자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는데, 여성 자살자의 평균 연령은 36.44세였고, 20대에서 가장 많이 자살했다. 남성 자살자의 평균 연령은 52.17세였으며, 50대 자살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살자의 성별에 따라 연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자료에서 여성의 자살 비율이 높았으나, 살옥의 처리 절차가 진행될수록 여성 자살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기층 사회에서의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많이 자살했으나, 중요하게 다루어진 자살은 여성 자살이었음을 의미한다.

'위핍인치사'를 발생하게 한 갈등의 유형은 '가정불화', '갈등 및 우발', '부세 및 관(官)', '사형(私刑)', '산송', '성(性)', '재물 및 경제' 등 7가지로 분류했다. 갈등의 유형에 있어서도 자료별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는 다양한 갈등 유형이 두루 발생했는데, 『심리록』과 『일성록』에서는 '성(性)'과 관련한 사건 유형이 50%이상을 차지했다. 즉, 다양한 '위핍인치사' 사건 중 당시 중앙 정부가 중시했던 사건은 '성(性)'과 관련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피해자인 자살자와 가해자인 피고의 관계도 확인했다. 우선 자살자가 여성이 많았던 것에 비해 피고는 남성이 훨씬 많았다. 자살자와 피고 사이에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자살자와 피고가 모두 남성인 경우 연소자의 핍박에 의한 연장자의 자살이 두드러진 반면, 여성인 경우 연장자의 핍박에 의한 연소자의 자살이 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자와 피고의 성별 관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검안류 자료와 『완영일록』에서는 남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과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 약 40%씩 차지했다. 그런데 『심리록』과 『일성록』에서는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 각각 70%, 60% 비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 중대한 사건으로 다루어졌음을 뜻한다. 한편, 서로 다른 신분 사이에 대립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일 신분 내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

자살에 이르게 한 핍박의 양상은 크게 직접적인 핍박과 간접적인 핍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직접적인 핍박은 피고가 자잘자에게 직접 핍박을 가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핍박은 피고가 폭력을 가한 사람의 가족이 자살한 경우이다. 직접적인 핍박은 구체적으로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경제적 압박, 시집살이, 성(性) 관련 핍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검안류 자료와 『완연일록』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심리록』과 『일성록』에서는 성(性)과 관련한 핍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핍인치사'의 실태는 살옥의 처리 단계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그것은 기층 사회에서의 양상과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게 다루어진 사건의 양상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살자는 여성, 피고는 남성이 많았다. 기층 사회에서는 남성 피고에 의한 남성 자살과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 두루 나타났으며, 다양한 갈등의 유형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에 이르게 한 폭력의 양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가장 많았으나, 언어적 폭력, 경제적 압박, 성(性)적 폭력 등도 두루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왕에게 까지 보고되어 국가적으로 중대하게 다루어진 '위핍인치사' 사건은 남성 피고에 의한 여성 자살이었으며, 대부분 성(性)과 관련한 갈등, 성(性)적인 폭력으로 인한 자살이었다.

Ⅲ. ‘위핍인치사’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응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는 핍박으로 인한 자살을 다루는 율문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때 자살이란 검험(檢驗) 후 판정된 사망 원인[實因] 중 사망에 이른 행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살이 가해자의 핍박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가해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Ⅰ장에서는 ‘위핍인치사’조의 율문 내용, 현행 법률과의 비교를 통한 의미,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는 법리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을 판정하는 맥락과 상황, 그리고 그러한 자살이 핍살(逼殺)의 결과로 인식되는 상황까지 다루었다. Ⅱ장에서는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인 자살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범죄 양상을 살펴보았다. 피해자인 자살자와 가해자인 피고의 연령·신분·성별 관계와 핍박 양상 등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Ⅲ장에서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바, ‘위핍인치사’는 선행 사건으로 핍박과 그 결과로서 자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살이 발생하고 나면, 그 자살을 유발한 핍박을 찾고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응은 자살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절에서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대응으로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2절에서는 검험, 심리, 판결 등 공식적인 사법이 진행되기 이전, 민간 사회에서 인민들이 자살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 백성들은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위핍인치사’와 관련하여 자살을 대하는 자신들만의 행동 양식을 지니고 있었다.

1.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은 조선 사회의 공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수반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변사자가 발견되면 검험을 통해 사망 원인[實因]으로서 타살과 자살을 구분한다. 자살이라면 핍박의 정황 등 자살하게 된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다른 율문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닌지를 판단한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감형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가중처벌할 대상은 아닌지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위핍인치사'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위핍인치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양상은 어떠했으며, 그 지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⑴항에서는 정조~철종대 국왕과 관찰사의 심리와 판결 경향을 정리한다. 둘째, ⑵항에서는 성(性) 문제와 관련한 심리와 판결 내용을 확인하다. 성(性) 문제는 가해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국왕은 어떻게 적절한 판결을 내리고자 했는지 그 구체적인 논의들을 짚어본다. 이어서 ⑶항에서는『사법품보』내의 조율(照律) 내용을 정리한다. 자살에 대한 판결은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의율한 것이지만, 18세기 말 19세기 자료에서는 율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사법품보』에서는 각 사건에 대해 어떤 율문을 적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실제 자살과 관련하여 어떤 율문을 통해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위 사항들을 확인함으로써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⑴ 국왕과 관찰사의 심리와 판결 경향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은 국왕과 관찰사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국왕의 심리와 판결은 '위핍인치사' 사건 중 중요하고 첨예한 사건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으며, 핍박과 자살에 대한 국가의 최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관찰사의 심리와 판결은 주로 일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자살을 다루며, 그 판결 결과가 인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핍박과 자살에 대한 국왕의 심리와 판결은 인명(人命) 범죄의 처리 경향을 함께 고려하여 확인해야 한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국왕 판결의 특징은 이념적으로 관형(寬刑), 제도적으로는 심리(審理)로 규정할 수 있다. 『심리록』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조(正祖)가 판결한 약 1000건의 인명 사건 중 실제 사형(死刑) 판결은 20건으로 전체 2%에 불과했다.[1] 이러한 경향은 공형벌권(公刑罰權)의 강화와 국가 권력에 대해 민의 복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처벌 방식을 개선하고 관용적 판결을 내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정조의 관용적 판결은 유교 윤리의 실천, 의심스러운 옥사는 가볍게 처리하는 의경(疑輕)의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2]

최근에는 정조(正祖)의 심리와 판결을 당대의 도덕 감정을 고려한 공평한 판결이며, 소민의 도덕성을 자발적으로 회복하게 하려는 이상의 실천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는 죄형법정주의나 법실증주의와 같은 서구의 법 추론이 아니라 당대 법 추론, 법 감정의 맥락에서 정조의 판결을 읽어 내야 함을 강조했다. 정조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정인 정(情), 인륜으로서 리(理)와 법(法)을 모두 고려했으며, 법(法)과 정(情)·리(理)의 조화를 이룬 판결을 추구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억울하지 않은 공평한 판결을 이루고자 했다. 또한, 소민을 형벌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자발성을 회복하는 성리학 통치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했다.[3]

한편, 살옥의 처리가 국왕의 심리(審理)를 중심으로 진행된 경향은 정조대 형성되어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정조대 이후 일반 살옥 사건의 경우, 사형(死刑)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사형 집행을 위한 삼복(三覆)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즉, 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것이다. 국왕은 해당 사건을 계속 조사하라는 신추(訊推) 명령을 내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배나 방송으로 판결했다. 순조~철종대, 범죄자를 가두는 성옥(成獄) 후 최종 판결까지 약 평균 9년이 걸렸는데, 죄인이 9년 동안 수금되어 계속 신추(訊推)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형 없이 유

1) 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234~235쪽.
2) 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236~242쪽.
3) 김호, 앞의 『정조의 법치』.

기·무기 징역으로 죄인을 징벌하는 오늘날의 방식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4] 정리하면, 19세기 국왕 판결의 제도적인 특징은 반복적인 심리, 장기간 수금과 신추, 그 후 감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 18·19세기 국왕의 심리와 판결에 관한 선행 연구의 논의 위에서, '위핍인치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이 지니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심리록』을 통해 정조의 심리와 판결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러한 경향이 19세기 국왕, 관찰사의 판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만, 여성의 성(性) 문제와 관련한 핍박과 자살에 대한 심리는 ⑵항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므로 성(性) 문제를 제외한 사건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본다.

'위핍인치사'에 대한 정조의 심리는 사망 원인[實因]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망 원인의 판정은 인명 사건 처리의 첫 단계인 검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 원인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중요한 문제였다. 타살의 경우 고살(故殺), 모살(謀殺), 투구살(鬪毆殺) 등에 해당하고, 자살의 경우 '위핍인치사'로 의율한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타살한 후 자살로 위장하던 세태, 유가족은 피해자의 자살에도 타살이라고 발고하는 당시 현실에서 국왕은 사망 원인 판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Ⅰ장 2절 ⑴항에서 언급한 김봉추의 사망을 자세히 살펴보자.[5]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김봉추(金奉秋)가 정선이(鄭先伊)를 발고한 일로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김봉추가 정선이를 만난 이후 자상(刺傷)을 입고 사망했다. 검관은 정황상 정선이가 김봉추를 살인한 것이 분명하지만,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끝까지 실토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조는 『무원록』의 조문을 근거로 김봉추의 자상(刺傷)을 자기 스스로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적으로 김봉추가 스스로 찔렀는지 아니면 정선이에

4) 문준영, 앞의 「사형 판결 없는 살옥죄인의 처리와 징벌-19세기 살옥 사건 심리·처결의 경향과 특징-」.

5)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審理錄』 卷15, 黃海道, 金川 鄭先伊獄 ;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3, 自他之分1 참고.

게 찔렸는지에 달려 있다. … 검안보고서에 기록된 상처를 보더라도, 《무원록》의 '찔린 상처가 시작된 곳은 무겁고 찔린 상처가 끝나는 곳은 가볍다.' 라고 한 글과도 서로 합치될 뿐만 아니라 게다가 김봉추의 옷에는 칼날이 스친 흔적이 없고 김봉추의 손에는 상처를 입은 흉터가 없었으니, 스스로 찔렀는지 남에게 찔렸는지는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6]

정조는 스스로 자신을 찌른 경우에는 상처가 시작되는 부분은 깊지만 상처가 끝나는 부분은 깊지 않다는 『무원록』의 조문을 근거로 김봉추의 자상(刺傷)을 판단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찔렸다면 피해자의 옷이나 손에 피살에 대한 방어흔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결국, 정조는 해당 사건을 자살로 판단하고 정선이에게 한 차례 형신을 가한 후 방송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사망 원인[實因]을 잘못 판단한 검관을 추고했다. 정약용은 정조의 사망 원인 판단이 가슴에 담아 둘 정확한 뜻이라고 평하기도 했다.[7]

전주 양시돌(梁時乭) 옥사에서도 세심하게 자살·타살을 판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8] 양시돌은 한설운쇠(韓雪云金)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어 그를 구타하여 죽였다. 이후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 당시 검관은 명백하게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음을 자세히 조사하여 구타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기록했다. 반대로 목과 뒷머리의 상처를 살펴보아 목을 매었을 때 생기는 상흔이 없다는 점을 통해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목을 매었다는 시렁이 높지 않고 시렁에서도 목을 매었던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자살이 아님을 확인했다.[9] 이처럼 검관은 타살인 근거와 자살이 아닌 근거를 모두 조사하여 제시했음에도, 정조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

6)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3, 自他之分1, "此獄肯綮 專在自刺與被刺 … 雖以檢狀中傷處觀之 非但與無冤錄 起手重收手輕之文相合 且衣無經刃之跡 手無受傷之痕 自刺被刺 不難辨別"(정약용 저, 박석무·이강욱 역, 2019 『역주 흠흠신서』, 한국인문고전연구소, 335쪽)

7)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3, 自他之分1, "此服念之精義也"(정약용 저, 박석무·이강욱 역, 2019 『역주 흠흠신서』, 한국인문고전연구소, 336쪽)

8) 양시돌 옥사에 대해서는 『審理錄』 卷5, 全羅道, 全州 梁時乭獄 ;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3, 自他之分5 ; 김호, 앞의 「《무원록》과 옥정 파악의 중요성」, 111쪽. 참고.

9)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3, 自他之分5.

게다가 『무원록』에 '죽은 뒤에 목을 매달면 그 색깔이 하얗다.'라고 한 조문이 있다. 애당초 시체를 검안할 때 어찌하여 이 점을 『무원록』에 맞추어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사실대로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10]

정조가 인용한 『무원록』의 내용은 사후에 목을 매달면 나타나는 특징으로, 정조는 검험 과정에서 그것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즉 단순히 타살인 근거를 찾아 밝히거나 혹은 자살이 아닌 근거를 찾는 것뿐 아니라 타살 후 자살로 위장한 흔적까지 찾아 확인함으로써 옥사의 실정을 분명하게 알아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사망 원인[實因]에 대한 정조(正祖)의 판정은 매우 신중한 것이었다. 특히,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의 경우, 핍박의 과정에서 구타를 동반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므로 사망이 구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고, 의심이 나는 경우 사망 원인과 관련한 내용을 따져 물었다.[11]

사망 원인을 판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경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해당 사건이 인륜이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도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여겨질 때 진행되는 심리 경향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요구하는 심리 경향이다.

첫 번째 유형의 심리로서 인륜을 고려한 대표적인 사례는 〈주요 사건 2〉에[12] 소개한 개성의 김용귀 옥사이다. 김용귀의 딸이자 정진옥의 아내였던 김여인은 시집살이를 겪다가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 이에 김용귀가 족당 10여 명을 이끌고 정진옥의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정진옥의 가족들을 구타했다. 이에 정진옥의 할머니 안조이가 자상(刺傷)을 입고 사망했다. 사건은 김용귀의 핍박에 의해 안조이가 사망이었고, 형조는 김용귀에게 상복

10) 『欽欽新書』 卷5, 祥刑追議3, 自他之分5, "且《無冤錄》有死後縊頸其色白之文 當初檢驗時 何不以此憑準【是隱喩】 亦令查實狀聞"(정약용 저, 박석무·이강욱 역, 2019 『역주 흠흠신서』, 한국인문고전연구소, 345쪽)

11)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는 『審理錄』 卷15, 黃海, 海州 李從奉獄 ; 『審理錄』 卷18, 京, 西部 孔萬彬獄.

12) 48쪽, 각주 100번.

(詳覆)을 시행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에 정조는 8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다음과 같다. 김용귀의 딸인 김여인의 사망 원인[實因]에 대한 의문, 족당 10인 중 주로 행패를 부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 정범 김용귀가 책임을 감수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 안조이에 대한 구타 사실, 안조이 자상(刺傷)에 대한 의문, 칼이 부뚜막에 놓여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의문, 늙은 안조이의 자연사 가능성, 안조이와 같이 있었던 손자 갑손(甲孫)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 등이다. 사건의 정황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김용귀 옥사는 정조의 의문이 어떻게 판정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김용귀에 의한 자살(刺殺), 족당에 의한 구타살(毆打殺), 안조이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찌른 자살(自殺), 늙은 안조이의 자연사 등 다양한 정황으로 판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도 정조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이상의 8가지 의문은 우선 제쳐 두고서라도 김용귀의 딸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것은 시할머니 안(安)여인의 집에서였으니, 김용귀가 의심하게 된 것은 천리(天理)로나 인정(人情)으로나 그럴 수 있다. 가령, 김(金)여인이 분명히 자결하였는데 안여인이 빌미를 만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여인이 김여인을 항상 괴롭히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하여 원통함을 품고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안여인이 그녀를 죽인 것이다. … 마땅히 상명(償命)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김여인의 아비된 자가 분이 올라 반드시 보복하려는 것을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는가. 마음대로 죽였다고 하여 관에 고하지 않은 율로 논하는 것은 가능하나, 헛되이 죽였다고 하여 상명(償命)하는 율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김용귀를 살려 주고 나서야 시부모의 의리를 바로잡고 아버지와 딸 사이의 윤리를 돈독히 할 수 있으니, 이것 역시 교화를 숭상하는 데 있어 하나의 큰 도리이다.**[13]

---

13) 『日省錄』, 정조 8년 3월 23일(戊申), "右項八條疑端 姑且置之 龍龜女之忽地致命在於媤祖母安女之家 龍龜之致疑 卽天理人情之所固然 而藉令金女分明自決 而安女無作俑之事矣 安女之於金女 常常侵困 備經苦楚 轉以至於齎冤辦死之境 此安女殺之也 … 當償命之人 爲金女父者 乘憤必報 夫誰曰不可 謂之擅殺 以不告官律論可也 謂之枉殺 以償命律論不可 龍龜傅生然後 可以正舅姑之義 而敦父女之倫 此亦崇敎化之一大關捩"

정조는 사건의 정황인 정(情)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법(法)을 고민하면서도 사건의 본질이 인륜과 관계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정조는 김용귀의 핍박과 그로 인한 안조이의 자살 상황 자체를 엄밀하게 따지고 있었으면서도, 김여인이 시가(媤家)에서 죽었다면 김용귀가 의심하고 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리고 정말 김여인의 죽음이 시가 식구들에 의한 것이라면, 김용귀는 그에 대해 상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성도 인정해주었다. 최종적으로 안조이 자살에 대한 김용귀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시부모의 의리를 바로 세우고 부녀 사이의 윤리를 돈독히 하는 의미에서 김용귀를 감사정배(減死定配)했다. 본래 형조가 사형(死刑)을 위한 상복(詳覆)을 요청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감형한 것이다. 인륜과 의리를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과 그를 통한 교화의 지향을 정조(正祖) 심리(審理)의 특징이라고 할 때,[14] '위핍인치사'에 대한 판결도 예외는 아니었다.

'위핍인치사'과 관련하여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이념을 반영한 심리도 주목된다.[15] 대표적으로 공주의 황유직 옥사[16]와 양양의 이해인 옥사가 있다.[17] 공주의 황유직은 산지(山地) 문제로 최상문을 협박했고, 최상문은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자해를 하기에 이른다. 또한, 황유직은 계집종을 이끌고 최상문의 아내인 서(徐)여인을 구박하기도 했다. 이에 서여인이 스스로 독을 먹고 죽었다. 최상문의 아들인 최종백은 격고(擊鼓)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맞아 죽었다고 아뢰었다. 형조는 거짓을 아뢴 최종백의 잘못을 지적

14) 심재우, 앞의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연구-』, 236~241쪽 ; 김호, 앞의 『정조의 법치』 164~169쪽.

15) '위핍인치사' 적용에 있어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이념을 반영한 정조의 심리와 그에 대한 평가는 김호에 의해 설명된 바 있다.(김호, 앞의 「조선후기 '위핍률(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對民觀)」) 이하 억강부약 이념과 관련한 내용은 김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16) 『審理錄』 卷1, 忠淸道, 公州 黃惟直獄 ; 『日省錄』, 정조 2년 윤6월 7일(乙丑) ; 김호, 앞의 「조선후기 '위핍률(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對民觀)」, 555~556쪽 참고.

17) 『審理錄』 卷8, 江原道, 襄陽 李海寅獄 ; 『日省錄』, 정조 6년 6월 13일(戊寅) ; 『日省錄』, 정조 6년 9월 27일(辛酉) ; 『日省錄』, 정조 7년 4월 28일(戊子) ; 『日省錄』, 정조 9년 5월 11일(乙巳) ; 『日省錄』, 정조 9년 7월 22일(己巳) ; 김호, 앞의 「조선후기 '위핍률(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對民觀)」, 556~557쪽 참고.

하면서도, 황유직에 대해 엄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조는 이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부를 내렸다.

> **대체로 이 옥사는 황유직이 사납고 모질게 해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최가의 선산을 빼앗고, 또 최가가 다리를 찌르게 하고, 결국에는 최가의 아내가 음독하여 죽게까지 한 것이니, 즉 비록 사형[償命之律]을 논할 수 없지만, '위핍인치사'의 가벼운 율문으로만 갑자기 처리하여 호향(豪鄕)이 멋대로 하는 풍습을 늘려서는 안 된다.**[18]

핍박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기본 형량은 장 100었으나, 황유직은 세 차례 형신을 받은 후 정배되었다. 즉, 황유직은 기본 형량에 비하면 가중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는 '위핍인치사'에 대하여 율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자살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권력 관계에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토호와 같이 권력이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괴롭혀 자살하게 했다면, 이는 더 중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리 과정이 거듭될수록 억강부약의 이념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이해인 옥사가 그러한데, 이해인(李海寅)이 박성재(朴成才)가 자기 집의 사판(祠版)과 제기(祭器)를 훔쳤다고 의심하여 집을 수색하고 사형(私刑)을 가했다. 이에 박성재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정조는 해당 사건을 처음 보고받고,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이해인이 위핍하여 죽인 죄[威逼殺死之罪]는 국법이 지엄하니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다.[19] 이는 '위핍인치사'조를 염두하고 박성재의 자살을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몇 차례 조사 지시와 보고를 받고 3년이 지나자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

> **지금 만약 '위핍인치사[威逼之律]'로만 판결하여 해인이 살아서 옥문(獄**

---

18) 『日省錄』, 정조 2년 윤6월 7일(乙丑), "大抵玆獄 專由惟直豪悍虐害之致 故旣奪崔哥之先山 又有崔哥之刺股 而末乃至今崔哥之妻 飮毒而致死 則償命之律 雖非可論 不可但以威逼之輕律 遽然勘斷 以增豪鄕武斷之習"

19) 『日省錄』, 정조 6년 6월 13일(戊寅), "以此以彼 海寅之威逼殺死之罪 三尺至嚴 決難容貸"

門)을 나가게 한다면, 어찌 단지 토호가 멋대로 침학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뿐이겠는가? 두려워 죽은 사람의 원한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한 것이다. … 도백은 직접, 심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 하나 각별히 엄하게 3차례 형추하고 감사(減死)하여 절도에 무기한 정배하라. 그것으로써 토호가 소민을 침학하는 습속을 징치하라.[20]

정조는 처음 박성재의 자살을 인식하면서, '위핍인치사'조로 처리할 것을 생각했지만, 심리를 진행하면서 토호의 탐학을 징치해야 한다는 억강부약의 논리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다. 정조는 해당 사건을 '위핍인치사'조로 처리하면, 장 100으로 이해인이 살아나간다는 것도 염두하고 있었다. 즉, 박성재의 자살이 토호에 의한 것이라면, 절대 이해인을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3차례 엄하게 형추하고 절도(絶島)에 정배하도록 했다. 이처럼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소민에 대한 토호의 침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억강부약의 이념에 따라 그러한 세태를 더 엄히 징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용귀, 황유직, 이해인의 옥사는 모두 당시 도덕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었다. 정조는 이와 같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판정하고 율문 상 형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의 배경과 자살자와 가해자의 권력 관계, 가해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 자살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인륜으로 비춰보아 용서할 여지가 있다면 용서하고, 사회 질서를 현저하게 무너뜨리는 경우라면 가중 처벌했다.

앞서 소개한 심리와 판결이 인륜과 사회 질서 등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와 관련한 심리였다면,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심리 경향도 확인된다. 이는 도덕적 가치를 크게 반영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서 주로 나타났다. 비교적 우발적이고 사소한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이용득(李龍得)은 가을옷을 제때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나무랐는데,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러 죽었다.[21] 박만세는 군정(軍丁)에 포함되

20) 『日省錄』, 정조 9년 7월 22일(己巳), "今若斷以威逼之律 使海寅生出獄門 則奚但土豪肆虐 難以知戢 亦恐死者茹冤 無以少洩 … 令道伯親執 除尋常箇箇各別嚴刑準三次絕島減死勿限年定配 以懲土豪侵撓小民之習"

어 아내가 죽게 된 일로 유(柳)여인에게 유감을 품었다. 이후 박만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유여인과 다투었는데, 유여인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22] 이처럼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자살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국왕은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했다.

'위핍인치사' 사건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와 핍박의 위법성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해자의 행위가 핍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했고, 핍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강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다. 가해자의 핍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의(自意)로 자살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도 파악해야 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핍박의 정당성도 달라졌다. 가령, 김제의 유몽골(劉夢骨)과 이계상(李啓祥)은 금전적 갈등이 있었는데, 유몽골이 이계상에게 심하게 욕을 하자 이계상의 아내가 비상(砒霜)을 마시고 죽었다. 이에 대해 어사 박천형(朴天衡)은 금전 문제가 없다면 핍박을 면하기 어렵지만, 금전적 문제가 있다면 헛된 죽음이라고 했다.[23] 즉, 유몽골의 폭언이 실제 금전적 문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런데 핍박의 위법성과 핍박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 판정은 일상적인 사건일수록 어려웠다.

앞서 언급한 이용득, 박만세 모두 형신 후 방송되었다. 이들은 Ⅰ장 1절 ⑶항에서 정리한 유아지율(由我之律)을 통해 판결했다.

> **속담에 이르지 않았던가? 너의 소의 뿔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담장이 무너졌겠는가? 바로 이용득을 두고 하는 말이다.[24]**

>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어찌 유아지율(由我之律)을 면하겠는가. 한 차례 형신을 더한 후 방송하라[25]**

---

21)『審理錄』卷4, 咸鏡, 端川 李龍得獄.
22)『審理錄』卷12, 忠淸, 淸州 朴萬世獄.
23)『審理錄』卷8, 全羅, 金堤 劉夢骨獄.
24)『審理錄』卷4, 咸鏡道, 端川 李龍得獄, "諺不云乎 非汝牛角 何壞我墻者 政爲龍得道也"
25)『審理錄』卷12, 忠淸, 淸州 朴萬世獄. "以此以彼, 烏可免由我之律乎 加刑一次放送"

앞서 정리한바 유아지율(由我之律)란 일종의 현대 형법의 조건설로서 필요조건의 명제만 성립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리이다. 즉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용득이 부인을 혼내지 않았다면 부인은 자살하지 않았음으로, 부인의 자살에 대해 이용득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박만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박만세가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면 유여인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박만세에게 유여인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인과관계 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지율(由我之律)을 통해 자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귀속하고 그에 따른 형벌로서 형신을 가한 후 방송한 것이다.

이때 가해지는 형신은 동추 과정에서 진행되는 고신(拷訊)의 일종으로 신장(訊杖)으로 30대를 때리는 신추(訊推)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율문에 따른 법적인 최종 판결을 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 과정에서의 고신으로 판결과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반복되는 신추 과정에서의 고신을 통해 죗값을 치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양의 한맹송은 의붓 사위인 오설안의 자살에 연류되어 8년 동안 수금되어 있었다.[26] 피고로 추정되는 의붓딸 청환은 이미 옥사했고, 한맹송의 죄는 오설안의 시신을 마음대로 묻고 시장(屍帳)을 은닉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형을 받은 것이 거의 200차례에 가까우니 그가 범한 바를 징계하기에는 족하다.’고 하며 한맹송을 방송했다.[27] 즉, 한맹송은 8년 동안 수금되어 200여 차례 신추를 당한 것이었고, 정조는 그것을 통해 그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신장(訊杖)에 있다고 생각한다. 『흠휼전칙』 내 형구지도(刑具之圖)에서는 신장(訊杖)과 장(杖), 태(笞)의 모습과 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28] 장(杖)과 태(笞)는 오형(五刑)에 속한 장

26) 『審理錄』 권11, 平安道, 平壤府 韓孟松獄.
27) 『審理錄』 권11, 平安道, 平壤府 韓孟松獄 “前後受刑 殆近二百次 足云懲渠所犯”
28) 『欽恤典則』 「刑具之圖」.

형(杖刑)과 태형(笞刑)을 칠 때 쓰는 형구이고, 신장(訊杖)은 동추 과정에서 죄인을 고문하기 위해 쓰는 형구이다. 신장(訊杖)은 장(杖)에 비해 더 두껍고 맞는 부위가 넓었다. 그러므로 신장(訊杖)이 30대라 하더라도 장(杖)에 비해 더 치명적일 수 있었다. 실제로 당시에 신장(訊杖) 30대는 장(杖) 100대에 준하기도 했다.[29] 그런데 중요한 점이 '위핍인치사'조의 기본 형량이 장 100이라는 점이다. 즉, '위핍인치사'로 의율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지라도, 한 차례 형신 후 방송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핍인치사'조의 형량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상황에서 형신 후 방송은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이자 법적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형신 후 방송된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즉, 엄밀하게 유죄·무죄를 판결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형신 후 방송을 통해 실질적인 처벌은 받게 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일이기에 형추를 통해 자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핍박과 자살에 대한 정조(正祖)의 심리 경향은 19세기 국왕의 판결 경향으로도 이어진다. 『심리록』과 『일성록』에서의 자살 관련 사건의 판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續大典』「刑典」 笞·杖·徒·流贖木, "刑推一次贖 准杖一百"

〈표 25〉『심리록』·『일성록』 내 성(性) 유형을 제외한
'위핍인치사'에 대한 판결 결과

판결 \ 자료		『심리록』	『일성록』
정배	減死 정배	4	10
	절도 정배	1	
	형신 후 정배	3	
충군			1
본율(의율)			1
신추		1	8
방송	형신 후 방송	4	
	방송	3	2
미상		2	5
합계		18	27

※『일성록』의 경우 해당 죄인의 최종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함.

『심리록』에서의 정조(正祖)의 판결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정배와 방송이다. 앞서 소개한 김용귀, 황유직, 이해인 등은 모두 정배되었다. 반면, 이용득과 박만세는 한 차례 형신을 당하고 방송되었다. 이는 자살을 발생하게 한 상황이 인륜, 사회 질서 등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경우 주로 정배로, 일상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형신을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판결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성록』 내에서의 판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경우는 대부분 정배되었다. 서산의 군교(軍校)였던 정시동(鄭時同)은 양반 김재훈(金在勛)의 핍박에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30] 김재훈이 정시동의 조카인 부억금(夫億金)에게 체문(帖文)에 이름을 써준 대가로 30냥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억금(夫億金)은 30냥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김재훈은 부억금과 정시동에게 사형(私刑)을 가했다. 이에 정시동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정시동의 아내인 김조이(金召史)가 격쟁을 통해 사건을 알렸고,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좌의정 한용구(韓用龜)는

30)『日省錄』, 순조 12년 10월 15일(甲寅) ;『日省錄』, 순조 13년 5월 20일(丙戌).

해당 사건이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와 『속대전』의 ‘무단향곡’조에 모두 해당한다며 차율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김재훈은 정배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민에 대한 토호의 침탈로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위핍인치사’조를 염두하면서도 억강부약의 이념을 반영하여 더 엄하게 처벌했는데, 정조대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된 것이다. 『일성록』 내에서 정배로 판결된 사건은 대체로 위와 같은 심리·판결 경향에서 나온 것이다.

『일성록』 내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계속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신추이다. 전체 27건의 사건 중 8건의 최종 기록이 신추였다. 신추를 통한 장기간 수금에는 고신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앞서 한맹송 옥사에서의 정조(正祖)의 언급처럼 처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심리록』에서 확인되는 정조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이고 우발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나 언어적 폭력과 같이 강도가 약한 핍박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추를 지시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3~4차례 신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일성록』 내에서 최초 처분이 신추로 기록된 후 후속 처분이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해자를 방송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정 기간 수금하고 형신 후 방송했던 것으로 자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 정조(正祖)대 이후 핍박과 자살에 대한 심리·판결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조는 사망 원인[實因]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따지는 것에는 관심을 덜 두었다. 이는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인과관계만을 따지기보다 자살이 발생하게 된 상황 전체를 인륜이나 사회 질서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김용귀 옥사나 황유직, 이해인 옥사와 같이 자살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 인륜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인민에 대한 침탈과 같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라면,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 율문에 기재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기도 했다. 반면 일상적이고 우발적인 갈등으로 발생한 자살이라면, 유아지율을 통해 자살과 관련된 사람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

고자 했다. 이 경우에는 동추 과정에서 진행되는 형신을 가하고 방송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대신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위핍인치사'에 대한 국왕의 심리와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위핍인치사'에 대한 관찰사의 심리와 판결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Ⅱ장 1절에서 살펴본바, '위핍인치사'조의 기본 형량은 장 100으로, 이는 관찰사가 직단(直斷)할 수 있는 형량이었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범죄는 관찰사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완영일록』에 기록된 50건의 자살 중 중앙 정부에 보고된 사건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으며, 18건은 서유구가 자신의 임기 동안 직접 최종 처분을 내렸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에 대한 판결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판결뿐 아니라 관찰사의 심리와 판결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31]

〈표 26〉『완영일록』 내 자살의 발생 상황과 처리 결과

문서 종류	자살의 종류 및 처리 결과		자살 건수	합계
검안 및 사안	기타 자살		14	1
	'위핍인치사' 자살	동추	18	36
		형신 후 방송	11	
		방송	4	
		정배	2	
		옥사	1	
심리 장계	'위핍인치사' 자살		1	1

위 표는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는 1년 9개월 동안 보고 받았던 자살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이다. Ⅰ장 2절 ⑴항에서 살펴본바, 서유구가 보고 받은 모든 자살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

31) 현재 관찰사의 사법 행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만한 고찰은 부족하다. 다만, 최근 서유구의 『완영일록』과 정원용의 『유경록』을 분석하여 관찰사의 사법 행위를 파악하려 한 이하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관찰사의 판결을 논의하는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김선경, 앞의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옥 사건과 심리: 『완영일록』의 분석」; 심희기, 앞의 「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 문준영, 2022 「『유경록』으로 보는 조선 후기 관찰사에 의한 살사(殺死)사건 처리 실태」『法學硏究』 제32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들은 가해자인 피고(被告)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관련자를 모두 방송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했는데, 기타 자살로 표시된 14건이 그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동추(同推)할 것을 지시한 사건은 18건이다. 해당 사건은 서유구 이후 부임한 관찰사에 의해 처리되었을 것이다.

각 처리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정배가 이루어진 사건은 윤판돌에 의해 발생한 김복돌의 자살과[32] 유(柳)조이에 의한 박복천의 자살이다.[33] 윤판돌은 여종 삼월(三月)과 간통했는데, 삼월의 남편인 김복돌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 윤판돌과 김복돌이 한 차례 싸운 후, 김복돌이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 이에 윤판돌이 김복돌 자살의 피고가 되었으며, 강진현에 정배되었다. 유조이는 박복천에게 빚을 독촉했는데, 이에 분노한 박복천이 비상을 먹고 죽었다. 박복천의 형인 박파회가 검험장에서 유조이의 남편을 칼로 찌르는 소동이 있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유조이는 광양현에 정배되었다. 서유구가 판단했던 ‘위핍인치사’ 사건 36건 중 두 사건의 피고는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았다. 최종 판결의 구체적인 논리와 맥락은 확인할 수 없으나, 김복돌의 자살은 간음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박복천의 자살은 검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 내려졌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서유구가 방송으로 판결한 4건은 어떤 사건일까? 옥과의 주대경은 술에 취한 것 때문에 아내 박조이(朴召史)와 다툰 후,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34] 금산의 정어인노미(程於仁老未)가 김조이(金召史)를 결박하자, 김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35]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으나 김조이의 잘못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고, 이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결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박 이외에 김조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실의 최(崔) 여인은 외방에 나갔다가 남편에게 잡혀 돌아왔는데, 남편의 책망이 두려워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36] 남편인 박진득(朴辰得)이 피고로 지목되긴 했으나,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

32)『完營日錄』癸巳 5월 4일 ; 癸巳 12월 21일 ; 甲午 8월 12일.
33)『完營日錄』癸巳 10월 9일 ; 癸巳 10월 12일 ; 癸巳 10월 13일 ; 甲午 8월 12일.
34)『完營日錄』癸巳 10월 10일.
35)『完營日錄』癸巳 10월 18일 ; 甲午 8월 10일.
36)『完營日錄』甲午 11월 25일.

되었다. 또한, 최여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정 가족들이 박진득의 무고함을 진술해주었다. 이에 박진득은 방송되었다. 이상의 사건들은 자살자와 피고 간의 갈등 관계가 확인되지만, 피고에게 분명하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신고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긴 했으나 끝내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 사건은 박거묵동(朴去黙同)이 피고로 지목된 봉엽(奉燁)의 사망이다.[37] 봉엽은 박거묵동의 아내와 화간을 했는데, 이를 박거묵동에게 들키게 되었다. 박거묵동은 두 사람을 잡아두었으나, 봉엽은 곧 도망쳤고 이내 비소를 먹고 죽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박거묵동이 봉엽과 부인을 잡아두는 과정에서 핍박이 있어 피고로 지목된 것 같다. 그러나 검험 결과 봉엽에게는 구타당한 상처가 없었다. 이에 서유구는 봉엽의 자살이 박거묵동의 핍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간을 들킨 수치심 때문이라고 보았고, 박거묵동을 방송했다. 이상으로 방송으로 처리한 4건은 최종적으로 핍박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핍박과 자살에 대한 서유구의 판결 중 가장 많은 것은 '형신 후 방송'으로 17건의 최종 판결 중 11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34년 3월 15일 서유구는 장성부에서 발생한 설조이의 익사 사망에 대한 사안(査案)을 받고 뎨김[題音]을 내린다.[38] 80살 노파였던 설조이는 젊은 김계손과 논을 두고 다투었다. 이에 설조이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서유구는 김계손에 대해 "'위핍인치사'조로 의율하는 것은 과할 수 있으나, 유아지율(由我之律)로 논한다면 그도 말이 없을 것이다."라며, 한 차례 형신을 가하여 공초를 받으라고 했다.[39] 이에 같은 달 19일 장성부의 보장(報狀)이 올라온다. 보고를 받은 서유구는 처음과 공초 내용이 달라진 것을 지적하며, 다시 한 차례 형신하여 공초 받을 것을 지시했다.[40] 약 5개월이 지난 8월 12일 다시 장성부의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37)『完營日錄』甲午 11월 26일.
38) 설조이의 자살과 관련한 내용은『完營日錄』甲午 3월 15일 ;『完營日錄』甲午 3월 19일 ;『完營日錄』甲午 8월 12일 참고.
39)『完營日錄』甲午 3월 15일, "擬以威逼, 則律或過情 論以由我 則渠當無辭"
40)『完營日錄』甲午 3월 19일.

①“논을 물러달라”는 요청과 “세금을 걷었다”는 말은 반드시 늙은 것만 믿고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나이 어린놈의 거친 습성에 편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를 욕하고 결박했을 것이다. ②비록 망령되고 경솔했다고 하지만 물에 빠져 죽을 줄 일찍이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행적을 파악하자니 협박에 가까운 것 같고 정황을 따져도 격발해 일을 만든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이것으로 죄로 삼아 가두고 형신했으면 징계가 충분하니, ④동 김계손은 한 차례 형신하고 풀어 주라.[41]

서유구의 판결에서 핍박과 자살을 대하는 태도를 읽어 낼 수 있다. ① 부분은 자살한 설조이와 관련된 발언으로, 설조이의 행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어서 ② 부분에서는 가해자인 김계손의 의도를 따진다. 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일 수는 있으나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어서 ③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수금되어 받았던 형신으로도 충분히 징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한 차례 형신하고 방송하라는 최종 지시를 내린다.

위와 같은 서유구의 판결은 앞서 정리한 정조(正祖)의 판결 중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했던 심리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자살 사건에 대해 ‘위핍인치사’를 염두하면서도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거나, 그에 따른 율문의 기계적인 적용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살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수금과 형신의 과정을 통해 자살을 유발한 행위를 징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핍박과 자살에 대한 정조(正祖)의 판결 경향이 19세기 관찰사의 판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유구가 최종적으로 처리한 17건 중 11건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것은 애초에 관찰사가 보고 받은 사건 대다수가 일상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자살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산군의 한조이는 산지(山地)를 두고 장기로(張基老)와 다툰 후 스스로

41)『完營日錄』甲午 8월 12일, “退沓之請 索租之說 未必非恃老惡行 則年少麤習 似難安受而詬之縛之 縱云妄率 溺焉死焉 曾豈慮到乎 執跡而似近於驅脅 原情而無涉乎激成 以此爲罪 囚訊足懲 同金啓孫 加刑一次放送 宜當享事”(김순석 외 번역, 2018『완영일록』4, 흐름, 40~41쪽.)

목을 매 죽었다.[42] 서유구는 최초 보고를 받고 한 차례 형추를 지시했으며, 최종적으로 '장기로가 악독한 말을 서로 한 것은 비록 증거를 댈 수 없더라도 진실로 감정이 쌓이지 않았다면 어찌 삶을 버렸겠는가. 고한을 기다려 다시 한 차례 엄히 형신하고 징려(懲勵)하여 풀어주라'고 판결했다.[43] 담양의 김왈문은 추종손이 소 값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분쟁이 생겼고, 추종손이 비상을 먹고 죽었다.[44] 처음 보고를 받은 서유구는 한 차례 형신을 가하여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위협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한 차례 엄히 형신하여 징려하라고 했다. 이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대체로 한 차례 형신한 후 방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처리에는 자살을 유발한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따지고 그에 대한 징려(懲勵)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영암의 곽몽섭에 의한 이(李)여인의 사망과[45] 금산의 포교 최광학에 의한 이원복의 사망을 예로 들 수 있다.[46]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곽몽섭과 그의 아내 이(李)여인, 아들 곽등이, 며느리 김조이(金召史)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아내 이(李)여인이 독을 먹고 죽었다. 구타의 흔적은 없는 것이 분명했고, 세 사람의 진술도 일치했다. 서유구는 해당 사건이 정배에 이를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신 곽몽섭에게 아내를 잘 거느리지 못한 죄가 있다며 장 30대를 치고 풀어줄 것을 지시했다. 포교 최광학은 이원복이 도적이라고 착각하여 이원복을 잡아들였고, 이에 이원복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서유구는 이를 '위핍인치사'로 의율하지 않았다. 대신, 압수(押囚)를 소홀히 한 것을 문제 삼아 곤장 30대를 치고 방송했다. 서유구는 핍박과 자살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더라도 이여인의 자살에 대한 남편 곽몽섭의 도의적 책임, 이원복을 제대로 압수해야 할 포교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

42) 금산군 한조이 자살 사건은『完營日錄』癸巳 10월 25일 ;『完營日錄』癸巳 11월 2일 참고.

43)『完營日錄』癸巳 11월 2일, "張基老段 惡言相加 雖無參證是乃 苟非績憾 胡至捨生待拷限 更加嚴刑一次 懲勵放送向事"

44) 담양부 추종손 자살 사건은『完營日錄』癸巳 10월 27일 ;『完營日錄』甲午 1월 27일 참고.

45)『完營日錄』甲午 10월 17일.

46)『完營日錄』甲午 9월 20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했고, 형신 후 방송하는 방식으로 징계한 것이다.

핍박으로 인해 자살한 '위핍인치사' 사건을 다루는 18~19세기 심리와 판결은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판단하고 '위핍인치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국왕과 관찰사는 자살이 발생하게 된 다양한 맥락과 상황, 자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인륜과 사회 질서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했으며, 가해자에게는 자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따지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을 부과하고자 했다.[47]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판단하는 것은 인륜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수많은 자살을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김용귀 옥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용귀의 핍박과 안조이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엄밀히 판단한 판결은 부녀, 고부 사이에 윤리를 외면하는 판결이 될 수 있었다. 많은 우발적인 사건의 경우, 유아지율을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이에 만약 자살이 발생한 상황이 인륜, 사회 질서 등과 관련이 있다면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위에서 더욱 엄히 처벌했으며, 일상적이고 우발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최소한의 징벌을 통해 자살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게 했다. 결국, '위핍인치사'는 자살로 인해 발생한 죽음을 법(法)으로서 처리해야 한다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제 심리와 판결은 자살이 발생한 상황과 도덕적 가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벌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⑵ 성(性) 관련 여성 자살에 대한 심리와 판결

Ⅲ장 1절 ⑴항에서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 경향을 확인했다. 그것은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따지고 율문 그대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도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면서, 가해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性)과

47) '위핍인치사'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심리·판결 경향은 정(情), 리(理)와 법(法)의 조화로운 판결을 추구했던 정조(正祖)의 지향(김호, 앞의 『정조의 법치』)에서 비롯된다.

관련한 여성 자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의 양상을 조금 달랐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 관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성(性) 문제와 관련한 자살을 다루는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형량이 참형(斬刑)이었기 때문이다. 즉, 사형(死刑)에 이르는 형량이기에 국왕이 최종 판결을 해야 했으며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본 항에서는 『심리록』을 중심으로 성(性)과 관련한 여성 자살에 대한 심리와 판결 경향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핍박의 여부와 강간의 기·미수 판정, 정표(旌表)의 문제 등을 다룬다. 다만, 본 항에서는 기왕의 여성의 성(性) 담론과 정절, 여성에 대한 범죄와 자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 성(性) 관련 여성 자살에 대한 의율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8]

성(性) 문제 특히 강간과 관련하여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핍박의 여부와 강간의 기·미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는 형량 때문이다. 『속대전』에서 사족(士族) 여성이 강간당했을 경우, 기·미수를 막론하고 부대시참(不待時斬)한다고 규정되었다. 이는 논리적으로 사족 여성의 경우 강간의 기·미수와 여성의 자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강간 미수 만으로도 사죄(死罪)이기에 그 후 자살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이 아닌 상천인(常賤人)은 다르다. 『대명률』에서 강간 미수는 유(流) 3000, 장(杖) 100이었으며, 강간 기수는 교형(絞刑),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은 강간의 기·미수 구분 없이 참형(斬刑)이었다.

48) 이와 관련하여 두 연구가 참고된다. 먼저, 김호는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가 강간의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지 않았음에도, 조선 후기 강간 미수 후 자살한 사건에 대해 사형의 처하지 않은 관행에 주목했다. 이는 직접 살인하지 않은 가해자를 사죄(死罪)에 처하지 않음으로써 부생(傅生)의 덕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의 결신(潔身)을 포장하고자 했던 당시 형정의 지향이 반영된 것이었다.(김호, 앞의 「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 한편, 백민정은 간통과 강간의 비대칭성에 주목했다. '치마를 당기고 밥상을 마주하는 행위[挽裳飯對]'를 간통을 성립하는 조건으로 보면서도, 강간의 성립 조건은 되지 못했다. 당시 사회에서 강간 기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 기준이면서 어려운 일이었고,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 역시 적용되기 어려웠다. 간통과 간음의 비대칭성은 당대 남성 지배층이 견지한 성 인식과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했다.(백민정, 앞의 「조선 후기 성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과 재판 양상-『審理錄』·『秋官志』와 『欽欽新書』의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형량 차이는 핍박의 여부와 강간의 기·미수를 확인하는 것이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을 뜻한다. 즉, 피해 여성이 자살했다면, 1차적으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 여부를 논의해야 했다. 결국, 핍박의 여부와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간의 기·미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률 구조 아래에서 핍박의 여부와 강간의 기·미수의 판정은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조대 처녀 이씨를 강간하려고 방에 들어간 김세흥에 대한 조정의 논의가 주목된다.[49] 동몽(童蒙) 김세흥은 이웃에 사는 이씨 처녀를 강간하고자 방에 들어갔으나, 이씨의 저항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3일 후 이씨는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영조(英祖)는 대신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김세흥의 추안(推案)을 함께 듣고 논의했다. 영조가 김세흥은 어찌해야 하는지 묻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과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죽여야 한다고 했으며, 호조판서 서종옥(徐宗玉)은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는 『대명률』에 수록되어 있으나,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살려 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조는 '양반이 위세로 핍박한다면 곧 위핍(威逼)이라고 이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어린 아이가 어찌 위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50] 영조는 그저 형량을 논하던 대신들에게 핍박의 여부를 상기한 것이다. 이어서 신하들의 의견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후 3일이 지나서 죽게 되었으니 핍박과 다르다는 의견도 나오게 된다.

3일 후 다시 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송인명은 '신이 처음 마땅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논의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또한 가히 취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조현명은 '위핍(威逼)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핍(威逼)이라면 어찌 법률을 적용하지

49) 김세흥의 처리와 관련한 내용은『承政院日記』981冊, 영조 20년 12월 10일 ;『承政院日記』981冊, 영조 20년 12월 13일 ;『秋官志』卷3, 詳覆部 奸淫 因奸殺人, 金世興獄案 : 김호, 앞의 「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 124~126쪽 참고.

50)『承政院日記』981冊, 영조 20년 12월 10일, "上曰 兩班威逼 則可謂威逼 而如此小童 有何威也"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51] 즉, 처음에는 사형이라고 의견을 냈던 두 대신이 핍박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자신의 의견을 바꾼 것이다. 김세흥이 이씨를 핍박한 것이 아니여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할 수 없다면, 적용할 수 있는 율문은 범간조의 강간 관련 내용이다. 영조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①이번 일은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율에 가까우나 지금 조율해보면 딱 맞는지는 모르겠다. ②비록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이나 김세흥의 강핍(强逼)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면 이는 ‘내가 아니라 칼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심상하게 ‘위핍인치사’조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3차례 엄형한 후 감사정배(減死定配)하라. ③급박한 때 이치에 의거하여 수절하였고, 무릇 일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없지 않은데, 오명을 입지 않았는데도 수일이 지나 자재(自裁)한 것은 그 절개가 더욱 숭살할 만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정려(旌閭)하도록 하라.[52]**

이상 영조의 판결은 강간, 자살과 관련된 사안에서 핍박의 여부와 강간의 기·미수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②를 통해 보면, 영조는 그녀의 자살이 김세흥의 핍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대신 범간조의 강간 미수를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여인이 자살했기 때문에 강간 미수만 적용하는 것이 딱 맞는 율문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했다.(①) 최종적으로는 강간 미수의 형량인 유3000리, 장 100에서 약간 가중하여 처벌했다. 한편, 그녀의 자살은 핍박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자살이 아니라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기에 정려할 수 있었다.(③)

이처럼 위핍의 여부와 강간의 기·미수 판정이 중요하게 드러난 사건이 『심리록』에 수록된 장수원(張水元) 옥사이다.[53] 한조롱(韓鳥籠)은 장수원에게

---

51) 『承政院日記』 981冊, 영조 20년 12월 13일, “寅明曰 臣初則以爲宜用法 而諸議多不然 亦有可取者矣 顯命曰 與威逼 少有間矣 若是威逼 則何不用法耶”

52) 『承政院日記』 981冊, 영조 20년 12월 13일, “此事其强奸不成之律則似近 而今者照律 不知襯着 雖然其所自斃 由於渠之强逼 則此所謂非我也刃也 不可以尋常 强逼威逼之律處之 嚴刑三次後 減死島配 造次之間 據理守節 凡事過時則不無解心者 旣不被汚過屢日自裁 其節可尙 其令該曹 特爲旌閭”

집을 빌려 살던 오라비에게 의탁하고 있었는데, 장수원의 강압에 맞서 자신의 정조(貞操)를 지키고자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정조(正祖)는 먼저 한 조롱의 절개에 찬탄하면서 복호(復戶)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장수원(張水元)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했다.

> **①떠밀어 죽인 자취는 비록 분명한 증거가 없으나, 핍박하여 죽게 한 율문은 꼭 들어 맞으니 해당 율문으로 단죄하여 이 외로운 혼령을 위로하는 것도 억울한 것을 펴고 화기를 이끄는 정사가 될 것이다. ②그러나 지극히 중한 것은 사람 목숨이고 더 없이 엄격한 것은 옥체(獄體)이니 간음으로 보면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으로 보면 직접한 것은 아니다. 한갓 나로 인한 죽음으로 급히 그의 목숨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은 법의 이치로 논하면 또한 신중함을 어렵게 하니 ③다시 도신에게 지시하여 엄히 사실을 캐물어 위협하고 핍박하여 죽게 했다는 진실한 사실을 밝혀 의견을 장계로 올려 품처하라.**[54]

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정조(正祖)는 장수원이 직접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핍박하여 죽게 한 율문 즉 '위핍인치사'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장수원에게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로 참형이 되므로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거기에 더해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직접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것이었다.(②) 그럼에도 장수원에게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위협하고 핍박한 분명한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했다.(③) 결국, 장수원 옥사를 처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핍박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한 달 후 다시 경상감사의 장계가 올라온다. 경상감사는 장수

---

53)『審理錄』卷25, 慶尙, 咸陽 張水元獄 ;『日省錄』, 정조 18년 3월 16일(癸卯) ;『日省錄』, 정조 21년 5월 18일(丁巳) ;『日省錄』, 정조 21년 윤6월 29일(정묘) ;『日省錄』, 정조 22년 5월 22일(을유) ; 김호, 앞의 「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 135~136쪽 참고.

54)『日省錄』, 정조 21년 5월 18일(丁巳), "擠殺之跡雖無眞贓 逼死之律 的是着題 斷以當律 慰此孤魂亦足爲伸枉導和之政而 至重者人命 莫嚴者獄體 以奸則未成奸也 以犯則非手犯也 徒以由我之死 遽使償彼之命 論以法理 亦合難愼 更令道臣 嚴加盤覈覈得劫逼致命之眞情 明證具意 見狀聞稟處"

원의 행적은 강간 미수일 뿐이고 한조롱의 죽음이 수원에게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겁박하고 간통하고 그녀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했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55] 즉, 경상 감사는 핍박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고, 강간 미수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형조는 『대명률』의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조를 언급하며,[56] 장수원의 핍박에 의해 한조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정조 역시 도신(道臣)의 논의는 너무 관대하고, 형조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가 부족했다. 이에 정조는 다시 한번 실정을 알아내라고 명했다. 그러나 끝내 만족할 만한 사정을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는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가 해당하는 율문이지만, 간음이 미수이고 직접 범행을 한 것도 아닌 사정을 고려하여 감율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57]

'위핍인치사'를 심리하는데, 핍박의 여부와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Ⅲ장 1절 ⑴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서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성(性)과 관련된 여성의 자살, 즉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할 때는 핍박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형률을 적용함에 있어 매우 신중했던 당시 심리의 전반적인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시에 핍박에 여부에 따라 적용할 형률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도 있었다. 현상적으로 핍박이 없었다고 판단하면, 강간 미수일 확률이 높았다. 이 때문에 강간 미수는 성(性)과 관련한 자살을 다룸에 있어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한 것이다.[58] 정리하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면서 핍박의 여부와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 강간의 기·미수 판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국왕의 심리는 그것들을 엄밀하게 판정하는 과정이었다.

강간과 그 후 발생한 자살을 다루면서 핍박의 여부를 엄밀하게 판정했으

55) 『日省錄』, 정조 21년 윤6월 29일(정묘), "以水元形迹而言之 不過欲奸而未成 今此鳥籠之辦命 謂由於水元 則可若謂之劫之通之使之投之則恐非本情 敢貢愚見恭俟處分"
56) 『日省錄』, 정조 21년 윤6월 29일(정묘), "大明律威逼人致死條有曰因强奸而威逼婦女致死者斬註曰以威以勢使人不得已自盡此律爲此獄準備"
57) 『日省錄』, 정조 22년 5월 22일(을유), '奸威逼雖云此獄當律而旣未奸成又異手擠則 … 減律酌處'
58) 김호, 앞의 「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

며, 결과적으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에 신중함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 혹은 강간 미수보다 정도가 약한 성적 희롱이나 모욕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 적용은 더 어려웠다. 예를 들어 전의의 오일운은 서(徐)여인의 치마끈을 당겼다.[59] 오일운은 상인(常人)이었고, 서여인은 반족(班族)이었기 때문에 형조는『속대전』의 규정을 가지고 조율했다. 즉, 사족 처녀에 대한 강간은 기·미수를 막론하고 부대시참(不待時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오일운의 행위를 강간 미수로 보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원의 김일선은 술에 취에 김여인의 속적삼을 건들였고, 이에 김여인이 독을 마시고 죽었다.[60] 이처럼 강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간 미수하기도 어려운 성적 희롱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했다.

위와 같은 성적 희롱과 모욕에 대한 판결 근거는 영조(英祖) 때 이미 만들어졌다. 영조(英祖) 13년 문중갑(文仲甲)은 8촌 누이 문옥지(文玉只)에게 희롱하는 말을 했고, 그것을 들은 문옥지는 비상을 마시고 죽었다.[61] 형조는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무릇 중갑은 설사 희롱하는 말을 했더라도, 옥지가 죽을 때 위핍(威逼)의 조짐은 없었으니, 곧바로 일률(一律)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이 있었고 동성 8촌으로 유복친(有服親)인데도 단지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죄가 장(杖)·유(流)형에 그친다는 것도 너무 가볍습니다. 마땅히 참작하여 죄를 정해야 합니다.**[62]

형조의 고민은 가해자 문중갑의 행위를 어느 정도의 범행으로 판정하고, 어떤 형량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살이 발생했으므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한다면, 문중갑은 참형이었다. 그러나 형조는 문옥지가 죽을 당시에 핍박의 조짐이 없었기 때문에, 참형하

59)『審理錄』卷5, 忠淸, 全義 吳一運獄.
60)『審理錄』卷8, 全羅, 南原 金日先獄.
61)『承政院日記』857책, 영조 13년 9월 23일.
62)『承政院日記』857책, 영조 13년 9월 23일, “大抵仲甲 設有戱言 玉只致死時 旣無威逼之端 則直施一律 未知允當 而彼旣由渠而死 同姓八寸 乃是有服之親 則只以强奸未成 罪止杖流 亦涉太輕 似當有參酌定罪之道矣”

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즉, 핍박의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강간 미수로 처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동성 유복친이라는 점이다. 문중갑의 행위는 친족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였다. 두 번째 이유는 문옥지의 자살로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강간 미수로 처리할 사건도 아니게 되었다. 문중갑의 행위에 대한 판정은 강간 미수에 준하는 성적 희롱과 간음으로 핍박을 가하여 자살하게 한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했으며, 핍박은 없으나 희롱에 의해 자살이 발생한 경우였다.

이에 대해 영조(英祖)는 참작하여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하라고 명했으며, 문옥지가 어린 나이임에도 절개를 보였다며 정려하도록 했다.[63] 영조의 해당 지시는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에 수록되었다.[64] 이후 성적 희롱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한 경우, 영조(英祖)의 수교에 준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 앞서 오일운과 김일선은 정배되었으며, 서여인과 김여인는 정려했다. 영조의 수교대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성적 희롱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서도 핍박의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을 신중히 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性) 문제로 인한 여성의 자살에 대한 정조(正祖)의 심리와 판결은 당시 형정의 지향을 보여준다. 강간·희롱 등으로 인한 자살은 다양한 율문에 의해 검토될 수 있었으며, 가해자의 행위를 어떻게 밝히고 규정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자살이 발생했다고 모든 사건을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로 의율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 매우 사소한 가해 행위마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핍박의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한 후에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고자 했다. 반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로 조율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간 미수로만 처리할 수도 없었다. 피해 여성이 자살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간 미수와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 사

63) 『承政院日記』 857책, 영조 13년 9월 23일, "上曰 參酌減死島配 而玉只 以稚騃之年 有此奇節 末世尤當各別褒揚 以爲聳動之道 特爲旌閭 可也"

64) 『新補受敎輯錄』, 「刑典」, 奸犯, "欲爲强奸其同姓八寸妹而未成 其女因此羞愧 飮毒致死者 旣無威逼之端 直施一律 未知允當 以强奸未成 罪止杖流 亦涉太輕 參酌 減死島配 其女 特爲旌閭【乾隆丁巳承傳】

이에서 형량을 결정하고 처리한 것이다.

한편, 성(性) 문제로 인한 여성의 자살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정표(旌表)이다. 앞서 소개한 영조대 김세흥·문중갑 옥사, 정조대 장수원·오일운·김일선 옥사에서의 모든 피해 여성은 정표되었다. 이외에도 『심리록』에 수록된 많은 여성 자살자들이 정표되었다. 이때 여성들에 대한 정표는 단순히 자살이라는 행위에 대한 찬탄 혹은 죽음에 대한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소개한 김세흥 사건의 추안(推案)을 처음 들은 영조(英祖)의 첫마디는 '그 여자가 어질다.[賢] 세흥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었다.[65]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영조는 이씨의 어떤 행동을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신료들의 발언 가운데, 조운목(趙雲逵)의 발언이 주목된다. 조운목은 '이치에 근거하여 꾸짖은 한 일은 마땅히 정표(旌褒)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66] 추측하면, 이씨는 어린 김세흥을 설득하고 꾸짖어 강간을 막은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이씨의 현명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에는 이치에 의거하여 수절한 것과 오명을 입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지켜 죽음을 선택한 것을 가상히 여겨 정려(旌閭)하도록 했다.[67]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더라도 강간을 막아 낸 이씨의 적극적인 행위와 사건 이후 자살에 이른 행동에 대한 정표를 내린 것이다.

한조롱의 자살에 대한 정조의 정표는 한조롱의 신분과 적극적인 행위에 주목한 것이다. 정조는 한조롱의 자살을 『오륜행실도』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만약 『열녀전』을 새로 쓴다면 한조롱의 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정조는 한조롱이 일개 농민의 천한 여성으로 글자도 모르지만, 강포한 일을 당해 끌까지 항거한 일에 대해 경탄했다. 이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죽기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68]

자살한 여성들에 대한 정표는 자살에 이르기 전 행했던 항거에 대한 것

65) 『承政院日記』 981冊, 영조 20년 12월 10일, "上曰 其女則賢 而世興則何如"
66) 『承政院日記』 981冊, 영조 20년 12월 10일, "雲逵曰 據理叱責一事 宜有旌褒"
67) 『承政院日記』 981冊, 영조 20년 12월 13일, "造次之間 據理守節 凡事過時則不無解心者 旣不被汚 過屢日自裁 其節可尙 其令該曹 特爲旌閭"
68) 『日省錄』, 정조 21년 5월 18일(丁巳), "此韓鳥籠之案 屢回看閱不覺嗟賞 噫彼鳥籠卽 一農戶之賊 女傭夫之小妹 年未及笄 眼不識字而 遇强暴於無人之室 被逼辱於荒村之夜始也 號泣而力拒終焉失死而不從 迺又憤身名之幾 玷懼賊謀之更 售義決取"

이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정표는 자살이라는 계기로 인해 내려질 수 있었고,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를 향하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항거를 통해 수절(守節)을 이루고 정조(貞操)를 보존했다는 것에 대한 포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핍박,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유린이 어느 사회나 있었기에, 여성의 항거를 정표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다만, 여성에 대한 정표의 맥락에는 항거, 자살, 정조(貞操)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법적인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했다.

여성의 자살, 정조(貞操), 정표 문제와 관련하여 모순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이단의 자살이다.[69] 웅천의 사족 이창범이 양녀 김이단을 강간하려고 시도했고, 그 후 김이단이 목을 매 죽었다. 처음에 형조는 사망의 원인이 강간 시도에 있으니 사형에 처할 일이라고 했다.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는 강간의 미수와 기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핍박의 여부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증거로 삼으려는 양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창범의 범행과 김이단에 자살의 전후 상항을 파악하여 핍박의 여부를 가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조(正祖)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한 번 죽는 것을 이미 스스로 결심했다면, 비록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의 용맹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알게 하는 바이다.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급하게 상명(償命)하여 강간이 이루어 졌다고 몰아간다면, 자세하게 밝혀야 할 정사에 흠이 되는 것이고, 이단(已丹)의 정조를 더럽히기에 충분한 것이다.**[70]

69)『審理錄』卷9, 慶尙道, 熊川 李昌範獄

70)『審理錄』卷9, 慶尙道, 熊川 李昌範獄, "一死早已自辦 則雖以賁育之勇 莫之能屈 此所以知其未成者也 明知爲未成 而急於償命 驅諸成奸 亦有欠於綜核之政 而適足以汙衊已丹之貞操【是如乎】

김이단이 자살을 하려 했던 용맹에 비춰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단정했다. 이어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상명하게 된다면, 이는 김이단이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본 것이고 그 경우 김이단의 정조(貞操)가 더럽혀진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조(正祖)는 사실을 확인하고,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죽은 김이단의 정조(貞操)에 관심을 두었다. 이창범을 사형한다면 이는 김이단이 강간당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되며 그럴 경우 김이단의 정조(貞操)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과도한 정조(貞操) 관념이 법적인 판단 의지를 압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여성의 자살, 정표(旌表), 정조(貞操) 등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요컨대 성(性)과 관련한 여성의 자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은 여성 범죄와 관련한 여러 율문 사이에서 적절한 판결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앞서 Ⅲ장 1절 ⑴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性) 문제를 제외한 사건들에서는 핍박의 여부와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세밀하게 따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의 적용에서는 핍박의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는 시도를 했다. 자살이 발생했다고 하여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행위마저 사형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핍박의 여부,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엄정히 판정하여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자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살로 사망에 이른 사건을 심상하게 처리할 수는 없었다. 이에 성(性)과 관련한 기존 형률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자살자인 여성의 항거를 포장(褒奬)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조(貞操)에 대한 과도한 지향이 법적인 처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성(性) 문제로 인한 여성 자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은 적절한 처벌을 위한 노력의 일면을 보여준다.

⑶『사법품보』내 조율(照律)

앞서 Ⅲ장 1절 ⑴항과 ⑵항에서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했다. 핍박과 그로 인한 자살 사건은 기본적

으로 ‘위핍인치사’조를 준거로 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심리록』, 『일성록』과 『완영일록』 등에서 율문을 적시한 논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본 항에서는 『사범품보』를 통해 핍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이 어떻게 조율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자살을 유발한 범죄에 대한 조율은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조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투구급고살인(鬪毆及故殺人)’조나 ‘간범(姦犯)’조, ‘불응위(不應爲)’조 등 다양한 조문이 함께 거론되었다. ‘위핍인치사’조를 비롯하여 어떤 율문이 함께 운위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선의 형법 내에서 자살을 다루는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법품보』 내 자살과 관련한 보고서와 질품서 등의 기록을 활용했다.[71] 『사법품보』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조율(照律) 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본 논문이 활용하고 있는 『심리록』과 『일성록』, 『완영일록』, 검안류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조율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명률』 규정을 통해 보면, 법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했고 이를 어긴 관리는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즉, 조선 사회에서도 죄를 확정하여 형을 선고할 때 구체적인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72] 그러나 본 논문이 활용한 『심리록』, 『일성록』, 『완영일록』 내에서 조문을 통한 구체적인 조율(照律)은 드러나지 않는다. 가령, 국왕의 판결 과정에서는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상명(償命)이 결정되면 비로소 공식적인 절차상 형조의 조율(照律)이 진행된다. 그런데 앞서 Ⅱ장 1절의 살옥의 처리 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조대 이후 국왕의 판결은 심리 단계에서 멈추고 범죄자에 대한 장기간 수금과 형추를 통해 처벌을 대신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율문을 적용하여 형벌을 내린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는 『완영일록』에서 확인한 관찰사의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

71) 『사법품보』에 자료적 특징에 대한 내용은 도면회, 2018 「해제 : 사법품보를 통해 본 갑오개혁 이후 사법 제도의 운영」, 『역주 사법품보』 1, 봄날의 책 ; 수록된 문서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설명은 김향숙, 2023, 「『사법품보(司法稟報)』에 수록된 문서의 특징과 의의」, 『古文書硏究』 62, 한국고문서학회 참고.

72) 鄭肯植, 2008 「大明律의 罪刑法定主義 原則」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17쪽 ~119쪽.

그런데, 『사법품보』에서는 각 사건에 대해 어떤 조문을 적용하고자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각 지역에는 재판소가 설치되어 외형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때 각 재판소는 종신 유배·징역과 같은 중형을 선고할 때나 형량을 감경할 때, 법률 적용에 의문이 생길 때 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73] 그러므로 『사법품보』 내 질품서(質稟書)와 보고서(報告書)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조문을 적용할 것인지, 해당 조문에서 형량을 감경해도 되는 것인지를 문의·보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구체적인 조문과 그에 따른 형량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 사건에서의 조율(照律)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사법품보』에서의 조율이 최종 판결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와 질품서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산출된 문서이다. 각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관보(官報)와 형명부(刑名簿) 등의 여타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법품보』 내 문서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의 차이가 있다. 즉, 어떤 문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율문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어떤 문서는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문서는 어떤 형별을 내릴 것인지 판결을 문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법품보』 내 각 사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해당 사건 내용과 처리 과정, 문서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때 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여 사건의 전체상을 그리는 것은 쉽지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문서의 종류, 사법 처리 과정 등과 상관없이 문서 내에서 언급된 조문 자체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이 분석한 『사법품보』 내 '위핍인치사' 사건 129건 중 70건에 대해 조율(照律)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율 양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위핍인치사'조로만 조율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총 43건이다. 두 번째는 '위핍인치사'조와 다른 조문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로 총 10건이다. 마지막은 '위핍인치사'조가 아닌 다른 조문을 통해 처벌하려는

73) 도면회, 앞의 「해제 : 사법품보를 통해 본 갑오개혁 이후 사법 제도의 운영」.

경우로 총 17건에 해당한다.

‘위핍인치사’조만을 적용한 사건은 대체로 물리적 폭력을 당한 후 자살한 경우와 경제적 압박에 의해 자살한 경우였는데, 각각 14건, 11건으로 두 경우를 합치면 25건이었다. 이는 전체 43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1901년 남편 김수봉(金秀鳳)의 화간 상대로부터 구타 당한 아내 안조이(安召史)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74] 이 사건에서는 총 세 사람이 처벌받았다. 화간의 상대이자 폭행을 주도한 피고 안조이(安召史), 안조이와 함께 핍박을 가한 간련(干連) 이조이(李召史), 그리고 남편 김수봉이다. 안조이의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재판소의 조율 내용을 다음과 같다.

> **피고 안조이(安召史)는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라는 율을 적용하여 태 100에 매장은 10냥을 추징하여 주고 (...) 간련(干連) 이(李)조이는 (...) 함께 나쁘게 때리고 욕하여 위핍(威逼)에 조력한 사실은 진술하여 자복한 것에 증거한 것이 명백하니 이를『대명률』「인명편」‘위핍인치사’조의 어떤 일로 다른 사람을 위핍(威逼)하여 죽게 한 율로 다시 조율하여 태 100에 매장은 10냥을 추징하여 주는 것으로 처리하여 선고한바 (...) 시친(屍親) 김수봉으로 말하면, (...) 다른 사람의 아내와 화간한 자취가 이미 법정에 드러났으니『대명률』「범간편」‘범간’조의 남편이 있는 사람과 화간한 율로 조율하여 태 90으로 징계하여 방송하며**[75]

화간의 당사자이자 폭행을 가했던 안조이는 피고가 되었으며, ‘위핍인치사’조에 의해 태 100에 매장은을 추징하도록 했다. 피고 안조이를 도와 함께 핍박을 가한 이조이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응위’조를 적용했다가, ‘위핍인치사’조로 다시 의율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수봉과 안조이의 화간은 사실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김수봉은 ‘범간’조로 처벌받게

---

74)『司法稟報』(甲), 73책, 報告書 第65號 ; 報告書 第77號.

75)『司法稟報』(甲), 73책, 第65號 報告書, “被告 安召史는 威逼人致死者 律에 擬照ᄒᆞ여 笞一白追給埋葬銀一十兩ᄒᆞ고 (...) 干連 李召史則 同惡毆辱과 助勢威逼이라ᄒᆞᆫ 事實은 陳供自服에 証ᄒᆞ야 明白ᄒᆞ온지라 此를 大明律 人命編 威逼人致死條凡因事威逼人致死者律에 更照ᄒᆞ야 笞一百追給埋葬銀一十兩處辦宣告이온바 (...) 屍親 金秀鳳言之ᄒᆞ면 (...) 和奸人妻之跡이 旣露公庭 故로 大明律 犯姦編 犯奸條 凡和姦有夫者律에 照ᄒᆞ야 笞九十懲勵放送ᄒᆞ오며”

되었다.

1902년 경기도 광주(廣州)의 송영재는 이웃의 이조이(李召史)를 폭행했고, 이조이는 독약을 먹고 사망했다.[76] 송영재의 아내 주조이(朱召史)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송영재는 그것이 이조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송영재는 송일삼(宋日三)과 조학봉(趙學奉)을 이끌고 가 이조이를 구타했다. 이에 이조이가 독을 마신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기도 재판소는 각 죄인에게 선고할 형량을 법부에 문의했는데, 송영재에게는 '위핍인치사'조, 송일삼과 조학봉에게는 '불응위'조, 주조이는 『대명률』「혼인」의 '출처(出妻)'조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위 두 사례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 이후에 자살이 발생한 경우, 폭행을 주도한 가해자에게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고자 했으며, 폭행을 도운 조력자도 함께 처벌받았다.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도 '위핍인치사'조의 적용 대상이었다. 1896년 제주의 오형도(吳亨道)는 아들 오정숙(吳正淑)의 노름빚을 갚으라는 시달림에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77] 강형오(姜亨五)와 강인석(姜仁碩)은 한 패거리로 오정숙을 노름에 끌어들여 빚을 지게 했다. 강인석은 오정숙의 집에 가서 말과 말 안장을 빼앗고, 오정숙의 팔을 깨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오형도는 행패를 막지 못하고 돈을 구하러 간다고 하고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제주목 재판소 판사는 강인석에게 '위핍인치사'조를 선고할 것에 대해 법부에 질품했다. 1904년 충주의 홍용복(洪用卜)은 윤긍섭(尹肯燮) 선산의 소나무를 베었다는 혐의로 소나무 값을 독촉 당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78] 이에 윤긍섭에게 '위핍인치사'조로 선고할 것을 보고 했다. 위와 같은 채무 독촉에는 위협과 핍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다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폭력이나 경제적 압박과 같이 직접적인 핍박에 의해 발생한 자살뿐 아니라 간접적인 핍박에 의해 발생한 자살도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소개한 〈주요 사건 6〉의[79] 백조이 자살이다. 손술찬은 징채를 목적으로 노병주와 김조이를 괴롭혔는데, 그것을 본 김조이

76) 『司法稟報』(甲), 73책, 質稟書 第63號.
77) 『司法稟報』(甲), 18책, 報告書 第3號.
78) 『司法稟報』(甲), 95책, 報告書 第70號.
79) 125쪽, 각주 73번.

의 어머니 백조이가 자살했다. 이에 황해도 재판소 판사 김완수(金完秀)는 손술찬에게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여 선고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은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물리적 폭력이나 경제적 압박과 같은 핍박으로 자살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핍박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자살하는 경우에도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조율할 수 있었다.

한편, '위핍인치사'조로만 조율한 사건의 유형뿐 아니라 적용하는 율문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Ⅰ장 1절 ⑴항에서 정리한바 '위핍인치사'조는 크게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①항,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한 핍박과 자살을 다루는 ②항, 간음과 도둑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한 경우를 다루는 ③항의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와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 등이다. 각 지역의 판사들은 각 사건에 따라 해당하는 율문을 적용하고자 했다.

'위핍인치사'조를 조율한 43건의 대부분은 ①항의 내용을 적용했다. 앞서 소개한 안조이, 송영재, 강인석, 윤긍섭, 손술찬 등에게는 모두 ①항의 기본 율문을 적용했다. 가족 관계 내에서 핍박과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②항으로 의율했다. 1901년 이조이(李召史)가 손아래 동서인 문조이(文召史)를 혼내고 때려, 문조이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80] 경기도 재판소 판사 조중목(趙重穆)은 해당 사건을 소공복(小功服)에 해당하는 어른을 핍박하여 죽게 한 경우에 준하여 선고했다. 1898년 개령군의 김팔용에게 강간당한 후 독을 먹고 죽은 김조이(金召史)의 죽음에 대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81] 앞서 〈주요 사건 1〉에서[82] 소개한 강시조의 사망에 대해서는 '도둑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盜威逼]'가 적용되어, 가해자 세 사람에게 교형이 선고되었다.[83] 이처럼 각 사건의 유형에 맞은 율문이 적용되었다.

---

80) 『司法稟報』(甲), 71책, 報告書 第55號.

81) 『司法稟報』(甲), 41책, 質稟書, 37b～38a면 "謹按 大明律人命編 威逼人致死條 講曰如因强姦而威逼婦女身死 謂之因姦威逼이라ᄒᆞ엿ᄉᆞ오니 今此八用之所犯이 恐合此律之條列"

82) 23쪽, 각주 44번.

83) 『司法稟報』(甲), 87책.

본 율문뿐 아니라 『대명률부례』의 조례(條例)가 활용되기도 했다. 1902년 평안도 용천에서는 과부 납치 사건이 있었다.[84] 홀아비였던 이지화(李之化)가 최봉세(崔鳳世)에게 뇌물을 주고, 최봉세의 6촌 누이에게 장가들려고 하였다. 1902년 음력 1월 17일 밤에 패거리를 모아 과부 집으로 가 소란을 피우고 과부를 데리고 왔다. 3일 동안 최조이(崔召史)가 끝내 저항하자, 이지화는 최조이를 돌려보냈다. 21일 최조이는 우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였던 민경호(閔京鎬)는 최봉세와 이지화를 각각 처벌하고자 했는데, 최봉세에게는 1896년 새롭게 제정한 법률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8조 7항 '方畧을 設ᄒᆞ야 人家 男女를 誘引ᄒᆞ야 自取 或 轉賣ᄒᆞ야 雇傭을 作ᄒᆞᆫ 者ᄂᆞᆫ 首'라는 율문을 선고했다. 이지화에게는 '위핍인치사'조에 대한 『대명률부례』의 조례를 활용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죽고 뜻을 지키길 원하여 따로 혼인을 주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 강제로 장가들고자 하여 멋대로 재물을 받아내고 이로 인해 죽게 한 경우'[85]에 해당한다며 조율했다.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형법대전』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의 제9절 위핍인치사율이다. 1905년 대한제국은 새로운 형법으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반포한다. 그러나 『대명률』 형률의 상당수는 『형법대전』에 그래도 계승되는데,[86] '위핍인치사'조 역시 마찬가지였다.[87] '위핍인치사'조는 총 5개의 조문으로 나뉘어 『형법대전』에 수록된다.

제488조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ᄒᆞ거나 私家에 監禁ᄒᆞ야 死에 致ᄒᆞ거나 綁縛ᄒᆞ야 危險處에 置ᄒᆞ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ᄒᆞ야 致死ᄒᆞᆫ 境遇에ᄂᆞᆫ 主使ᄒᆞᆫ 者ᄂᆞᆫ 絞며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子·孫·弟·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를 從ᄒᆞ야 下手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一年에 處ᄒᆞᆷ이라

제489조 財産이나 婦女를 奪取ᄒᆞᆯ 計로 人을 威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

84) 『司法稟報』(甲), 76책 報告書 第25號.
85)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一 婦人夫亡願守志 別無主婚之人 若有用强求娶 逼受騁財 因而致死 威逼者 依律問罪 追給埋葬銀兩 發邊衛充軍"
86) 심재우, 앞의 「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
87) 『대명률』과 『형법대전』의 '위핍인치사' 율문에 대한 비교는 원재연, 앞의 「1890년대 후반 유교 이념과 위핍률(威逼律)」 참고.

役 終身에 處홈이라.

제490조 婦女를 强奸ᄒᆞ다가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奸事의 成·未成을 勿論ᄒᆞ고 幷히 絞에 處홈이라.

제491조 守志ᄒᆞᄂᆞᆫ 寡婦를 用强求娶ᄒᆞ야 聘財를 逼受케 ᄒᆞ다가 因ᄒᆞ야 死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絞에 處홈이라.

제492조 事를 因ᄒᆞ야 威勢로 人을 逼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ᄒᆞ야 自盡에 致ᄒᆞᆫ 者ᄂᆞᆫ 懲役 終身에 處호ᄃᆡ, 幷히 埋葬費를 追徵ᄒᆞ야 死者의 家에 給付홈이라. 但 官吏가 應行ᄒᆞᆯ 公事로 因ᄒᆞᆫ 者ᄂᆞᆫ 此限에 不在홈이라.

『형법대전』의 위핍인치사율은 『대명률』 '위핍인치사'조의 내용 중 친족 관계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었고, 결박(結縛), 고타(拷打), 감금(監禁) 등의 구체적인 위력 행위가 추가되었다. 중요한 점은 『대명률』 '위핍인치사'조의 법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제492조는 『대명률』 '위핍인치사'조의 ⑴항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면서도 '자진(自盡)'을 명시함으로써, 자살이 형법상 피해 사실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491조의 수절 과부와 관련한 규정은 『대명률부례』의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88] 조문을 구성한 것이다. 즉, 『대명률』 '위핍인치사'조는 1905년 『형법대전』에서도 계승·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대전』이 반포된 후 자살의 피고에게는 『형법대전』의 제9절 위핍인치사율이 주로 활용된다.

『사법품보』 내 '위핍인치사' 사건 중 적용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율문을 확인할 수 있는 70건 중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와 『형법대전』의 위핍인치사율로 조율한 것이 총 43건이었다. 이는 조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위핍인치사'의 피고에 대한 조율의 두 번째 양상은 '위핍인치사'조와 다른 조문 중 어떤 율문을 적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 조율이 이루어진 70건의 사건 중 9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1896년 제주 함여송의 자살을 살펴보자.[89] 함여송은 전 부사(府使)였던 고계정의 핍박으로 스스로

88) 『大明律附例』 卷19, 刑律 人命, 威逼人致死, "一 婦人夫亡願守志 別無主婚之人 若有用强求娶 逼受騁財 因而致死者 依律問罪 追給埋葬銀兩 發邊衛充軍"

목을 매 죽었다. 이에 대해 제주부 재판소 판사 이병휘(李秉輝)는 해당 사건이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와 『대전회통』의 ‘호강품관무단향곡(豪强品官武斷鄕曲)’조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고,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고 하여 『대전회통』 조문을 적용하겠다고 법부에 보고했다. 법부도 ‘호강품관무단향곡’조를 적용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처럼 해당 범행이 여러 조문에 해당할 경우 어떤 조문에 따라야 하는지 논의했으며, 보통 높은 형량의 조문이 적용되었다. ‘위핍인치사’조와 함께 논의된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9) 〈주요 사건 7〉 1896년 제주 정의현의 함여송(咸如松)이 스스로 목을 매 죽은 사건이다. 함여송이 아들 함철석(咸喆石), 동생 함여백(咸如伯)과 함께 난산(蘭山)을 지나다가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김신효(金信孝)와 김재길(金才吉)을 만났다. 김재길이 빚을 갚기 위해 사촌 형의 소를 가지고 갔다고 호소했다. 다음날 함여송이 김재길에게 소를 어디에 두었냐고 하니 김재길이 그런 일이 없다는 듯이 행패를 부렸다. 이에 함여송이 동생과 아들 등 무리를 이끌고 김신효과 김재길을 잡아 관에 데려가려는데, 김재길이 몰래 도망쳐서 전 부사 고계정(高啓正)에게 하소연하였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김재길과 고계정은 채무 관계에 있었던 듯하다. 고계정은 자신의 고노(雇奴) 송팽근(宋彭斤)을 보내 김신효를 풀어주고 함여송 등을 잡아 오게 했다. 몇 사람이 잡혀가 매질을 당했는데, 함여송은 몰래 도망쳤으나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처음 사건을 보고한 정의군수(旌義郡守) 성준호(成俊鎬)는 사망 원인[實因]은 ‘자액치사(自縊致死)’로 피고는 고노 송팽근으로 기록했다. 두 번째로 사건을 조사한 대정군수(大靜郡守) 채구석(蔡龜錫)은 사망 원인[實因]은 ‘외겁자액치사(畏怯自縊致死)’로 피고는 고계정으로 기록했다. 제주부 재판소 판사 이병휘(李秉輝)는 고계정의 행위가 『대명률』의 ‘위핍인치사’조와 『대전회통』의 ‘호강품관무단향곡’조에 모두 해당한다며, 무거운 쪽인 『대전회통』의 ‘호강품관’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법부에 보고했다. 아울러, 처음 피고를 송팽근으로 지목한 정의 군수는 『대명률』 단옥(斷獄)의 ‘관사출입인죄(官司出入人罪)’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법부는 고계정에게 『대전회통』의 ‘호강품관’조에 따라 태 100에 징역종신에 처하고, 정의군수 성준호는 더 사정을 알아 볼 것을 지시했다. (『司法稟報』(甲), 15책, 質稟書, 第1號 ; 『法部起案』, 12책, 指令 第7號 建陽 元年 11월 18일)

〈표 27〉『사법품보』자살 사건 조율(照律)에 활용된 조문

법전	조문
『대전회통』, 「형전」, 금제	'호강품관무단향곡(豪强品官武斷鄕曲)'조
『대전회통』, 「형전」, 금제	'여가탈입(閭家奪入)'조
『대전회통』, 「형전」, 청리	'사대부늑장유장투장(士大夫勒葬誘葬偸葬)'조
『대전회통』, 「형전」, 간범	'사족처녀겁탈(士族妻女劫奪)'조
『대명률』, 인명편	'투구급고살인(鬪毆及故殺人)'조
『대명률』, 투구편	'위력제박인(威力制縛人)'조
『대명률』, 월소편	'월소(越訴)'초
『형법대전』, 제12장 제3절	'상인관재절도(常人官財竊盜)'조

자살을 발생하게 한 상황과 원인 등에 따라 다른 조문이 함께 논의된다. 앞서 언급한 함여송의 자살처럼 토호에 의한 핍박이 있었다면 '호강품관무단향곡'조가, 산송과 관련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면, '여가탈입'조나 '사대부늑장유장투장'조가 함께 조율되었다.[90] 심한 구타가 있는 경우에는 '투구급고살인'조나 '위력제박인'조와 '위핍인친사'조 중에 어떤 조문을 적용해야 할지 논의했으며,[91] 강간 이후 자살이 발생한 경우, '사족처녀겁탈'조가 함께 논의 되었다.[92] 추문과 누명, 무고와 문제로 자살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명률부례』 '월소'조의 오인명절(汚人名節)과 함께 논의되기도 하였다.[93] 이처럼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은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조율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다른 조문과 함께 논의되기도 했다.

'위핍인치사'조를 중심으로 조율이 이루어졌던 두 양상과 달리, '위핍인치사'조가 전혀 언급되지 않기도 했다. 총 17건인데, 이는 다시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살을 발생하게 한 다른 범행에 대해 처벌한 경우이다. 이때 주로 〈표 27〉의 조문들이 활용된다. 가령, 과부 허(許)조이를 죽게 한 한팔련의 강간 시도에 대해서는 『대명률』 '범간'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했으며,[94] 심한 폭력을 당한 후 독을 먹고 죽은 박흥석

90) 『司法稟報』(甲), 68책, 報告書 第30號.
91) 『司法稟報』(甲), 87책, 質稟書 第38號 ; 『司法稟報』(甲), 77책, 質稟書 第38號.
92) 『司法稟報』(甲), 95책. 報告書 第69號.
93) 『司法稟報』(甲), 15책, 報告書 第74號 ; 『司法稟報』(甲), 68책, 報告書 第40號 ; 『司法稟報』(甲), 76책, 報告書 第29號.

사건에 대해서는『대명률』'투구급고살인'조를 통해 의율했다.[95] 이는 범죄의 피해 결과로서 자살보다 피고의 범행에 집중하여 조율한 결과이다.

'위핍인치사'조로 조율하지 않은 17건 중 상당수는『대명률』의 '불응위(不應爲)'조로 처벌한다. '불응위'조는 특별히 규정이 없으나 사리에 맞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문이다. 경기도 양주의 허경오는 피고 강덕유에게 모욕을 받고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96] 허경오와 강덕유는 밤을 거래하기로 약속했는데,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자 강덕유가 허경오를 너[爾], 놈[漢]이라고 부르며 서로 다투었다. 모욕을 당한 것에 분함을 느낀 허경오는 강덕유의 집 측간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경기도 재판소는 처음에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 **삼가『대명률』을 살피건대, 젊은이가 어른을 모욕한 것으로 의율하면 너무 가벼운 쪽으로 귀결되고, 위핍치사로 조율하면 무거운 쪽으로 치우치게 되니, 해당 을에게 위핍치사율에서 1등급 감하여 태 90에 매장은 10냥을 추징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방송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옵기에 이에 질품하니**[97]

경기도 재판소는 허경오를 처벌하는 데 있어, 어른을 모욕한 일로만 처리하면 너무 가볍고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살이라는 결과는 발생했으나, 허경오의 핍박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정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위핍인치사'조에서 1등급 감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부는 강압의 자취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되물으며, 다시 율문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 재판소는『대명률』의 '불응위'조를 적용하여 태 80를 선고했다. 이처럼 자살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위핍의 정도 강하지 않은 경우는 '불응위'조를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했다.

정리하면, '위핍인치사'조의 피고를 처벌하기 위한 조율은 크게 세 가지

94)『司法稟報』(甲), 58책, 報告書 第11號.
95)『司法稟報』(甲), 59책, 報告書 第42號.
96)『司法稟報』(甲), 65책, 報告書 第7號.
97)『司法稟報』(甲), 65책, 報告書 第7號, "謹按大明律컨대 擬諸以少凌長이면 歸於太輕이요 照以威逼致死ᄂᆞᆫ딘 近乎偏重이오니 該乙人을 威逼致死律에 減一等하야 笞九十에 徵推埋葬銀一十兩ᄒᆞ야 處辦放送ᄒᆞ오미 妥當ᄒᆞᆯ듯ᄒᆞ옵기 玆에 質稟等因인바"

방향으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여 피고를 처벌하는 방식, ‘위핍인치사’조와 다른 조문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문을 통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종류, 핍박의 강도, 적절한 판결과 형량을 고려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조율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핍박과 그로 인한 자살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율문 ‘위핍인치사’조였으며, 반드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자살을 유발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판결의 지향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상 Ⅲ장 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은 국왕과 관찰사의 경우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심리록』을 통해 ‘위핍인치사’에 대한 정조(正祖)의 판결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정조는 ‘위핍인치사’ 사건에 대해 해당 율문을 염두하여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엄정하게 판단하고, 형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륜과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율문 상 형량보다 가중 처벌하고자 했으며, 교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지향했다. 반면, 그러한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적은 일상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유아지율(由我之律)을 통해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판결했다. 이때 내려진 형벌은 동추 과정에서의 고문인 신추(訊推)를 시행하고 방송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적절하게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조의 심리 경향은 19세기 국왕과 관찰사의 심리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19세기 국왕 심리의 대부분은 일정 기간 수금하며 신추하다가 방송하는 것이었다. 관찰사도 신추(訊推)를 실질적인 형벌로 활용했다.

한편, 성(性)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양상을 달리했다. 성(性)과 관련한 당대 관념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법률적 측면에 주목했다. 성(性)과 관련한 율문인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가 참형이기 때문이다. 즉, 성(性)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살에 대해 율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가해자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사형 집행을 극도로 제한하기 시작한 조선 형정의 맥락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었

다. 이에 핍박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 묻는 방식의 심리를 진행했다. 가령, 강간 시도나 희롱이 발생한 후 자살했을 경우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면 가해자는 논의의 여지 없이 모두 사형이었다. 그러나 강간 시도나 희롱의 과정에서 핍박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한 정황과 증거를 명백하게 발견할 수 없다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미 자살이 발생한 사건을 심상하게 처리할 수도 없었다. 이에 강간미수율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사법품보』내의 조율(照律) 양상을 정리했다.『심리록』,『일성록』과 같은 앞선 시기의 자료들에서는 구체적인 조율(照律)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사법품보』에서는 그것이 드러난다. 갑오개혁 이후 각 지역의 재판소가 설립됨과 동시에 각 지역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법부(法部)에 보고하거나 문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율문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사법품보』내 조율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위핍인치사'조로만 조율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건의 유형으로는 물리적인 폭력 이후에 자살이 발생한 경우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살한 경우에도 '위핍인치사'조를 통해 처벌하고자 했다. 적용하고자 한 율문으로는 '위핍인치사'조 ①항, ②항, ③항이 모두 활용되었으며,『대명률부례』의 조례(條例)도 활용되었다. '위핍인치사'조를 계승한『형법대전』의 위핍인치사율이 활용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위핍인치사'조와 다른 율문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였다. 토호, 산송, 성(性) 문제 등 사안에 따라 해당하는 다른 율문이 함께 검토된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핍박의 강도가 약하거나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기도 했는데, 이때는『대명률』'불응위'조를 통해 조율하고 처벌했다.

이상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대응을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했다. 공통적인 것은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기준은 '위핍인치사'조라는 것이다. 동시에 당시의 심리와 판결이 율문

에 의한 기계적인 적용은 아니었다. 발생한 사건이 인륜, 사회 질서와 같이 당시 도덕적 가치와 결부되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고려했다. 율문의 적용에 따른 처벌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고려하면서 판결하고자 했다. 또한, 자살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위핍인치사'조로만 의율한 것은 아니었고, 사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율문이 함께 논의되었다. 위와 같은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판결 양상은 정의로운 판결을 추구하는 조선 형정의 맥락 위에 있었다.

2. 민간 사회의 대응

『대명률』‘위핍인치사’조는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앞서 그에 대한 심리와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위핍인치사’에 대한 민간 사회의 대응은 자살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핍인치사’를 인식하는 것은 자살의 발생으로부터 비롯된다. 자살이 발생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그 가해자를 찾고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은 위와 같은 공식적인 사법 처리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곧 ‘위핍인치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위핍인치사’에 대한 인민들의 대응을 확인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자살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시 인민들은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대하는 나름의 관점과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⑴항에서는 자살한 시신을 발견한 후 관(官)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살펴본다. 이는 여러 자살 가운데 ‘위핍인치사’조의 피해 결과로서의 자살과 그렇지 않은 자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⑵항에서는 ‘위핍인치사’에 대해 직접 책임 소재를 따지는 행위로서 시신이 놓인 장소 문제를 다룰 것이다.

⑴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살

대부분의 살옥(殺獄) 사건은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변사자가 나오면 주변 사람이 관할 수령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로부터 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사건을 처음 조사하고 기록한 초검안(初檢案)에도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 가령, “이번 달 15일 신시(申時)쯤에 본군 장구동면 면장 윤도경이 보고하길”[98]이라거나 “군수가

98) 『魯城郡長久洞面西邊里致死男人申泰嫺初檢案』(奎21395), “本月十五日申時量에 本郡長久洞面面長尹道京報告內에”

화양동 봉심(奉審) 후 돌아오는 길에 본군 산내일면 내동에 인명이 죽은 변고가 있어 오는 중에 발고하므로"[99]와 같이 신고한 사람과 날짜, 시간을 기록하거나 신고받을 때 수령의 상황 등을 함께 기록했다.

신고로부터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살 신고는 일반적인 타살 신고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해당 자살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사회에서 발생했던 모든 자살이 '위핍인치사'의 피해 사실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문종대 박이창의 자살이나 영조대 화순옹주의 자살과 같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지는 자살도 있었다. 그러므로 자살 상황 혹은 자살한 시신을 발견한 일반 백성들은 해당 자살이 신고해야 하는 자살인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다. 타살 신고와 자살 신고의 두 번째 차이는 가해자인 피고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타살의 경우에는 실제 살인한 사람이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핍박을 가한 피고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서 신고해야 했다. 즉, 인민들의 '위핍인치사'에 대한 대응은, 자신들이 목도한 자살이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자살인지를 판단하고 피고는 누구인지를 지목하여 신고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민들의 자살에 대한 대응은 신고해야 하는 자살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가령, 누군가 강물에 뛰어든 자살을 목격했을 때 목격자는 그것을 신고할지 안 할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의 괴롭힘이나 협박, 폭행으로 자살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유구(徐有榘)의 『완영일록(完營日錄)』에 기록된 장조이(張召史)의 자살을 보자.

옥구현(沃溝縣) 사안의 뎨김. 【본 현에 사는 장조이가 자식을 잃은 후,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게 된 일. 사관(査官)은 옥구현감 김수만(金秀萬)】 사안을 받아보니, 단지 아들을 잃을 비통함으로 결국 목숨을 잃는 변고에 이르렀으니 죽음이 진실로 허망하고 실정이 참혹하다. 시친

99) 『淸州郡山內一面內洞致死男人崔巡京文案』(奎21609), "郡守가 華陽洞奉審回路에 本郡山內一面內洞에 人命致死獄變이 有하야 中路發告한 故로"

(屍親)은 애초에 말 한마디 없었고, 매장한 것도 이미 달을 넘겼으니 면임(面任)이 갑자기 대신 보고하여, 일 없는 데에 일을 만든 것은 규례에 어두운 것일뿐더러 경솔함이 심하다. 장 20대를 치고 징려(懲礪)하여 풀어주라. 갇혀 있는 홍성운(洪成云)은 다시 조사할 숨긴 사실이 없으니, 어찌 여러 날 가두는가? 모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100]

장조이(張召史)는 자식이 사망한 후,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가족들은 수령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매장도 이미 끝낸 상태였다. 그런데 한 달 후 면임(面任)이 갑자기 장조이의 자살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옥구현감이 사건을 조사한 후,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서유구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위와 같은 뎨김[題辭]을 내린 것이다. 주목할 것은 장조이의 자살에 대해 그 가족과 면임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녀의 자살에 대해 어떤 문제도 삼지 않았고, 매장까지 마쳤다. 그런데 면임은 한 달이 지난 후임에도 이 사실을 현감에게 신고했다. 가족들은 장조이의 자살이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면임(面任)은 이와 달리 생각했다. 현감이 작성한 사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면임의 생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면임은 적어도 단지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장조이가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남편인 홍성운(洪成云)과 관련된 자살이라고 판단을 것이다. 면임은 장조이(張召史)의 자살이 홍성운의 핍박에 의한 자살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판단은 신고해야 하는가, 아닌가의 경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자살에 대한 신고라는 것은, '위핍인치사'에 대한 인민들의 1차적인 대응이었다. 동시에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자살과 그렇지 않은 자살을 구분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다.

한편, '위핍인치사'를 신고하는 것은 다른 인명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가

100)『完營日錄』 卷1, 癸巳年, 8월 13일, "題沃溝縣査案【本懸居張召史 喪子後 不勝悲慟 自縊致死事 査官沃溝縣監 金秀萬】査案捧上是在果 只緣喪明之慟 終致喪命之變 死固浪矣 情則憾矣 屍親初無一言 埋葬亦旣歷月 則面任之忽地替報 無事生事者暗例除良 妄率極矣 決杖 二十度 懲礪放送爲旀 在囚是在洪成云段 旣無更査之隱情 胡爲多日之滯囚是隱喩 一體放送 宜當向事"

족이나 풍헌(風憲), 면임(面任)에게는 의무였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임을 인지하고도 숨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도 했다. 1834년 7월에 신고된 전주부의 임조이(任召史) 자살 사건이 한 예이다.[101] 김재술(金在述)이 자신의 첩 임조이를 구타하고 쫓아내니, 임조이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임조이 자살이 보고되기 한 달 전, 전라도 지역은 장마로 큰 피해를 당했는데, 임조이는 이때 익사한 것으로 보고되어 휼전(恤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었고 임조이가 자살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에 대해 서유구는 다음과 같은 제사를 내렸다.

> **떠내려가 빠졌다는 조항은 이미 그 어미 이조이(李召史)가 뇌물을 탐하여 원수를 숨겨주려는 첫 계책에서 나온 것이나, 마지막에는 공초를 바꾸어 사실이 탄로 났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다.**[102]

> **이 옥사가 이러한 갈등에 이른 것은 오로지 해당 면의 도윤(都尹)이 뇌물을 받고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비록 길에 엎어진 시신을 규례에 따라 보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감히 아주 조금도 움직일 수 없거늘 하물며 이와 같은 인명(人命)에 관계된 옥사임에랴. 사실을 바꾸어 염연히 거짓 보고를 하였으니 이를 엄히 징계하지 않으면 훗날의 폐단은 말하기 어려울 것이니**[103]

첫 번째 내용은 임조이의 어머니 이조이가 뇌물에 욕심을 부려 임조이 자살을 익사로 처리하는 일에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두 번째 내용은 익사로 거짓 보고한 것이 면의 도윤(都尹)이고, 그도 김재술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먼저 주목할 점은 김재술과 이조이, 도윤(都尹) 세 사람 모두 임조이의 자살을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기 때문에 숨겨야 한다고 생각

101)『完營日錄』卷6, 甲午年, 7월 8일.
102)『完營日錄』卷6, 甲午年, 7월 8일, "涂溺一條 旣出其母李召史貪賂匿讐之初計 而末復變招 情狀破綻 則更無可論是遣"
103)『完營日錄』卷6, 甲午年, 7월 8일, "此獄之致此葛藤 專由該面都尹受賂瞞報之致是如乎 雖路傍僵屍之循例報官者良置 猶不敢一毫低昂是去等 況於似此人命關係之獄是乙喩 變幻事實 厭然瞞報 此不嚴懲 後弊難言"

하게 되었고, 장마로 인한 익사로 위장했다. 서유구는 김재술의 뇌물과 세 사람의 위장 공모뿐 아니라 도윤의 신고 의무도 지적했다. 길에 있는 시신을 신고하거나 인명(人命)과 관계된 사건을 보고할 때는 자의적인 조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인 해당 사례 역시 신중히 보고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상의 내용처럼 당시 민간 사회에서 '위핍인치사'에 대한 대응은 피해 사실인 자살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살 현장이나 자살한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만약,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이라고 판단했다면 신고해야 했다. 반대로 핍박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신고할 자살이 아님에도 신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으며, 혹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자살을 신고하지 않기도 했다.

위와 같이 신고 여부가 '위핍인치사'의 대응 중 하나라고 할 때, 자살의 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를 누구로 지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비교적 가해자가 명백한 타살과 달리 자살의 가해자인 피고를 결정하는 것은 신고자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피고로 지목할 것인지를 두고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즉, 자살을 목도한 후, 누가 피고인지 짐작하거나 지목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1887년 발생한 칠원군의 표조이(表召史) 사건이 그 한 예이다.[104] 표조이는 홍일문(洪日文)의 아내였는데, 안영원(安榮遠)과 화간하다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그녀는 물에 빠져 죽으려 했으나 남편에게 구조되었고, 다음 날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그 후 홍일문과 안영원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표조이가 이미 죽고 일문이 관에 고하고자 하니 고로 제가 일문에게 대답하며 말하길 '너의 처가 죽은 것은 심히 맹랑한데 네가 관에 고하면서 장차 누구를 지목하려는가' 하니, 일문이 말하길 '죽음이 너와 화간 후에 나왔으니

104) 이하 표조이 자살과 관련한 내용은 『漆原郡榮洞里致死女人表召史獄事覆檢案』(奎 26324) ; 오승관, 앞의 「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 193~195쪽 참고.

너를 지목하지 않으면 누구를 지목하겠는가.' 하여, 제가 말하길, '이러나 저러나 논할 것 없이 사람이 이미 죽었다. 무사히 수렴(收斂)하고 무사히 출빈(出殯)하는 것이 역시 좋지 않겠는가' 하고..."[105]

화간의 당사자인 안영원은 남편인 홍일문이 관(官)에 신고할 것을 알자 누구를 함께 지목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해 홍일문은 당연히 안영원을 지목하겠다고 답한다. 안영원은 특별히 반박하거나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나 잘 치르라고 에둘러 답했다. 두 사람은 모두 표조이의 자살을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편인 홍일문은 아내의 자살을 관에 신고하고자 했으며, 안영원 역시 홍일문이 신고할 것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두 사람에게 표조이의 자살은 신고해야 하는 자살이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표조이의 자살을 신고한다면, 자살을 유발한 피고를 지목해야 한다는 사실도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안영원은 누구를 지목할지 직접 물었고, 홍일문은 안영원을 지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영원은 특별한 반박을 덧붙이지 못했다. 이는 표조이 자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살의 피고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화간의 당사자인 안영원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표조이의 자살이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라고 할 때, 안영원은 자신이 피고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남편인 홍일문이 표조이를 구타하고 핍박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살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 특히, 표조이가 익사를 시도하기 전에 홍일문의 핍박이 심했다고 진술했다.

일문이 도망간 그 아내를 잡아와 화간(和奸)한 일로 말꼬리를 잡아 어찌나 구타하고 어찌나 위핍(威逼)하던지, 그 표조이가 빠져 죽고자 하여 성터 연못으로 가는데, 일문이 산로로 쫓아올라가 그 아내를 잡아 끌고 아내로 내려오니[106]

---

105) 『漆原郡榮洞里致死女人裵召史獄事覆檢案』(奎 26324), "表召史가 已死而 日文이 欲爲告官 故로 矣身이 對日文曰 汝妻之死가 甚是孟浪而 汝欲告官則 其將指目於何人고 ᄒᆞ니 日文이曰 死出於汝和奸之後ᄒᆞ니 指目者 非汝伊誰오커을 矣身이曰 無論以此以彼ᄒᆞ고 人旣死矣라 無事收殮ᄒᆞ야 無事出殯이 不亦好乎아"

106) 『漆原郡榮洞里致死女人裵召史獄事覆檢案』(奎 26324), "日文이 覓來在逆之其妻

그러나 표조이가 익사를 시도하기 이전까지 남편인 홍일문의 구타는 없었으며, 익사 구조 후 한 차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홍일문의 핍박은 인정되지 않았고 안영원은 해당 사건의 피고(被告)가 되었다.

자살에 대한 신고와 그 신고 내용으로 피고가 지목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피고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종성의 오(吳)여인은 자신의 사위 김제몽(金齊夢)과 소 값을 두고 다투었는데, 김제몽이 스스로 목을 매 죽는다. 이에 대해 함경도 관찰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오 노인이 죽겠다고 협박한 것에 겁을 먹었습니다. 핍살(逼殺)을 면하고자 하여 먼저 자살했습니다.**[107]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경과는 알 수 없다. 다만, 관찰사의 보고를 그대로 따른다면, 김제몽은 오여인의 자살 위협에 겁을 먹은 것이다. 김제몽은 오여인이 자살한다면, 자신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 그 자살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김제몽은 오여인의 사망에 대한 '위핍인치사'의 피고(被告)가 되지 않기 위해, 즉 자신이 오여인을 핍살했다는 혐의를 면하기 위해 먼저 자살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자살 상황을 대면하면 신고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했다. 해당 자살을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신고하지 않았고,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이라고 생각하면 신고했다. 만약 자살을 신고한다면, 그 가해자인 피고(被告)를 함께 지목했다. 즉, '위핍인치사'에 대한 민간 사회의 대응은 자살에 대한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었으며, 그 신고는 자살에 대한 판단, 피고에 대한 판단의 결과이기도 했다.

ᄒᆞ야 執言和奸之事ᄒᆞ야 何樣毆打ᄒᆞ며 何樣威逼이던지 其妻表召史가 欲爲溺死하야 向往城址沼 則日文이 追到山路峴 逢着其妻ᄒᆞ야 捽曳下來"

107)『審理錄』卷5, 咸鏡道 "恤吳婆之托死 欲免逼殺 先爲自裁"

⑵ 시신이 놓인 장소와 자살의 책임[108]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 백성들은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을 신고함으로써 대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자살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실마리로 도뢰(圖賴)에 주목한다.[109]

사전적 의미의 도뢰는 '말썽을 피우거나 일을 저질러 놓고 그 허물을 남에게 덮어씌움' 이다. 그러나 도뢰는 조선 사회에서 살인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범죄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명률』 권19 인명(人命)에는 '살자손급노비도뢰인(殺子孫及奴婢圖賴人)'조가 실려있다. 자신의 자식이나 손자를 죽이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모나 조부모의 시신을 가지고 타인에게 살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도뢰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따르면,[110] 도뢰는 '시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여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면서 관에 고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실제 조선시대 도뢰 사건의 사례로 황해도 조재항 옥사가 있다.[111] 조재항의 아내 윤(尹)씨가 사망한 후 큰 문제 없이 장례를 치르고 매장도 마쳤다. 그런데 한 달 후 윤씨의 인척인 이가원과 조환이 윤씨가 조재항에게 발로 채여 죽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시체를 다시 파내어 살이 뼈와 달라붙은 시신을 검험했다. 검험 결과 등에 상처가 있었으나 발로 채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건의 전모는 이가원이 조재환에게 후한 장례비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윤씨의 원한을 담은 농요(農謠) 만들어 마을에 퍼트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관에 고발한 것이었다. 정조는 이가원의 행위를 시

108) 오승관, 앞의 「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의 3. 시신이 놓인 장소와 위핍자살의 책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함.

109) 서정민, 2012 「〈欽欽新書〉의 도뢰 사례 고찰」『다산학』 20, 다산학술문화재단 : 김호, 2015 「조선후기의 '圖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호, 앞의 『정조의 법치』, 228~234쪽.

110) 김호, 앞의 「조선후기의 '圖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

111) 조재항 옥사와 관련한 내용은 『審理錄』 卷4, 黃海道, 白川趙載恒獄 : 김호, 앞의 「조선후기의 '圖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 참고.

신을 이용한 도뢰 행위로 규정하고 죽을 때까지 극변에 정배시킬 것을 명했다.

18세기 후반 이옥(李鈺)의 「성진사전(成進士傳)」에는 당시 세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 **세상에 이 인간들이 있은지 오래되었다.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詐欺)가 날로 들끓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굶어 죽은 시체를 업고 밤에 남의 집 문을 열어 젖혀 주인을 급히 부르고는 성질을 돋게 하여, 서로 주먹질을 하는 데까지 이른 뒤에 , 비로소 큰 소리로 "주인이 내 친구를 죽였다! 관가에 가서 고발하겠다."라고 한다.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서야 일이 겨우 가라앉게 된다.**[112]

주목할 것은 시체와 장소이다. 시체를 업고 남의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며 도뢰(圖賴)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러한 도뢰를 매우 간교한 악의로 규정하고 엄하게 징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3]

그런데 관점을 달리하여 도뢰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도뢰를 시도할 수 있는 배경, 맥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관련된 사회적 배경이나 맥락이 전혀 없는데, 어떤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시신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도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도뢰가 시도될 수 있는 배경에는 무고를 하는 것이 아닐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다는 말이다. 실제 시신을 이용하여 살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관습이 사회적으로 성행할 때, 그 관습에 편승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도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백범일지』에 수록되어 있다.

> **아버님의 학식은 겨우 이름 석 자 쓸 줄 아는 정도였지만, 기골은 준수하고 성격이 호방하셨다. 음주는 한량이 없고 취하시면 양반 강·이씨를 만나는 대로 때려, 1년에도 여러 번 해주 관아에 구속되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11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 2009『완역 이옥 전집2-그물을 찢어버린 어부』, 휴머니스트, 322쪽.
113) 김호, 앞의 「조선후기의 '圖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

사람을 구타하면 맞은 자를 때린 자의 집에 떠메어다가 눕혀두고 생사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그 시대 지방 관습이었다.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거의 죽게 된 사람',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사람'이 사랑방에 누워 있을 때가 있었다.[114]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가해자의 집에 가져다 놓은 것은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김구는 이것을 억울한 누명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지방 사회에서 으레 행하는 관습으로 치부했다. 즉, 조선 사회에서 구타를 당한 피해자나 피살된 시신을 가해자의 집에 두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널리 성행한 일이었으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도뢰(圖賴)하는 일도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위와 같이 폭행, 살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관습에 따라 '위핍인치사' 사건도 다루었는데, 바로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핍박한 사람의 집에 가져다 두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강계 최상반의 사례를 보면,[115] 최상반은 김용은에게 구타를 당한 후, 꼴을 베러 간다고 하고 야산에 올라 자살했다. 최상반의 가족들은 최상반의 시신을 수습하여 가해자인 김용은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이는 최상반의 자살이 명백하게 김용은의 핍박에 의한 것임을 보이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옮기는 것은 유가족뿐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주변인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앞서 〈주요 사건 6〉에[116] 소개한 백조이의 자살이 대표적인 예이다. 황주군의 김조이는 손술찬의 집에서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손술찬이 부상(負商) 2명에게 김조이의 남편 노병주를 잡아 오라고 했다. 그런데 김조이의 모친인 백조이의 시신이 왔다.[117] 김조이가 시신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 사유를 묻자, 그들은 두민(頭民) 등이 시켜서 옮긴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시신을 가져온 노정모를 심문하자 다음

114) 김구 저, 도진순 주해, 2006『백범일지』, 돌베개, 27쪽.
115)『江界府[檢屍文案]』(奎25220)
116) 125쪽, 각주 73번.
117) 이하 백조이의 자살과 관련한 사건은『黃州郡九林坊和洞里致死女人白召史屍身初檢文案』(奎21468) 참조.

과 같이 말했다.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온즉, 마을 두민(頭民) 등이 노병주의 집에 있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고로 곧 병주의 집에 가보니 곧 두민 등이 모여 말하길, 어젯밤에 청면 진곶리 손술찬이 돈냥 등의 일로 부상 두 명을 보내 노병주를 잡아가도록 한 후에, 백조이가 사위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목을 매었으며, 죽음은 곧 손술찬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시신을 매고 손술찬의 집으로 옮기라고 하기에...”[118]

이는 자살한 백조이의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하지 않고 자신들의 관습 안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가해자인 피고의 집으로 옮기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인식·문화가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가족은 ‘위핍인치사’조 적용할 자살이라고 판단하여 시신을 옮겼는데, 관(官)의 판단에 의해 오히려 도뢰가 될 수 있었다. 공식적인 조사에 의해서 ‘위핍인치사’조 적용할 자살이 아니라고 판정되었는데, 그보다 앞서 시신을 옮겨놓았다면 도뢰가 되는 것이다. 〈주요 사건 4〉에[119] 소개한 1897년에 발생한 청안군 이면하의 자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병승이 이면하의 선산 근처에 부친의 무덤을 썼다. 그러자 이면하의 맏아들 이정현이 족인 30여 명을 이끌고 유병승의 집으로 갔다. 이정현의 유병승의 아들 유목렬을 이끌고 선산의 올라 조부의 무덤을 파낼 것을 강요했다. 실제로 무덤으로 파묘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병승이 이정현을 고소했다. 이정현은 수감되었으며, 이를 비관한 이면하는 유서를 남기고 연못에

118) 『黃州郡九林坊和洞里致死女人白召史屍身初檢文案』(奎 21468), 16b～17a, “至日暮時還家則 洞內 頭民等이 在於魯丙周家하야 矣童을招來 故로 即往丙周家則 頭民이 齊會爲言 昨夜에 淸面榛串里 孫述贊이가 以錢兩等事로 負商 二名을 抄送하야 魯丙周를 捉去以後에 白召史가 見其婿之被捉以去하고 仍爲結項而 死則蘗田於孫述贊이니 屍身을 擔移于孫述贊家ᄒᆞ라ᄒᆞ옵기”

119) 106쪽, 각주 40번.

빠져 자살했다. 이면하의 자식들은 이면하의 시신을 건져 올린 후 유병승의 집에 가져다 두었다.

사건의 쟁점은 이면하의 자살에 유병승의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었다. 이면하의 두 아들은 이면하가 유병승에게 복수하라고 했으며, 그 내용이 유서에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실제 유서를 받아보니 유병승에게 복수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검관은 이에 다음과 같이 물었다.

> **또한, 유병승의 집에 시신을 옮긴 것은 실로 자신 된 자의 정리(情理)가 아니며 도뢰(圖賴)하기 위한 정황이 모두 탄로 났으니 저간의 사정을 사실대로 고하여 옥사를 바로 잡을 일로 추문함.**[120]

즉, 유병승의 핍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면하의 시신을 유병승의 집에 두는 것은 무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뢰가 되는 것이다.

'위핍인치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으로 시신을 옮기는 관습이 공유되는 가운데, 자살자는 자신이 죽을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자살의 의미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즉, 자살자가 직접 자신을 핍박한 사람의 집에 가서 자살하는 것이다. 유원양의 모친 이(李)조이의 자살이 한 예이다.[121] 이조이는 유원흥의 발고로 아들이 수감되자 유원흥의 집에 가서 목을 맸다. 초검을 진행한 이학규는 최종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완악한 저 유원흥은 (중략) 시친(屍親) 등이 원수를 지적하여 공초한 것이 원흥일뿐더러 죽은 여자가 유원흥의 집 배 나무에서 스스로 목을 매었으니 이는 원한을 지목한 것이 분명하다. 고로 유원흥은 피고로 기록하오며"**[122]

이학규는 유원흥을 피고로 규정하는 근거로 가족들의 진술과 이조이가 유원흥의 집에서 자살한 것을 거론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검

---

120) 심재우, 앞의 「검안에 나타난 조선말기의 산송」, 72쪽.

121) 이하 이조이의 자살과 관련한 사건은 『瑞興郡龍淵坊三里小地名金井村致死女人李召史屍身文案』(奎21322) 참고.

122) 『瑞興郡龍淵坊三里小地名金井村致死女人李召史屍身文案』(奎21322), 36a~36b, "頑彼柳遠興段은 (중략) 屍親等之指讎納供이 遠興也뿐더러 死女之自縊於遠興家梨樹가 亦是指惡之分明 故로 柳遠興段은 以被告錄上ᄒᆞ오며"

관도 자살 장소는 핍박의 당사자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인식한 것이다. 유언이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이 죽기 직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죽을 장소의 선택인 것이다.[123]

이렇게 자살의 장소가 피고를 지목하는 행위로 연결될 때, 이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게 나타났다. 제주 대정현의 정시목은 도둑질한 누명을 쓰고 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124] 이때 장교 강제평은 뇌물을 요구하고 다짐을 받아내는 등 정시목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에 정시목은 강제평이 있는 청사에 가서 목을 매었다. 검관은 강제평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

"헛되이 관의 명령을 전하고 종을 이끌고 사사로히 결박하여 뇌물을 넘치게 받은 후에 액변이 너가 소재한 청사에서 있었으니, 이 옥사의 사정에서 너를 버려두고 누구를 지목하겠는가?"[125]

이 역시 자살 장소가 피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물음이다. 이에 대해 강제평은 정시목이 청사에서 죽을 때 자신은 청사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날은 다른 사람이 청사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답변이나, 자살 장소와 피고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2차 진술에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만약 정시목이 자신에게 원한이 있다면, 왜 자신의 집에서 죽지 않고 청사에서 죽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시목의 2차 진술 역시 자살 장소와 자살의 책임의 관련성을 부정하지 못한 답변이었다. 그는 3차 진술에서야 자살 장소와

---

123) 본 논문이 분석한 '위핍인치사' 사건 중 유서가 남겨진 경우는 두건이다. 앞서 소개한 이면하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으며, 충남 서산군의 유씨 부인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그녀는 임충호가 자신에 대한 추문을 퍼트린 것에 분노하여 자살했다. (『忠淸南道瑞山郡銅巖面夫丹里致死女人柳氏獄事文案』(奎 21648) ; 김호, 앞의 『100년 전 살인사건』, 203~222쪽 참고.) 한편, 유언을 남긴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자살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핍박을 당한 후에 가족이나 이웃 몰래 자살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유언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가족들은 자살한 사람이 남긴 말 중 "내가 이 꼴을 보지 말아야지" 정도의 언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124) 이하 정시목 자살과 관련한 사건은 『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謄本』(奎21550) 참고.

125) 『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謄本』(奎 21550), 14b, "虛傳官令 率隷私縛 濫捧行賂之後 縕變在於汝矣所在廳舍 此獄得情 捨汝指誰"

피고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금일의 혐의가 만약 청사에서 목을 맨 것으로 청사의 주로 있는 저를 가리킨 것이라면, 전년에 시목의 아버지가 바다의 빠져 죽었을 때, 그때는 어찌 바다를 가리키지 않았습니까."126)

세 번의 심문과 진술 과정에서 정시목의 자살 장소인 청사는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다. 이는 자살의 장소와 피고의 지목이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제평은 자신이 피고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즉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살의 장소와 피고가 관계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다. 강제평은 2차 진술까지는 그 틀 안에서 자신을 변호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자살의 장소와 피고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진술 과정에서 자살 장소와 피고의 관련성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앞서 강제평은 2차 진술에서 정시목이 자신에게 원한이 있다면 왜 자신의 집에서 죽지 않았겠냐고 했다. 영동군의 정승백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127) 장덕원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박영숙을 폭행했는데, 박영숙의 가족들이 다시 장덕원을 폭행했고, 이어서 관에 고발하려 했다. 장덕원이 도망치자, 그의 아들 장귀선이 체포되었다. 이에 장덕원이 자살한 것이다. 정승백은 박영숙의 외사촌으로 장덕원 폭행을 주도하여 피고로 지목되었다. 그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스스로 겁을 먹고 그 집 후원 감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었다고 하오니 저를 어찌 벌하며 그가 만약 저에게 분함을 품었다면 곧 그 사나운 독기로서 반드시 저의 집에서 작경하였을 것이니 어찌 자신의 거처 사람도 없는 감나무 아래에서였겠습니까?"128)

---

126)『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謄本』(奎21550), 20b, "今日之嫌 若以縊於廳舍 指執爲廳主之矣身則 前年時穆之父 投海而死 其時何不指海"

127) 장덕원과 이조이의 자살과 관련한 사건은『永同郡南一面九村里致死男人張德元及李召史屍身初檢文案』(奎21867) 참고.

128)『永同郡南一面九村里致死男人張德元及李召史屍身初檢文案』(奎21867), 31b, "渠喫恸ᄒᆞ야 自縊於渠家後園柿木이다이오니 於矣身에 何誅오며 渠若含憤於矣身則 以

마지막으로 시신이 놓인 장소와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 책임 문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01년 평안도 정주에서 발생한 윤자방 사망 사건이다.[129] 김학련은 윤자방이 밤에 그의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윤리를 어지럽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윤자방은 마을을 떠나 살아야 할 정도로 소문이 퍼지자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유가족은 윤자방의 시신을 김학련의 집에 가져다 두었다.

"만약 김학련이 터무니없는 말로 모함한 일이 없었더라면 어찌 제 동생이 목 매 죽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분노를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고 수창에게 김가네으로 시체를 옮겨다 놓게 하고..."[130]

"김학련이 제 동생이 며느리 방에 들어갔다고 하여 여러 곳에 떠들어 대니, 제 동생이 다른 지역을 떠돌다 이번에 사망한 것은 실로 김학련에게서 말미암은 때문이니 관아게 고하고 보복하려고 시체를 옮겼습니다."[131]

윤자방의 시신을 김학련 집으로 옮긴 윤자방의 형 윤자명은 시신을 옮긴 이유를 위와 같이 진술했다. 윤자명은 윤자방 자살의 책임이 김학련에 있으며 그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행위가 윤자방의 시신을 김학련의 집에 옮겨 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목이 매어 있는 윤자방의 시신을 누가 내려놓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윤자방의 가족들이 시신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윤자방은 방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사관(査官)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심문했고, 결국, 김학련이 조후득에게 시신을 같이 내렸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밝혀낸다. 그리고 김학련에게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其悍毒必是作梗於矣家者也 而胡爲乎自處於無人之柿木下乎잇가"

129) 윤자방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司法稟報』(甲), 76책 報告書 第9號 ; 報告書 第19號 ; 報告書 第29號 참고.

130)『司法稟報』(甲), 76책, 報告書 第19號, "若無金學連構誣之事면 豈至矣第縊死之境乎아 憤不自抑ᄒᆞ야 使守昌으로 移屍於金家하고"

131)『司法稟報』(甲), 76책, 報告書 第19號, "金學連이 指吾弟入子婦房이다 到處唱說ᄒᆞ야 吾弟가 流離他境타가 今也致死가 實由於金學連故로 告官報復次移屍이다"

“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외양간 옆 모퉁이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풀어 그를 보니 바로 윤자방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백성은 몸이 떨리고 생각은 초조하여 둘 바를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시신을 그의 빈집에 옮겨 두면 죄가 가벼워 질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제 아내 송조이(宋召史)와 힘을 합쳐 그의 빈 집에 옮겨 둔 후에”[132]

정리하면, 윤자방은 자신에게 핍박을 가한 김학련의 집에서 자살했는데, 그것을 발견한 김학련이 자신이 처벌받을까 무서워 그 시신을 윤자방의 빈 집에 옮겨 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윤자방의 가족들은 다시 그 시신을 김학련의 집에 가져다 두었다. 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한 사람의 가해자도, 그리고 유가족을 비롯한 주변인 모두 자살 장소, 시신이 놓인 장소가 자살의 책임 소재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상으로 ‘위핍인치사’을 대하는 인민들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당시 사람들은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할 자살을 살인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폭행이나 살인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책임을 요구하는 당시 관습에 따라, ‘위핍인치사’에도 대응했다. 즉,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집에 옮겨 두는 것이다. 유가족은 물론이고 자살한 사람과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시신을 옮기는 일에 동참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자살자의 적극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자살한 사람이 직접 가해자의 집에 가서 자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위핍인치사’조 적용할 자살은 핍박의 결과로서의 자살이지만, 자살자가 자살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최후의 저항 내지는 목숨을 내던지고 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복수가 될 수 있었다.

---

132)『司法稟報』(甲), 76책, 報告書 第19號, “還歸矣家則 有人吊掛於牛厩側隅 故로 解而見之則 乃是尹子方이온바 居村愚氓이 身戰思焦에 莫知攸措이올다가 忽思移屍於渠之空家則似可罪輕이옵기 與矣妻 宋召史로 幷力移置於渠之空家後”

결론

본 논문은 18·19세기 조선 사회에서의 ‘위핍인치사’에 관한 것이다. ‘위핍인치사’는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대명률』의 한 율문이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했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살에 이르도록 괴롭힌 사람의 책임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의 책임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조선 사회는 ‘위핍인치사’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답해야 했다. 아울러, 핍박에 의한 자살이 형법의 피해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지금과는 다른 자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문는 ‘위핍인치사’의 법리와 법률적 의미, ‘위핍인치사’와 자살 문제, ‘위핍인치사’의 실태와 국가·사회의 대응 등을 다루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대명률』 ‘위핍인치사’의 법률적인 의미와 그 피해 결과인 자살 문제를 다루었다. ‘위핍인치사’는 ‘위세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여 죽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자살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다. 살인의 의도 없이 어떤 일 때문에 핍박을 가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그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살에 대해 핍박한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위세로 핍박을 가하여 자살하게 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장 100에 매장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 관계에 따라 형량은 가중되었으며, 핍박의 원인이 간음이나 도둑일 경우에 가해자는 참형(斬刑)이었다.

‘위핍인치사’는 매우 독특한 율문으로 현대 형법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현대 형법에서는 자살을 자기 책임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력에 의한 자살을 다루는 한국의 현행 형법 제253조(위력자살결의)는 구성요건으로서 자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완전히 억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위핍인치사’와 가장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위핍인치사’가 다루는 상황은 자살 자체를 강요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상실된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에 자살자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해야 성립하는 위력자살결의로는 '위핍인치사'의 상황을 다룰 수 없다. 반대로 현행 형법에서 위력자살결의는『대명률』주석서에 따르면 고의적 살인인 고살(故殺)로 의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자살을 다루는 두 형법 사이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위핍인치사'의 독특한 위치를 확인하게 한다.

조선 사회에서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명(償命)과 유아지율(由我之律)이라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명이란 하나의 억울한 죽음은 다른 하나의 죽음을 통해 갚아야 한다는 관념이다. 상명 관념 하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 역시 갚아야 할 죽음이었다. '위핍인치사'는 이러한 상명 관념을 수행하는 율문이었다. 한편, 조선 사회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원리로 유아지율이 있었다. 유아지율은 현대 형법의 조건설과 유사하다. 조건설이란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과 같이 논리학의 필요조건이 성립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위핍인치사'에 대해 유아지율을 적용하면,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살의 책임을 핍박을 가한 가해자에게 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는 자살이지만, 조선시대 모든 자살에 '위핍인치사'를 적용하여 처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자살을 판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 인명(人命) 사건을 처리하는 첫 단계는 시신을 검험하여 사망 원인[實因]을 밝히는 것이다. 이때 사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주체가 타인인지 자신인지를 가장 먼저 따졌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에서의 자살이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위핍인치사'의 피해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핍박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협과 핍박의 정황이 확인되면,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수 있었다. 만약, 핍박이 아닌 다른 자살의 이유가 분명하거나 범죄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위핍인치사'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공인된 위계질서 내에서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위핍인치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위핍인치사'를 적용하면서 자살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형성된다.

‘위핍인치사’는 선행 사건으로 핍박과 그 결과로 자살의 발생을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살이 먼저 발생하며, 사람들은 자살을 먼저 접한 후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따져 묻는다. 그러므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살에 대한 인식이 선행하는 것이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위핍인치사’를 적용할 자살을 다른 사람에 의한 핍살(逼殺), 즉 살인의 결과로 인식했다.

Ⅱ장에서는 ‘위핍인치사’의 실태와 범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때 범죄의 피해 결과가 자살이기에 형사 관련 기록에서 자살의 실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자살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사망 원인이 분명히 자살인 경우, 피해 사실로서의 자살, 가해자인 피고가 특정된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자료의 특징도 짚어보았는데, 검안류 자료, 『완영일록』, 『심리록』과 『일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해당 자료들은 각기 다른 사법 처리 단계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건의 유형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자살자와 피고의 관계를 성별, 신분, 가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이 결과 ‘위핍인치사’의 경우 신분 문제보다 성별 문제가 중요한 변수였다. 피해자인 자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비율은 사법 처리 단계가 진행될수록 높아졌다. 즉, 기층 사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자살자가 약간 많은 정도였으나, 국가가 중요하게 다룬 자살은 여성의 자살이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다. 결국,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자살이 만연한 범죄 양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핍박의 양상도 주목된다. 본 논문은 이를 크게 두 가지 핍박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피고가 자살자의 직접 위해를 가한 직접적 핍박이다. 둘째는 피고가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뒤에, 그 사람의 가족이 자살한 간접적 핍박이다. 기층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핍박의 양상은 물리적 폭력이었고, 이외에 언어적 폭력, 경제적 압박, 성(性)적 폭력 등이 두루 나타났다. 중앙 정부와 국왕에게 보고되어 국가적으로 중대하게 다루어진 핍박은 대부분 성(性)과 관련한 것이었다.

Ⅲ장에서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당시 사회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가의 공적인 대응으로서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와 판결 양상을 확인했다. ‘위핍인치사’에 대한 심리는 율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건의 유형이나 도덕적 가치에 따라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가령, 핍박과 자살이 발생한 상황이 인륜과 같이 도덕적 가치를 현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율문의 형량보다 가중 처벌했다. 반대로 사소하거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다면, 유아지율을 통해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고자 했다. 이때 내려진 형벌은 동추 과정에서의 고문인 신추(訊推)를 시행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적절하게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한편, 성(性)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양상을 달리했다. 성(性)과 관련한 당대 관념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법률적 측면에 주목했다. 성(性)과 관련한 율문인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가 참형이기 때문에. 성(性)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살에 대해 율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가해자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사형 집행을 극도로 제한하기 시작한 조선 형정의 맥락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핍박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 묻는 방식의 심리를 진행했다. 가령, 강간 시도나 희롱이 발생한 후 자살했을 경우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면 가해자는 논의의 여지 없이 모두 사형이었다. 그러나 강간 시도나 희롱의 과정에서 핍박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한 정황과 증거를 명백하게 발견할 수 없다면, ‘간음으로 인한 위핍인치사[因姦威逼]’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미 자살이 발생한 사건을 심상하게 처리할 수도 없었다. 이에 강간미수율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사법품보』내의 조율(照律) 양상을 정리했다.『사법품보』내 조율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위핍인치사’조로만 조율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두 번째는 ‘위핍인치사’조와 다른 율문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였다. 토호, 산송, 성(性) 문제 등 사안에 따라 해당하는 다른 율문이 함께 검토된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핍박의 강도가 약하거나 핍박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위핍인치사’조를 적용하지 않기도 했는데, 이때는『대명률』‘불응위’조를 통해 조율하고 처

벌했다.

이상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대응을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했다. 공통적인 것은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을 다루는 기준은 ‘위핍인치사’조라는 것이다. 동시에 당시의 심리와 판결이 율문에 의한 기계적인 적용은 아니었다. 발생한 사건이 인륜, 사회 질서와 같이 당시 도덕적 가치와 결부되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고려했다. 율문의 적용에 따른 처벌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고려하면서 판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위핍인치사’에 대한 민간 사회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일반 백성들은 ‘위핍인치사’에 대한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위핍인치사’에 대한 민간 사회의 대응은 피해 결과인 자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확인했는데, 첫째는 자살을 발견한 후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인명(人命)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너무 당연하지만, 자살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당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살이 ‘위핍인치사’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자살과 그렇지 않은 자살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했다. 이러한 판단의 결과로 이어지는 신고의 여부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인민들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핍인치사’는 가해자가 있는 자살이기에, 자살을 목도한 사람들 역시 그 가해자를 찾아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었다. 당시에는 폭행을 당하거나 피살되면,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책임을 요구하는 관습이 있었고, ‘위핍인치사’ 역시 그 관습에 따랐다. 즉, 핍박한 가해자의 집에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가져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자살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행위는 ‘위핍인치사’에 대한 인민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자살은 자신이 선택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가해자의 집에 가서 자살했다. 이렇게 자살자가 직접 자살의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자살 의미를 극대화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 되었다.

이상으로 18~19세기 조선 사회를 중심으로 ‘위핍인치사’의 법률적 의미

와 실태, 대응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제시했던 문제 제기에 대한 단견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위핍인치사’는 조선 형정(刑政)의 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의 책임이 핍박을 가한 사람에게 있는지, 자살한 사람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한 편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살자의 책임으로 치부하여 자살에 대해 방기하지 않았으며, 모든 책임을 핍박한 사람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다. 유아지율이라는 원리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했으며, 그에 대한 적당한 죗값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율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을 받거나 혹은 너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경계했다.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나누고, 그에 따른 적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조선 형정의 실상이자 지향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과 전혀 다른 자살 인식의 한 유형 역시 확인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자살은 핍박에 의한 살인의 결과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살인을 목격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반드시 따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관(官)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처리를 바라는 것뿐 아니라 시신을 직접 옮기는 행위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자살자는 자살하기 직전 자신이 죽을 장소를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부표 1〉『신주무원록』과『증수무원록대전』의 사망 원인[實因] 분류

검험서	사망 원인[實因]
『신주무원록』	勒死　自縊死　落水投河死　相毆後落水死　棒毆死　刃傷死　刺死　拳手足踢死　辜限病死　自割死　毒藥死　火燒死　湯潑死　病患死　凍死　餓死　杖瘡死　罪囚被勘死　驚謊死　擲死又跌死　壓死　馬踏死　車碾死　被人針灸當下致死　雷震死　虎咬死　酒食醉飽死　外物壓塞口鼻死　硬物癮死　蛇蟲傷死　男子作過死
『증수무원록대전』	[勒縊死] : 自縊死 自勒死 被人勒死 被人殺假作自縊 移自縊屍 [溺水死] : 自溺死【落渠附】被人溺死 被人殺假作自溺 辨生前死後溺 [毆打死] : 被打死 杖瘡死 死後假作打死 口齒咬傷死 [刃傷死] : 自割死 被人殺死 辨生前死後傷痕 屍首異處 [火燒死] : 因老病在牀失火燒死【土炕傷附】被人燒死 被人殺假作火燒 辨生前死後火燒 湯潑死 [中毒死] : 生前中毒死 死後假作中毒 中蟲毒死 中食果實金石藥毒死 中鼠莽草毒死 中砒礵野葛毒死 中金蠶糞毒死 中酒毒 中蠱毒死 中菌蕈毒死 (補)中巴豆毒死 (補)中水銀毒死 (補)服鹽滷死 (補)服氷片死 [病患死] : 病患飢凍求乞在路死 邪魔中風卒死 中暗風死 傷寒死 時氣死 中暑死 被人鍼灸當下致死 被人鍼灸當下致死 男子作過死 凍死　餓死　擲死跌死 [壓死] : 壓塞口鼻死 老人被搗死 隱墊死 驚謊死　人馬踏死【牛角觸傷附】　車碾死　雷震死　酒食醉飽死 虎咬死 (補)癲狗咬傷死　蛇蟲傷死

〈부표 2〉『심리록』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번호	수록 권수 및 표제	성옥 연도	최초 판부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1	권5 종성오조이옥	1738	1782	김제몽	남	오여인	여
2	권2 함평김봉기옥	1775	1784	김여인	여	김봉기	남
3	권4 단천이용득옥	1777	1781	김여인	여	이용득	남
4	권6 재령이경휘옥	1778	1784	최여인	여	이경휘	남
5	권1 공주황유직옥	1778	1778	서여인	여	황유직	남

번호	수록 권수 및 표제	성옥 연도	최초 판부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6	권7 초산박형도옥	1779	1781	유운삼	남	박형도	남
7	권11 안주김춘동옥	1779	1783	김여인	여	김춘동	남
8	권5 숙천교노치현옥	1779	1782	한여인	여	치현	남
9	권2 울산윤수일옥	1779	1779	정여인	여	윤수일	남
10	권8 철원채성발옥	1780	1782	이태기	남	채성발	남
11	권7 성주신정신옥	1780	1781	김성근	남	신정신	남
12	권5 전의오일운옥	1780	1781	서여인	여	오일운	남
13	권12 제천이기대옥	1780	1784	노여인	여	이기대	남
14	권8 남원김일선옥	1780	1782	김여인	여	김일선	남
15	권8 수원윤조이옥	1780	1782	정여인	여	윤조이	여
16	권9 금성안광금옥	1781	1783	김여인	여	안광금	남
17	권8 양양이해인옥	1781	1785	박성재	남	이해인	남
18	권9 웅천이창범옥	1781	1782	김이단	여	이창범	남
19	권8 공주강웅이옥	1781	1782	이경증	남	강웅이	남
20	권12 청주박만세옥	1781	1784	유여인	여	박만세	남
21	권8 김제유몽골옥	1781	1782	박여인	여	유몽골	남
22	권9 초계도응유옥	1782	1782	문여인	여	도응유	남
23	권15 해주이종봉옥	1782	1790	백덕채	남	이종봉	남
24	권8 서부오찬주옥	1782	1782	최성휘	남	오찬주	남
25	권15 금천정선이옥	1783	1785	김봉추	남	정선이	남
26	권12 개성김용귀옥	1784	1784	안여인	여	김용귀	남
27	권14 충주박승문옥	1785	1785	황여인	여	박승문	남
28	권17 여주강취문옥	1786	1790	판련	여	강취문	남
29	권18 서부공만빈옥	1787	1789	조범봉	남	공만빈	남
30	권23 연기홍명렬옥	1791	1792	양여인	여	홍명렬	남
31	권25 함양장수원옥	1791	1798	한조롱	여	장수원	남
32	권25 전주정대붕옥	1794	1794	정여인	여	정대붕	남
33	권24 동부박호민옥	1794	1795	이여인	여	박호민	남
34	권26 가평김가인백옥	1795	1795	지야매덕	여	김귀손	남
35	권30 안동이석옥	1796	1797	금여인	여	이석	남
36	권29 용인박삼봉옥	1796	1798	박여인	여	박삼봉	남
37	권29 결성박삼복옥	1796	1797	이옹덕	여	박삼복	남
38	권29 면천이유복옥	1797	1797	배여인	여	이유복	남
39	권29 풍덕김유봉옥	1797	1798	김여인	여	김유봉	남
40	권31 영평최후씨옥	1798	1799	이여인	여	최후씨	남

〈부표 3〉『일성록』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번호	최초 판부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1	1798	조걸방	남	춘복	남
2	1800	조흥운	남	이광순	남
3	1805	지봉대 형제	남	이광정	남
4	1805	박여인	여	이광필	남
5	1806	양여인	여	정명채	남
6	1806	이여인	여	임명금	남
7	1806	차조이	여	전엇복	남
8	1807	백돈복	남	김형록	남
9	1808	김성산	남	이익남 부(父)	남
10	1808	봉혜	여	소재	남
		필례	여		
11	1809	최왈인	남	송대원	남
12	1809	강소자	남	문맹원	남
13	1809	하필흥 녀(女)	여	정이득	남
14	1809	설씨	여	신의택	남
15	1810	김광인	남	김지응	남
16	1813	정시동	남	김재훈	남
17	1813	손씨	여	구중채	남
18	1815	장씨	여	박선철	남
19	1820	박씨	여	김조술	남
20	1821	박창문	남	이윤흥	남
21	1821	송덕이	남	최평군	남
22	1821	박씨	여	조만동	남
23	1821	김녀	여	김상우	남
24	1824	박영복	남	박치인	남
25	1824	김녀	여	오증악	남
26	1825	김항련	남	백문수	남
27	1825	사족 과녀(寡女)	여	김성련	남
28	1827	권채	남	정덕일	남
29	1827	황풍	남	손대원	남
30	1827	조녀	여	배원금	남
31	1828	미상	남	권상만	남
32	1828	미상	여	김차복	남
33	1830	송여인	여	전조간	남
34	1832	고씨	여	최주목	남
35	1832	방조이	여	신춘억	남

번호	최초 판부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36	1836	홍사문 형	남	곽장종	남
37	1836	연경우 녀(女)	여	조경호	남
38	1838	이순모 처(妻)	여	정이형	남
		이순모 녀(女)1	여		
		이순모 녀(女)2	여		
39	1838	이대남 녀(女)	여	양귀동	남
40	1842	문녀	여	홍판손	남
41	1842	양씨	여	유오운	남
42	1842	최여아(女兒)	여	한우사	남
43	1842	김씨	여	강사홍	남
44	1846	이백화	남	김상린	남
45	1847	조문상	남	장병강	남
46	1847	손여노미	남	백금손	남
47	1848	김녀	여	김용범	남
48	1848	윤녀	여	김사식	남
49	1850	김조이	여	한정호	남
50	1852	송씨	여	최재중	남
51	1852	김여아(女兒)	여	우희용	남
52	1852	황여아(女兒)	여	이문영	남
53	1852	송씨	여	전조이	여
54	1853	최과녀(寡女)	여	안치상	남
55	1855	박인혁	남	박술갑	남
56	1857	조조이	여	장선복	남
57	1858	임씨	여	이신옥	남
58	1858	서성 과녀	여	변대만	남

〈부표 4〉『완영일록』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번호	초출(初出) 연월일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1	1833.05.04	김복돌	남	윤판돌	남
2	1833.06.26	이조이	여	여봉영	남
3	1833.06.26	여조이	여	길이석	남
4	1833.07.10	강조이	여	조수정	남
5	1833.07.25	고조이	여	최지운	남
6	1833.08.16	김덕화	남	고고장	남
7	1833.09.06	이복손	남	포교	남

번호	초출(初出) 연월일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8	1833.10.09	박복천	남	유조이	여
9	1833.10.10	주대경	남	박조이	여
10	1833.10.18	김조이	여	정어인노미	남
11	1833.10.21	오씨	여	김원철	남
12	1833.10.25	한조이	여	장기로	남
13	1833.10.27	추종손	남	김왈문	남
14	1833.11.26	김대숙	남	정연이	남
15	1834.02.05	이조이	여	용호성	남
16	1834.02.30	나동준 처(妻)	여	나동준	남
17	1834.03.06	여중율	남	김흥록	남
18	1834.03.15	설조이	여	김계손	남
19	1834.04.07	임씨	여	임씨	여
20	1834.04.11	전세동	남	정난종	남
21	1834.05.13	최두칠	남	최조이	여
22	1834.05.24	박용갑	남	전장록	남
23	1834.05.25	최순업	남	최수원	남
24	1834.06.16	백조이	여	변조이	여
25	1834.06.24	우씨 딸	여	박조이	여
26	1834.07.08	임씨	여	김재술	남
27	1834.08.01	하명철	남	양만용	남
28	1834.09.20	이원복	남	최광학	남
29	1834.09.29	정영복	남	박신영	남
30	1834.10.14	제수	여	박치문	남
31	1834.10.16	이녀	여	곽몽섭	남
32	1834.11.25	최녀	여	박진득	남
33	1834.11.26	봉엽	남	박거묵동	남
34	1834.12.08	성조이	여	정관인	남
35	1834.12.11	나조이	여	김정렬	남
36	1834.04.02	김재문	남	황의담	남

〈부표 5〉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번호	수록 검안(청구기호)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나이	이름	성별	나이
1	蔚山府西面屈火里自溺致死女人朴召史初檢文案(奎25255)	1885	박조이	여	51	박조이	여	38

번호	수록 검안(청구기호)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나이	이름	성별	나이
2	遂安郡城洞棰梅洞致死女人姜召及兩個男兒初檢案(一蓑古614.68-Su12s)	1889	강조이	여	32	김동식	남	73
3	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謄本(奎21550)	1894	정시목	남	42	강제평	남	48
4	孫召史致命根因(奎25083)	1895	손조이	여	31	김조이	여	25
5	前大邱府管下密陽軍威仁同獄案抄概成冊(奎21593)	1895	김소암	남	43~44	최달준	남	
6	前大邱府管下密陽軍威仁同獄案抄概成冊(奎21593)	1895	이선이	남	45~46	무이	남	
7	谷山郡上圖面坊洞里小地名初洞致死男人韓大坤初檢文案(奎21551) 谷山郡上圖面坊洞里小地名初洞致死男人韓大坤三檢文案(奎21548)	1895	한대곤	남	60	한홍서	남	39
8	魯城郡長久洞面西邊里致死男人申泰嫺初檢案(奎21395)	1896	신태혁	남	46	박윤장	남	33
9	江界府[檢屍文案](奎25220)	1896	최상반	남		김용은	남	
10	晋州郡昌善面茅山洞致死女人林召史初檢案(奎21358) 晋州郡昌善面茅山村致死女人林召史覆檢案(奎21378) 晋州郡昌善面茅山村致死女人林召史三檢案(奎21379)	1896	임조이	여	29	김대근	남	29
11	淸州郡山內一面內洞致死男人崔巡京文案(奎21609)	1896	최순경	남	42	이의직	남	49
12	安東郡在囚罪人金奉伊等査案(奎21279)	1897	조씨	여		김봉이	남	26
13	延安郡獄囚原文案謄書冊(奎21539)	1897	송조이	여	47~48	김문명	남	48
14	海州郡被告安京雲獄事文案(奎21657)	1897	이치화	남	59	안경운	남	32
15	成川郡北面天城坊石隅里致死女邊召史屍身文案(奎21836)	1897	변조이	여	25	이조이	여	43
16	漆原郡榮洞里致死女人裵召史獄事覆檢案(奎26324)	1897	배조이	여	46	안영언	남	54
17	淸安郡西面萬水洞致死男人李勉夏屍身文案(奎21602)	1897	이면하	남	61	유병승	남	55
18	江原道金城郡西面別陽洞致死男人李益年獄事文案(奎21339)	1897	이익년	남	65	엄천봉	남	
19	開城府北東面深川里馬踰洞致死男人朴致彦獄案(奎27510)	1897	박치언	남	59	박점용	남	

번호	수록 검안(청구기호)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나이	이름	성별	나이
20	綾州郡富春面石亭里致死女人白召史屍體檢案文案(奎21637)	1897	백조이	여	44	김사심	남	
21	巨濟郡沙等面沙等里致死女人朴召史檢驗案(奎21377)	1897	박조이	여	17	이봉지	남	33
22	草溪郡中方面山村致死女人金氏崔氏覆檢文案(奎21357)	1897	최씨	여	55	김삼희	남	33
23	丹陽郡南面槐坪里致死私婢分伊獄事査案(奎21905)	1897	분이	여	20	금이	여	
24	瑞興郡龍淵坊三里小地名金井村柳遠興柳遠揚等文案成冊(奎26570) 瑞興郡龍淵坊三里小地名金井村致死女人李召史屍身文案(奎21322)	1898	이조이	여	68	유원흥	남	45
25	襄陽郡縣北面元日田致死女人李召史初檢文案(奎21460) 襄陽郡縣北面元日田里自縊致死女人李召史屍身文案(奎21335) 襄陽郡縣北面元日田里自縊致死女人李召史屍身文案(奎21336)	1898	이조이	여	33	박치장	남	38
26	江原道高城郡安昌面江亭里自溺致死女人沈召史屍身檢驗文案(奎21348)	1898	심조이	여		이노불	남	
27	金化郡巡校廳保授者縊致死男人池順伊文案(奎21448)	1898	지순이	남	72	윤경문	남	30
28	尙州郡丹南面龍尾里致死男人李百源初檢案(奎21449)	1898	이백원	남	54	유전복	남	30
29	楊州郡乾川面獨井里服鹽滷致死女人高召史三檢案(奎21525)	1898	고조이	여	55	이성석	남	56
30	寶城郡玉巖面松巖村致死女人文氏屍體初檢文案(奎21634) 寶城郡玉巖面松巖村致死女人文氏屍體覆檢文案(奎21635)	1898	문씨	여		이조이	여	51
31	報恩郡旺來面林閑里致死女人權氏獄事査案(奎21904)	1898	권씨	여	60	유기준	남	32
32	全州郡府南面坊川里致死男人姜在錄屍身檢驗文案(奎21384)	1898	강재록	남	50	이경장	남	33
33	忠淸南道瑞山郡銅巖面夫丹里致死女人柳氏獄事文案(奎21648)	1899	유씨	여	47	임충호	남	
34	泰仁郡山內二邊面下禮洞致死女人尹召史屍身初檢文案(奎21742)	1899	윤조이	여	33	이조이	여	30
35	安州郡尼山面新川里致死人車三辰屍身初檢文案(奎21887)	1899	차삼진	남	53	강정준	남	32

번호	수록 검안(청구기호)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나이	이름	성별	나이
36	原州郡好梅谷面二里小地名平川村致死女人劉召史屍體初檢文案(奎21495)	1899	유조이	여	28	성춘길	남	
37	文義郡二道面外三里致死男人吳瓚錫屍身文案(奎21415)	1899	오찬석	남	51	안화집	남	46
38	黃州郡九林坊和洞里致死女人白召史屍身初檢文案(奎21468)	1900	백조이	여	70	손술찬	남	44
39	延安郡美山坊三里小地名鐵山致死女人姜召史屍身初檢文案(奎21478)	1900	강조이	여	50	변조이	여	
40	泰仁郡師谷面小七里致死男人許德心屍身文案(奎21623)	1900	허덕심	남	54	장준오	남	
41	永春郡車衣谷面遊巖里致死男人劉辰連獄事文案(奎21729)	1901	유진연	남	39	엄주만	남	42
42	永同郡李召史屍體初檢案(奎26543) 永同郡南一面九村里致死男人張德元及李召史屍身初檢文案(奎21867) 永同郡南一面九村里致死男人張德元致死女人李召史覆檢文案(奎21873)	1901	장덕원	남	50	정승백	남	39
43			이조이	여	29	김조이	여	73
44	忠州郡東良面長善里致死男人金鼎禹初檢文案(奎21899)	1901	김정우	남	54	이조이	여	20
45	忠州郡北邊面加味洞致死女人安召史屍身文案(奎21862)	1901	안조이	여	38	안조이	여	44
46	慈仁郡上東面長嶺洞致死男人朴正大初檢案(奎21528)	1902	박정대	남	42	박재곤	남	40
47	懷仁郡西面鹽峙里致死男人金凡水文案(奎21874)	1902	김범수	남	40	배창근	남	35
48	沃川郡東面支石里致死女人韓召史獄事檢驗文案(奎21877) 沃川郡東面支石里致死女人韓召史獄事覆檢文案(奎21878)	1902	한조이	여	19	김유장	남	65
49	丹陽郡東面磨造里致死男人金璧洙獄事文案(奎21881)	1902	김벽수	남	50	김시원	남	39
50	靈山郡道沙面車衣洞金三敦致死初檢案(奎25195)	1902	감삼돈	남	37~38	정덕현	남	44
51	木川郡葛田面幷川里致死女人林召史初檢案(奎21737)	1903	임조이	여	40	권성운	남	44

번호	수록 검안(청구기호)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나이	이름	성별	나이
52	山淸郡獄中致死女人李召史初檢案(奎25063) 山淸郡獄中致死女人李召史獄事檢査案(奎25062)	1903	이조이	여	59	김영팔	남	47
53	晋州郡昌善面古順里致死男人姜時祚初檢文案(奎26576)	1903	강시조	남	63	조영순	남	23
54	淸州郡南州內面甫十里致死女人朴召史屍身初檢文案(奎21727)	1903	박조이	여	37	최동섭	남	34
55	忠淸南道大興郡內北面乾之化金順慶事案(奎20936)	1904	김순경	남		김성서	남	60
						김인완	남	36
56	古阜郡畓內面金鷄里致死女人李姓獄事文案(奎21819) 古阜郡畓內面金鷄里致死女人李姓獄事事四文案(奎21386)	1904	이씨	여	24	박창원	남	
57	信川郡斗羅坊冷幷村致死男人高光厚屍體初檢文案(奎21585)	1904	고광후	남	53	고행후	남	44
58	黃海道新溪郡栗坊大洞致死男人朴奉祿獄事文案(奎21605)	1904	박봉록	남	51	이동제	남	47
						김지석	남	33
59	昌原郡下南面井里致死女人鄭召史屍體案(奎25059)	1904	정조이	여	51	정선언	남	55
60	任實郡上北面道峰里致死男人全泰亨屍身初檢文案(奎25059)	1904	전태향	남	39	박말목	남	30
61	中和郡龍田坊三里致死人金日信屍身初檢文案(奎21804)	1905	김일신	남	74	한조이	여	65
62	石城郡縣內面蓮下里致死男人皮漢李今得屍身文(奎21280)	1906	이금득	남	49	판금	여	22
63	金溝郡東面堂月里致死女人張召史屍身文案(奎21416)	1906	장조이	여	20	이조이	여	61
64	龍潭郡一北面方下谷自縊致死男人金太平獄事初檢案(奎21418) 錦山郡南一面沙器所被打致死女人鄭召史屍身覆檢文案(奎21424)	1906	김태평	남	36	정조이	여	
65	扶安郡東道面仙隱洞致死女人李寡梁姓獄事初檢取招文案(奎21425) 扶安郡東道面仙隱洞致死女人李寡梁姓獄事査案(奎21420) 扶安郡東道面仙隱洞致死女人李寡梁姓獄事文案(奎21426)	1906	양씨	여	32	박판금	남	24
66	坡州郡條里東面造山里致死女人崔召史文案(奎21487)	1906	최조이	여	21	이덕유	남	26
67	忠淸南道靑陽郡南下面楸木里致死男人高聖寬文案(奎21722)	1906	고성관	남	58	이응눌	남	62

번호	수록 검안(청구기호)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나이	이름	성별	나이
68	龍潭郡一西面星巖里自縊致死女人朴召史獄事案(奎21421)	1906	박조이	여	22	양조이	여	26
69	竹山郡南面新垈致死女人陳召史獄事文案(奎21394)	1906	진조이	여	29	이조이	여	52
70	昌原港新月里自溺致死人柳姓女檢査供招成冊(奎26333)	1906	유씨	여	48	이씨	여	48
71	全州郡紆北面桶井里致死男人李子華屍身檢驗文案(奎21417)	1906	이자화	여	47	양사순	남	
72	平壤隆德部旬一里致死女崔召史覆檢文案(奎21801)	1906	최조이	여	21	김조이	여	28
73	大邱府東上面後洞致死女人金召史覆檢案(古5125-73)	미상	김조이	여	36	김치선	남	
74	漆谷府査獄案(古5125-74)	미상	허조이	여	22	이형운	남	35
75	木川縣西面南化里致死女人金召史初檢案(古5125-77)	미상	김조이	여	22	안복원	남	48

〈부표 6〉『사법품보』내 '위핍인치사' 관련 사건 일람

번호	출전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1	11책	1894	한조이	여	진창인	남
2	5책	1895	엄조이	여	이대철	남
3	6책	1895	김평숙 부(父)	남	정세모	남
4	5책	1895	윤열	여	이흥철	남
5	5책	1895	김중열	남	옥응문	남
6	5책	1895	김조이	여	김재근	남
7	5책	1895	한대곤	남	한홍서	남
8	7책	1896	손조이	여	김태례	남
9	16책	1896	공정오	남	이조이	여
10	11책	1896	심씨	여	한우석	남
11	15책	1896	김봉운	남	김두면	남
12	8책	1896	최순경	남	이의직	남
13	18책	1896	오형도	남	강인석	남
14	17책	1896	신태혁	남	박윤장	남
15	15책	1896	함여송	남	고계정	남
16	15책	1896	심여아	여	유진석	남
17	13책	1896	강준오	남	유부귀	남
18	17책	1896	김인택 질녀	여	김귀만	남
19	23책	1897	서조이	여	전조이	여

번호	출전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20	28책	1897	변조이	여	이조이	여
21	18책	1897	박조이	여	김조이	여
22	20책	1897	이면하	남	유병승	남
23	21책	1897	손학원	남	조진익	남
24	28책	1897	김기종	남	김명렬	남
25	23책	1897	노씨	여	엄삼윤	남
26	26책	1897	박조이	여	김조이	여
27	19책	1897	박윤흥	남	김복표	남
28	21책	1897	박조이	여	문조이	여
29	20책	1897	김조이	여	이극삼	남
30	23책	1897	분이	여	금이	여
31	18책	1897	안조이	여	한원중	남
32	36책	1898	백조이	여	안조이	여
33	36책	1898	이조이	여	김조이	여
34	37책	1898	김조이	여	김선기	남
35	38책	1898	홍씨	여	신규현	남
36	34책	1898	김군백	남	강근영	남
37	43책	1898	이조이	여	김두련	남
38	31책	1898	조원서	남	서승서	남
39	34책	1898	박몽로	남	심공진	남
40	45책	1898	황학선	남	박홍렬	남
41	41책	1898	김조이	여	김팔용	남
42	39책	1898	윤조이	여	김윤식	남
43	40책	1898	박조이	여	이노불	남
44	36책	1898	박용손	남	성봉율	남
45	36책	1898	박조이	여	조조이	여
46	33책	1898	최조이	여	강일형	남
47	51책	1899	원치순	남	이여능	남
48	을 14책	1899	김조이	여	서원봉	남
49	49책	1899	이반야월	남	김소사	여
50	49책	1899	권당오	남	정경원	남
51	46책	1899	이씨	여	김은옥	남
52	47책	1899	이조이	여	김영유	남
53	42책	1899	김조이	여	곽상우	남
54	48책	1899	주의섭 딸	여	윤태봉	남
55	49책	1899	유조이	여	함춘길	남
56	52책	1899	유조이	여	이영진	남
57	을 14책	1899	김씨	여	김영국	남

번호	출전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58	을 20책	1899	김조이	여	고조이 노홍진 박성학 고여성 이조이 안흥태 박윤모	여 남 남 남 여 남 남
59	을 21책	1899	유씨	여	임충호	남
60	60책	1900	이흥수	남	박조이	여
61	59책	1900	박흥석	남	이복윤	남
62	59책	1900	김만기	남	박제원	남
63	을 26책	1900	한영눌	남	김갑명	남
64	58책	1900	유여상	남	이응선	남
65	58책	1900	허조이	여	한팔련	남
66	61책	1900	박조이	여	방응협	남
67	67책	1901	왕조이	여	강명철	남
68	67책	1901	강조이	여	변조이	여
69	65책	1901	장조이	여	김정악	남
70	73책	1901	최조이	여	김흥업	남
71	65책	1901	허경오	남	강덕유	남
72	70책	1901	이민홍	남	최중일	남
73	68책	1901	이조이	여	정경득	남
74	72책	1901	조씨	여	조상록	남
75	73책	1901	안조이	여	안조이	여
76	73책	1901	김정우	남	연성손	남
77	71책	1901	문조이	여	이조이	여
78	67책	1901	백조이	여	손술찬	남
79	을 36책	1902	민조이	여	이조이	여
80	82책	1902	안씨	여	유원귀	남
81	77책	1902	김대규	남	이준수	남
82	76책	1902	임근화	남	홍병순	남
83	81책	1902	심능	남	계순	남
84	68책	1902	강조이	여	강항수	남
85	76책	1902	윤자방	남	김학련	남
86	76책	1902	조조이	여	박덕일	남
87	74책	1902	김조이	여	신명훈	남
88	76책	1902	최조이	여	이지화	남
89	80책	1902	문조이	여	정의룡	남
90	77책	1902	이조이	여	송영재	남
91	78책	1902	민재열	남	정강용	남

번호	출전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92	82책	1903	이한석	남	나덕우	남
93	87책	1903	권노상	남	조윤문	남
94	82책	1903	김삼돈	남	정덕견	남
95	87책	1903	강시조	남	조영순	남
96	87책	1903	신조이	여	오경구	남
97	87책	1903	김사길 여(女) 김덕여 여(女)	여 여	신조이	여
98	87책	1903	김조이	여	강유성	남
99	을 39책	1903	신조이	여	임계조	남
100	85책	1903	신씨	여	김창남	남
101	82책	1903	이조이	여	우성오	남
102	95책	1904	이재덕 첩(妾)	여	김수봉	남
103	94책	1904	정조이	여	정성언	남
104	88책	1904	김치구	남	주인수	남
105	98책	1904	강락형	남	김칠만	남
106	을 45책	1904	김종규	남	조승호	남
107	92책	1904	이성	여	박창원	남
108	88책	1904	박조이	여	박동식	남
109	95책	1904	유조이	여	김황록	남
110	88책	1904	김유선	남	김홍기	남
111	88책	1904	이조이	여	이재호	남
112	95책	1904	홍용복	남	윤긍섭	남
113	68책	1905	윤자홍	남	김창학	남
114	114책	1906	박조이	여	김조이	여
115	127책	1906	이조이	여	윤흥주	남
116	125책	1906	박조이	여	양조이	여
117	114책	1906	유성녀	여	이성여	여
118	123책	1906	최조이	여	김조이	여
119	113책	1906	김윤안 모(母)	여	임계봉	남
120	113책	1906	김용거	남	유상승	남
121	125책	1906	신종백	남	함평근	남
122	116책	1906	박국선	남	맹경선	남
123	113책	1906	한조이	여	현제근	남
124	117책	1906	진조이	여	이조이 신조이	여 여
125	121책	1906	권조이	여	문낙연	남
126	125책	1906	김조이	여	배정근	남
127	121책	1906	이조이	여	최승건	남
128	127책	1906	유조이	여	조승균	남

번호	출전	연도	자살자		피고	
			이름	성별	이름	성별
129	을 50책	1906	최윤암	남	석중가	남

※ 출전에서 갑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고, 을은 '을'로 표시함.

참고문헌

1. 사료

1) 법전 및 형률서

『大明律直解』(한상권 외 역주, 2018『대명률직해』, 한국고전번역원)
『大明律講解』(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大明律附例』(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大明律釋義』(중국기본고적고)
『續大典』(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新補受敎輯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典律通補』(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唐律疏議』(김택민 주편, 2021『당률소의 역주』, 경인문화사)

2) 연대기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日省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周禮』(중국기본고적고)
『史記』(중국기본고적고)
『漢書』(중국기본고적고)
『三國志』(중국기본고적고)
『舊唐書』(중국기본고적고)

3) 형사 관련 자료

『審理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秋官志』(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欽恤典則』(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增修無冤錄大全』(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司法稟報』(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欽欽新書』(박석무, 이강욱 역주,『역주 흠흠신서』, 한국 인문 고전 연구소)
『法部起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4) 규장각 소장 검안류 자료 및 기타 자료

『金化郡巡校廳保授自縊致死男人池順伊文案』(奎21448)
『晋州郡昌善面古順里致死男人姜時祚初檢文案』(奎26576)
『江界府[檢屍文案]』(奎25220)
『淸安郡西面萬水洞致死男人李勉夏屍身初檢文案』(奎21602)
『昌原郡下南面井里致死女人鄭召史屍體案』(奎25059)
『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謄本』(奎21550)
『瑞興郡龍淵坊三里小地名金井村致死女人李召史屍身文案』(奎21322)
『瑞興郡龍淵坊三里小地名金井村柳遠興柳遠揚等文案成冊』(奎26570)
『黃州郡九林坊和洞里致死女人白召史屍身初檢文案』(奎21468)
『魯城郡長久洞面西邊里致死男人申泰嫌初檢案』(奎21395)
『淸州郡山內一面內洞致死男人崔巡京文案』(奎21609)
『漆原郡榮洞里致死女人裵召史獄事覆檢案』(奎26324)
『淸安郡西面萬水洞致死男人李勉夏屍身初檢文案:淸安郡遠西面茅崖里致死男人李勉夏屍身覆檢文案』(奎21602)
『大靜仁城里鄭時穆獄事檢案謄本』(奎21550)
『忠淸南道瑞山郡銅巖面夫丹里致死女人柳氏獄事文案』(奎 21648)
『永同郡南一面九村里致死男人張德元及李召史屍身初檢文案』(奎21867)

『完營日錄』(김순석 외 번역, 2018『완영일록』, 흐름)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 2009『완역 이옥 전집2-그물을 찢어버린 어부』, 휴머니스트
김구 저, 도진순 주해, 2006『백범일지』, 돌베개
『靑邱野談』(정환국 책임교열, 2021『정본 한국 야담전집7』, 보고사)

5) 현대 판례

대구지방법원 198112.16. 제3형사부 판결 강간치사
대구고등법원 1982.4.15. 제2형사부 선고 82노204 판결 강간치사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치사
서울고법 1989.2.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 판결
부산고법 1996.10.30., 선고, 96노502. 판결
부산고법 2005노193

2. 연구논저

1)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김성돈, 2017,『형법총론』(제5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호, 2018『100년 전 살인사건-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 휴머니스트
김호, 2020『정조의 법치-법의 저울로 세상의 바름을 살피다』, 휴머니스트
도면회, 2014『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朴相基, 2004,『刑法總論』(제6판), 博英社
마르치오 바르발리 저, 박우정 옮김, 2017『자살의 사회학』, 글항아리
문준영, 2010『법원과 검찰의 탄생-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심재우, 2009『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안성훈, 김성돈, 2015『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밀 뒤르켐 저, 황보종우 옮김, 2019『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청아출판사
이경구, 2018『조선, 철학의 왕국』, 푸른역사
이선희, 2017『19세기 전반 서울의 刑政運營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승일, 2021『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경인문화사
이재상 외, 2017『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이재상 외, 2017『형법각론』(제10판), 박영사
유승희, 2014『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학사
田中俊光, 2011『朝鮮初期 斷獄에 관한 硏究-刑事節次의 整備過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학위 논문
조지만, 2007『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조르주 미누아 저, 이세진 옮김, 2014『자살의 역사 : 자발적 죽음 앞의 서양 사회』, 그린비
체사레 백카리아 저, 한인섭 신역, 2014『범죄와 형벌』, 博英社
John F. Gunn III, David Lester 저, 김영범·양준석·유지영·이정은 옮김,

2019『자살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 박문사
范忠信, 鄭定, 詹學農 저, 李仁哲 옮김, 1996,『中國法律文化探究』, 一潮閣

2) 논문
김동일, 2023「죽은 여성의 복수 부촉(咐囑)과 설원(雪冤) 대행(代行)-『岐陽文籍』여성 사망 사건 연구-」『학림』51, 연세사학연구회
김선경, 2000「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역사연구』8, 역사학연구소
김선경, 2012「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옥 사건과 심리:『완영일록』의 분석」『역사교육』122, 역사교육연구회
김용흠, 2016「스승을 비판한 백의정승 명재 윤증의 탕평론과 회니시비」『내일을 여는 역사』62,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김태계, 2018「조선시대의 인명(人命)에 관한 죄의 종류와 그 형벌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26권 제4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향숙, 2023,「『사법품보(司法稟報)』에 수록된 문서의 특징과 의의」,『古文書硏究』62, 한국고문서학회
김호, 1998「규장각 소장 검안의 기초적 검토」『조선시대사학보』4, 조선시대사학회
金澔, 2003「『新註無冤錄』과 조선전기의 檢屍」『法史學硏究』, 韓國法史學會
金澔, 2013「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震檀學報』117, 震檀學會
김호, 2013「조선후기 '위핍률(威逼律)'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對民觀)」『역사와 현실』87, 한국역사연구회
김호, 2015「검안, '예외적 정상'의 기록들」『藏書閣』34,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호, 2015「조선후기의 '圖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한국학연구』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현진, 2010,「『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자살 실태와 그 사회적 함의」『조선시대사학보』52, 조선시대사학회
나종현, 2022「18세기 초반 호론계 배사론(背師論)의 전개」『韓國思想史學』70, 韓國思想史學會

문준영, 2022「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 : 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법과 사회』69, 법과사회이론학회
문준영, 2022「19세기 '심리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창-『일성록』·『추조결옥록』·장계등록을 이용한 살옥사건 기록의 재구성-」『民族文化』제60집, 한국고전번역원
문준영 2022,「사형 판결 없는 살옥죄인의 처리와 징벌-19세기 살옥 사건 심리·처결의 경향과 특징-」『한국문화』9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준영, 2022「『유경록』으로 보는 조선 후기 관찰사에 의한 살사(殺死)사건 처리 실태」『法學硏究』제32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文賢雅, 2011「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秋官志)』사례를 중심으로」『진단학보』113, 진단학회
朴桃顯, 2012「자살에 관한 형법적 고찰」,『중앙법학』제14집 제3호, 중앙법학회
박주, 2012,「영조의 딸 열녀 화순옹주의 삶과 죽음」『한국사상과 문화』64, 한국사상문화학회
백민정, 2020「조선후기 성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과 재판 양상-『審理錄』·『秋官志』와 『흠흠신서』의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제8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백옥경 2009「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서정민, 2012「〈欽欽新書〉의 도뢰 사례 고찰」『다산학』20, 다산학술문화재단
송승현, 2015「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법학연구』제25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송지영, 2019「『사법품보(司法稟報)』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1895~1906)」,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심재우, 1997「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역사와 현실』23, 한국역사연구회
심재우, 2007「총론 : 조선시대 형률의 운용과 『대명률』」『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심재우, 2007「조선말기 형사법 체계와 『대명률』의 위상」『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심재우, 2017「조선후기 범죄와 판례 연구의 현황」『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심재우, 2018「검안에 나타난 조선말기의 산송」『검안과 근대 한국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沈羲基, 1997「典律體系 下의 刑法」『韓國法制史講義-韓國法史上의 판례와 읽을 거리-』, 三英社
심희기, 2015「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法史學硏究』51, 韓國法史學會
심희기, 2021「19세기 조선 관찰사의 사법적 행위의 실증적 고찰」『古文書硏究』58, 한국고문서학회
오승관, 2021「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양식-규장각 소장 검안 자료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120, 한국역사연구회
오수창, 2009「조선후기 야담과 소설에 담긴 사회적 갈등과 신분인식」『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태학사
吳洙彰, 2016「正祖 연간과『日省錄』을 향한 '下而上'의 역사 탐구」『民族文化』第47輯, 한국고전번역원
오항녕, 2018「『현종실록』과『현종개수실록』」『후대가 판단케 하라 -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 역사비평사
원재연, 2016「1890년대 후반 유교 이념과 위핍률(威逼律): 전북지역의 판례를 중심으로」『인문사회 21』제7권 제6호, 인문사회21
유봉학, 2013「'실학자'-풍석 서유구의 학문과 사상」『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柳承喜, 2011「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秋曹決獄錄』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7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장승일, 2015「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 원칙」『아주법학』제8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참고
장경준, 2016「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 '향본(鄕本)'에 대하여」『法史學硏究』53, 韓國法史學會
장경준, 2017「『大明律直解』,『大明律講解』.『律解辨疑』와 洪武律에 대한

試論」『民族文化』49, 한국고전번역원
鄭肯植·趙志晩, 2003 「朝鮮 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변용」『震檀學報』 96, 震檀學會
鄭肯植, 2008 「大明律의 罪刑法定主義 原則」『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鄭肯植, 2009 「朝鮮前期 中國法書의 受容과 活用」『서울대학교 法學』 제50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일영, 2008 「조선 후기 성별에 따른 자살의 해석-正祖代《審理錄》의 자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醫史學』 제17권 제2호, 大韓醫史學會
조인현, 2021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연구」『人權과 正義』 497호, 대한변호사협회
조윤선, 2021 「조선 후기 삼복(三覆) 제도 연구」『法史學硏究』 64, 韓國法史學會
최해별, 2014 「宋·元시기 "檢驗지식"의 형성과 발전: 『洗寃集錄』과 『無寃錄』을 중심으로」『중국학보』 69, 한국중국학회
최해별, 2015 「동아시아 전통 '檢驗' 지식의 계보: 檢驗 서적의 편찬·전파·변용을 중심으로」『梨花史學硏究』 50, 梨花史學硏究所
최해별, 2017 「13-18세기 동아시아 '檢驗(檢屍)' 지식의 전승과 변용 ; 死因 분류 체계와 死因 규명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역사문화연구』 6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한상권, 2014,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법사학연구』, 한국법사학회

高橋 芳郎, 1999 「明律 「威逼人致死」条の淵源」『東洋学報』 81(3), 東洋文庫
나까무라 시게오 저, 임대희 옮김, 2004, 「자살을 야기시킨(誘起) 경우의 죄책」『판례를 통해서 본 청대 형법』, 서경문화사(中村茂夫, 1973『清代刑法研究』, 東京大学出版会)

[Abstract]

A Study on “Harassment leading to a loss of life(Wipibin Chisa, 威逼人致死)” in Joseon Societ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Oh, SeungKwa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ttempts to examine the legal meaning and practice of “Harassment leading to a loss of life(Wipibin Chisa, 威逼人致死)”, a clause on a type of murder in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the state and social responses to it. “Wipibin Chisa” is the clause dealing with cases in which an individual would harass another with his or her power, and eventually drive that person to its own demise. In this case, the victim committed suicide out of fear. On the other hand, the perpetrator did not persecute the victim with the intention of killing him of her, and did not force him of her to end it all. If such a suicide had occurred, the persecutor would have gotten a hundred times flogging. Furthermore, the punishment was aggrav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icide and the persecutor and the cause of the persecution.

A comparison with modern criminal law shows the the legal meaning of “Wipibin Chisa”. In modern criminal law, suicide is a free and voluntary decision and no one can be held responsible

for its consequences. Therefore, there can be no perpetrator for suicide, and a person can be punished if they completely overpower the other person's will and force them to commit suicide. However, the situation covered by “Wipibin Chisa” dose not mean that the perpetrator exercised the power to completely suppress the victim's will with the intention of murder. In other words, when “Wipibin Chisa” was invoked, people recognized the incident as a fact of damage that will not be legally subject in modern criminal law. In this way, compared to the modern criminal law, a very unique aspect of “Wipibin Chisa” is revealed.

The application of this particular clause was related with two concepts, “Sangmyeong(償命)” and “Yuajiyul(由我之律)”. “Sangmyeong” is the idea that one unjust death must be repaid through the other. Under these principles, the death caused by suicide was also a death to be repaid, and the person who led to the suicide had to be found and repaid. “Wipibin Chisa” is the clause that carried out these principles. And “Yuajiyul”, the other principle that deter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and outcome, was similar to the conditional theory of modern criminal. Conditional theory recognizes a causal relationship when necessary conditions of logic are established, such as "without such an act, no results would have occurred." “Yuajiyul” followed it, and when “Wipibin Chisa” was invoked, the logic that “if it had not been persecuted, it would not have committed suicide." was established. In the end, the responsibility for suicide could be attributed to the perpetrator who persecuted it.

However, a unique perception of suicide is formed by applying the “Wipibin Chisa.” The clause defined the occurrence of suicide as a result of preceding persecution. But, in reality, suicide preceded, and people first encountered suicide and then asked what kind of persecution there was. Therefore, awareness of suicide precedes understanding the situation. People perceived

suicide as a result of murder. In other words, when people could specified and punished the perpetrator, the case of suicide was regarded as the result of murder.

The reality of “Wipibin Chisa” can be examined focusing on suicide, which is the result of damage, through recorded in criminal data.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thesis is a case where the cause of death was clearly suicide, which was suicide as a result of damage in the case, and the defendant, who is the perpetrator, was specified. As data for grasping the actual situation, this thesis also focused on examination data, 『Wanyeongilrok』, 『Simrirok』, 『Ilseongrok』, and 『Sabeoppumbo』. The important point is that each data was produced at each stag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riminal, so the content may be qualitatively different. For example, 『Wanyeongilrok』, the autopsy reports, was produc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murder. So it reflectde the situation of the base society. Meanwhile, 『Simrirok』 and 『Ilseongrok』 are regarded of showing very important events because the events recorded in it were reported to the king.

This thesis examined the gender, age, and type of case of the suicidal person in turn, and then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icidal person and the defendant, focusing on gender, status, etc.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gender issues were more important variables than status issues when treated with the “Wipibin Chisa” clause. Suicide victims were overwhelmingly women, and the rate increased as the judicial processing stage progressed. Conversely, most of the perpetrators were men.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female suicide by male perpetrators was a prevalent crime pattern.

Meanwhile, the aspect of persecution was also drawing

attention. Because “Wipibin Chisa” defines the particular suicide as a “result” of the preceding persecution, specific type of persecution could not be defined in documen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aspect of persecution. This thesis organized it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is the direct persecution in which the defendant inflicted direct harm on the victim. The second is the indirect persecution in which the defendant harmed a person, and his or her family member committed suicide.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Wipibin Chisa” in the case of indirect persecu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harmful behavior that would cause suicide was very unlimited in Joseon society.

So far, this thesis has looked at society's response to “Wipibin Chisa” at that time. First, the hearing on “Wipibin Chisa” was not directly punishable by applying the contents of clause as it was. It aimed to make appropriate judgments according to the type of case or moral value. For example, if the situation in which persecution and suicide occurred significantly destroyed moral values, such as humanity, it was punished more than clause's sentence. Conversely, if a suicide occurred due to a minor or accidental incident, it was handled in a way that held the perpetrator to the minimum of responsibility.

What was unique is that suicide related to sexual problems was tried in the direction of faithfully checking whether there was persecution and reveal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secution and suicide. This is because the perpetrator of suicide caused by sex crimes was beheaded in the clause. In other words, it was not possible to punish all perpetrators of suicide with beheading just because suicide occurred in connection with sex problems. Therefore, it was intended to reduce the death penalty

by strictly exa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secution and suicide. However, since that could not help the situation in which suicide occurred as it was, female suicide related to sexual problems was dealt with by aggravating the punishment of attempted rape.

This thesis have examined the general society's response to “Wipibin Chisa”. The general public was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judicial process on “Wipibin Chisa”. Therefore, the society's response to “Wipibin Chisa” was inevitably a response to suicide, the result of damage. This thesis identified two aspects of these response. One was to report suicide after finding it. This is too natural in that it was a human-related case, but not in terms of suicide. At that time, there were suicides that had to be reported and had not because not all suicides occurred in society had persecution. Therefore, the general public had to make a judgment on it. Whether or not reports that led to this judgment can be said to be the people's response to the “Wipibin Chisa”

The other was for witness to find the perpetrator and determine where he or she was responsible. At that time, there was a custom of visiting the perpetrator's house and demanding responsibility if his of her family member was assaulted or killed. “Wipibin Chisa” also partly followed the custom. In this case, people brought the body of the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to the house of the persecuted perpetrator. In this way, the act of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for suicide can be said to be the people's response to “Wipibin Chisa” More importantly, suicide was an act of one's choice. Therefore, the persecuted person himself or herself went to the perpetrator's house and committed suicide. And then, the suicide person maximized the meaning of suicide by choosing the place, which became the most active resistance that

victim could make at that time.

This thesis have examined the legal meaning, aspect, and respondents of the “Wipibin Chisa” in Joseon societ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n the context of penal administra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legal logic and legal sentiment of recognizing and handling suicide caused by persecu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damage, this particular incident was recognized as a result of such as murder, which was very unique perception of Josun society.

keywords : Harassment leading to a loss of life(Wipibin Chisa, 威逼人致死), The Great Ming Law (Daemyeong'ryul, 大明律), Suicide, Sangmyeong(償命), Yuajiyul(由我之律), Persecute to death(pibsal, 逼殺)

Student Number : 2019-39975